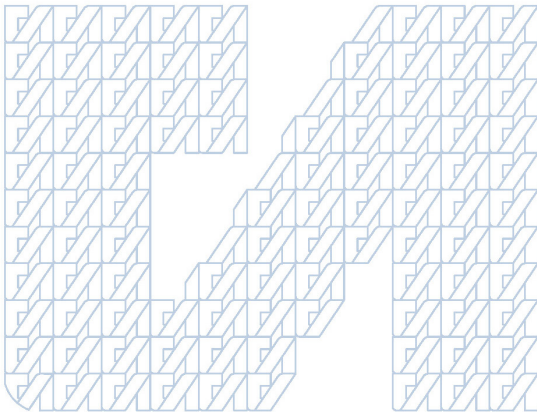


세종시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모형 도출 및 운영방안 연구

김 흥 주



정책연구 2022-54

세종시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모형 도출 및 운영방안 연구

김 흥 주

연구책임 • 김흥주 / 세종연구실 책임연구위원

연구자문 • 정무설 / 세종연구실 정책협력관

연구지원 • 신가원 / 세종연구실 전문연구원

정책연구 2022-54

세종시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모형 도출 및 운영방안 연구

발행인 박 노 동

발행일 2022년 11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37(문지동)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0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 쇠 (주)경성문화사 TEL 044-868-3537 (FAX: 044-868-3565)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세종시는 단층제적 성격(읍면동의 중요성이 큼)을 가진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가진 도시로서 주민이 마을에서 주도성을 가지고 지역정책을 직접 만들고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차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제도적 보완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음
- 주민자치회의 확대 운영과 향후 읍면동 환경변화에 대비해 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 조치원읍을 중심으로 하는 구도심, 그리고 농촌 지역인 면지역 특성에 맞는 적합한 주민자치회 운영 모형을 개발하고 그에 상응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시됨
 - 즉, 세종시에 적합한 지역적 특성(읍면동)을 반영한 주민자치회 모형을 구체화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시됨. 이는 읍면동별 특성에 따라 이를 둘러싼 환경과 제도,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가지는 기능과 역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에 기인함

■ 연구목적 및 내용

- 첫째, 주민자치회의 전면 확대에 의해 신도시, 구도심, 농촌지역의 특성에 따른 주민자치회 운영 모형을 개발(주요사업, 기능, 재정지원 등)하고,
- 둘째, 이를 통해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풀뿌리 주민자치의 효능감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함임
- 연구의 주요내용
 - 본 보고서는 1장 서론, 2장 이론적 검토, 3장 세종시 읍면동 기능 및 주민자치회 운영현황 분석, 4장 세종시 주민자치회 인식 및 FGI 분석, 5장 결론 및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구성함

■ 연구의 방법

- 이론적 배경 등 문헌조사: 풀뿌리 주민자치 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풀뿌리 주민자치, 사회적자본 등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한 문헌조사 실시
- 세종시 현황 검토: 세종시 읍면동 기능분석, 주민자치회 및 주민총회 현황 분석
- 세종시 지역별 주민자치회 특성 및 수요조사(통계분석, 개방형설문 및 FGI)
 - 기초통계분석, 빈도분석, T-Test, 분산분석(ANOVA), 교차분석 실시
 - 주민자치회, 읍면동 공무원 대상 FGI 및 개방형 설문 실시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최종 모형도출

■ 연구결과: 설문조사, FGI, 개방형설문을 종합한 분석결과

- 설문조사 결과, FGI 및 개방형설문 조사결과 등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여 다음 표와 같이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함

[분석결과 종합]

구분	분석결과
주민 자치회 및 총회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한 주민자치회 기능): ‘공동문제해결사항’, ‘수립한계획사항’, ‘의견합치사항’ ▪ (중요한 주민총회 기능): ‘주민자치회운영결산승인’, ‘자치계획승인’, ‘자치규약승인’ ▪ (필요한 주민자치회 기능): ‘주민총회운영’, ‘사무국설치운영’, ‘지역발전계획권’, ‘주요정책사전심의’
기능 이양 및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 지역자원 및 문화, 농촌 및 도시재생, 마을환경, 주민편의시설관리, 평생교육,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전담조직 구성, 사회복지 및 맞춤형 복지(강화) ▪ (면): 주민편의시설관리, 평생교육, 농촌(부강면, 전의면, 연동면, 연서면, 전동면 등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도시재생(부강면, 전의면 등 도시재생 지역에 국한됨), 주민자치 전담조직 구성, 사회복지 및 맞춤형 복지 기능(강화) ▪ (동): 불법광고물정리(환경), 주민편의시설관리, 평생교육, 공동주택관리, 생활안전기능(자율방범대 등), 주민자치전담조직 구성, 일반행정 및 통합민원(강화), 사회복지 및 맞춤형 복지(강화)

구분	분석결과
분과위 (자치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 기획운영 및 예산, 프로그램, 마을계획 분과는 기본적으로 구성되는 부분으로 판단되며, 특성화 있는 분과위는 지역자원 및 문화기능, 교육기능(평생교육 포함), 그리고 도시재생, 그리고 지역의 자생·직능단체와 네트워크, 농촌 및 도시 재생으로 구성 ▪ (면): 기획운영 및 예산, 프로그램, 마을계획 분과는 기본적으로 구성되는 부분으로 판단되며, 특성화 있는 분과위는 지역자원 및 문화기능, 마을기업, 복지 및 환경, 청(소)년, 평생교육, 그리고 마을이장단과의 네트워크로 구성 ▪ (동): 기획운영 및 예산, 프로그램, 마을계획 분과는 기본적으로 구성되는 부분으로 판단되며, 특성화 있는 분과위는 지역자원 및 문화기능, 도농상생, 협동조합, 청소년, 그리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 공동주택의 주민조직과 네트워크로 구성
협의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 도시재생, 지역복지, 마을관리(주민편의시설), 지역사회문제발굴, 도농상생과 관련된 사안 ▪ (면): 평생교육, 지역사회문제발굴, 주민편의시설관리, 지역복지, 농촌 및 도시 재생, 마을네트워크와 관련된 사안 ▪ (동): 평생교육, 지역사회문제발굴, 주민편의시설관리, 지역사회문제발굴, 사회경제적, 보육 및 청소년 보호, 공동주택 연계 및 관리, 도농상생 및 마을네트워크와 관련된 사안
위탁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포함), 주민총회 운영, 소회계충돌분(복지), 도시재생활성화 공간운영, 공동체 공간 및 마을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을 중심으로 한 운영관리 ▪ (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포함), 주민총회 운영, 도서관 운영 등 주민편의시설, 마을축제의 기획·운영을 중심으로 한 운영관리 ▪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포함), 주민총회 운영, 복컴 및 공동체 공간운영, 마을축제기획 운영 등 가능
주민자 치회 구성 및 주민 총회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 주민자치회 구성: 적정임기는 ‘현행과 동일, 읍과 동의 연임규정만 2회로 변경 방식’ ▪ (읍): 주민총회: 축제방식+주민주도+다양한 단체참여 ▪ (면): 주민자치회 구성 및 주민총회 방식: 적정임기는 ‘현행방식 유지’, 주민자치회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에 의한 공개추첨방식+주민공동체조직 추천+명망이 있는 분을 추천’하는 혼합적 방식을 제안함 ▪ (면): 주민총회: 축제방식+주민주도+다양한 단체참여 ▪ (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주민총회 방식: 적정임기는 ‘현행방식 유지’ 쪽 제안 비중이 높으며, ‘공개모집에 의한 공개추첨방식+주민공동체조직 추천+명망이 있는 분을 추천’하는 혼합적 방식도 제안함 ▪ (동): 주민총회는 축제방식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축제형식보다는 다양한 의제가 모여서 주민주도성을 가진 내실 있는 공론장 운영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구분	분석결과
운영 위원회 운영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 운영위원회 운영방식: '개편'의 필요성이 제시되며, 그 대안으로 읍장1인+읍장 추천 3인+기관단체장 추천 3인, 혹은 읍장1인+공동체조직 추천 6인으로 제안됨 ▪ (면): '현행' 유지로 면장1인+면장추천 3인+면소재 주요기관 및 단체장 추천 3인으로 제안함 ▪ (동): '개편'의 필요성이 제시되며, 그 대안으로 동장1인+공동체조직 추천 6인으로 제안됨
발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 주민자치회 대표성강화, 자생력확보를 위한 기반강화, 주민자치회 시민인식 및 체감을 위한 홍보, 행정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 그리고 행정의 혁신, 주민의 자치역량 및 실무강화 등을 중심으로 제안함 ▪ (면): 주민자치회 대표성강화(기존 주민조직과 갈등해결 및 네트워크 강화), 자생력확보를 위한 기반강화(수익사업 포함), 주민자치회 시민인식 및 체감을 위한 홍보, 행정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 그리고 행정의 혁신, 주민의 자치 및 실무역량강화, 리단위 마을회의 민주적 운영체계 확립, 마을계획시 농번기 고려 및 예산집행과정상의 조정 필요 등을 중심으로 제안함 ▪ (동): 주민자치회 대표성강화(주민공동체 조직과 화합 및 네트워크), 자생력확보를 위한 기반강화, 주민자치회 시민인식 및 체감을 위한 홍보, 주민주도성 강화(민주적 운영과 책임성 포함, 행정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 그리고 행정의 혁신, 주민의 자치 및 실무역량강화(마을계획사업 등), 주민자치회 구성 문제해결 등을 중심으로 제안함

■ 정책제언

읍면동별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모형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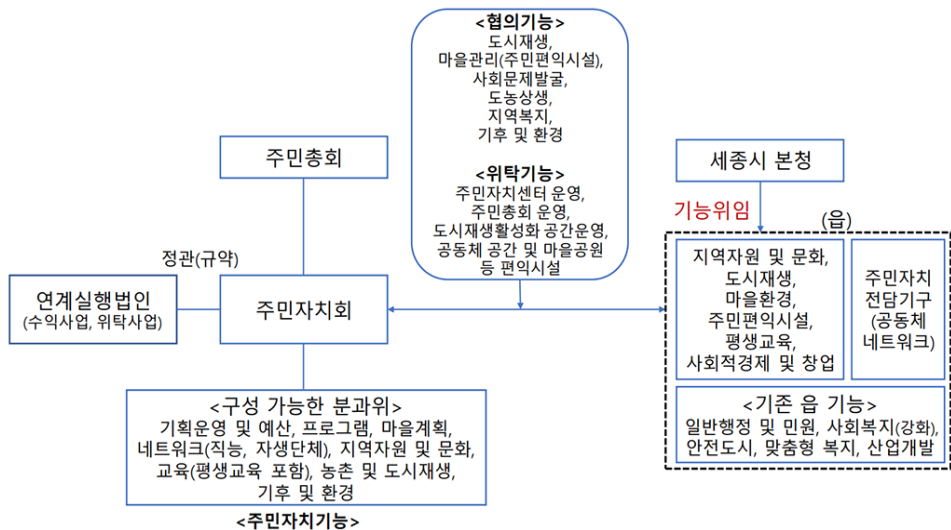
■ 조치원읍: 구도심

○ 조치원읍과 같은 구도심에 위임될 필요성이 있는 사무,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 구성방식, 그리고 협의 및 위탁가능 사무에 대해 조치원읍 공무원, 주민자치회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모형을 제안함

- 분청에서 읍으로 위임할 수 있는 기능: 지역자원 및 문화, 농촌 및 도시재생, 마을환경, 주민편익시설관리, 평생교육, 사회적경제 및 청년창업 기능을 중심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임. 도시재생에 따라 조성된 지역인프라의 주민운영, 특히 도시지역에서의 청년층 등이 중심이 된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등과 연계한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고려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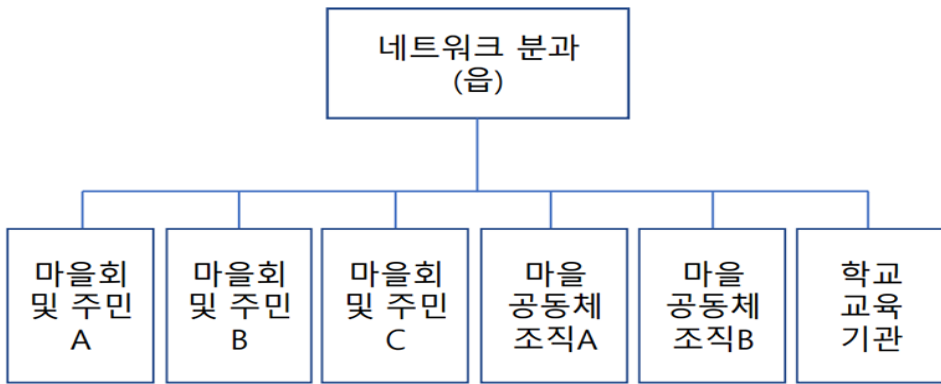
성도 제기됨. 특히, 주민자치전담조직을 구체화해 상시적으로 조치원읍의 안정적 지원을 병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기존 직능·자생단체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도시재생 등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가 가능할 것임

- 읍에서 구상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 기획운영 및 예산, 프로그램, 마을계획 분과는 기본적으로 구성되는 부분으로 판단되며, 특성화 있는 분과위는 지역자원 및 문화기능, 교육기능, 그리고 도시재생, 기후 및 환경, 그리고 지역의 자생직능단체와 네트워크를 고민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임
- 협의기능: 조치원읍의 사무위임과 연계해 주민자치회와 조치원읍이 협의할 수 있는 사무는 도시재생, 지역복지, 마을관리(주민편의시설), 지역사회문제발굴, 도농상생, 기후 및 환경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위탁사무: 조치원읍에서 검토할 수 있는 위탁사무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포함), 주민총회 운영, 소외계층 돌봄(복지), 도시재생활성화 공간운영, 공동체 공간 및 마을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을 중심으로 한 운영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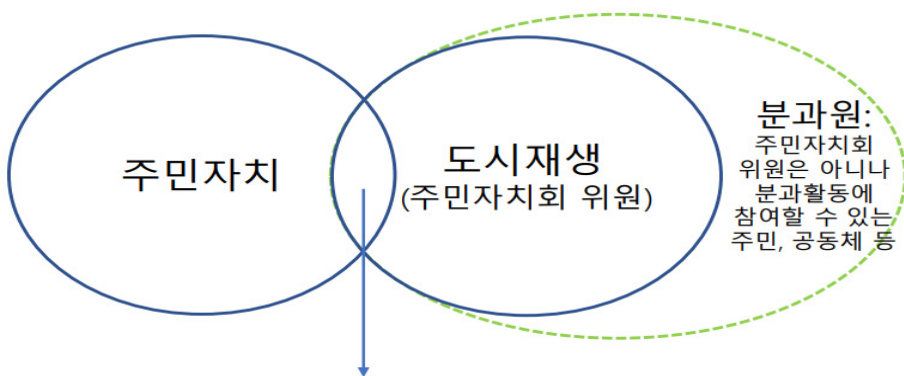
[지역특성에 따른 주민자치 모형(읍)]

- 연계실행법인: 읍의 행정기능강화와 협의사무 확대, 그에 따른 위탁사무를 발굴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연계수행법인을 통해 공공서비스전달, 수익사업을 병행할 수 있음
- 위의 그림은 조치원읍의 주민자치 모형을 구상한 것이며 다음과 같이 제시됨
- 아울러 다음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치원읍의 네트워크 분과는 각 마을회(주민)와 직능·자생단체, 학교교육기관 등을 중심으로 연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읍의 네트워크 분과 구성 모형]

○ 다음 그림은 주민자치회, 도시재생 연계 모형을 보여줌



교집합(예: 재생분과)이 분과형태

자료: 행정안전부(2021:40) 재구성

[주민자치회, 도시재생 연계형]

〈사례 : 인천 서구 도시재생 연계 주민자치회 구조〉

- 추진 배경
 - 마을 활동에 중복 참여하는 주민, 원활하지 못한 정보 전달 및 공유, 부서 간 업무 혼재 및 중복
 - 가시적인 성과주의 행정문화의 문제점 인식
 - 실질적 주민주도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진행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 확인
 - 주민자치회와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의 연계 및 협력 제안
- 주요 내용
 - 주민자치회와 도시재생 연계모형 수립
 - 시범동 주민자치회 재생 관련 분과 별도 구성
 - 도시재생사업 준공에 따른 커뮤니티센터의 운영주체 교육 및 주민자치회 연계를 위한 워크숍(2020.11.)
 -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도시재생 교육 진행(2020.12.)

- 조치원읍의 당면한 문제, 주민자치회 구성 및 주민총회 방식, 운영위원회, 대안 및 발전방안
 - 당면한 문제(쟁점): 주민자치회 대표성 미흡,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미흡,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 및 효능감 부재, 참여율 저조 (마을계획, 주민총회) 등이 제시될 수 있음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주민총회 방식: 적정임기는 ‘현행과 동일, 읍과 동의 연임규정만 2회로 변경 방식’을 주로 제안할 수 있으며, 주민총회는 축제방식으로 다양한 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주도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운영위원회 운영방식: ‘개편’의 필요성이 제시되며, 그 대안으로 읍장 1인+읍장 추천 3인+기관단체장 추천 3인, 혹은 읍장1인+공동체조직 추천 6인으로 제안됨
 - 발전방안: 주민자치회 대표성강화, 자생력확보를 위한 기반강화, 주민자치회 시민인식 및 체감을 위한 홍보, 주민주도성 및 공론장 운영, 행정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 그리고 행정의 혁신, 주민의 자치역량 및 실무 역량강화 등을 중심으로 제안함

■ 면지역(농촌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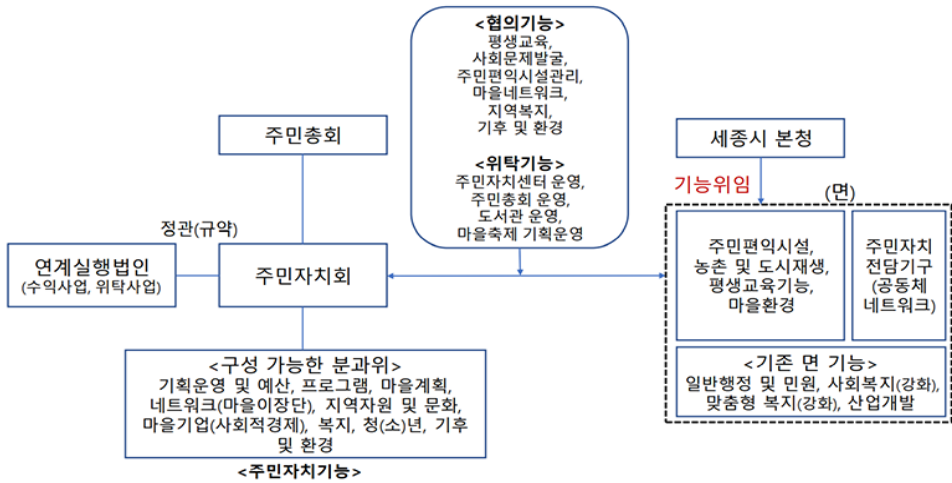
- 농촌지역인 면에 기능이 위임될 필요성이 있는 사무,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 구성방식, 그리고 협의 및 위탁가능 사무에 대해 조치원읍 공무원, 주민자치회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모형을 제안함
 - 본청에서 면으로 위임할 수 있는 기능: 주민편익시설관리, 평생교육, 농촌(부강면, 전의면, 연동면, 연서면, 전동면 등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및 도시재생(부강면, 전의면 등 도시재생 지역에 국한됨), 마을환경을 중심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임. 이와 더불어 면 역시 주민자치전담조직을 구체화해 상시적으로 면의 안정적 지원을 병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기존 이장단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임
 - 면에서 구상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 기획운영 및 예산, 프로그램, 마을계획 분과는 기본적으로 구성되는 부분으로 판단되며, 특성화 있는 분과위는 지역자원 및 문화기능, 마을기업, 복지 및 환경, 청년, 평생교육, 기후 및 환경, 그리고 마을이장단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임. 특히, 면지역에 있어서는 고령화와 함께 인구감소가 큰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서 지역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주민자치회 복지분과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겸함)와 연계협력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시됨

〈사례 : 곡성군 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자치회 구조〉

- 주요 내용
 - 마을자치분과, 나눔분과, 문화분과를 구성하고 나눔분과는 죽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겸함
 - 각 기관사회단체협의회와 이장단을 주민자치회 협력단으로 하여 단체들 간의 협력 체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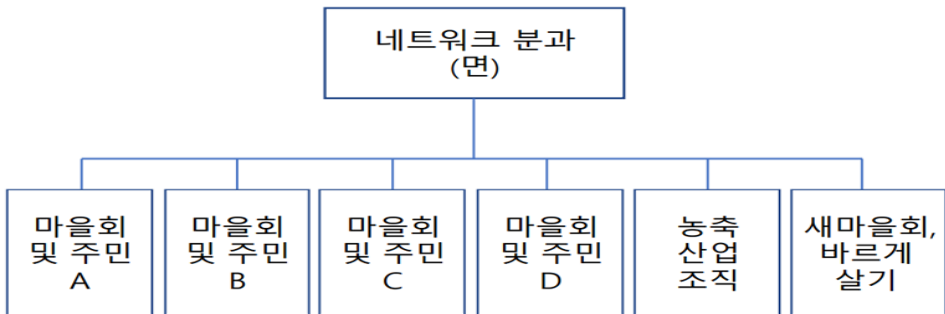
- 협의기능: 면(농촌지역)의 사무위임과 연계해 주민자치회와 면이 협의할 수 있는 사무는 평생교육, 지역사회문제발굴, 주민편익시설관리, 지역복지, 농촌 및 도시재생, 마을네트워크, 기후 및 환경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위탁사무: 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위탁사무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포함), 주민총회 운영, 도서관 운영 등 주민편익시설, 마을축제의 기획·운영을 중심으로 한 운영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연계실행법인: 면의 행정기능강화와 협의사무 확대, 그에 따른 위탁사무를 발굴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연계수행법인을 통해 공공서비스전달, 수익사업을 병행할 수 있음
- 다음 그림은 면의 주민자치 모형을 구상한 것이며 다음과 같이 제시됨



[지역특성에 따른 주민자치 모형(면)]

-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의 네트워크 분과는 각 마을회(마을이장과 지역주민), 농축산업조직,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관련단체 등을 포함한 연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면의 네트워크 분과 구성 모형]

- 면(농촌지역)의 당면한 문제, 주민자치회 구성 및 주민총회 방식, 운영위원회, 대안 및 발전방안 등을 중심으로 추가 제안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됨
 - 당면한 문제(쟁점): 주민자치회 대표성 미흡, 자생력 확보기반 미흡, 공간활용의 어려움 및 자재부족,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업무공백, 봉사자의 최저인건비 등으로 지원부족, 이장단 등 주민조직과 갈등,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 및 효능감 부재, 행정과 협조 및 협력관계 미흡, 농번기의 한계, 적은 인구 등이 제시될 수 있음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주민총회 방식: 적정임기는 '현행방식 유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주민자치회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에 의한 공개추첨방식+주민공동체조직 추천+명망이 있는 분을 추천'하는 혼합적 방식을 제안함. 그리고 주민총회는 축제방식으로 조직원읍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주도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운영위원회 운영방식: '현행'유지로 면장1인+면장추천 6인으로 제안함
 - 발전방안: 주민자치회 대표성강화(기존 주민조직과 갈등해결 및 네트워크 강화), 자생력확보를 위한 기반강화(수익사업 포함), 주민자치회 시민인식 및 체감을 위한 홍보, 행정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 그리고 행정의 혁신, 주민의 자치 및 실무 역량강화, 리단위 마을회의 민주적 운영체계 확립, 마을계획시 농번기 고려 및 예산집행과정상 조정필요 등을 중심으로 제안함

■ 동지역(심도심 지역)

- 동지역과 같은 심도심 지역에 기능이 위임될 필요성이 있는 사무,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 구성방식, 그리고 협의 및 위탁가능 사무에 대해 조차원을 공무원, 주민자치회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모형을 제안함
 - 본청에서 동으로 위임할 수 있는 기능: 마을환경 및 경관(불법광고물 정리 등), 주민편익시설관리, 평생교육, 사회적경제, 공동주택관리, 생

환안전기능(자율방범대 등), 그리고 주민자치전담조직을 구체화해 상시적으로 동의 안정적 지원을 병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 공동주택주민조직과 네트워크를 고민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음

- 구상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 기획운영 및 예산, 프로그램, 마을계획
분과는 기본적으로 구성되는 부분으로 판단되며, 특성화 있는 분과위는 지역자원 및 문화기능, 도농상생, 협동조합, 청소년, 기후 및 환경, 그리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 공동주택의 주민조직과 네트워크를 고민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임. 특히, 도심지역에 있어서 평생교육 등 역량강화의 요구와 수요가 높기에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공동체와 연계협력하는 등 거버넌스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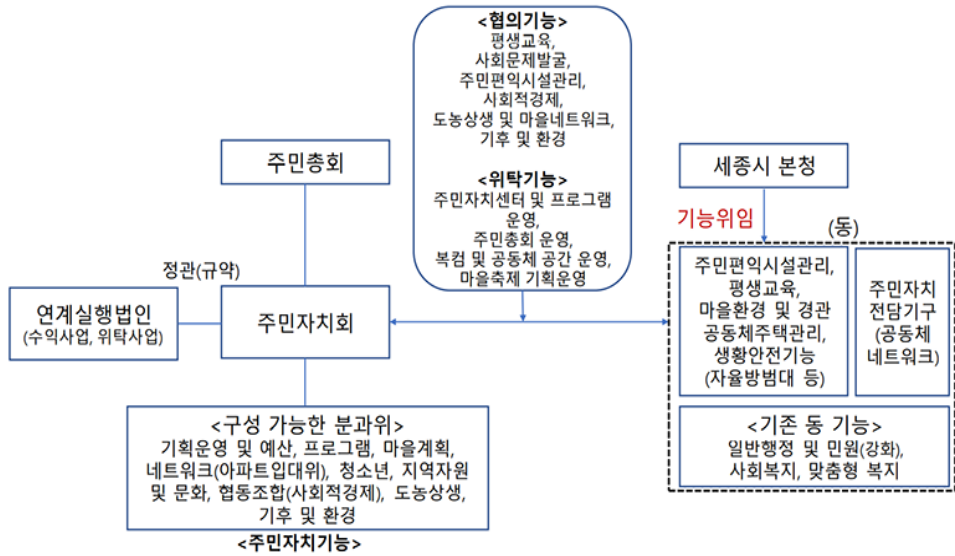
〈사례: 경기 시흥시 마을교육공동체와 주민자치회 연계 구조〉

• 주요 내용

- (참여기구) 주민자치회 내 마을교육자치회 연계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참여기구 확대
- 체계적인 준비와 교육을 통한 시흥형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 (필요성)
 -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이 인정되고 존중되는 지역 중심 교육으로 전환
 - 지역과 마을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마을 중심 교육 실시
 - 마을, 학교,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마을교육생태계 조성
- (운영방안)
 - 동 단위 거버넌스 구성(12개동) 후 권역별 네트워크 운영(효성권역(2), 계산권역(4), 작전권역(3), 계양권역(3))
 - 권역별 네트워크 정기적 모임 운영(월 1회)(주민자치회, 학교, 학부모, 마을교육활동가 등 교육 주체의 정기적인 모임으로 지역교육 거버넌스 기반 마련)
 - 동 단위 교육력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한 교육과정 지원(주민자치 특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시 학교교육 평생교육 마을강사 연계)
 - 지역과 학교 협력체계 기반 마련(1동 1교 하모니 사업 추진, 권역별 지역으로 찾아가는 공감 토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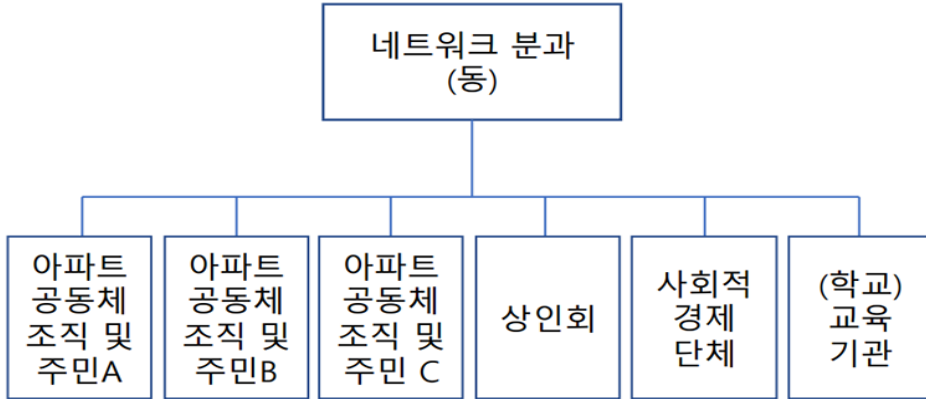
※ 학교, 주민, 행정기관이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필요성 확산 계기 마련

- 협의기능: 동의 사무위임과 연계해 주민자치회와 동의 협의할 수 있는 사무는 평생교육, 지역사회문제발굴, 주민편의시설관리, 사회적경제, 보육 및 청소년 보호, 공동주택 연계 및 관리, 기후 및 환경, 도농상생 및 마을네트워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위탁사무: 동에서 검토할 수 있는 위탁사무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포함), 주민총회 운영, 복컴 및 공동체 공간운영, 마을축제기획운영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연계실행법인: 동의 행정기능강화와 협의사무 확대, 그에 따른 위탁사무를 발굴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연계수행법인을 통해 공공서비스전달, 수익사업을 병행할 수 있음
- 다음 그림은 동의 주민자치 모형을 구상한 것이며 다음과 같이 제시됨



[지역특성에 따른 주민자치 모형(동)]

-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의 네트워크 분과는 각 아파트단지 내의 공동체조직 및 주민, 상인회, 사회적경제단체, 학교등 교육기관 들을 중심으로 연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동의 네트워크 분과 구성 모형]

- 동(신도심지역)의 당면한 문제, 주민자치회 구성 및 주민총회 방식, 운영위원회, 대안 및 발전방안 등을 중심으로 추가 제안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됨
 - 당면한 문제(쟁점): 주민자치회 대표성 미흡, 자생력 확보기반 미흡,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 및 효능감 부재, 행·재정적지원 및 관심 부족(봉사자 수당 최저, 지원인력 인건비 문제)으로 인한 업무부담, 주민 주도성 부족, 위원의 역량 미흡, 위원간의 갈등(아파트 입대위 포함 지역주민과 갈등 등)과 관심부족,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문제, 운영상 전반의 한계점 등이 제시됨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주민총회 방식: 적정임기는 ‘현행방식 유지’쪽이 가장 제안 비중이 가장 높으며, ‘공개모집에 의한 공개추첨방식+주민 공동체조직 추천+명망이 있는 분을 추천’하는 혼합적 방식도 제안함. 주민총회는 축제방식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축제형식보다는 다양한 의제가 모여서 주민주도성을 가진 내실 있는 공론장 운영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운영위원회 운영방식: ‘개편’의 필요성이 제시되며, 그 대안으로 동장 1인+공동체조직 추천 6인으로 제안됨

- 발전방안: 주민자치회 대표성강화(주민공동체 조직과 화합 및 네트워크 강화), 자생력확보를 위한 기반강화, 주민자치회 및 총회에 대한 시민인식 및 체감을 위한 홍보, 주민주도성 강화(민주적 운영과 책임성 포함), 행정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 그리고 행정의 혁신, 주민의 자치 및 실무역량강화(마을계획사업 등 교육), 주민자치회 구성문제 해결 등을 중심으로 제안함

■ 종합정리

- 다음 표는 각 읍면동의 기능, 전담조직, 주민자치회 협의, 위탁, 주민자치사무를 비교함
 - 아울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단체, 교육관련 중간지원조직, 자원봉사센터 등 중간지원조직들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임

[읍면동 기능, 협의, 위탁, 주민자치사무 비교]

구분	읍	면	동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행정 및 민원 ▪ 사회복지(강화) ▪ 안전도시 ▪ 맞춤형 복지 ▪ 산업개발 ▪ 지역자원 및 문화 ▪ 도시재생 ▪ 마을환경 ▪ 주민편의 ▪ 사회적경제 및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행정 및 민원 ▪ 사회복지(강화) ▪ 맞춤형 복지(강화) ▪ 산업개발 ▪ 주민편의시설 ▪ 농촌 및 도시재생 ▪ 평생교육 ▪ 마을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행정 및 민원(강화) ▪ 사회복지 ▪ 맞춤형 복지 ▪ 주민편의시설 ▪ 평생교육 ▪ 마을환경 및 경관 ▪ 공동주택관리 ▪ 생활안전
전담기구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지원(위원모집, 교육, 선정, 후보자명부 관리, 인수인계, 분과원 구성, 운영내규 작성, 임원 및 간사선정 등) ▪ 주민자치 관련 제도개선 지원 ▪ 협의사무 및 위탁사무 발굴 협의 ▪ 주민조직 네트워크 ▪ 주민간 갈등 조정 ▪ 주민자치회 사무국 협력 		
협의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 ▪ 마을관리(편의시설) ▪ 사회문제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 사회문제발굴 ▪ 주민편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 사회문제발굴 ▪ 주민편의시설

구분	읍	면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상생 ▪ 지역복지 ▪ 기후 및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네트워크 ▪ 지역복지 ▪ 기후 및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 도농상생 및 네트워크 ▪ 기후 및 환경
위탁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센터 ▪ 주민총회 ▪ 도시재생활성화공간 ▪ 공동체공간 및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센터 ▪ 주민총회 ▪ 도서관 ▪ 마을축제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센터 ▪ 주민총회 ▪ 복합 및 공동체 공간 ▪ 마을축제기획
주민자치 사무 (분과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운영 및 예산 ▪ 프로그램 ▪ 마을계획 ▪ 네트워크 ▪ 지역자원 및 문화 ▪ 교육(평생교육포함) ▪ 농촌 및 도시재생 ▪ 기후 및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운영 및 예산 ▪ 프로그램 ▪ 마을계획 ▪ 네트워크(이장단) ▪ 지역자원 및 문화 ▪ 마을기업(사회적경제) ▪ 복지 ▪ 청(소)년 ▪ 기후 및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운영 및 예산 ▪ 프로그램 ▪ 마을계획 ▪ 네트워크(아파트) ▪ 지역자원 및 문화 ▪ 청소년 ▪ 협동조합(사회적경제) ▪ 도농상생 ▪ 기후 및 환경
네트워크 분과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회 및 주민 ▪ 마을공동체 조직(상인회 등 포함) ▪ (학교) 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회 및 주민 ▪ 농축산업 조직 ▪ 새마을, 바르게 살기 등 관변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공동체 조직 및 주민 ▪ 상인회 ▪ 사회적 경제단체 ▪ (학교) 교육기관

법적·제도적 보완 및 대안제시

■ 읍면동 중심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편(중·장기)

① 읍면동에 주민밀착형 기능사무 위임

- (필요성) 본청 기능 중 주민밀착형 사업을 읍면동으로 위임해 읍면동에서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기획할 수 있을 것임
 - 위임된 주민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주민과 공동으로 협의할 수 있음. 아울러 주민과 마을의 의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을의 특성과 실태를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읍면동으로 주민밀착형 사무와 기능을 위임할 때, 마을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는 곧 마을 중심의 자생적인 문제해결 체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사료됨(김홍주, 2022)

- 추진방안: 읍면동별 정책사업 기획 TF 조직운영이 선행되어야 함. 정책의제 설정(정보와 자료수집), 정책형성(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성 타진, 계획수립), 정책집행(지역 내 가용자원 활용, 주민과 공동체, 행정간 거버넌스), 정책평가(자체평가와 전문가 피드백) 단계별 추진이 요구됨
- 즉, 업무위임에 대한 전수조사 → 읍면동에 주민밀착형 사무위임을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 예산산출 및 조직진단을 통한 단계적인 업무 위임 → 추진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거칠 수 있을 것임

〈사례 : 광주 서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혁신 사례: 기능위임〉

- 주요 내용
 - 위임업무: 14개 부서 17개 업무
 - 배정인력: 직원 18명(동별 1명), 기간제 348명
 - 위임업무 실무교육 3회, 마을정부 업무 매뉴얼 발간 등

② 읍면동 자율예산편성제 도입

- (필요성) 주민밀착형 행정사무를 읍면동에서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재정자율성 및 자치재정권이 보장되어야 함. 즉, 자치재정권은 위임된 사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재원을 자율적으로 조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음. 따라서 주민편의, 주민자치사무를 읍면동에서 보다 자유롭게 수행하기 위한 측면에서 재정적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임(김흥주, 2022)
- 읍면동의 예산편성 자율성 보장과 함께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전협의권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임. 따라서 읍면동은 예산(안)을 편성하고, 주민대표조직과 사전협의를 진행해 예산 주관부서에서 예산(안)을 조정해 최종 예산(안)이 확정될 수 있을 것임
- (추진방안): 주민대표조직과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전협의권 보장 및 주민 의견 반영의 제도화 검토
 - 읍면동에 예산을 배분해 자율권을 부여할 때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자치계획을 읍면동의 중기재정계획과 연동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임

- 본청사업예산 중에서 일정범위의 예산을 재배정해 통합하는 방식의 통합예산제도도 검토할 수 있음. 그리고 집행성과와 연계해서 차년도 총액배분자율편성제에 포함시킬수 있을 것이며 본청단위의 업무를 이와 병행해 순차적으로 위임하는 방식을 제안함
- (추진절차): 예산편성 기준통보 → 예산(안) 편성(세종시, 읍·면·동) → 사전협의(읍·면·동의 경우/주민대표제) → 예산(안) 조정(예산주관부서) → 예산(안) 시의회 제출(세종시 → 시의회, 읍·면·동 → 시의회) → 예산의결 결과 이송(세종시의회 → 세종시장) → 예산의결내용보고 및 고시(읍·면·동 → 세종시, 세종시 → 행정안전부)

〈사례 : 광주 서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혁신 사례: 자율예산편성제〉

• 주요 내용

- 동 예산편성액: 21년(469백만원) → 22년(4,839백만원) → 23년(5,492백만원)

③ 자체 인사권 및 자율적 조직권 운영

- (필요성) 지역에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안에 자치조직권과 함께 인력운영에 있어 인사권을 일부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됨
- 도농복합지역으로서 지역적 차이에 따라 행정수요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그에 상응해 조직구성과 인력배치의 자율성(일부 인사권 포함)을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됨
- 자체 인사권(일부) 부여: 역량에 따른 적절한 성과창출과 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읍면동장에게 일부 부여할 수 있음(현저히 피해주는 자에 대한 해임권 부여)

※ 읍·면·동 자체 (가칭) 인사위원회: 읍·면·동장, 팀장급 포함 3명 이내

※ 주민자치회 임원회의: 주민자치회장 포함 3명 이내

- (추진방안): 자율적 팀 구성 및 운영권: 읍·면·동 팀별 개인의 업무 실태조사를 통해 업무량 등을 파악 → 읍·면·동 자체 (가칭)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팀 조직의 업무배정 및 팀원 배치 계획 작성 → 주민자치회와 협의 및 의견반영 → 읍·면·동내 행정인력에 대한 읍·면·동장의 업무배정 및 팀원 배치
- 자율적 팀 구성 및 운영권: (가칭) 인사위원회 구성 및 계획 → 주민자치회와 협의 및 의견반영 → 읍·면·동장 최종결정(임명, 해임, 추천) → 본청 인사팀 통보

<사례 : 서산시 자체인사권 및 자율적 조직운영 사례>

- 주요 내용
 - 서산시 부읍면장, 총무팀장 자체 임명, 소속직원 본청추천, 관할 민간위원 자체위촉, 관할행사 주관추진 등/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징수권 부여, 농지원부 교부권 동단위 부여,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읍·면·동장 권한 부여 (산불관리요원 선발, 지역방재단 운영 등)

④ 추진계획(방안): 세종시 책임읍동을 중심으로 실험할 수 있을 것임

- 업무위임 실무 TF 구성 및 운영, 세종시 본청에서 읍면동 기능위임 사무 검토(전수조사), 업무위임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업무위임에 따른 읍면동별 소요인력 및 예산산출, 조직진단, 읍면동 기능강화 추진계획 작성(추진로드맵)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조례 개정
- 사무위임과 그에 따른 인력배치, 자율적 예산편성, 조직 및 인사권 부여 검토(장기적 차원)

■ 읍면동 주민자치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단기, 장기)

- (필요성)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주민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자치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특히, 상시적으로 주민자치회 및 마을공동체의 운영을 위한 지원인력이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전담인력의 세부 업무 예시)

- 첫째, 주민자치회 구성 등 주민자치 대표기구 구성·운영 지원(주요업무: 위원 모집, 교육, 선정, 후보자명부 관리, 주민자치위원회 인수인계, 임원 및 간사 선출, 분과원 구성, 운영내규 작성 등)
- 둘째, 주민자치 관련 제도 개선 지원(주민자치 관련 조례 개정, 주민세 환원, 주민참여예산제 등)
- 셋째, 자치계획 수립 및 시행, 주민총회 개최 지원, 읍면동 협의 업무 지원
- 넷째, 주민참여 정책공모 사업 연계
- 다섯째, 시설관리 운영 등 위·수탁 사무 발굴·협의 등

○ (추진방안): 추진방안으로는 주민자치회 간사를 기간제근로자 형식으로 채용하는 등 간사를 위한 지원확대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임(단기). 그리고 세종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및 마을공동체 전담인력이 순수히 마을과 자치의 업무만 소관하도록 설계할 필요성도 제시됨(중장기)

- 이를 통해 전담 공무원과 간사의 체계적인 사무분장을 통해 효율적인 민·관 협력적 협업체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사례 : 광주시 광산구 기간제근로자 간사활용 사례〉

• 주요 내용

- 주민자치회 간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주민자치회 실무를 수행(위원이 아닌 공개모집으로 채용하며 생활임금을 적용, 월 약 200만원 지급)
- '19년은 한시적으로 구에서 직접 채용하여 주민자치회 시범동에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
- '20년부터는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채용('20년부터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재원을 확보)

- 광주시 광산구를 제외한 타 지자체의 경우 시·도에서 간사 수당을 지원함

[타 지자체 간사 수당 지급 현황]

지자체	간사수당	지자체	간사수당
서울특별시(전체)	월 100만원	대전 유성구	월 100만원
인천시 계양구	월 40만원	대전 대덕구	월 100만원
인천시 연수구	월 18만원	광주 광산구	월 약 200만원
인천시 부평구	월 30만원	경남 창원시	월 약 35~40만원

자료: 행정안전부(2021:181)

- 다음 표는 사무인력운영 방식 현황을 보여줌. 여기서 운영주체가 지방 자치단체인 경우 '주민자치센터' 관리 업무를 포함하여 운영되는 경우 다수이며, 주민자치회인 경우 「지방보조금법의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에 따라, 주민자치회 세부사업을 특정사업으로 해석해 지원하기도 함
- 이렇듯 세종시 차원에서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민자치와 관련된 인력을 편재할 때, 기준인건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 건의도 필요함

[사무 인력 운영 현황]

운영주체	지급형태	인력유형	고용계약 여부	비고
지방 자치단체	인건비	공무직	○	충남 당진시 일부 지역
		단기 기간제	○	광주 광산구 시범지역 (신설 1년차 동 주민자치회)
	실비	자원봉사 등	×	전국 주민자치회 시범지역
주민 자치회	인건비 (지방보조금)+ 주민자치센터 수익금	특정사업에 따른 계약직	○	금천구 일부 시범지역
	민간위탁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행정사무 민간위탁)	위탁사업에 따른 계약직	○	광주 광산구 시범지역 (2년차 이상 동 주민자치회)
	인건비(지방보조금)	특정사업에 따른 계약직	○	충남 및 광주 주민자치회 시범지역
	실비지급(지방보조금)	자원봉사 등	×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지역

자료: 행정안전부(2021:181)

■ 주민자치회 대표성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 검토(단기, 중기)

- (필요성) 지역별·성별·연령별 균형 있는 선정방식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참여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주민조직 참여에 한계가 있어 지역내 주민조직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다양한 마을의제 발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주민자치회 위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필요함
- 무엇보다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공개모집에 의한 공개추첨 방식에서 현행 100% 공개추첨 방식보다 다양한 주민조직 참여가 가능한 혼합방식인 공모 + 추천 또는 추천으로 위원구성 방식)의 한계점과 운영위원회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읍면동장 1인+읍면동장 추천3인+해당 읍면동 소재 주요기관 및 단체의 장 추천 3인에서 읍동장 1인+마을공동체조직에서 추천한자 6인으로, 여기서 면은 제외)와 개편 개선 검토의 필요성을 시사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유형별 장단점]

유형	장점	단점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성별·연령별 균형 있는 위원 선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에 대한 적극성이 확인 되지 않아 참여도 저조 ▪ 이통장협의회 등 주요 조직이 추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음
공개모집 공개추첨 +주민조직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천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주민 조직에게 고른 참여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조직이 고르게 선정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직능대표 추천(운영위에서 참여 단체와 비율 결정)+전문가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통장협의회 등 주민대표 조직참여가 가능 ▪ 읍면동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전문가 참여 시, 주민자치회 역량 및 전문성 제고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시민과 주민조직과의 갈등 발생 우려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추천된자 중 선정(운영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하고 다양한 주민조직 선정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위원회 선정으로 주민자치회의 자율적 운영 취지와의 부합여부 논란

- (제안: 주민자치회 선정방식): 일반 공개모집 추천(60~80%) + 주요 주민조직 추천(20~40%) 방식을 제안할 수 있을 것임(단기)
 - 읍면동 운영위원회에서 주요 주민조직 대상 및 인원을 자율적으로 결정 하되, 일반 공개모집으로 추천하였으나 미달 된 경우와 주요 주민조직 에서 추천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운영위원회에서 선정 비율(성별·연령 별·지역별 선정 비율을 자율적으로 균형있게 결정)등 결정할 수 있음
 - 일반공모 추천과 주요 주민조직의 위원 추천으로 주민자치 위원을 구성한다면 주민 대표조직으로 인식이 확산·공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한 허용범위는 조례로 정하되, 주요 주민조직 및 위원구성 비율 은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가 능하도록 설계할 수 있을 것임
- (제안: 운영위원회 선정방식): 읍동에 한해 중기적으로 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을 읍면동장 1인+주민공동체조직 추천 6인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 임(중기적인 검토)
- (기대효과): 다양한 지역공동체, 주민조직·단체,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 회를 중심으로 결속하여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다양한 마을 의제 발굴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숙의성 확보(중기)

- (필요성) 세종시는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설치해 주민자치회를 위한 안정 적 재원을 마련한 바 있음. 그리고 자치분권특별회계는 마을계획사업, 주민제안사업, 자치역량강화사업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으나 주민제안사 업의 경우 숙의적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주민제안사업의 경우 마을계획사업과는 달리 주민주도적인 계획수립 과정이 미흡함. 따라서 마을계획사업과 마찬가지로 마을의 기초조사, 사업수요 등을 검토하여 숙의적으로 주민제안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특히, 농촌지역의 주민제안사업의 경우 마을회를 거쳐 사업이 올라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이장단의 역할이 매우 크며, 이 과정에서

주민자치회의 결정권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마을계획사업과 주민제안사업 비교]

구분	마을계획사업	주민제안사업	
		읍면	동
개념	주민이 마을의 발전을 위해 직접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 가능하도록 구체화한 사업계획	마을회, 지역단체, 지역주민 등이 제안하고 주민 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마을 자치사업	
주체	주민자치회, 마을계획단	마을회, 주민 등	이장, 주민 등
제안방법	주민자치회 → 주민자치회 → 주민 총회(마을계획단) (예산협의회)	마을회·주민 → 주민자치회 → 주민 총회(마을계획단) (예산협의회)	
시의회제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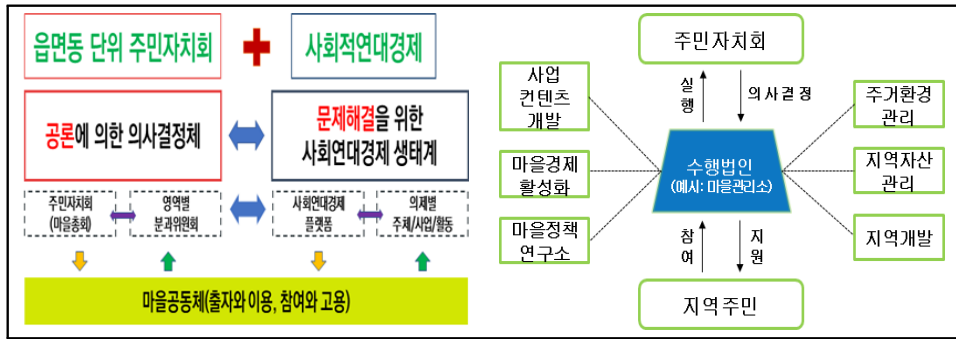
자료: 김홍주(2020:114)

- (추진방안) 기존 마을회(이장, 주민)를 중심으로 의제를 제안하던 방식에서 숙의성을 높여서 이장중심의 의제설정이 아닌 마을전체의 공론화를 통해 사업이 결정되어 주민자치회에서 수렴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주민제안사업 및 마을계획사업에서 이장단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예산협의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공감대 및 이해도 증진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감대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자생력확보를 위한 연계실행법인 검토(중기)

- (필요성)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풀뿌리 주민자치의 제도적 자산으로 주민자치회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노력과 역량강화와 함께 정부 차원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를 통한 행정사무의 위·수탁도 가능할 것임. 정부보조금에 의해서만 주민자치회가 운영된다면 그 지속성에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 독립성 차원의 검토가 필요함에도 직접적 위탁방식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지적도 제기됨

- (한계점) 현 주민자치회는 법인격이 아니기에 위탁사업을 위한 법적 검토 필요성, 공적인 지역사업에 참여하고 실행하는데 구조적인 한계가 지적됨. 다시말해, 공공사업 참여에 있어서, 투·융자 등 제한요건이 많을 뿐 아니라 법적 책임과 함께 세법상 불리한 점도 지적됨
- (추진방안)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옹호자 역할 그리고 공동체를 촉진하는 기능을 공공서비스 전달기능과 분리해 주민자치회의 성숙단계에 따라 서로 다른기능을 고려해 차별화된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지역주민의 옹호자 역할 및 지역공동체를 촉진하는 차원에서는 세종시 차원의 특별회계(혹은 기금 및 보조금 지급방식도 가능)를 통한 운용을 통해 유연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공공서비스 전달의 경우 주민자치회의 성숙정도에 따라 사회적 경제조직 방식의 위탁사업도 가능할 것임. 이를 통해 주민자치회는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정적인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음
- 주민자치회의 주요한 기능은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옹호자역할 혹은 공동체를 형성 촉진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수 있을 것임.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느끼는 지역문제에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의사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임(김홍주, 2022)
-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회는 공론장을 운영하는 주체, 그리고 읍면동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안정적인 조직운영(인건비 및 운영비),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 산하에 연계실행법인(사회적 경제조직 설립)을 둘 수 있을 것임
 - 주민자치회 산하 사회경제적 조직은 일반기업과 비교해 공공성, 공동체성, 지역의 대표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지역사회에 환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임. 주요 사업으로는 마을카페, 특산물판매 등 소규모 마을사업에서, 지역재생, 공공자산활용, 지역금융 등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 차원에서 포괄적인 범위의 지역사업에 중점을 둔 조직으로 설계될 수 있을 것임(김홍주, 2022)



자료: 유창복(2020:428); 박현근·김흥주·이현국(2021:184) 재구성

[마을정부의 기초, 의사결정체와 사회적연대 경제, 수행법인 개념도]

■ 마을단위의 속의적 공론장 운영(중·장기)

- (필요성) ‘공공성’의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마을은 매우 중요한 자산임은 자명한 사실임. 이러한 공공성 회복은 지역현안에 대한 관심과 의제화,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생성된다고 할 것임.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소통과 토론에 기반한 속의적 공론장의 운용이라고 판단됨
 - 즉, 읍면동 차원에서 공론화를 경험하면서 주민들의 학습과 역량을 발전시켜 문제해결의 방법을 찾아가는 수단으로 주민들의 합의된 집단적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합의된 결과가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그리고 이를 위한 주민자치전담인력 보완 혹은 기구의 설립이 필요함
- (추진방안)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는 대표성 있는 다수의 주민을 선정하고, 충분한 토의 기회 및 정보를 제공하며, 정보에 근거한 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함(최인수 외, 2022). 그리고 주민자치회 지원인력 등으로 제도화하거나 개별 사업으로 두는 방안, 행정인력으로 두는 방안 검토
 - 공론화 의제설정 → 공론화위원회 소집 및 방식결정 → 1차 여론조사 → 시민참여단 전문가 강의, 상호토론 → 2차 여론조사 → 공론조사 결과분석 및 작성공표

○ (추진계획)

- 세종시에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검토, 세종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
- 공론화 과정 전체를 개관하고 참고할 수 있는 표준매뉴얼 마련
- 주민자치회 전담인력 개편방안 검토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근거한 시민참여기본계획 포함 시킬 수 있을 것임

■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재도입 구상(중·장기)

- (필요성)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주권의 관점에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의 제도화와 병행하여 읍면동 관리자(manager)라 할 수 있는 읍면동장을 현장의 주민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민추천제를 도입한 것은 전환의 시대에 현장 중심 행정의 강화 및 민주적인 거버넌스 제도 설계의 관점에서 매우 높은 제도적 가치를 가짐(김홍주·김강현, 2022)
- 무엇보다 자치단체장이 읍면동장 임면권에 대한 권한을 일부 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집권적인 대의민주주의와 관료제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의미가 있고, 지역공동체 기반의 민관 협치 강화 또는 지역 밀착형 행정서비스 혁신 측면에서 앞으로도 주민추천제의 필요성과 평가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가 단순히 민주주의 관점을 넘어 읍면동 단위의 서비스 전달, 통치방식, 문제해결 방식에 있어서 상당히 소중한 제도로 인식될 가능성이 큼
- (한계점) 기존 시행되었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공정성과 투명성(혈연, 지연, 특정단체 중심)의 문제, 읍면동 행정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 등의 실제적 효능감 부족 및 제도시행에 따른 큰 부담감 등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즉, 공무원 차원에서 감당해야 할 업무부담에 비해, 주민영역에서 그 효능감도 크지 않았다는데 한계점이 작용됨

- (추진방안) 세종시 주민으로부터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 읍면동장 및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주민주도성을 높여 행정차원에서 주민으로부터 신뢰회복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그리고 이를 통해 읍면동장 시민추천제가 가지는 제도적 당위성과 그 중요성을 인식해 본 제도의 재도입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임

■ 근린지방정부의 실험: 읍면동 지방자치단체화

- (필요성) 우리나라는 특·광역시도, 시군구 등 2계층 지방자치단체 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방행정체제는 대의민주제도를 중심으로 지방민주주의가 작동했음. 그동안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민주주의 실현에 한계점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마을,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주목함
 - 주민의 대표조직으로 주민자치회의 권한 강화와 이에 상응해 민주적인 구성과 운영의 문화를 확립해야 할 것임.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의지를 강화하고 주민의 지방정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 민주적 협동 활동의 경험과 제도화는 근린정부로의 전환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임(유창복, 2021)
- (추진방안) 본격적으로 근린자치정부의 출범과 함께 읍면동을 중심으로 주민자치를 선도하고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임. 전국적 차원에서 일괄도입은 어려울 수 있으니 근린지방정부에 대한 실험과 확산 방식을 제안함(유창복, 2021)
 - 단기적으로는 읍면(동)의 기능을 최소화하는 형태에서 자치단체를 고민하게 하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현 책임읍동인 조치원읍을 대상으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것임
 - 궁극적으로 무엇보다 다양한 형태의 시범적인 근린지방정부의 구성이 가능할 것이며 그 예로 기관대립형, 기관통합형, 집행위원회형 등이 제안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일반행정, 사회복지, 안전, 산업개발 등 제한적 기능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능의 이양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러한 모형은 지역의 현실에 적합한 방식을 주민이 선택하도록 하며 향후 한계점이 나타날 시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할 것임. 그리고 읍면동의 준지방자치단체를 중·장기 방향으로 가져가되, 지역적 여건의 성숙도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 혹은 현재 입법 발의된 기관구성 다양화 관련 특별법(2022.10.4., 김영배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된다면, 이에 근거해 읍면동을 지방자치단체화 하는 방향을 제안할 수 있을 것임. 그리고 향후 기후위기 시기를 맞아 근린정부 단위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지역주민과 협동해서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차 례

1장 서론	3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5
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6
1. 연구의 방법	6
2. 주요내용	6
3.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7
2장 이론적 검토	13
1절 풀뿌리 주민자치의 이해	13
1. 대의민주제 민주성의 결함과 대안적 민주주의	13
2. 풀뿌리 민주주의 관점에서 주민자치	20
3. 풀뿌리 주민자치 제도화를 위한 이론과 생태계 모형	22
2절 주민자치회 도입배경 및 쟁점	25
1. 주민자치회 도입과정	25
2. 주민자치회 제도 및 모형 비교	27
3. 현 주민자치회 쟁점	30
3장 세종시 읍면동 기능 및 주민자치회 운영현황 분석	37
1절 세종시의 읍면동 기능 분석	37
1. 읍면동의 법적 지위 및 기능	37
2. 세종시의 읍면동 기능 분석	43

2절 세종시 주민자치회 구성 및 사업현황	52
1. 설치 조례	52
2. 세종시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분과위원회 현황	57
3. 세종시의 마을계획사업 및 제안사업 현황	60
4. 세종시의 주민총회 현황 분석	68
4장 세종시 주민자치회 인식 및 FGI 분석	87
1절 주민자치회 위원 및 공무원 인식 분석	87
1. 조사대상 및 주요내용	87
2. 기초통계분석	91
3. 집단별 인식차이 분석(T-Test, ANOVA)	93
4.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	110
2절 주민자치회 위원 및 이해관계자 FGI 분석결과	138
1. 주민자치회 위원 및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대상 FGI	138
2. 공무원 대상 개방형 설문	164
3절 분석결과 종합	177
1. 주민자치회 위원 및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종합	177
2. 주민자치회 위원 및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대상 FGI 결과 종합	191
3. 공무원 대상 개방형 설문 분석결과 종합	197
5장 결론 및 정책제언	205
1절 연구결과의 요약	205
2절 정책제언	208
참고문헌	235

표 차례

[표 2-1] 대안적 민주주의 유형과 특징	15
[표 2-2] 마을민주주의 유형	19
[표 2-3] 주민자치회 제도화의 흐름	26
[표 2-4]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제도 비교(세종시 차원)	28
[표 2-5] 주민자치회 모형 비교	29
[표 2-6] 현 주민자치회의 쟁점 분석	30
[표 3-1] 읍면동의 법적지위	37
[표 3-2] 읍면동 기능개편 과정	38
[표 3-3] 읍면동 기능 일반 현황	40
[표 3-4] 세종시 책임읍동 조직 및 인구, 면적 현황	44
[표 3-5] 세종시 책임읍동 위임 사무(조치원읍)	46
[표 3-6] 세종시 책임읍동 위임 사무(아름동)	47
[표 3-7] 세종시 면동의 조직 및 인구, 면적 현황	51
[표 3-8] 세종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 주요내용	52
[표 3-9]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현황('22.7.1. 기준)	58
[표 3-10] '22년 시민주권대학 주민자치회 신규과정('22.7.1. 기준)	59
[표 3-11] '22년 세종시 읍면동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 구성현황 ('22.7.1. 기준)	59
[표 3-12] '22년 세종시 마을계획사업	61
[표 3-13] '22년 세종시 주민제안사업	64
[표 3-14] '22년 세종시 주민자치프로그램 현황	66
[표 3-15] '22년 주민총회 투표기간 및 개표행사	71
[표 3-16] '22년 주민총회 참여현황	72
[표 3-17] '22년 주민총회 투표운영방식	72
[표 3-18] '22년 주민총회 결과 주요지표	73

[표 3-19] '22년 주민총회 참여 성별분석	75
[표 3-20] '22년 주민총회 참여 연령별 분석	76
[표 3-21] '22년 주민총회 결과 마을계획 및 주민제안 1순위 사업	77
[표 3-22] '23년 세종시 마을계획사업	78
[표 3-23] '23년 세종시 주민제안사업	80
[표 4-1] 설문조사 개요(안)	87
[표 4-2] 인구·사회학적 특성(전체)	89
[표 4-3] 인구·사회학적 특성(주민자치회 vs 공무원)	90
[표 4-4] 기초통계분석	92
[표 4-5] 신분에 따른 인식 차이분석/주민자치회기능(T-Test)	93
[표 4-6] 신분에 따른 인식 차이분석/주민총회기능(T-Test)	94
[표 4-7] 신분에 따른 인식 차이분석/주민자치회 필요 기능(T-Test)	95
[표 4-8] 신분에 따른 인식 차이분석/운영세칙(T-Test)	96
[표 4-9] 읍면동 지역에 따른 인식 차이분석/주민자치회기능(ANOVA)	96
[표 4-10] 읍면동 지역에 따른 인식 차이분석/주민총회기능(ANOVA)	97
[표 4-11] 읍면동 지역에 따른 인식 차이분석/주민자치회 필요기능(ANOVA) ..	99
[표 4-12] 읍면동 지역에 따른 인식 차이분석/운영세칙(ANOVA)	101
[표 4-13] 읍면동 지역에 따른 인식 차이분석/주민자치회기능(ANOVA) ..	102
[표 4-14] 읍면동 지역에 따른 인식 차이분석/주민총회기능(ANOVA)	103
[표 4-15] 읍면동 지역에 따른 인식 차이분석/주민자치회 필요기능(ANOVA) ..	104
[표 4-16] 읍면동 지역에 따른 인식 차이분석/운영세칙(ANOVA)	106
[표 4-17] 읍면·동에 따른 인식 차이분석/주민자치회기능(T-Test)	106
[표 4-18] 읍면·동에 따른 인식 차이분석/주민총회기능(T-Test)	107
[표 4-19] 읍면·동에 따른 인식 차이분석/주민자치회필요기능(T-Test) ..	108
[표 4-20] 읍면·동에 따른 인식 차이분석/운영세칙(T-Test)	109
[표 4-21] 주민자치회 내실화를 위한 당면한 문제(%)	110
[표 4-22] 주민자치회 기능 중 우선순위(%)	111
[표 4-23] 적정한 민간위탁 사무(%)	112
[표 4-24] 운영위원회 개편 여부	112
[표 4-25] 운영위원회 개편 찬성 시 대안	113

[표 4-26]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	113
[표 4-27] 주민자치회 적정임기(%)	114
[표 4-28] 필요한 분과위원회(%)	114
[표 4-29] 읍면동 기능(강화)(%)	115
[표 4-30] 발전방안(%)	116
[표 4-31] 운영위선정방식 교차분석(명, %)	117
[표 4-32] 운영위원회 개편 찬성 시 대안에 대한 교차분석(명, %)	118
[표 4-33]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 교차분석(명, %)	118
[표 4-34] 운영위선정방식 교차분석(명, %)	119
[표 4-35] 운영위원회 개편 찬성 시 대안에 대한 교차분석(명, %)	120
[표 4-36]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 교차분석(명, %)	120
[표 4-37] 주민자치회 내실화를 위한 당면한 문제(%)	121
[표 4-38] 주민자치회 기능 중 우선순위(%)	122
[표 4-39] 적정한 민간위탁사무(%)	122
[표 4-40] 운영위원회 개편 여부	123
[표 4-41] 운영위원회 개편 찬성 시 대안	123
[표 4-4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	124
[표 4-43] 주민자치회 적정임기(%)	124
[표 4-44] 필요한 분과위원회(%)	125
[표 4-45] 읍면동 기능강화 사무(%)	126
[표 4-46] 발전방안(%)	127
[표 4-47] 운영위선정방식 교차분석(명, %)	128
[표 4-48] 운영위원회 개편 찬성 시 대안에 대한 교차분석(명, %)	128
[표 4-49]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 교차분석(명, %)	129
[표 4-50] 주민자치회 내실화를 위한 당면한 문제(%)	130
[표 4-51] 주민자치회 기능 중 우선순위(%)	131
[표 4-52] 적정한 민관위탁 사무(%)	131
[표 4-53] 운영위원회 개편 여부	132
[표 4-54] 운영위원회 개편 찬성 시 대안	132
[표 4-55]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	132

[표 4-56] 주민자치회 적정임기(%)	133
[표 4-57] 필요한 분과위원회(%)	134
[표 4-58] 읍면동 기능강화 사무(%)	134
[표 4-59] 발전방안(%)	135
[표 4-60] 운영위선정방식 교차분석(명, %)	136
[표 4-61] 운영위원회 개편 찬성 시 대안에 대한 교차분석(명, %)	136
[표 4-6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 교차분석(명, %)	137
[표 4-63] 그룹별 FGI 개요	138
[표 4-64] 개방형 설문 개요	164
[표 4-65] 공무원 대상 개방형 설문 분석결과	164
[표 4-66] 주민자치회 내실화를 위한 당면한 문제(종합)	180
[표 4-67] 주민자치회 기능 우선순위(종합)	181
[표 4-68] 적정한 민간위탁 사무(종합)	183
[표 4-69] 주민자치회 적정임기(종합)	184
[표 4-70] 필요한 분과위원회(종합)	185
[표 4-71] 읍면동 기능강화(종합)	187
[표 4-72] 발전방안(종합)	188
[표 4-73] 운영위원회 개편(종합)	189
[표 4-74] 운영위원회 개편 찬성시 대안 교차분석(종합)	189
[표 4-75]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 교차분석	190
[표 4-76] 주민자치회 위원 및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분석결과(종합)	193
[표 4-77] 공무원 대상 개방형 설문 분석결과(종합)	199
[표 5-1] 분석결과 종합	206
[표 5-2] 읍면동 기능, 협의, 위탁, 주민자치사무 비교	219
[표 5-3] 타 지자체 간사 수당 지급 현황	225
[표 5-4] 사무 인력 운영 현황	226
[표 5-5]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유형별 장단점	227
[표 5-6] 마을계획사업과 주민제안사업 비교	228

그림 차례

[그림 2-1] 초대된 공간과 민초의 공간	22
[그림 2-2]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지역공동체 주축조직의 역할	23
[그림 2-3] 풀뿌리 주민자치 제도화를 위한 생태계 모형	24
[그림 2-4] 주민자치회 모형 검토	29
[그림 3-1] 지방행정계층 실태	43
[그림 3-2] 세종특별자치시의 기본현황	44
[그림 3-3] 마을계획사업 증가 추이	61
[그림 3-4] '22년 주민총회 현황	75
[그림 5-1] 마을공동체 플랫폼 조직으로서 주민자치회 모형	208
[그림 5-2] 지역특성에 따른 주민자치 모형(읍)	210
[그림 5-3] 읍의 네트워크 분과 구성 모형	211
[그림 5-4] 주민자치회, 도시재생 연계형	211
[그림 5-5] 지역특성에 따른 주민자치 모형(면)	214
[그림 5-6] 면의 네트워크 분과 구성 모형	214
[그림 5-7] 지역특성에 따른 주민자치 모형(동)	217
[그림 5-8] 동의 네트워크 분과 구성 모형	218
[그림 5-9] 마을정부의 기초, 의사결정체와 사회연대 경제, 수행법인 개념도 ...	230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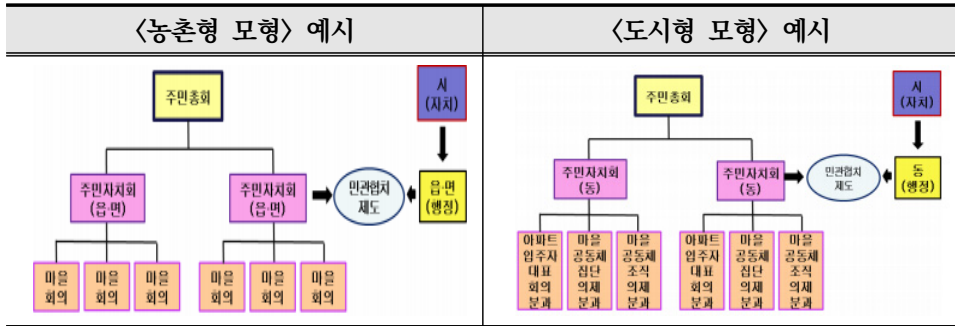
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012년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를 ‘실질적 주민자치 및 민관협치 기구’로 제안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추진하였음
- 제도적 변화를 거쳐 풀뿌리 주민자치의 주요 주체로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어왔음. 세종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주민자치회를 지역공동체추진조직으로서 그 위상과 역할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음
 - 특히, 5대 12대 과제를 제안해 풀뿌리 주민자치 생태계 모형을 제도화함. 세종시의 경우 22개 읍면동 모두 주민자치회 전환을 완료함
 - 현재 약 3,500개(2021년 12월 기준 3,495개) 읍면동 중 2021년 12월 기준 1,013개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함
- 세종시는 단층제적 성격(읍면동의 중요성이 큼)을 가진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가진 도시로서 주민이 마을에서 주도성을 가지고 지역정책을 직접 만들고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차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에 대한 제도화를 고민해야 함
- 주민자치회의 확대 운영과 향후 읍면동 환경변화에 대비해 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 조치원읍을 중심으로 하는 구도심, 그리고 농촌지역인 면지역 특성에 맞는 적합한 주민자치회 운영 모형을 개발하고 그에 상응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시됨
 - 즉, 세종시에 적합한 지역적 특성(읍면동)을 반영한 주민자치회 모형을 구체화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시됨. 이는

읍면동별 특성에 따라 이를 둘러싼 환경과 제도,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가지는 기능과 역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에 기인함



- 위의 그림은 김홍주(2018; 2021)이 제안한 초기 검토 모형임. 향후 그 기능과 재원, 주민자치회와 연관되는 주요 공동체조직의 특성(마을공동체 조직 및 집단,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 등)을 검토해야 하는 과정이 요구됨

2. 연구의 목적

- 첫째, 주민자치회의 전면 확대에 의해 신도시, 구도심, 농촌지역의 특성에 따른 주민자치회 운영 모형을 개발(주요사업, 기능, 재정지원 등) 하고,
 - 읍면동 행정의 사무 및 이관되어야 할 사무분석,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마을공동체와 연계, 각 공동체 관련 분과위 구성
 - 협의사무 검토, 기존 주민제안사업, 마을계획사업 구체화, 위탁가능업무 검토, 연계법인 설립시 수행가능한 사업영역 검토
- 둘째, 이를 통해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풀뿌리 주민자치의 효능감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함임

3. 연구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 읍면동 기능강화와 함께 세종시 주민자치회의 지역별 특성(공동주택 등 도시형, 읍·면 원도심 및 농촌형 고려)을 반영한 모형을 완성해,
- 향후 도시 및 농촌의 특성에 맞는 세종형 주민자치회를 발전시키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 연구의 방법

- 이론적 배경 등 문헌조사: 풀뿌리 주민자치 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풀뿌리 주민자치, 사회적자본 등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한 문헌조사 실시
- 세종시 현황 검토: 세종시 읍면동 기능분석, 주민자치회 및 주민총회 현황 분석
- 세종시 지역별 주민자치회 특성 및 수요조사(통계분석, 개방형설문 및 FGI)
 - 기초통계분석, 빈도분석, T-Test, 분산분석(ANOVA), 교차분석 실시
 - 주민자치회, 읍면동 공무원 대상 FGI 및 개방형 설문 실시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최종 모형도출

2. 주요내용

- 본 보고서는 1장 서론, 2장 이론적 검토, 3장 세종시 읍면동 기능 및 주민자치회 운영현황 분석, 4장 세종시 주민자치회 인식 및 FGI 분석, 5장 결론 및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구성함
- 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을 포함하여 서술함
- 2장은 이론적 검토를 중심으로 서술함
 - 풀뿌리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 주민자치회 도입배경 및 쟁점을 중심으로 서술함
- 3장은 세종시 읍면동 기능 및 주민자치회 운영현황을 중심으로 서술함
 - 세종시 읍면동의 기능분석(법적 지위 및 기능), 세종시 주민자치회 구성 및 사업현황, 주민총회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서술함

- 4장은 세종시 주민자치회 인식 및 FGI 분석을 중심으로 서술함
 - 주민자치회 인식분석, 주민자치회 위원 및 공무원 대상 FGI결과, 그리고 분석결과 종합을 중심으로 서술함
- 5장은 결론 및 정책제언으로 서술함

3.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 아직까지 도농의 특성(신도심, 구도심, 농촌지역)을 반영한 주민자치 모형과 그 운영방식을 구체화한 연구는 거의 없음
 - 이용환 외(2019)의 연구에서 경기도형 주민자치회 구축방안 연구를 통해 지역특성과 주거특성에 따른 분류를 하여 제안함. 먼저 지역특성에 따른 모형은 농어촌형, 도시형, 도농복합형, 그리고 주거특성에 따른 모형은 APT형, 주택형, 다가구·연립주택·다세대형, 혼합형 주민자치회 운영모형을 제안함
- 풀뿌리 주민자치 제도화 및 모형을 설계한 연구는 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는 주로 심익섭(2012), 김찬동(2014a; 2014b), 한상우(2014), 최근열(2014), 이병렬·이종수(2015), 김필두·류영아(2015), 곽현근(2015), 김홍주·곽현근·임승빈(2018), 김홍주(2019), 곽현근·김홍주·이현국(2021), 이기우·조성호(2021), 김찬동(2021), 김홍주·박상철(2022), 최인수 외(2022), 전대욱 외(2022)의 연구를 중심으로 논의된 바 있음
 - 심익섭(2012)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세가지 모형(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을 비교·평가, 김찬동(2014a)은 주민자치제도 수입의 오류 지적과 주민자치 제도설계 논의, 그리고 김찬동(2014b)은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대한 평가와 통합형 중심의 개혁 필요성을 제시함
 - 한상우(2014)는 주민자치회의 시범사업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주민자치회의 정착과제와 방향 제시, 최근열(2015)은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주민자치회 발전과제를 제시함(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 등을 중심으로 구성 및 운영방식)

- 김필두·류영아(2015)는 성공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정착하기 위해 지역 사회의 협력에 기반한 대표성을 강조, 이병렬·이종수(2015)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성과와 발전과제를 중심으로 연구함
- 국내에서 처음으로 풀뿌리 주민자치의 제도화 및 생태계 모형은 곽현근(2015)에 의하여 제안됨. 곽현근(2015)은 기존 혼란스러운 개념으로 남아 있는 주민자치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개념화에 기초해 주민자치 모형을 분석적 차원에서 제시함. 이후 곽현근(2015)이 고안한 풀뿌리 주민자치 생태계 모형을 토대로 김홍주·곽현근·임승빈(2018)은 세종시의 풀뿌리 주민자치 제도화 생태계 모형을 구상함
- 김홍주(2019)는 세종시의 주민자치회 제도를 설계한 이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연구함. 곽현근·김홍주·이현국(2021)은 현재 협력모형의 틀 안에서 풀뿌리 주민자치가 발전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함. 이기우·조성호(2021)는 풀뿌리 자치의 실시단위를 읍·면으로 하되, 읍·면을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로 인정해야 함을 논의함. 그리고 김찬동(2021)은 읍면동 계층에 대한 현재의 법제도적 위상검토와 주민자치회를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 관점에서 그 전개방향을 전략적으로 수행함
- 김홍주·박상철(2022)은 최근 읍·면 단위를 지방자치단체화 하자는 논의들도 있으나 하부행정기관으로서 읍면동은 그대로 유지하되, 준지방자치단체로서의 읍면동을 강조(읍면동의 중심성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풀뿌리 주민자치가 나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함
- 최인수 외(2022)는 지역문제를 민관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과 책임을 읍면동(읍면동의 기능강화)에 부여하는 대안 마련하고자 하였음. 특히, 읍면동을 행정민원해소의 공간에서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활동의 중심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주권의 주체인 주민과 행정의 주체인 읍면동 행정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혁신적인 지역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구심체로 읍면동이 기능과 체계를 재구성하는데 중점을 둠

- 전대욱 외(2022)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다양한 쟁점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공공성과 자치역량이라는 측면에서 주민자치회 설계방향의 이론적 체계를 확립해 향후 주민자치회가 나가야 할 방향성(통합형 및 주민조직형)을 재설계하였음
-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한 제도화와 제도를 통해 각기 주체 간의 이해 관계를 중심으로 한 모형을 설정한 연구가 최근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읍면동의 기능재 설계와 병행해 도시 및 농촌단위에서 적용가능한 주민자치회 모형과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가 구체화되지는 못했음
- 따라서 읍면동 행정과 주민자치회 간의 관계를 세종시의 마을별 특성에 맞게 고려해 어떤 사무를 중심으로 행정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행정과 협력적 파트너인 주민자치회가 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지역적 특성에 맞게 어느정도 설정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이를 구체화해 나가고자함

이론적 검토

1절 풀뿌리 주민자치의 이해

2절 주민자치회 도입배경 및 쟁점

2장

2장 이론적 검토

1절 풀뿌리 주민자치의 이해¹⁾

1. 대의민주제 민주성의 결함과 대안적 민주주의

1) 대의민주주의의 민주성 결함

- 현재 지방민주주의의 지배적인 제도 형태인 대의민주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의민주제가 가지는 ‘민주성의 결함(democratic deficit)’의 담론을 통해 부각되어 왔음.²⁾
- 민주성의 결함은 대의과정 전반에 나타나게 되는데(Ackerman, 2004; 광현근, 2015에서 재인용), (1) 선거는 오직 선출직 공직자에 정치적 책무성을 부과한 반면 정책결정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반관료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데 있음. (2) 시민은 다양한 선호와 평가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 1표를 가지고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서 정치인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불가하다는데 있음. (3) 낮아지는 투표율에 기인, 공익보다 정치성향이 높은 특수한 이익집단을 위한 사익에 부합할 정책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

1) 주민자치의 개념적 이해를 위해서는 광현근(2015; 2017; 2018a; 2018b; 2019), 김홍주·광현근·임승빈(2018), 광현근·김홍주·이현국(2022)의 연구를 중심으로 발췌하였음

2) ‘대의제에 기초한 지방민주주의가 주민주권에 부합하는 성과를 지방자치에 가져다 주었는지?’, 혹은 ‘지방민주주의를 위한 유일한 제도적 수단인가?’라는 질문과 연관이 있음.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이 선출한 소수의 전문 정치인에게 정치적인 의사결정권을 위임하는 것을 의미하며 시민의 선호와 관심사를 고려해 정당 및 정당 후보사이의 경쟁이 핵심기제임. 따라서 보편적인 평등 원칙에서 1인 1표로 구체화하며 선출된 정치인에게 복잡한 정치적 결정권을 위임하게 되며 이러한 정치적인 분업의 개념이 대의정치체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데, 그 한계는 다음 선거에 의해 정책적인 실패를 경험하거나 부족한 정치인을 교체할 가진다는 점에서 시민의 실질적인 통제기제가 미약하다는데 있음. 즉, 선거에 의한 정치적 책무성을 묻는 기제는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진 쟁점사항에서만 작동하게 되며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커짐에 따라 더욱 훼손되었음(광현근·김홍주·이현국, 2021)

아짐. (4) 공직자와 시민 간의 정보비대칭과 시민사회의 통제기제가 부족한 상황에서 선거만으로 정치인과 관료를 통제하는데 한계임(곽현근·김홍주·이현국, 2021)

- 이렇듯 대의민주제에서 나타나는 민주성 결함은 일반국민의 정치인과 관료에 대한 통제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정치인과 행정엘리트들은 주인-대리인 관계를 망각하고 자신들만의 게임에만 몰두하게 됨에 따라 시민이 주인으로서 주체성과 책임의식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짐. 즉,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에 기인해 투표 등 전통적 정치참여율이 낮아 축소된 민주주의(diminished democracy) 현상과 함께 그 정당성의 위기까지 초래하게 된다는 점임(Skocpol, 2003; 곽현근·김홍주·이현국, 2021)

2) 대안적 민주주의 유형과 특징

- 대의민주제가 가진 민주성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의민주제의 틀에서 벗어나 국민 혹은 주민의 주권을 보다 강하게 행사할 수 있는 대안적 민주주의의 담론이 요구됨.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직접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³⁾, 결사체민주주의, 고객민주주의 등에 해당될 것임
 - 새로운 민주주의 유형의 공통점은 정치와 행정과정에서 시민의 투표 행위 이상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며 그러한 상황에서 각기 민주적 통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를 찾는데 있음.⁴⁾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정당성은 투입, 과정, 산출측면에서 분류(Bekkers and Edwards, 2007) 되어짐

3) 숙의민주주의는 '토론에 의한 정부'(government by discussion)로 상징되며 개개인이 가지는 선호(preference)를 이미 주어진 고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서 시민들의 선호를 단순히 합산하는 것이 공공성(publicness)이라는 생각을 거부함. 그러나 대화와 토론과 학습을 통해 '정제된 선호'(refined preferences) 또는 '계몽된 선호'(enlightened preferences)가 형성될 수 있음을 인정함(곽현근·김홍주·이현국, 2021)

4) 정치적 정당성(political legitimacy) 정치적 결정이 사회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인식과 관련한 동의 혹은 인정을 획득하는 과정을 의미함. 즉, 민주적 정부에 의해 행사되는 권위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타당한 근거를 가진 것으로 인식되느냐의 문제임(Bekkers and Edwards, 2007; 곽현근·김홍주·이현국, 2021)

- ① 투입정당성은 ‘국민에 의한 정부’로 정치적 결정과정에서 시민의 선호와 연계되는 절차와 평등한 기회 강조함(공정성). 즉, 정치적 평등, 시민의 적극성, 주민주권의 가치를 지향하고 의제설정의 개방성을 포함함
 - ② 과정정당성은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규칙과 절차를 중시하며 다수결 혹은 숙의와 같은 집합적인 의사결정 방식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의 깊이와 질을 중시함
 - ③ 산출정당성은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 중점을 둠. 즉, 국민의 바람에 대한 대응,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정책결정과 성과에 대한 책무성 같은 가치를 강조함. 따라서 산출정당성은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 보다 높은 기술과 전문성을 가진 행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역량’(competence)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투입정당성과의 차이가 있음 (Boedeltje and Cornips, 2004; 곽현근·김홍주·이현국, 2021)
- 정치적 정당성의 투입, 과정, 산출 측면에서 대표적인 대안적 민주주의는 전술한 바와 같으며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 [표 2-1]과 같이 제시됨

[표 2-1] 대안적 민주주의 유형과 특징

구분		대의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	결사체 민주주의	고객 민주주의
투입	참여기회	투표의 평등성, 정치적 분업	투표의 평등성	적극적 시민성	적극적 시민성	약한 시민성
	대표성의 질	사회적 거리	-	불분명함	불분명함	불분명함
	의제 개방성	문제가 됨	잠재적으로 강함	불분명함	잠재적으로 강함	약함/ 불분명함
과정	의사결정 방법	합산적/ 통합적	합산적	통합적	합산적/ 통합적	합산적
	참여의 질	제한적임	약함	잠재적으로 높음	잠재적으로 높음	약함
	견제와 균형	잠재적으로 강함	제한됨	잠재적으로 강함	잠재적으로 강함	제한됨

구분		대의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	결사체 민주주의	고객 민주주의
산출	성과	문제가 됨	제한됨	문제가 됨	잠재적으로 강함	제한됨/강함
	책임성	두드러지는 이슈에 대해서 강함	제한됨	잠재적으로 강함	잠재적으로 강함	제한됨/강함
예시		의회제도	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투표	시민 배심원제, 원탁회의, 공론적 여론조사	주민 자치회	읍면동장 주민 추천제

자료: Chanan(1996:26) 재구성; 광현근(2018b:7)

3) 지방민주주의의 모듈화와 마을민주주의의 유형

- 시민참여가 의미 있는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사결정권을 시민에게 넘기는 차원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시민을 권력과 자원으로 연결하기 위한 과정과 틀이 필요함. 따라서 의사결정에서 통제력을 이양한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설계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종류, 해결해야 할 문제, 추구하는 가치 등이 충분히 이해되어야 하며, 각기 대립되는 요소들 사이의 균형이 충분히 고려된 제도화가 중요함⁵⁾
- 앞에서 제시한 대안적 민주주의 유형들은 상호 배타적인게 아니라 보완적인 측면이 있기에 대의민주제를 보완하기 위해 동시에 제도화가 가능함⁶⁾

-
- 5) 민주적 혁신의 유형의 논의는 ‘시민통제’(citizen control)에 초점을 두고 공공의사결정에서 시민의 권력 확보만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1차원적 접근의 한계를 보여줌. 예를 들면, 시민참여론의 고전적 성격으로 간주되는 Arnstein(1969)의 사다리 모형은 최고 높은 수준에서 실질적인 참여 단계로 시민통제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직접민주제가 가장 강력한 제도로서 간주 될 수 있다는 점임. 그러나 과정 및 산출절당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시민통제력의 강화가 항상 바람직한 민주적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광현근·김홍주·이현국, 2021)
 - 6)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각각의 제도는 적절한 인터페이스의 조정을 통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특히,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한 결사체민주주의 관점에서의 제도화를 살펴볼 때, 마을의 의제 선정과 주민총회는 숙의민주제와 직접민주제의 결합, 주민발의제와 같은 제도가 주민자치회와 연계될 때 직접민주제적 성격이 강화

- 코로나 19사태와 같은 사회적 격변의 시기에 집합적 동력에 기초한 탄탄한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역량 구축의 중요성이 제시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결사체 민주주의 혹은 풀뿌리 민주주의임
 - 현재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제도화는 탄탄한 거버넌스 역량의 기초를 다지는 노력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많은 선진국에서 그러한 방법론으로 ‘공동생산’(co-production) 방식에 주목하고 그 담론과 제도화를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임
- 읍면동 행정은 현장 행정을 책임지는 최하위의 행정구역으로 공동생산의 관점에서 행정조직이 위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적 자산임. 왜냐하면 최근 지역공동체와의 관계형성을 통한 공동생산의 패러다임 변화와 공동생산의 제도적인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읍면동의 기능확대 및 강화가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임
 - 그러나 읍면동의 기능은 최근까지 행정효율성 및 서비스 생산비용 절감차원에서 그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1차적 원리가 지배적인 담론으로 자리잡은 바 있음
- 지방민주주의의 유형과 민주적 혁신의 제도설계 차원의 연계는 읍면동에 구축될 공동생산의 모형을 진단하기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일 것임. 읍면동을 중심으로 주민자치회를 제도화하는 것은 결사체민주주의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며 공동통치 파트너십 혹은 민주적 혁신의 유형 중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임(곽현근·김홍주·이현국, 2021)
 - Fung(2006)은 제도설계의 ‘권력과 영향력’ 차원에서 살펴볼 때, 공동생산의 모형은 ‘역량강화된 참여’(empowered participation) 중 ‘공동통치 파트너십’(co-governing partnership)으로 분류할 수 있음을 지적함. 그리고 Elstub et al.(2017)의 5가지 민주적 혁신의 유형 중에서 주민자치회의 제도화와 접목해 읍면동에 뿌리내리려는 공동생산의 모형은 ‘협력적 거버넌스’ 유형에 속한다고 제시함

될 가능성이 높아짐.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같은 참여민주주의의 역시 독립적인 모델로 진화가 가능하겠지만 마을자치와 연계를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의 토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임

- 특히, Lowndes and Sullivan(2008)은 ‘동네거버넌스’(neighbourhood governance)를 유형화해 제시하였음. 이를 주민자치회의 제도화에 기초한 공동생산의 제도화 방향과 연계해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임
 - Lowndes and Sullivan(2008)은 동네거버넌스 유형을 동네역량강화(neighbourhood empowerment), 동네정부(neighbourhood government), 동네파트너십(neighbourhood partnership), 동네관리(neighbourhood management)로 분류함(곽현근, 2012)
- 먼저, 동네역량강화 모형은 주민자치회의 제도화에 근거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 읍면동 단위에 의회가 설치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동네역량강화 모형과 동네파트너십 모형, 그리고 동네관리 모형의 연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동네관리 모형은 전술한 바와 같이 동네역량강화 모형, 동네파트너십 모형과 연계해 풀뿌리 주민자치의 생태계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제도임. 특히, 동네단위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관리를 위해 읍면동 수준에서 주민의 수요(우선순위)에 맞게 서비스기관, 서비스수준을 합의해 조정하거나 새로운 서비스의 실험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중점을 둠
 - 동네관리모형을 제대로 연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수준까지의 분권화, 즉, 읍면동 단위의 공동생산이 의미있게 논의되기 위해 읍면동 기능의 확대와 강화 방향이 필요함.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주민자치회의 제도화와 함께 병행하여 추진되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혹은 공모제가 동네관리모형의 특징을 반영한 것임
- 셋째, 동네파트너십은 공공과 민간부문, 그리고 자원봉사부문의 서비스 공급자와 이해당사자들 간의 집합적 의사결정과정인 동네라는 장소를 매개로 통합적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강조함. 동네파트너십은 공동생산을 지향하는 궁극적 모형일 수 있으나 그 구축을 위한 1단계로 주민자치회 주도의 주민조직 네트워크를 읍면동 단위에서 도모할 수 있으며, 그러한 공동체조직의 기반을 통해 읍면동 행정과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나가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음

- 무엇보다 읍면동에서의 공동생산에 관한 논의는 각각 독립된 유형으로 검토하기 보다는 동네거버넌스 유형의 유기적 연계를 염두에 두고 제도화를 논의할 수 있을 것임. 더 나아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읍면동 동네자치 정부의 제도화에 대해 공동생산의 성과와 학습에 따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표 2-2] 마을민주주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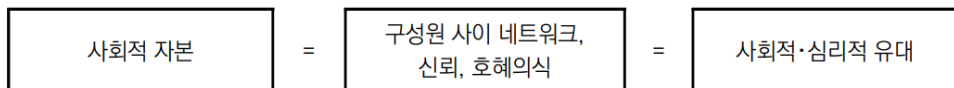
구분	동네역량강화	동네정부	동네파트너십	동네관리
기본원리	시민적(civic)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시민의 직접참여와 지역사회 관여의 기회	접근성, 의사결정의 책임성과 반응성의 향상: 선출직 공직자들의 향상된 역할	총체적(holistic) 시민중심의 서비스전달: 다양한 이해당사자 사이의 협력	지역서비스전달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초점
주요목표	적극적 시민과 응집된 지역사회	시민에게 반응하고 책임지는 의사결정	서비스통합과 조정을 통한 시민후생	효과적 지역서비스 전달
민주주의 형태	풀뿌리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이해관계자 민주주의	시장민주주의
시민역할	시민:발언	선출자: 투표	파트너: 충성	소비자: 선택
리더십 역할	주도자, 촉진자	의원, 소시장(mini-mayor)	중개인, 의장	기업가, 감독자
제도유형	포럼, 3부문으로서 자산이전, 사회적 기업	타운회의, 지역위원회	서비스위원회, 소규모 전략적 파트너십(LSP)	계약, 헌장, 행동계획
정책사례	거대한 사회(big society) 제안들	이중이양(double devolution)	지역전략적 파트너십	동네관리 선도사업

자료: Lowndes and Sullivan(2008: 62), Durose and Richardson(2009: 34), Pill and Bailey(2012:3)을 통합·수정함; 곽현근(2012); 곽현근(2021) 재인용

2. 풀뿌리 민주주의 관점에서 주민자치

1) 풀뿌리 민주주의, 사회적 자본, 지역공동체의 관계

-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는 1935년 미국공화당의 전당대회 의회제도에 기초한 대의적 민주주의에 반대하면서 시민운동 등을 통한 참여민주주의를 강조하는데 유래했음. 특히, 지역사회 구성원 및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네트워크 혹은 조직화 된 관계를 강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력하게 지원하는 이론으로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논의됨(곽현근, 2015; 김홍주, 2019)
- 사회적 자본⁷⁾은 지방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중요한 동력으로 논의되며 가장 유사한 용어로는 ‘지역공동체’(local community)가 있음(곽현근, 2015)
 - 지역공동체는 일정한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의 이웃주민과 사회적 심리적인 유대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며 지역의 주민들 간 신뢰, 호혜의 관계망이 형성된 것을 전제로 함(Mattessisch & Money, 1997; 정지웅·임상봉, 1999; 김홍주·곽현근·임승빈, 2018). 다음은 곽현근(2020)이 제시한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도식임



2) 풀뿌리 주민자치의 개념

- 풀뿌리 주민자치는 마을공동체에 기반하였으며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실천 과정에서 그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임.⁸⁾ 그리고 풀뿌리

7) R. Putnam(1993)은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것(Making Democracy Work)’이라는 저서에서 마을, 도시, 또는 지역의 구성원 사이에 형성된 신뢰, 호혜의 규범, 네트워크 같은 특징 들을 사회적 자본으로 보고 있음(곽현근 외, 2019)

8) Michael Sandel 교수가 집필한 「정의란 무엇인가」는 세계화와 같은 비인격적 권력구조 하에서 개인은 압도적인 열세가 있음을 자각하고, 동료와 시민이 함께 공동체에 참여해 공공선을 위해 공동체의 운명을 지배하는 힘에 맞서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 보고 있음. 결국 마을공동체의 형성과 참여과정은 주민들로 하여금 공공선에 대한 ‘사회

주민자치의 개념은 사회적 자본, 마을공동체의 관점에서 논의됨. 즉, ‘마을을 중심으로 주민의 결사체적인 자발적 참여와 조직화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집단적인 역량을 키워 스스로 마을의 의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함’)

- 풀뿌리 주민자치는 지역공동체 단위의 결사체적 참여와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투표 참여의 의미를 뛰어넘는 개념임. 무엇보다 ‘사회적 연대(solidarity)’, ‘행위의 주체성’을 회복해야 함을 논의함(Bhattacharyya, 2004; 김홍주·곽현근·임승빈, 2018)

○ 그리고 더 나아가 지방정부에 공식적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영향력을 키워가는 과정을 하며(곽현근, 2018a), 이는 단순한 주민들의 봉사적 의미가 아닌 지방정부의 주인으로서 주민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민주주의의 혁신을 의미함(곽현근, 2018a; 김홍주, 2019)

- ‘다른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doing good for other people)’ 하는 행위로 자원봉사를 이해할 수 있다면 풀뿌리 주민자치는 ‘공유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doing with other people)’ 행위를 의미함(곽현근 외,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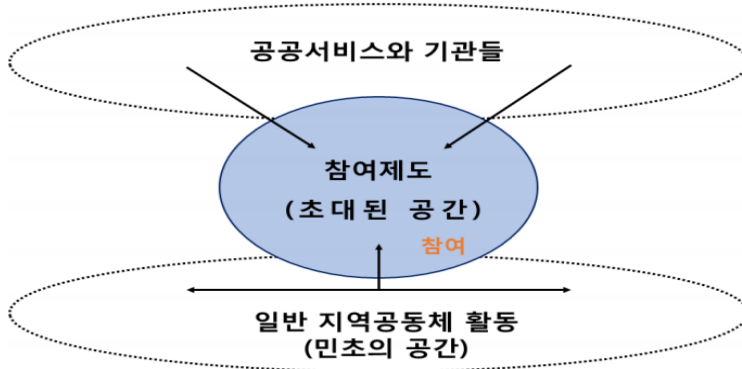
3) 풀뿌리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참여 공간

○ 풀뿌리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참여 공간은 주민들을 위한 활동뿐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틀에서 접근해야 함

적 효용함수’를 학습하게 하고, 민주적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관용, 배려, 사회적 연대 의식과 같은 ‘시민덕성(civic virtue)’을 키워나갈 수 있는 장이 됨(곽현근, 2018b)

9) 곽현근·김홍주·이현국(2021)은 대의민주제가 가지는 민주성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적 민주주의를 제시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직접민주주의, 속의민주주의, 결사체민주주의, 고객민주주의를 포함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는 곽현근·김홍주·이현국(2021)의 연구를 참고하기 바람

- 광현근(2018a)은 풀뿌리 주민자치 혹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위한 공간을 ‘민초의 공간’(popular space)과 ‘초대된 공간’(invited space)으로 분류하여 제시함
 - 민초의 공간은 주민에 의해 생성·소유·통제되는 공간으로 정부와 무관하게 주민들 간의 상호 연대를 통해 정부정책에 항의하거나 스스로 서비스 활동을 하는 무대를 의미하며, 초대된 공간은 정부가 공식적 참여제도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간을 말함



자료: Chanan(1996:26) 재구성; 광현근(2018b: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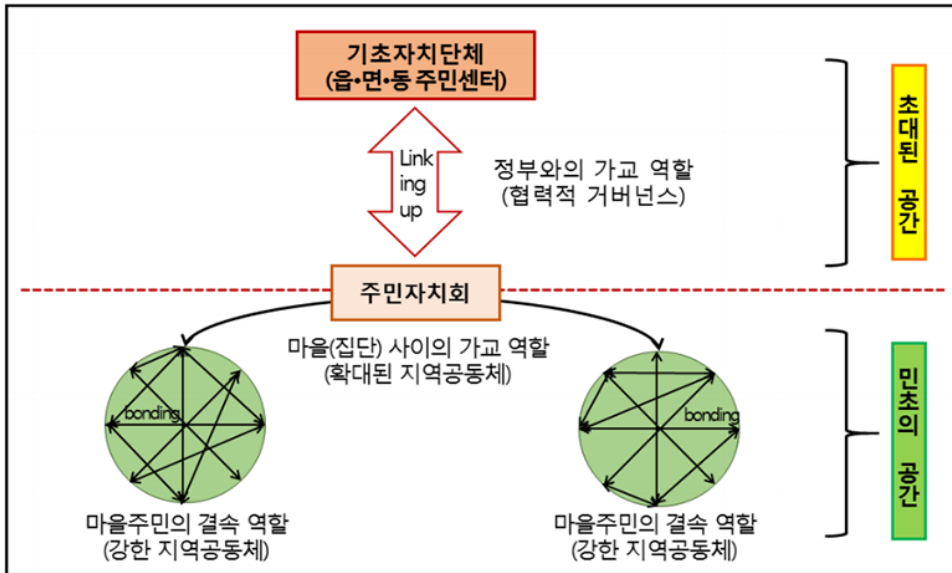
[그림 2-1] 초대된 공간과 민초의 공간

3. 풀뿌리 주민자치 제도화를 위한 이론과 생태계 모형

1) 지역공동체 주축조직의 역할

-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공동체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지역공동체주축조직’(community anchor organizations)을 주목하게 됨
 -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공동체의 회원이 되는 구조와 지역공동체주축조직의 회원은 그 차이가 있음. 즉, 지역공동체주축조직의 경우 공공기관과 협력하는 기능,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와 그에 따른 조직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점을 유념해야 함

- 지역공동체추축조직은 풀뿌리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사회적자본 형성의 매개 역할을 한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됨. 여기서 사회적 자본은 ‘결속적(bonding)’, ‘가교적(bridging)’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자원과 조직을 가진 국가와 같은 조직과 시민사회 간의 수직적 관계를 다루기 위해 연계적(linking) 사회적 자본의 개념이 제시되며 이러한 사회적자본의 형성을 매개하는 지역공동체추축조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회’임(김홍주·곽현근·임승빈,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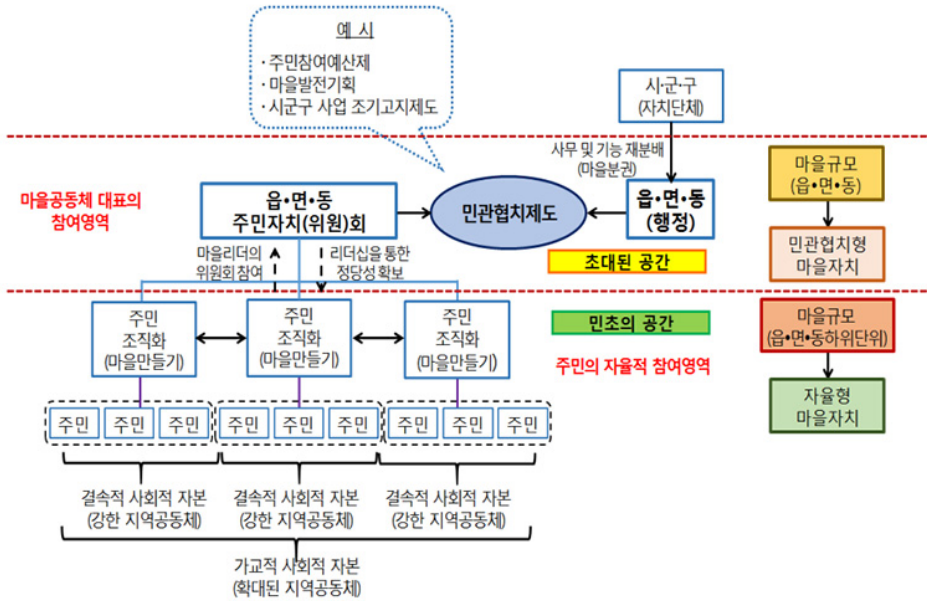
자료: 곽현근(2018b:8); 김홍주·곽현근·임승빈(2018:26) 재인용

[그림 2-2]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지역공동체 추축조직의 역할

2) 풀뿌리 주민자치 제도화를 위한 생태계 모형

- 마을만들기, 마을계획,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자치회, 주민세 등의 각기 파편화된 제도의 유기적 연계와 상호보완적인 제도적 생태를 모색하는 것은 보다 제대로 된 풀뿌리 주민자치가 정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전제임
- 따라서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다양한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상호보완된 풀뿌리 주민자치의 제도화를 위한 생태계 모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그림 2-3]은 풀뿌리 주민자치 제도화를 위한 생태계 모형임

- [그림 2-3]은 자율형, 민관협치형 마을자치로 구분해 설명하고 있으며, 자율형 마을자치는 작은 규모의 마을단위(읍면동보다 작은)에서의 주민들 결속을, 민관협치형 마을자치는 최하위의 행정기관(읍면동 단위)을 중심으로 한 협력적 거버넌스¹⁰⁾를 중심으로 함



자료: 광현근(2015:258)

[그림 2-3] 풀뿌리 주민자치 제도화를 위한 생태계 모형

10) 민관협력적인 제도로서 마을발전계획안을 마련해 주민투표로 확정하는 마을발전기획 (Neighborhood Development Planning), 마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을 미리 주민 대표조직에 알려 주민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할 수 있는 조기고지제도 (Early Notification System), 각 지자체가 「지방재정법」에 의해 모두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 등이 고려됨. 그리고 주민자치회 등이 마을공동체의 주축조직, 대표조직으로서 기능하게끔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임(광현근, 2015)

2절 주민자치회 도입배경 및 쟁점

1. 주민자치회 도입과정

- 1999년 읍면동 기능전환은 지방행정계층을 축소하여 관주도에서 주민 주도의 행정으로 변화하고 주민의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지역현안 문제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짐
 - 2000년부터 기능전환 과정에서 읍면동의 행정인력을 본청에 이관하고 남은 유휴공간에 문화, 복지 프로그램 등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고 주민자치회를 통해 심의·운영권을 맡김
-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논의는 2010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정책적으로 확산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됨
 - 주민자치회 도입이라는 이상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이 지역주민의 자치역량 제고에는 미흡”(최근열, 2015)하다는 평가와 지역차원의 여건 격차로 인해 정책확산에는 한계가 있었음
 - 2010년 10월 제정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주민자치조직인 주민자치회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2011~2013)를 거쳐 기반이 조성됨. 그리고 2013년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 등 세가지 모형이 도출되었으며 이 중 협력형 모형으로 시범실시함
- 2018년 ‘자치분권종합계획’을 통해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과제의 하나로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가 추진됨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018년 ‘자치분권종합계획’을 발표하고 6대 전략, 33개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단체자치 중심의 논의구조에서 주민자치가 결합된 구조로 정책의 전환 모색함

- 단체자치는 지방정부의 독립성 확보에 초점을 둔 지방분권의 원리이지만, 주민자치는 지방민주주의의 원리로서 대의민주주의가 갖는 민주성 결핍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실험의 장이 열린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통해 확장된 민주주의 차원의 혁신으로 주민참여, 지역공동체와 생활자치, 주민자치회 제도화 등이 추진되었음
- 2022년 현재 주민자치회는 제도를 넘어 자발적 참여를 통한 주민대표기구이자 주민생활 관련 의사결정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아울러 2021년 12월 기준 1,031개의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됨
- 특히, 세종시의 사례를 보면 자치분권 관련 5대 분야 12개 과제를 제안해 주민자치생태계모형을 통해 설계하여 지역공동체의 주축조직으로서 주민자치회를 강조함
-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기능 측면에서 주민 대표기구로서의 심의·의결 기능과 주민참여 기능이 강조되고 있음

[표 2-3] 주민자치회 제도화의 흐름

연도	주요내용
1998.3	▪ 읍면동사무소 →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 계획(대통령 업무보고)
1999	▪ 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규정함
2005.10- 2006.2	▪ 행정계층 1단계 감축(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를 구성하여), 읍면동의 준지방자치단체화, 지방광역 행정기구 설치를 제안함
2008.2	▪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킴
2008.8	▪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제정 추진·결정(민주당)
2008.11- 2009.2	▪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안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국회 제출
2009.3	▪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 구성결의(안) 국회본회의 의결·통과
2009.3	▪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가 18대 국회에서 설치
2010.4- 2010.9	▪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확정 및 본회의 통과
2010.9- 2010.10	▪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9월)·시행(10월)

연도	주요내용
2012.12	▪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주민자치 시범실시의 기본방향 의결
2013.5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정
2013.7- 2014.12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전국 31개 지역)
2014.12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종료시점, 시범사업 연장(2015년 12월 31일까지)
2014.12	▪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서 주민자치회를 핵심과제로 채택함
2015.10	▪ 시범지역 추가선정(전국 18개 지역), 아울러 사업 연장(2016년 12월까지)
2017.7	▪ '획기적 자치분권 및 주민참여실질화' 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
2018.3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
2018.9- 2019.3	▪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고려(자치분권종합계획, 자치분권시행계획(안))
2019.3	▪ 실질적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발의
2021.1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주민자치회 조항 삭제
2021.1	▪ 주민자치회 관련 8법안 발의/국회계류
2021.5	▪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 네트워크 발기인 대회 개최
2022.7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채택/주민자치회 개선(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마련)

2. 주민자치회 제도 및 모형 비교

1)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비교

- 전술한 바와 같이 1998년 이후 읍면동 행정의 기능전환이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 남은 유휴공간에 주민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주민자치회로 심의·운영하도록 설계함
-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의 자문기구로서 운영되며,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도로 실질적 주민자치의 실현에는 한계가 큼

-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의 자문위원 수준에 불과한 한계가 나타나면서 보다 실질적으로 주민이 주체가 되고 활용할 수 있는 자문기구를 만들기 위해 주민자치회가 도입됨(전대욱 외, 2022)
-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업무뿐 아니라 주민자치업무, 협의업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위촉권자가 읍면동장이 아닌 단체장에 의해 위촉된다는 점임

【표 2-4】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제도 비교(세종시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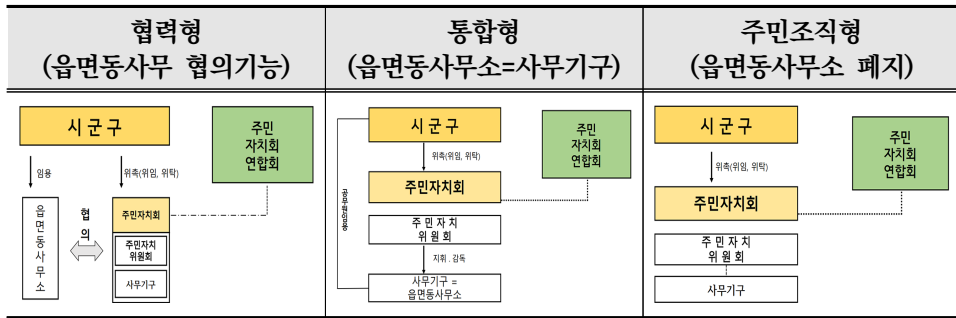
구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위상	읍면동 장의 자문기구	주민자치 협의·실행기구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별표1] 세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9조 세종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조례
위촉권자	읍면동장	단체장
기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심의회(문화·복지·편익기능 등)	주민자치사무, 협의 및 자문사무, 수탁사무
재정	읍면동사무소 지원 외에 별도 재원이 거의 없음	자체재원(회비, 수익, 위탁사업 수입, 사용료 등), 기부금 등 다양
자치단체와의 관계	읍면동 주도로 운영	자치단체와 협력적 관계

자료: 김홍주 외(2021:16)

2) 주민자치회 도입모형 비교

-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의 3가지 모형을 도출하였음
- 먼저, 협력형은 읍면동 행정기능에 대한 협의 및 위탁, 그리고 주민자치사무를 직접 수행하고, 주민센터 등의 운영을 기존대로 유지하는 형태로, 기존의 주민자치센터 모형을 보완 개선한 형태임

- 둘째, 통합형은 주민자치회와 기존 읍면동사무소(집행기구)를 통합해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의 지휘·감독 기구로 역할을 하며 행정조직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기능이 기존보다 강화된 형태임
- 셋째, 주민조직형은 기존에 있던 읍면동을 폐지하여 주민자치회가 직접 의사결정 및 집행을 하는 형태로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통합형에 비해 강화된 형태임
- 주민자치회의 3가지 모형 모두 읍면동 단위에 1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되, 섬 및 산간지역 등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분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함(전대욱 외, 2022)



자료: 김홍주·곽현근·임승빈(2018:62) 재구성

[그림 2-4] 주민자치회 모형 검토

- 각기 주민자치회 모형은 구성, 권한,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읍면동사무소, 자치단체와의 관계 등을 통해 그 차이를 살펴볼 수 있으며 [표 2-5]에서 보다 상세히 나타남

[표 2-5] 주민자치회 모형 비교

구분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위원,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위원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기능 및 행정지원 기능수행 ▪ 일부 읍면동 행정 기능 협의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기능 및 행정지원 기능수행 ▪ 읍면동 행정기능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기능 및 행정기능수행

구분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
주민자치 위원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 기능 결정 및 집행 행정기능 협의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기능 및 읍면동 행정기능에 대한 결정(의결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기능 결정 및 집행
읍면동 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존치(행정기능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회 사무기구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 행정기능을 지자체 직접수행
자치단체와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과 연계협력(협의심의사항에 대한 이해요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구의 하부행정 기관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구와 연계협력(주민의견 제출 등)
사무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공무원 파견 요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공무원 파견 요청 가능)

자료: 전대욱 외(2022:40)

3. 현 주민자치회 쟁점

- 주민자치회는 여러 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대표성 문제, 전문성의 부족, 지역공동체 형성의 한계, 지역주민의 효능감 한계 등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한 연구는 전대욱 외(2022)의 연구임. 전대욱 외(2022)는 주민자치회의 쟁점을 법제도, 조직 및 구성, 운영 및 사업활동, 재정 및 재원조달, 그리고 그밖의 요인들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제안하였음

[표 2-6] 현 주민자치회의 쟁점 분석

구분		문제점(쟁점)
법 제도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폴뿌리 민주주의 구현 및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법적 성격 부재 주민대의기관으로 미인정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재정고권 보장 법적근거 부재 주민자치 주도성 이끌 제도적 권한 부재
	법적 지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 공무원과 주민자치회 간 사무처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
	지방행정 체제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도시 자치구, 행정구 개편논의 등과 연계부재

구분		문제점(쟁점)	
	모델 선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특성 및 역량에 맞는 모델선택권 부재 협력형만 적용되어 구성의 다양성 등 부재 지역특성에 맞는 수정보완, 추가규정 마련 미흡 	
	회계 및 감사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관리 책임에 대한 조항 미비, 행정기관과 갈등 	
	조례	제도적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체적 권한 명시 부재 읍면동 행정의 보조자적 위상 협의 및 심의기능, 위탁기능, 주민자치 기능에 따른 사업 범위 및 내용, 선정기준 불분명
		지역특성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편일률적인 조례 제정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표준조례 모방
	규칙	주민자치회 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회 내부 회칙에 해당하는 자체 규약 제정 미흡
조직 및 구성	조직 체계	조직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회 분과 설치 미흡 분회의 성격과 역할 불분명 주민자치회 하부조직 혹은 상부의 연합조직 설치 및 운영 부재 주민자치연합회 법적 근거 미약
		사무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체적인 사무조직 설치 방법 규정 부재 조례에 사무국 설치에 관한 규정 부재 주민자치회 전용사무공간 확보 어려움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무국 운영 어려움 공무원 조직에 사업기획 및 추진 의존 읍면동에서 실무를 대행하여 행정기관 업무량 증대, 주민자치회 기능 축소
		유급 사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급사무원 인건비 부담 충분한 역량을 갖춘 유급사무원 채용 어려움 예산 및 회계에 대한 전문성 부재
		기능 권한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의 자문역할 수준 실질적 의사결정권한, 사업과 예산의 집행권한 등은 읍면동장에 부여 주민자치회 협의 심의결과는 읍면동장에게 구속력 부재 주민자치회에 대한 책임성 결여
		읍면동 행정기구와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 사무에 대한 협의 심의기능 수행한계 읍면동장으로부터 간접적인 지위통제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부족으로 인한 공무원과 대등한 관계 설정 어려움
		위원 구성	주민자치회 위원

구분		문제점(쟁점)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직종 주민 및 시민단체 참여저조 ▪ 인적 자원 부족으로 인한 지역대표, 주민대표, 직능대표의 분균형 선출 ▪ 농어촌의 경우 후보 인력 자원 부족 ▪ 무자격자 추천 ▪ 자치단체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자기사람 중심으로 위촉 ▪ 위원 선출에 있어 주민 참여 배제 ▪ 지역대표위원, 주민대표위원, 직능대표위원 등의 구분 모호 ▪ 주민대표로 추천받지 못하면 지역대표로 추천의뢰 등 중복 혼합 사례 발생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위원과 위원선정위원회 위원 선정과의 차별성 부재 ▪ 위원선정위원회가 위원 후보와 오랜 세월 서로 알던 사이로 구성 ▪ 나누어 먹기식 위원 위촉 경향 ▪ 위원선정위원 추천권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문제 ▪ 위원 결원 충원시 위원선정위원회 일회성 운영 ▪ 위원선정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 위원선정위원회 운영내용 유출
운영 및 사업 활동	회의 체계	형식적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식적 운영 ▪ 주민자치회 분과 및 분과설치 미흡 ▪ 책임감 미흡
	위원 역량	주민자치위원 및 전문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 및 사업추진 역량 부족 ▪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행정조직 의존 심화
		행정에 관한 인식 및 역량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부족 ▪ 행정절차 미숙으로 인해 읍면동의 정상적인 사무처리 절차를 주민자치회 활동의 제약요인으로 인식
	활동 사업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범위 및 내용의 불명확성 ▪ 주민자치위원회 혹은 주민센터 운영과 유사 ▪ 협의기능, 위탁사무 기능, 주민자치사무기능 등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규정 부재 ▪ 기존 단체들과의 사업 중복
교육 체계	체계적인 교육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회성 교육 ▪ 원론적, 총론적인 교육내용 및 실질적인 주민자치회 운영, 사업수행을 위한 내용 결여 ▪ 기획능력, 행정능력, 집행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부재 	

구분		문제점(쟁점)	
재정 및 재원 조달	예산	재원확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재원에 대한 의존 경향 시설비에 한정하여 집행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자체 간섭 주민자치회에 실질적인 예산회계 권한 부재
		주민자치 위원 활동예산 확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보존 조치 부재 유급사원 예산부족
		예산 회계전문성 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회 행정능력 취약으로 인한 예산 및 회계 등 행정업무를 읍면동 공무원이 수행 예산의 관항목과 예산의 전용 및 이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예산 집행 한계
		재정지원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규모에 있어 주민자치회 간 편차 발생
		재정적 취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예산 확보 어려움 주민자치회 회원들의 회비에 의존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
	감사	감사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장이 시군구청장 대신 감사권 행사
기타	인식 부족	인식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 미흡 잘못된 권위의식 존재 책임성 결여, 역량 미비 등으로 인해 소수의 주민자치위원(회장, 간사 등) 중심 운영 사업추진 역량 및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부족
		주민자치 회에 대한 낮은 참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위원 공모에 대한 낮은 지원율 남녀위원 구성비율 문제 세대별 위원 구성비율 문제 주민자치위원 결원 문제 주민총회 주민 참여인원의 지자체별 편차
	홍보 미흡	홍보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에 대한 주민자치 및 주민자치회 홍보에 대한 시군구 협조 미흡 시군구의 홍보와 주민자치회 자체 컨설팅 등의 활동이 비교적 약함 읍면동 단위에 비해 낮은 시군구의 홍보노력

자료: 전대욱 외(2022:45-46)

세종시 읍면동 기능 및 주민자치회 운영현황 분석

1절 세종시의 읍면동 기능 분석

2절 세종시 주민자치회 구성 및 사업현황

3장

3장 세종시 읍면동 기능 및 주민자치회 운영현황 분석

1절 세종시의 읍면동 기능 분석

1. 읍면동의 법적 지위 및 기능

1) 읍면동의 법적 지위

- 「지방자치법」상 자치구가 아닌 구(일반구), 읍면동은 하부행정기관으로 규정함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시군구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 읍면동은 그 조직과 기능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수행하는 기구로 규정하고 있음

[표 3-1] 읍면동의 법적지위

구분	특징	법령상 기준	도입시기
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지를 포함하는 군의 중심지(소도읍) ▪ 군청소재 지역으로 행정중심지 ▪ 그 자체로 시로 전환할 수 있는 행정 규모를 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며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함 ▪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 읍이 없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 그 면중 1개면 	「지방자치법」 제7조(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이상일 것 ▪ 해당 지역의 상업, 공업, 그 밖에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 이상일 것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 (2008)

구분	특징	법령상 기준	도입시기
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급 행정기관이 있으나 읍과 같은 도시지역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면: 면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에 각급 행정기관이 소재하고 독립적으로 면행정체제를 갖추어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 행정면: 인구감소 등 행정 연건의 변화로 인해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을 따로 둘 수 있음 	「행정구역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1991)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도시 개발로 인해 확장되어 도시, 새로운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민원 업무 비중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동: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지역여건의 변동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동: 동리에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음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자료: 최지민(2021:4)

2) 읍면동의 기능개편 과정 및 수행사무

(1) 읍면동의 기능개편 과정

- 읍면동 기능 전환하려는 목적은 효율성과 민주성의 두가지 차원이 결합하여 추진되었음. 즉, 행정계층에 존재하는 비능률성을 축소 조정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읍면동 사무 중에서 주민의 생활이 밀접한 행정서비스로 구성하려고 시도함. 아울러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장으로서의 기능도 포함됨

[표 3-2] 읍면동 기능개편 과정

사업명(시기)		목적	가치
기능 간소화	읍면동 기능개편 (199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 대처, 작은정부 실현 - 읍면동 폐지(당초) 	효율성

사업명(시기)		목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여건 조성 - 지역중심의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 (주민편의 기능중심 개편) - 지역중심 커뮤니티 형성 (자치센터 전환) 	
	동 통합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행정수요에 대응 ▪ 지자체 경쟁력 제고와 균형발전 도모 - 인구 2만명 미만, 면적 3km² 미만의 소규모 동 통합 	효율성
책임 읍면동 및 자치	주민자치회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중심의 근린자치 활성화 ▪ 행정-주민협력을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 ▪ 지역공동체의식 및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 	민주성
	책임읍면동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청이 본래 기능에 집중 - 주민밀착형 기능 읍면동으로 이관 ▪ 주민편의 확대 - 행정계층 축소로 서비스 제공에서의 비용 절감 - 책임읍면동 외의 지역 주민문화 복합공간으로 활용 ▪ 주민참여기회 기반확대 - 읍면동 기능강화에 따른 주민자치 기능 확대 	효율성
	혁신 읍면동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 주민자치회 등 대표기구에 권한 부여 ▪ 현장밀착형 보건복지 및 방문건강 서비스 및 전담인력 확충 	효율성, 민주성
복지전달 체계 및 주민자치	복지허브화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사각지대 해소, 주민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사회복지 공무원 확대(3명 이상 배치, 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 방문상담, 서비스, 통합사례 관리 등 	민주성, 효율성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의 연계 강화 - 찾아가는 보건, 복지 서비스 확대 ▪ 풀뿌리 주민자치의 실질적 기반 마련 - 주민자치 제도적 기반 마련 - 읍면동 행정혁신 	민주성, 효율성

자료: 최지민(2021:9)

(2) 성과와 한계

- 전술한 바와 같이 읍면동 기능전환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동시에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지속적인 고민이 반영됨
- 성과적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었으며, 주민생활에 밀접한 읍면동의 행정기능을 배치하여 주민편의달성에 기함
- 한계점은 무엇보다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에서 개편이 이루어졌다는 점임
 - 즉, 지역의 수요를 반영(행정의 효율화와 주민자치 강화 등)하는데 있어서 행정안전부 등 국가중심적 고려와 개편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무엇보다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접근하다보니 일괄적인 적용방식에서 오는 공급자 중심의 개편이라는 점은 여전히 나타남. 특히, 복지와 같은 공적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조직 및 인력의 한계로 지역맞춤형 개편방식의 어려움이 상존함

(3) 수행사무

- [표 3-3]은 읍면동 기능의 일반현황을 보여주고 있음. 대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일반행정, 통합민원, 사회복지, 맞춤형복지, 산업개발, 보건민방위 안전으로 구분됨
 - ● 기본 수행, ○ 자치단체에 따라 수행 또는 비수행에 해당함

[표 3-3] 읍면동 기능 일반 현황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읍면	동	비고
일반 행정	총무	복무관리	●	●	
		동 행정관리	●	●	
		각종요구자료제출	●	●	
	주민자치	주민자치위원관리	●	●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	●	
	예산회계	예산회계	●	●	
	지방세	지방세, 세외수입	●	●	
	기타	기타	○	○	감사, 계약, 제도 등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읍면	동	비고
통합 민원	창구업무	창구업무	●	●	
		인감관리	●	●	
	주민등록	주민관계등록처리	●	●	동에서는 가족관계사무 중 출생/사망신고 등 일부만 수행
		주민등록증발급지원	●	●	
	교육	취학, 입학	●	●	
	기타	기타	●	●	결격사유, 인구동향 등
사회 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	●	
	차상위계층		●	●	
	한부모		●	●	
	긴급복지		●	●	
	노인·장애인		●	●	
	영유아보육		●	●	
	아동·청소년		●	●	
	자활지원		●	●	
	사회서비스이용권		●	●	
	기타사회복지서비스		○	○	임대주택, 계절성지원(월동, 폭염), 감면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	종합상담		●	●	
	복지사각지대발굴		●	●	
	통합사례관리		●	●	
	민관협력		●	●	
	기타		○	○	홍보, 배부 등
산업 개발	건설하천	건축일반	●	○	
		도로일반	●	○	
		지방하천	●	○	
		공유수면	●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읍면	동	비고
	농어업	농지업무	●		
		농어업 ¹¹⁾	●		
		규제, 단속 ¹²⁾	●		
	축산	동물등록	●		
		축산(농가지원, 규제)	●		
		가축방역	●		
	경제 자동차	이륜자동차	●		
		시장관리	●	○	
		각종경제사업 (공공근로사업)	●	●	
	환경	옥외광고물	●	○	
		상수도 일반	○	○	
		하수도 일반	○	○	
		폐기물 일반	○	○	
보건 민방위 안전	보건	전염병관리	●	●	방역, 자가격리자 관리 등
		위생관리	○	○	
	민방위안전	민방위관리업무	●	●	
		재해재난관리	●	●	
	기타	기타	○	○	마약류 관리, CCTV관리 등

자료: 최지민(202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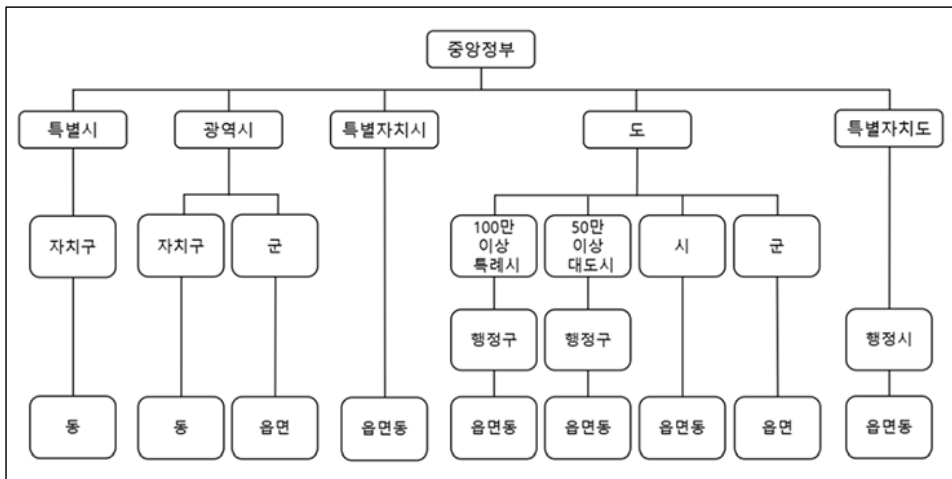
11) 직불금, 어항관리, 임한서가 등이 포함됨

12) 불법농지, 점용료부과, 벌채 등이 포함됨

2. 세종시의 읍면동 기능 분석

1) 지방행정계층의 실태

-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와 그 관할의 기초자치단체의 기본적 계층체계는 다음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음
- 일반적으로 광역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 기초자치단체를 두면서 자치 2계층을 기본적인 계층구조로 하고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층제의 자치계층 구조를 하고 있음
 -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각기 차별적인 구조를 가지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 2계층인데 반해,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 1계층의 구조를 보임(김홍주·이시원, 2019)



자료: 홍준현 외(2022:13)

[그림 3-1] 지방행정계층 실태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정부직할·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기본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22년 10월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의 면적은 465.2km²이고,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73km²으로 전체면적의 약15.7%를 차지함. 그리고 인구는

38만 7,014(2022년 10월 기준, 출범당시 11만 5천 388명)명이며, 행정구역은 1읍·9면·12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치는 국토의 중심부에 입지하고 있음

면적	• 465.2km ² (서울 면적의 3/4) - 읍·면:392.2km ² (84.3%)/신도시:73km ² (15.7%)	
인구	• 38만 1,019명(출범 대비 약 27만 명▲)/2022.10 - 2030년까지 인구 68만 8,000명 목표	
행정구역	• 1읍 9면 12행정동(법정동 23개)	
위치	• 국토 중심부에 위치 - 전국 주요도시 2시간 내·외 연결	

자료: 세종시청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

[그림 3-2] 세종특별자치시의 기본현황

2) 조치원읍과 아람동 사무구분체계 및 인력현황 분석

- 세종시는 기존 읍면(조치원읍, 연서·전의·전동·소정면)을 권역별로 묶어 조치원읍을 책임읍으로, 그리고 아람·도담(어진동)·고운·중촌을 묶어 아람동을 책임동으로 지정해 본래 시청에서 처리하는 사무를 위임하여 주민에게 편의성을 부여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제도화함
- 조치원읍의 경우 시청사가 보람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북부권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위해, 그리고 아람동은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신도시 지역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정함

[표 3-4] 세종시 책임읍동 조직 및 인구, 면적 현황

구분	관할구역	현원	인구	면적
조치원읍: 복세종 통합 행정복지센터	조치원읍, 연서면, 전동면, 전의면, 소정면	79	42,622	13.56
아람동: 1생활권 통합 행정복지센터	아람동, 도담동(어진동), 고운동, 중촌동	53	23,368	2.19

- 세종시는 본청에서 처리하던 기존 행정복지, 경제산업, 건설도시 등 정책 입안 및 조정, 대단위 개발·인허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무를 읍동의 특성에 맞추어 위임함
 - 책임읍인 조치원읍은 총215개의 사무를 위임받았고, 그 중에서 행정 복지관련 사무는 103개, 건설 및 도시관련 사무는 68개, 그리고 경제 산업 관련 사무는 44개임
 - 책임동인 아름동은 총154개의 사무를 위임받았고, 이중 행정복지 관련 사무는 103개, 건설 및 도시 관련 사무는 27개, 그리고 경제산업 관련 사무는 24개임
 - 세종시의 책임읍과 책임동의 경우 각기 복지, 세무 및 부동산, 민원, 안전분야에 있어서 동일한 사무를 수행하나 건축 및 산업, 도로,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그 특성이 반영되어 책임읍과 동사이의 차이가 다소 나타남
 - 아름동과 비교해 조치원읍의 경우 건설도시, 경제산업 관련 사무의 위 임이 많았으며 이중 건설도시와 관련된 사무는 건축물 신고 및 관리, 옥외광고물 허가와 관련된 사무가, 그리고 경제산업의 경우 가축분뇨 의 배출 및 처리, 축산업 사무가 추가로 위임되는 됨. 북생활권역의 산업적 특성과 민원의 수요를 고려한 위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종합적으로 본청에서 책임읍동에 추가된 위임사무는 주민 혹은 민원인 의 편의성을 제고와 관련된 사무에 해당됨¹³⁾¹⁴⁾
 - 책임읍동에서 현장 완결 및 처리를 위해 주민이 본청을 방문하지 않 고 생활권역 거주지 인접기관을 이용하여 행정서비스 이용의 편의성 을 높일 수 있음. 이러한 사무는 주로 신고, 증명, 등록 등 행정사무 로 행정기관에 직접방문해 처리하는 업무에 해당됨

13) 민원행정과는 운영지원, 일반민원, 여권가족, 세무부동산 담당, 복지행정과는 복지행정, 복지지원, 맞춤형 복지담당, 안전도시과는 청소환경, 안전도시, 가로정비 담당이 포함됨

14) 민원행정과는 운영지원, 일반민원, 세무부동산 담당, 복지행정과는 복지행정, 복지지원, 맞춤형 복지담당, 안전도시과는 안전도시, 경제환경, 도시공원 담당이 포함됨

[표 3-5] 세종시 책임읍동 위임 사무(조치원읍)

부서명	기존사무	위임사무
민원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 선거, 체육, 통계, 보안 ▪ 회계 및 지출, 청사관리 ▪ 이·반장 및 주민단체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등록 신고 ▪ 인구동태 신고, 신원조회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 신고 및 조사 ▪ 통합 민원 발급, 인감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체류지 변경 신고 ▪ 재외동포 국내거소 이전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면허세(면허분) 신고 ▪ 세무 상담, 안내 및 체납세금 독촉 ▪ 부과고지서 송달 ▪ 공유재산 관리 및 주택가격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 ▪ 부동산 취득세 신고 ▪ 도로명주소부여 및 번호판 부착, 상세주소 부여 ▪ 부동산 거래계약서 검인 및 실거래 신고 ▪ 부동산 중개업 등록 신고
복지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수급신청자 소득, 재산 통합조사 - 기초생활보장수급,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의료비 경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지원 상담, 신청접수 ▪ 기초생활보장수급 상담, 신청접수 ▪ 장사(분묘)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 기초생활보장수급 결정 및 지원 ▪ 통합사례관리 및 의료급여사례관리 ▪ 희망키움, 내일키움 통장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한부모가족, 양 ▪ 양육수당 상담 및 신청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한부모가족, 양육수당 지원 ▪ 경로당 신고 및 지원, 경로식당운영 ▪ 장애인편의시설 및 주차구역관리
안전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광고물 철거 ▪ 이륜차 등록 ▪ 공공근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 허가 및 과태료 부과 ▪ 도시공원, 녹지, 버스승강장 청소 ▪ 가로수 관리 및 산지전용 협의 ▪ 도로점용료 부과 및 불법점용·적치물 단속 ▪ 마을체육시설 관리 및 체육시설업 신고 ▪ 무단방치차 처리 및 주정차 이동단속

부서명	기존사무	위임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청소 및 쓰레기 운반수거 가축분뇨시설 지도·단속 및 공중화장실 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 및 지도·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민방위대 관리 및 인력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 유관기관 연계 및 안전캠페인 공중·식품위생업, 건강기능식품업 신고처리 및 지도점검 이·미용사 및 조리사 면허발급
건설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빈집 정비사업 지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관리 가로등 유지,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사업자관리, 불법건축계도 건축·착공·가설건축물·철거·용도변경 신고 및 사용승인 건축물대장 생성, 변경,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원부 관리 및 농지전용신고 농업·축산·산림 보조사업 상담 및 신청접수 국토공원화사업 및 산불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배소매인 지정 및 통신판매업 신고 축산업 정기점검 및 가축방역 축산물 판매·운반업, 동물판매업 등록 등록대상동물 등록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 건설사업 (2천만원 미만) 농어촌도로 제설작업 지하차도 및 인도 유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 건설사업 (5천만원 미만) 개발행위 협의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유지 관리

자료: 광현근 외(2019:44-45)

[표 3-6] 세종시 책임읍동 위임 사무(아름동)

부서명	기존사무	위임사무
민원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 선거, 체육, 통계, 보안 회계 및 지출, 청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 신고 및 조사 통합 민원 발급, 인감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체류지 변경 신고 재외동포 국내거소 이전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면허세(면허분) 신고 세무 상담, 안내 및 체납세금 독촉 부과고지서 송달 공유재산 관리 및 주택가격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 부동산 취득세 신고 도로명주소부여 및 번호판 부착, 상세주소 부여 부동산 거래계약서 검인 및 실거래 신고 부동산 중개업 등록 신고

부서명	기존사무	위임사무
복지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수급신청자 소득, 재산 통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수급,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의료비경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지원 상담, 신청접수 기초생활보장수급 상담, 신청접수 장사(분묘)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초생활보장수급 결정 및 지원 통합사례관리 및 의료급여사례관리 희망키움, 내일키움 통장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한부모가족, 양 양육수당 상담 및 신청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한부모가족, 양육수당 결정 및 지원 경로당 신고 및 지원, 경로식당운영 장애인편의시설 및 주차구역관리
안전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원부 관리 불법광고물 철거 공공근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청소 및 쓰레기 운반수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지정 담배소매인 지정 및 통신판매업 신고 축산물 판매·운반업, 동물판매업 등록 등록대상동물 등록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민방위대 관리 및 인력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 유관기관 연계 및 안전캠페인 공중·식품위생업, 건강기능식품업 신고 처리 및 지도점검 이·미용사 및 조리사 면허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공원, 녹지, 버스승강장 청소 가로수 관리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유지 관리 도로점용료 부과 및 불법점용·적치물 단속 마을체육시설 관리 및 체육시설업 신고 무단방치차 처리

자료: 광현근 외(2019:45-46)

- 2022년 10월 기준 세종시는 1읍, 9면, 12행정동(23개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주민등록기준 인구는 38만 7천명임
 - 현재 책임읍동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1읍, 4면, 5개 행정동이며 나머지 5면과 7행정동은 세종시 본청에서 기초사무를 담당함. 즉, 책임읍

동 소재지역이 아닌 면은 연기면, 연동면, 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5개 지역과 동은 한솔동, 새롭동, 대평동, 보람동, 소담동, 반곡동, 해밀동 등 7개 지역임

- 세종시의 인구구성을 책임읍동의 관할내외로 구분하여 살펴 보면, 북세종(조치원, 연서·전의·전동·소정면) 생활권역에 15.7%인 6만1천여명, 면지역 전체 11.6%인 4만5천여명, 그리고 신도심지역은 76.3%인 29만2천여명이 거주하고 있음
 - 지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면지역은 넓은 행정구역에 비하여 적은거주인구, 동지역은 좁은 행정구역에 비하여 많은 거주인구의 상반된 특성을 보임. 이는 동지역의 경우 많은 민원처리 사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함
 - 책임읍동이 아닌 면동의 경우는 민원행정, 주민생활과 관련된 담당을 공통으로 두고 있으며, 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연서면, 전의면, 한솔동, 고운동, 종촌동, 대평동, 보람동, 소담동의 경우 맞춤형 복지를 별도 담당으로 구분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동 지역의 특성은 산업 관련 담당업무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민원행정 및 주민생활을 중심으로 업무분장을 하였음. 이는 신도심 지역의 건설과 개발에 따른 지역민원 수요가 타지역의 면과 상이함을 보여줌
- 세종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르면 읍면장에게 재무관련 23개 분야, 건설도시 15개 분야, 문화체육 관련 2개 분야, 일반민원 관련 7개 분야(주로 이륜자동차 관련), 안전행정복지 관련 22개 분야, 경제산업 관련 21개 분야, 보건관련((감염병 예방을 위한 잔류·연막·연무 등 방역 소독 및 약품(장비)의 관리 등(다만, 조치원읍장은 제외)) 1개 분야의 사무를 위임함
- 이와 더불어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재무 관련 23개 사무, 건설 및 도시 관련 15개 분야, 문화체육 관련 3개 분야, 일반민원 관련 7개 분야(주로 이륜자동차 관련), 안전행정복지 관련 22개 분야, 경제산업 관련 8개 분야, 보건관련(감염병 예방을 위한 잔류·연막·연무 등 방역 소독 및 약품(장비)의 관리 등) 1개 분야의 사무들임

- 면과 동에게 각기 위임된 사무는 문화체육분야와 경제산업분야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남
 - 먼저 문화체육 분야 사무에 있어서 면은 전의 생활체육공원 관리 및 사용허가 관련 사무 2개 면장에게 위임되어 있는데 반해, 동 지역은 각 동에 설치된 문화의 집, 도서관, 동 주민센터 내 위치한 체육관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3개의 사무가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 둘째, 경제산업 분야의 사무에 있어서, 면지역에는 지역 환경과 관련한 사무(생활폐기물 관련)들이 위임되어 있는 반면에 동지역에는 공중 화장실의 관리와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증명 및 지원부 관리 등의 한정적인 사무만 위임됨
- 복지사무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의 복지허브와 정책에 기인해 면과 동에 6개의 사무가 추가로 위임됨
 - 권역(중심)내 복지 허브화 업무관련 면·동간 협력 총괄, 복지사각지대 발굴(교육·홍보 등) 및 연계, 찾아가는 복지상담 추진,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추진, 자원관리(권역 내 자원배분·조정) 등이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됨. 세종시는 일부 행정동과 면에 통합해 위임하고 있음
 - 즉, 부강면장(관할구역 부강, 연동면), 금남면장, 장군면장, 연서면장(연서, 연기면), 전의면장(전의, 전동, 소정면), 한솔동장, 도담동장(도담, 해밀동), 종촌동장, 고운동장, 보람동장, 새롬동장, 대평동장, 소담동장(소담, 반곡동) 및 다정동장에게 추가로 권한을 위임한 구조임
- 아울러 한솔동과 보람동에 경제산업과 관련된 사무(생활폐기물, 환경정비, 청소 등) 5개를 추가로 위임하고 있음
 -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배출에 대한 지도·점검, 청결유지명령 및 청결유지이행(2개 읍·면·동 이상에 해당하는 명령이나 시장이 직접 명령하는 경우를 제외함), 관할구역 환경정비 및 가로청소, 환경관리원 관리, 청소차량 등 청소장비 관리, 생활폐기물의 불법처리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처분 등임
 - 한솔동장의 관할구역에 한솔동, 새롬동, 나성동, 다정동, 가람동이, 보람동장의 관할구역에 보람동, 대평동, 소담동, 반곡동, 집현동이 포함됨

- 면지역의 경우 기존 행정조직이 유지되는 경향성과 신설동의 경우 조직을 구성한 인력배치의 한계가 나타남. 그리고 복지서비스와 경제산업의 경우 기존 행정면과 동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았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특정지역에 더 많은 사무가 위임됨
- 아울러 복지서비스의 경우 책임읍동제의 관할구역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 예로 연기면의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사례 관리 등의 복지서비스 사무는 연서면장에 위임된 것을 알 수 있음. 연서면은 북세종 생활권역으로 조치원읍에 소재해 있으나 연기면은 조치원읍의 관할 권역이 아님. 즉, 세종시 본청과 연서면의 관할권내 연기면이 있으나 조치원 책임읍의 관할권 외에 위치한 특수한 사례에 해당됨

[표 3-기] 세종시 면동의 조직 및 인구, 면적 현황

구분	조직	현원	인구	면적
연기면	민원행정, 주민생활, 산업	14	2,680	24.2
연동면	민원행정, 주민생활, 산업	15	3,039	21.5
부강면	민원행정, 주민생활, 산업, 맞춤형 복지	20	5,948	27.7
금남면	민원행정, 주민생활, 산업, 맞춤형 복지	25	8,708	72.5
장군면	민원행정, 주민생활, 산업, 맞춤형 복지	20	6,928	53.23
연서면	민원행정, 주민생활, 산업, 맞춤형 복지, 주민자치	21	7,300	54.6
전의면	민원행정, 주민생활, 산업, 맞춤형 복지	22	5,519	42.4
전동면	민원행정, 주민생활, 산업	16	3,315	57.7
소정면	민원행정, 주민생활, 산업	12	2,203	16.47
한솔동	민원행정, 주민생활, 맞춤형 복지	32	18,315	2.7
도담동	민원행정, 주민생활, 맞춤형 복지	20	34,235	4.72
종촌동	민원행정, 주민생활, 맞춤형 복지	18	28,684	1.15
고운동	민원행정, 주민생활, 맞춤형 복지, 고운동 남측	27	34,429	5.35
새롭동	민원행정, 주민생활, 맞춤형 복지	19	39,537	3.25
다정동	민원행정, 주민생활	15	28,395	1.7
대평동	민원행정, 주민생활, 맞춤형 복지	17	11,264	1.52
보람동	민원행정, 주민생활, 맞춤형 복지	31	19,397	1.33
소담동 ¹⁵⁾	민원행정, 주민생활, 맞춤형 복지	18	21,502	12.72
해밀동	민원행정, 주민생활	14	8,709	8.44
반곡동	민원행정, 주민생활	13	24,922	3.2

15) 소담동의 면적은 소담, 반곡, 집현동의 면적합계임

2절 세종시 주민자치회 구성 및 사업현황

1. 설치 조례

- [표 3-8]은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임. 주민자치회의 기능, 위탁사무, 주민자치회 구성, 위촉방식, 위원 선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음

[표 3-8] 세종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 주요내용

조항	주요내용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 (주민자치회의 운영원칙)	<p>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5. 주민자치회 위원의 무보수 명예직 운영
제5조 (주민자치회의 기능 등)	<p>①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총회의 개최, 마을계획의 수립, 마을 축제의 개최, 마을소식지의 발간 등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업무 2.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3.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읍·면·동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자문 등 읍·면·동예산협의회의 기능. 이 경우 읍·면·동예산협의회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재위촉하지 아니하는 읍·면·동의 주민자치회에 한정한다. 4. 읍·면·동의 사무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한 건의 4의2.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 <신설, 2021. 4. 15.> 5. 그 밖에 주민자치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p>② 세종특별자치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에는 주민자치회 운영 능력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p> <p>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주민자치회에서 읍·면·동예산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때에는 해당 읍·면·동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가 수행한 읍·면·동예산협의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읍·면·동예산협의회가 수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4. 15.></p> <p>④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회”라 한다.</p>

조항	주요내용
제6조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	<p>지방분권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주민자치, 마을계획 수립, 마을축제,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 등에 관한 사무로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사무
제7조 (주민자치회의 구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 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각각 주민자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해당 읍·면·동이 지역구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표결권이 없는 당연직 고문으로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위촉)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장은 지방분권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6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선정을 거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신설, 2022. 4. 20.> 2.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신설, 2022. 4. 20.> 3.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신설, 2022. 4. 20.> 4.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2. 4. 20.>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을 것 나. 해당 읍·면·동에 체류지를 둘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2.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 3. 다른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이미 위촉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21. 4. 15.> 4. 제11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 다만,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4. 15.> ③ 시장은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4. 15.>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의 선순위자를 위촉한다.

조항	주요내용
	<p>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위원 선정 절차에 따라 새로 선정한 위원을 위촉한다.</p> <p>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p>
<p>제9조 (운영위원회 및 위원의 선정)</p>	<p>① 읍·면·동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관련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모집·공개추첨 등 위원 선정 2. 제11조에 따른 해촉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조사와 의견 제시 3.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회장 또는 읍·면·동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사실 조사와 의견 제시 <p>② 운영위원회는 해당 읍·면·동 별로 읍·면·동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2. 4.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3명 2. 해당 읍·면·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3명 <p>③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위원장으로 호선할 수 없다.</p> <p>④ 운영위원회 위원(해당 읍·면·동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읍·동 운영위원회 위원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5.></p> <p>⑤ 운영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 방법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1. 4. 15.] <개정, 2021. 4. 15.></p> <p>⑥ 주민자치회의 연속성 및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중 직전 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 미달하는 인원의 범위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직전 위원을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0.></p> <p>⑦ 운영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균형있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선정비율 사전 결정 및 공개 2.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제1호에 따른 선정비율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모집 가능 <개정, 2021. 4. 15.> 3.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제1호에 따른 선정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각 5명의 범위에서 예비후보자의 선정 4. 공개모집은 최소 30일 이상(제2호에 따른 추가 모집의 경우에는 최소 15일 이상)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동 게시판 등 다양한 홍보 매체에 공고 <개정, 2021. 4. 15.> [제5항에서 이동, 2021. 4. 15.] [제6항에서 이동, 2022. 4. 20.]

조항	주요내용
	<p>⑧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및 제6항제3호에 따른 예비 후보자를 선정한 경우 그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21. 4. 15.]<개정, 2021. 4. 15.>[제7항에서 이동, 2022. 4. 20.]</p>
제10조 (위원의 임기)	<p>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읍·동 위원은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가 모집하는 경우 추가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회 기존 위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1. 4. 15.></p>
<p>제11조(위원의 해촉), 제12조(자치회장의 직무), 제13조(위원의 의무), 제14조(주민자치회의 회의), 제15조(감사)</p>	
제16조 (간사 등)	<p>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주민자치회의 결정을 거쳐 자치회장이 선임하며, 선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 4. 20.> ② 간사는 주민자치회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담당한다. 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주민자치회의 업무 및 운영에 대한 실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주민자치회의 예산으로 실비, 수당,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제17조 (분과위원회)	<p>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장(이하 “분과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4. 20.> ③ 분과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0.>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p>
<p>제18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제19조(행정적 재정적 지원), 제20조(주민자치연합회)</p>	
제21조 (주민총회)	<p>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회장이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1.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립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의 활동 결과 및 성과에 관한 사항 3. 제22조에 따른 마을계획안에 관한 사항 4.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읍·면·동 예산 사업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동의 문제에 관한 사항</p>

조항	주요내용
	<p>6. 주민 간 의견을 달리하여 의견의 합치가 필요한 사항</p> <p>7. 그 밖에 자치회장 또는 읍·면·동장이 주민 전체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자치회장이 주민총회를 개최하려면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에 대하여 주민자치회의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전 까지 읍·면·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자치회장은 주민의 권리와 관련 있는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는 주민총회 개최 전에 홍보,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많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사전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p> <p>④ 주민총회는 주민총회에 참석한 주민(사전투표에 참여한 주민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민의 의견을 결정한다.</p> <p>⑤ 시장 및 해당 읍·면·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⑥ 주민총회는 주민이 직접 의견을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p> <p>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p>
제22조 (마을계획)	<p>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읍·면·동 마을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마을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분과위원회별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 5. 제25조에 따른 리 마을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4. 15.> 6.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마을계획안을 주민총회에 상정하기 20일 전까지 시장 및 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마을계획안을 통보받은 시장 및 시의회는 주민자치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p> <p>③ 마을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계획안을 주민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제출한 마을계획안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이행 가능 여부 등 검토 결과를 시의회 및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⑤ 주민자치회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마을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마을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마을계획을 읍면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p>

조항	주요내용
제23조 (마을회)	① 읍·면의 주민은 주민 간 친목 도모, 주민의 권익 향상 등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리 별로 1개의 마을회를 조직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을회의 대표가 마을회를 조직하려면 해당 읍·면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구수, 취락 구조 등을 고려하여 리 간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마을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마을회의 자치규약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마을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 (마을회 기능)	마을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25조에 따른 리 별 마을계획의 수립 및 제안 2. 주민 간 갈등의 조정·중재 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 등 관련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건의할 사항의 수렴·전달 <개정, 2021. 4. 15.> 4. 리장의 추천 5. 주민 공동의 이익을 위한 마을사업의 추진 및 제안 6. 재난 방지 등 주민 위험·불편 사항의 파악 및 개선 건의 7. 그 밖에 마을의 주요 현안사안에 대한 제안
제25조 (리 마을계획)	마을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리 별 마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세종시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분과위원회 현황

1) 세종시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교육 이수현황

- 세종시는 기존 읍면(조치원읍, 연서·전의·전동·소정면)을 권역별로 묶어 조치원읍을 책임읍으로, 그리고 아름·도담(어진동)·고운·종촌을 묶어 아름동을 책임동으로 구성하였음
- 세종시의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은 총 580명으로 여성이 48%, 남성이 5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60대 이상이 217명으로 전체 인원의 37.41%를 차지함

○ 이에 반해 10대, 20대의 참여는 30명(20대+30대)으로 5.17%를 차지하며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상당히 낮은 비율을 차지함

[표 3-9]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현황('22.7.1. 기준)

구 분	계	남	여	여성 비율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 계	580	304	276	48%	19	11	43	114	176	217
조치원읍	33	20	13	39%	0	2	3	10	7	11
연기면	23	11	12	52%	1	1	0	1	4	16
연동면	36	22	14	39%	0	0	2	1	15	18
부강면	28	11	17	61%	1	1	1	1	11	13
금남면	26	14	12	46%	2	0	1	4	8	11
장군면	36	18	18	50%	3	0	1	6	15	11
연서면	35	19	16	46%	0	0	2	8	6	19
전의면	17	10	7	41%	1	1	0	1	9	5
전동면	28	16	12	43%	0	0	1	0	8	19
소정면	24	13	11	46%	0	0	2	1	12	9
한솔동	24	14	10	42%	2	1	2	7	7	5
도담동	32	19	13	41%	0	1	0	3	7	21
아름동	18	9	9	50%	2	0	0	2	9	5
종촌동	29	16	13	45%	1	0	4	10	6	8
고운동	26	13	13	50%	2	0	4	8	5	7
보람동	22	8	14	64%	0	0	2	8	6	6
새롬동	34	19	15	44%	1	0	3	11	10	9
대평동	22	11	11	50%	0	1	2	5	8	6
소담동	25	10	15	60%	0	1	4	5	9	6
다정동	22	11	11	50%	0	0	5	10	5	2
해밀동	24	12	12	50%	2	2	4	9	4	3
반곡동	16	8	8	50%	1	0	0	3	5	7

- [표 3-10]은 '22년 시민주권대학을 통해 주민자치회 신규과정의 교육 이수율을 보여줌

[표 3-10] '22년 시민주권대학 주민자치회 신규과정('22.7.1. 기준)

지역명	접수인원	1회차 (명)	2회차 (명)	3회차 (명)	4회차 (명)	이수율 (%)
전의면	10	7	7	6	6	60
전동면	16	16	15	11	11	68.8
연동면	19	14	13	17	17	89.5
연서면	29	17	17	23	23	79.3
새롭동	31	32	31	27	27	80.6
반곡동	20	17	16	14	14	70
해밀동	25	25	25	21	19	92
종촌동	29	20	15	18	20	82

2) 세종시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 구성 현황

- [표 3-11]은 세종시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 구성현황을 보여줌. 일반적으로 기획예산 및 운영분과, 마을계획분과,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분과 등을 중심으로 구성됨
 - 그 중에서 대평동은 분과구성을 지혜가 솟는 분과, 행복을 만드는 분과, 마을을 가꾸는 분과, 모두를 위한 분과 등으로 분과 구성방식에 있어서 기존 틀에서 벗어나 방식을 택하였음

[표 3-11] '22년 세종시 읍면동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 구성현황('22.7.1. 기준)

읍면동	분과위원회
조치원읍	기획운영, 교육문화, 마을공동체
연기면	기획운영, 문화마을, 복지체육
연동면	운영기획, 주민복지, 프로그램
부강면	기획예산, 자치, 문화복지, 프로그램, 환경
금남면	기획예산, 마을계획, 문화복지, 문화복지
장군면	총무기획, 문화체육, 사회복지, 마을계획
연서면	주민자치, 교육문화, 행복나눔
전의면	기획예산, 마을안전, 프로그램운영

읍면동	분과위원회
전동면	기획예산, 마을계획, 프로그램운영, 문화·관광·복지
소정면	기획예산, 문화·환경, 마을계획, 프로그램운영
한솔동	기획예산, 교육, 마을공동체, 복지환경, 문화청소년
도담동	환경·경제, 교육문화, 복지, 프로그램운영
아름동	기획운영, 자치문화교육, 마을계획
중촌동	기획운영, 프로그램운영, 마을공동체, 교육·문화·청소년
고운동	기획예산, 마을계획, 프로그램 운영
보람동	기획예산, 마을계획, 프로그램운영, 교육지원·봉사
새롬동	마을공동체·문화, 교육·수익사업·주민환원, 복지·환경·안전
대평동	지혜가슴는분과, 행복을 만드는 분과, 마을을 가꾸는 분과, 모두를 위한 분과
소담동	기획예산, 마을계획, 프로그램운영, 교육지원·봉사
다정동	기획홍보, 마을계획, 프로그램운영
해밀동	기획예산,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운영, 교육문화봉사
반곡동	기획예산, 마을계획, 프로그램운영, 교육지원·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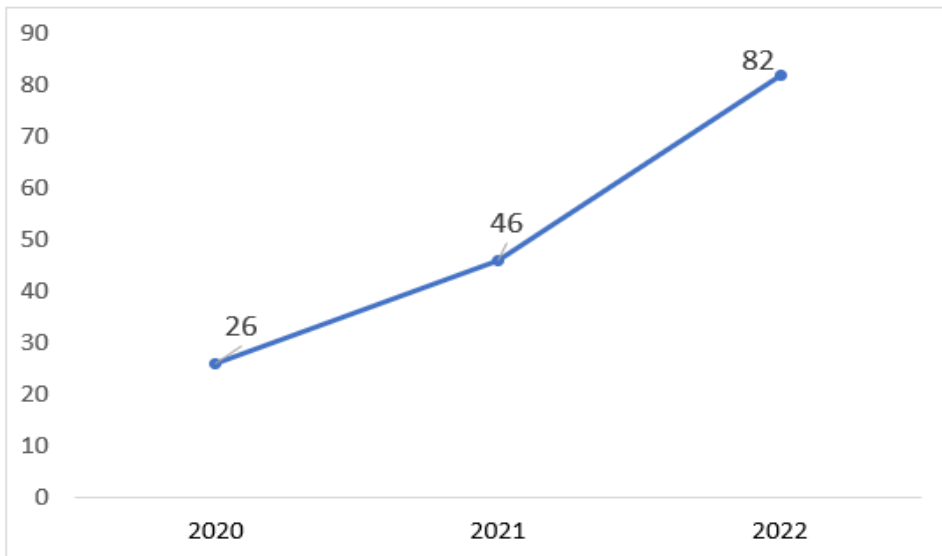
3. 세종시의 마을계획사업 및 제안사업 현황

1) 세종시 마을계획사업 현황

- [그림 3-3]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마을계획사업 제안 건수를 보여 주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임
 - 2020년에는 19개 읍면동에서 육아돌봄, 문화공연, 벼룩시장, 빈농가 리모델링, 치유타발, 역사전시관, 공동체 부엌 조성 등 공동체 공간조성, 사계절 꽃 경관 조성, 보호수 정비, 공원화 사업, 특산물 등 알리판 제작, 걷기 축제, 안전거리 조서, 그늘막 및 조명설치, 안전간행물 제작, 안전지킴이 양성, 산책로 조성, 자연친화적 사업으로 구성됨
 - 2021년에는 20개 읍면동에서 공원화 조성사업, 역사문화탐방 거점, 조형물 제작, 환경지킴이 프로젝트, 주차장 조성, 바람개비길 조성, 마을현황판 제작, 꽃길 조성사업, 역사문화 홍보사업, 쉼터 정비사업, 벼

룩시장, 나눔복지사업, 먹자골목 활성화사업, 횡단보고 그늘막, 힐링라운지 조성, 도서관 특화사업, 힐링걷기 축제, 골목문화 체험, 소통의 장만들기(소통키오스크, 소통 장), 행복한·깨끗한 마을만들기, 자연친화적 마을만들기, 안전지도, 바자회, 횡단보도 정비, 홍보캠페인 등으로 구성됨

- 2022년에는 22개 읍면동에서 82개의 사업이 제안됨[표 3-12 참고]



[그림 3-3] 마을계획사업 증가 추이

○ [표 3-12]는 2022년까지 마을계획사업 제안내용임

[표 3-12] '22년 세종시 마을계획사업

연번	소속	사업내용	연번	소속	사업내용
1	조치원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걷고 싶은 조치원 ▪ 조치원 메타스퀘어 길 추억담기 ▪ 꽃이 피는 우리마을 ▪ 조치원읍 관광지도 제작 ▪ 조치원읍 온라인 축제 2022 	12	도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담동 나눔장터 ▪ 도담 단풍길 벤치 및 보안등 설치 ▪ 도담동 주민참여형 스마트팜 설치 ▪ 도담동 먹자골목 보행교 정비

연번	소속	사업내용	연번	소속	사업내용
2	연기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둘레길 코스개발 및 지도제작 ▪ 연기천변 산책로 조성 	13	아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름 둘레 꽃길 조성 ▪ 아름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 초등학생이 행복한 등하꽃길 만들기 ▪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아름길 마을투어 ▪ 올바르게 걷기 교육 프로그램
3	연동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연동면 우리가 만들자 	14	종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횡단보도 LED설치 ▪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 제천뜰 가재마을 축제 ▪ 주민 힐링라운지 조성 ▪ 종촌도서관 도서구입 지원
4	부강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강면 표식 조형물 설치사업 ▪ 마을별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사업 	15	고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개천 중앙분수대 정원조성 ▪ 주민친화적인 실개천 산책로 조성 ▪ 주민친화적인 실개천 쉼터 조성 ▪ 가락뜰 공원 가로등 디자인 ▪ 고운뜰 공원 주요장소 표지판 설치 ▪ 어린이 공원 활성화 포럼 개최 ▪ 고운 프리티데이 개최
5	금남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포천 살리기 특화사업 ▪ 용포천 등불축제 ▪ 강변 벚꽃 십리길 개선 ▪ 용수천변 꽃동산 만들기 	16	보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람동 힐링걷기 축제 ▪ 복합커뮤니티센터 옥상 주민쉼터 조성 ▪ 보람필 오케스트라 운영 ▪ 누구나 갤러리 운영
6	장군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량 주변 경관개선사업 ▪ 면 소재지 주말장터 조성 ▪ 장군면 홍보물 제작 	17	새롬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롬동 외부순환 둘레길 조성 ▪ 여성친화거리 LED꽃등 설치 ▪ 세대통합 소소한 버스킹 ▪ 나성동 주변 스마트 그늘막 설치

연번	소속	사업내용	연번	소속	사업내용
7	연서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전리 용배수로 가변 꽃길 조성 ▪ 고라니 찾길 사고 방지 ▪ 안전한 반딧불이 마을만들기 	18	대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리마켓(마을장터) 운영 ▪ 대평동 증장기 계획 수립 ▪ 주민 공동 장독대 운영 ▪ 대평동 지도 만들기 ▪ 대평동 로고 만들기
8	전의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하천 예쁘게 사업 ▪ 전의면 꽃길 조성사업 ▪ 깨끗한 마을 만들기 사업 	19	소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뜰 포토존 ▪ 소담 작은 꽃밭 조성 ▪ 사랑뜰 트릭아트 ▪ 소담동 마을기록화 사업 ▪ 소담 상가거리 꽃길 조성
9	전동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소재지 소공원 정비 	20	다정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온새활용공방 ▪ 배달용 오토바이 안전운전 캠페인 ▪ 가온마을 문화유산 교양강좌 및 콘텐츠 제작 ▪ 청소년 성교육프로그램 운영 ▪ 가온 현혈릴레이 ▪ 가온음자리표
10	소정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 ▪ 소정의 소리함 ▪ 꽃단장 새단장 우리마을 ▪ 우리마을 알리기 월말장터 	21	해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변봉투 배부 부스 설치 운영 ▪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11	한솔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여름밤의 꿈 '가족캠핑카 축제' ▪ 한솔동 자전거 거치대 설치 ▪ 장애인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22	반곡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기로운 반곡생활 ▪ 반곡동 소화행 ▪ 수루배 마을의 아름다운 꽃길 ▪ 가족과 함께하는 괴화산 추억 만들기

2) 세종시 주민제안사업 현황

○ [표 3-13]은 2022년 세종시 읍면동별 주민제안사업 제안 현황을 보여줌

[표 3-13] '22년 세종시 주민제안사업

연번	소속	사업내용	연번	소속	사업내용
1	조치원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30개 사업 	12	도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 그늘막 설치 우범지역 예방조명 설치 복컴누수 방지 및 녹화조성, 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 휴식시설보수, 먹자골목 블록교체(파손) 단풍길 유지보수, 보행로 단차 개선 식제사업 등 15건
2	연기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시설계 용역 안전취약지역 보안 등 정비 및 방범용 CCTV 설치 2개사업 마을안길 아스콘포장 3개사업 옹벽 설치 및 가드레일 설치 2개사업 수로관 확장 및 도로농로 포장 5개사업 배수로 및 수로관정비 10개사업 사면유실보수 등 총 26개사업 	13	아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름도서관 환경개선, 달빛정원 포토존 설치 및 주민휴게공간 조성 복컴 공간리모델링 민원인 공기정화시설 설치, 아름동 가이드북 등 7건
3	연동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협의회 결정안 선호도 조사 결정안 	14	종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꽃길조성 및 화분설치 등 2건, 무궁화동산정비 및 그린쉼터 조성 등 2건 복컴내 공용전산기기 및 양심우산 비치 등 2건 향기로운 종촌동 랜드마크, 안심환경 조성, 힐링라운지 꾸미기 3건 총 11건

연번	소속	사업내용	연번	소속	사업내용
4	부강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곡2리 세천 정비사업 등 4개 사업 ▪ 갈산2리 영농여건 개선공사 등 23개 사업, 총 27개 사업 	15	고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컴 실내 공기질 개선, 고운휴식 조성, 핸드레일 설치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 6건, 고운마음 우체통 정비 1건
5	금남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행사(제3회 금강변 벚꽃축제) ▪ 감성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42개 사업 ▪ 영곡2리 마을길 확장공사 5개 사업 등 48개 사업 	16	보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CCTV 설치, 스마트 발열체크 시스템 구축, 디지털알림판 설치, 도서관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예술행사 ▪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및 보람동 소통거리 조성, LED 로고젝터 설치 ▪ 실내면지 저감사업, 복컴 어린이 놀이시설 쉼터 조성 및 에어커튼 설치, 가로변 화분설치 및 식재, 자전거 전동킥보드 거치대 설치
6	장군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계1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23개 사업 	17	새롬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순환 들레길 환경정비, 자연조형미술품 설치, 복컴내 주민휴게공간 조성 등 6건
7	연서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촌2리 마을안길 확장 등 3개 사업 ▪ 월하3리 배수로정비 등 23개 사업 ▪ 총 26개 사업 	18	대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그늘막 설치 등 28개 사업
8	전의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협의회 2차 회의 후 최종결정 	19	소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심횡단보도 만들기, 경관정비 및 방역관리,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상가거리 경관조명, 외

연번	소속	사업내용	연번	소속	사업내용
					벽 LED 설치, 지역문화행사지원, 주민자치회 사무실 집기구입, 외부 홍보게시판 설치 등 13건
9	전동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송1리 용배수로 정비 등 6개 사업 보덕1리 마을안길 정비 등 29개 사업 	20	다정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둘레길 및 꽃길 조성 사업, 제천재생사업, LED 현수막 등 5건
10	소정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정리 배수로 및 아스콘, 도로확장, 마을안길정비 13건 마을진입로 확장공사 1건 등 14건 	21	해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늘막 설치, 불법주정차 CCTV 설치, 가로변 화분설치 등 3건
11	한솔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가 한솔동이다 노을길 내 조형물 설치 청소년 방송놀이터, 한솔문화행사 개최 화단조경 및 그늘막 제작행정복지센터 노후시설 관리 건강관리 기계설치 및 주방시설교체 유모차 소독기 및 로고제작 등 13건 	22	반곡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늘막 설치, 주민휴게공간 조성, 복کم 광장 꽃길 조성 및 체육관 전광판 설치,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 집기 구입 등 8건

3) 세종시 주민자치 프로그램 현황

○ [표 3-14]는 '22년 세종시 주민자치프로그램 현황임

[표 3-14] '22년 세종시 주민자치프로그램 현황

읍면동	프로그램 수	프로그램명
조치원읍	21	웰빙요리, 흙바리스타, 우쿨렐레, 명상기체조(취추건강운동), 홈베이킹, 생활영어(회화), 에어로빅, 캘리그래피, 줌바댄스, 실버요가, 기타, 라인댄스, 민화, 명리학, 오카리나, 한방꽃차소믈리에, 부동산 생활법률, 풍물, 노래교실, 일러스트 수채화, 스마트폰배우기

읍면동	프로그램 수	프로그램명
연기면	11	가야금, 홈패션, 기타, 서예, 골프, 풍물, 노래교실, 요가, 댄스, 탁구, 배드민턴
연동면		해당없음
부강면	12	노래교실, 몸펴기 생활운동, 문인화, 서예교실, 에어로빅, 기타, 풍물, 필라테스, 밴드, 컴퓨터, 제과제빵, 바둑
금남면	17	서예교실, 서예교실A, 서예교실B, 한문교실, 금남노래교실, 에어로빅, 한국무용, 삼성노래교실, 풍물교실(초급), 풍물교실(고급), 척추건강(1), 척추건강(2), 풍물교실(삼성), 난타교실, 색소폰, 꽃차만들기A, 꽃차만들기B
장군면	12	노래교실, 퓨전사물놀이, 난타교실, 풍물교실, 건강라인댄스, 서예교실, 몸펴기생활운동, 색소폰교실, 요가, 보테니컬아트, 홈패션, 드림교실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해당사항 없음
한솔동	29	보태니컬아트(초), 일러스트수채화, 프랑스자수, 서예교실, 수채화, 스케치교실, 반찬만들기, 어린이요리교실, 바리스타, 파크골프(실기/이론), 건강댄스, 라인댄스, 밸리댄스, 요가(주간), 요가(저녁), 감성영어, 사진반, 영어회화, 원어민중국어, 원어민영어(주간), 원어민영어(야간), 우쿨렐레, 수필창작, 노래교실, 해금, 난타교실, 기타교실(초), 기타교실(중), 바이올린
도담동	25	건강댄스, 게이트볼, 난타, 노래교실(발라드), 노래교실(트로트), 라인댄스1, 라인댄스3, 라틴댄스, 모던댄스, 바둑, 사진, 서예, 서양화, 오카리나, 요가1, 요가2, 춤바댄스, 중국어입문, 통기타, 풍물, 필라테스, 하모니카, 한국무용, 부동산·생활법률, 스마트폰활용법
아름동	15	건강댄스, 난타(중급), 노래교실(A), 노래교실(B), 라인댄스, 보태니컬아트, 사교댄스(초급), 사교댄스(중급), 서예, 요가(B), 요가(시니어), 캘리그라피, 통기타(야간), 플라워데코, 합창단
종촌동	30	퓨전난타, 난타(야간), 우쿨렐레, 통기타, 핑거반주 통기타, 다이어트장구, 영어회화, 중국어, 명리학과 작명학, 수채화, 보태니컬아트, 홈패션, 캘리그라피, 유화, 서예, 데생, 문인화, 그림책, 읽기, 프랑스자수, 플라워데코, 미술놀이, 라틴춤바댄스, 시니어 건강댄스, 에어로빅, 라인댄스, 아침요가A, 아침요가B, 점심요가A, 점심요가B, 저녁요가A

읍면동	프로그램 수	프로그램명
고운동	19	문인화, 보태니컬아트, 수채화, 연필화, 서예, 통기타, 가정헤어 컷, 우쿨렐레(초급), 드럼, 캘리그래피, 사진반, 요가, 다이어트홈트, 기초영어회화, 중국어회화, 풍물, 퓨전난타, 실버요가, 바리스타
보람동	10	난타, 유화, 보태니컬아트, 캘리그래피, 오카리나, 척추건강운동, 건강체형만들기, 풍물, 노래교실, 춤바댄스
새롬동	14	라인댄스, 유아발레(5-7세), 어린이발레(8-10세), 키즈발리댄스(7-10세), 유소년골프(7-12세), 민화, 캘리그래피, 우쿨렐레, 프랑스자수, 플라워라이프, 바둑(65세이상), 마크라메, 사물놀이, 탁구
대평동	16	실버필라테스, 요가1반, 요가2반, 요가3반, 요가4반, 기초영어, 필라테스, 통기타, 꽃꽂이, 캘리그래피, 동영상제작, 서양화기초, 보태니컬아트, 수채화, 뜨개질, 아랑고고장고
소담동	9	요가(1반), 요가(3반), 우쿨렐레, 통기타, 보태니컬아트, 캘리그래피, 명리학, 여행영어(초급), 여행중국어(초급)
다정동	20	건강댄스, 꽃꽂이, 데생, 민화, 발리댄스, 보태니컬아트, 서예, 수채화1, 수채화2, 영어회화, 요가, 요가(시니어), 우쿨렐레1, 우쿨렐레2, 춤바댄스, 척추건강운동, 캘리그래피1, 캘리그래피2, 통기타, 프랑스자수
해밀동	13	게이트볼, 노래교실, 뜨개질, 부모수학교육, 성인미술, 영어회화(초급), 요가1, 요가2, 우쿨렐레(초급), 우쿨렐레(중급), 캘리그래피, K-pop댄스, 성인현대무용
반곡동	9	요가, 척추건강, 우쿨렐레, 통기타, 캘리그래피, 영어, 손뜨개, 명리학, 부동산경공매

4. 세종시의 주민총회 현황 분석

1) 지난 주민총회의 성과와 한계

- 2019년에는 4개 면·동(도담동, 한솔동, 장군면, 부강면)을 중심으로 주민총회(11.30~12.14)가 이루어짐. 주민자치회가 확산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홍보에 주력했고, 주민투표에 대한 경험을 쌓는 시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주민총회 첫 시작 시기로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되어 기획·운영하게 된 경험 측면에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즉, 다수의

- 주민의 참여 속에서 주민총회의 문화를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처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참석한 주민들의 주민총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았으며 투표집계 방식에서도 그 한계점이 드러남
 - 2020년에는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10개 면·동(연동면, 부강면, 장군면,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한솔동, 도담동, 종촌동, 새롬동)을 중심으로 주민총회(7.2~7.18)가 이루어짐. 10개 면동의 전체 참여인원은 2,665명이 신청했으며 2,386명의 유효투표가 산정됨
 -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유권자 기준 1~2% 내외 참여율을 보였으며, 부강면이 4.9%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면동 자체적으로 정한 성원 기준은 모두 충족했고, 평균 투표율 2.51%로 나타남
 - 성별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면 지역의 경우 노년층의 참여가 많았고, 젊은 층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특성을 보임¹⁶⁾
 - 주민제안사업, 마을계획사업을 살펴보면 면 지역은 주로 마을경관 개선, 환경정비, 휴식공간 조성 등 마을의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된 사업이 주민의 선호가 높았으며, 동 지역은 지역주민 간 교류 및 화합 증진, 지역 경제활성화 및 문화·여가 향유와 관련한 사업이 우선순위를 보이는 경향을 보임
 - '20년도의 주요성과로는 주민총회 관련 안내책자 배포, 가두홍보 등 주민의 참여를 위한 노력(코로나 19로 인한 활동제약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투표, SNS 회의 적극활용)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인지 및 관심도가 증가함. 그리고 이·통장, 입주자대표회, 학교운영위 등 타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주민총회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주민참여 확대의 폭이 커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마을계획 등 의제발굴을 위한 마을 자원조사, 주민의견수렴(숙의과정) 과정¹⁷⁾이 부족하였을 뿐 아니라 실무적 지원이 부족했음. 따라서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와 숙의과정 등을 통한 의제를 다양화하고, 참여자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지원

16) 도담동은 학교 운영위원회 협조로 높은 학생참여율을 기록함(13.7%)

17) 총회 참여 주민이 사전에 주요 의제를 구체적으로 숙지하고 자유롭게 의견 개진 및 숙의·토론할 수 있는 과정이 부족함

강화(멘토 멘티지원, 교육,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주민총회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¹⁸⁾ 등을 병행해 주민참여의 양과 질적 개선이 요구됨

○ 2021년에는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20개 면·동을 중심으로 주민총회(6.19~8.7)가 이루어짐. 주민투표방식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면지역의 경우 분산투표 및 우편투표 등 오프라인 방식, 읍·동 지역은 대부분 온라인 투표 원칙 분산투표를 병행하여 진행하였음. 그리고 전체 참여인원은 6,562명 유효표는 5,768명에 해당함

- 투표율 결과 '20년 10개소 2.5% → '21년 20개소 2.7% (0.2%증가)로 증가하였으며 면 지역 평균 3.67%, 읍·동지역 평균 1.6%에 달함¹⁹⁾

○ 주민제안사업, 마을계획사업을 살펴보면 면 지역은 주로 마을경관 개선, 노후시설 보수 사업을 선호했으며, 읍·동 지역은 문화·여가 향유 및 생활환경 조성, 그늘막 및 휴식공간 조성 등 주민편의 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

- '21년도의 주요성과로는 '20년과 비교해 읍면동별 보다 특색있는 내용과 방식으로 주민청회를 진행함. '20년에는 개표와 결과발표위주의 획일적 진행이 주였다면, '21년에는 공연상영, 학생발표영상 및 총회 참관, 분과장 주도의 진행 등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함. 그리고 찾아가는 설명회, 사전투표인단 모집, 길거리 홍보 등 적극적 홍보로 학생참여를 포함 주민참여가 확대('20년 2.5% → '21년 2.7%)됨²⁰⁾

- 한계점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 19의 지속으로 인한 주민숙의 과정에서 미흡함이 나타남. 그리고 선정된 마을사업에 대한 주민선호도 및 대표성 부분에 한계점이 여전히 나타남²¹⁾

18) 세종시에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를 위한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고 읍면동은 지역특성에 맞는 자발적 홍보 활동을 촉진해야 할 것임. 그러나 홍보 과정 등에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교육 진행 및 지도·감독 철저할 필요가 있음

19) 면지역 최저 투표율은 전의면이 1.9%로 나타났으며 소정면 6.1%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음. 그리고 읍·동 최저 투표율은 도담이 0.83%로 나타났으며 한솔 3.4%로 가장 높게 나타남

20) 주요성과는 연서초 학생들의 '고라니의 찾길 사고방지'사업, 사업 실현을 위한 펀딩 및 캠페인 실시하게 된점을 들 수 있음. 이를 통해 세종시 국회의원을 통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됨

21) 향후 보완할 점으로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 지원을 통한 총회 우수사례 벤치마킹 기회 제공, 원활한 총회 운영을 위한 주민총회 매뉴얼 보완 및 사전교육 강화, 주민자치 인식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상시 홍보 추진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임

2) 22년 주민총회 결과와 시사점

(1) 개요

- 추진목적: 지역 주민이 스스로 발굴한 마을 의제를 더 많은 주민과 함께 공유·숙의하고 결정하는 참여와 공론의 장
- 개최대상: 22개 전 읍면동
- 개최기간: 2022.6.21(화) ~ 8.6(토)

[표 3-15] '22년 주민총회 투표기간 및 개표행사

읍면동	투표기간	개표행사	읍면동	투표기간	개표행사
조치원읍	7.18.~7.22 / 7.29.	7.25.	도담동	7.25.~7.29 7.31.~8.5.	8.6
연기면	7.27.~7.29.	7.29.	아름동	7.27.~7.29.	7.29.
연동면	7.22.	7.22.	종촌동	7.18.~22. 7.25.~29.	7.30.
부강면	7.18.~7.22 7.21.~7.27	7.29.	고운동	7.5.~7.15. / 7.22.	7.22.
금남면	7.6.~7.8..	7.13.	보람동	6.13.~6.17. / 6.21.	6.21.
장군면	6.20.~6.21 / 6.24.	6.24.	새롬동	7.20.~7.24.	8.3.
연서면	7.18.~7.19.	7.19.	대평동	7.11.~7.17. / 7.23.	7.23.
전의면	7.11.~7.15. / 7.22.	7.22.	소담동	6.16.~6.22. / 6.25.	6. 25.
전동면	7.8.	7.8.	다정동	6.29~7.8.	7.9.
소정면	7.18.~7.19.	7.19	해밀동	7.11.~7.15.	7.20.
한솔동	7.18.~7.21.	7.21.	반곡동	7.25.~7.28. / 8.5.	8.5.

○ [표 3-16]은 읍면동별 주민총회 참여인원 현황을 보여주고 있음

[표 3-16] '22년 주민총회 참여현황

읍면동	참여인원	읍면동	참여인원
조치원읍	473	도담동	740
연기면	125	아름동	277
연동면	133	종촌동	366
부강면	170	고운동	397
금남면	236	보람동	78
장군면	170	새롬동	317
연서면	214	대평동	79
전의면	84	소담동	195
전동면	125	다정동	432
소정면	161	해밀동	139
한솔동	350	반곡동	289
		합계	5,550

○ 면지역 평균 157명, 읍·동지역 317명 투표 참여하였으며 22개 읍면동 평균 투표율 2.21%을 보임. 아울러 코로나 19 상황 및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였음

[표 3-17] '22년 주민총회 투표운영방식

구분	읍면동	비고
온라인 투표	(1개소) 새롬	투표인단 모집 후 선관위 URL 투표
현장 투표소	(6개소) 연기·연동·장군·연서·전동·소정	일정 기간 투표소 운영
온라인, 투표소 병행	(15개소) 조치원·부강·금남·전의·한솔·도담·아름·종촌·고운·보람·대평·소담·다정·해밀·반곡	온라인 투표와 현장투표 동시 운영

(2) 추진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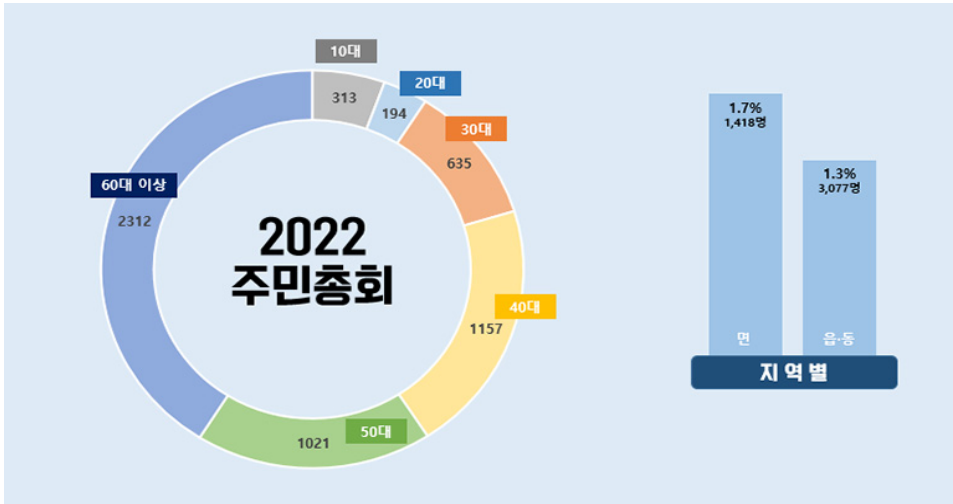
- [표 3-18]은 주민총회 결과 주요지표를 보여주고 있음. 사업예산의 경우 예산편성시 배정액 내에서 조정함

[표 3-18] '22년 주민총회 결과 주요지표

읍면동	인원(명)			투표 방법	성원 기준	주요 의제 선정 현황		
	신청 인원	참여 인원	투표율 (투표자수/ 기준인구)			의제	사업 수 (개)	예산(천원)*
계	6,342	5,550				계획사업	115	1,815,950
						제안사업	368	9,562,191
조치원읍	486	473	1.1% (486/44,427)	온라인, 투표소	0.5%	계획사업	9	166,700
						제안사업	31	1,412,256
연기면	125	125	4.6% (125/2,715)	현장 투표	1%	계획사업	2	24,000
						제안사업	32	597,000
연동면	133	133	4.3% (133/3,092)	투표소	2.5%	계획사업	2	27,000
						제안사업	18	605,000
부강면	206	170	3% (170/5,554)	온라인 찾아가 는투표	1%	계획사업	3	62,400
						제안사업	26	890,895
금남면	300	236	2.69% (236/8,761)	온라인, 투표소	1%	계획사업	8	107,600
						제안사업	32	1,024,400
장군면	170	170	0.8% (170/43,272)	투표소	1%	계획사업	4	72,000
						제안사업	22	730,000
연서면	214	214	2.8% (214/7,528)	투표소	1%	계획사업	4	55,000
						제안사업	29	717,000
전의면	100	84	1.5% (84/5,531)	온라인, 투표소	1%	계획사업	5	56,000
전동면	126	125	3.74% (369/3,342)	현장 투표	2%	계획사업	4	27,000
						제안사업	25	617,000
소정면	161	161	7% (161/2,223)	현장 투표	2%	계획사업	2	20,000
						제안사업	12	419,000
한솔동	377	350	2.5% (350/14,030)	온라인, 투표소	1%	계획사업	5	78,000
						제안사업	14	250,400

읍면동		인원(명)			투표 방법	성원 기준	주요 의제 선정 현황		
		신청 인원	참여 인원	투표율 (투표자수/ 기준인구)			의제	사업 수 (개)	예산(천원)*
도 담 동	도담	685	620	3.0 (620/20,090)	온라인, 투표소	1%	계획사업	8	126,660
							제안사업	12	240,000
	어진	140	120	1.6% (120/7461)		1%	계획사업	3	109,000
							제안사업	5	80,000
아름동		294	277	1.2% (277/23,287)	온라인, 투표소	0.5%	계획사업	5	98,000
							제안사업	9	156,000
종촌동		407	366	1.7% (366/21,794)	온라인, 투표소	1%	계획사업	7	93,000
							제안사업	10	235,000
고운동		422	397	1.15% (397/34,546)	온라인, 투표소	1%	계획사업	10	99,700
							제안사업	6	10,400
보람동		171	78	0.547% (78/14,249)	온라인, 투표소	0.5%	계획사업	5	85,000
							제안사업	12	234,340
새 림 동	새림	361	317	1.1% (317/29746)	온라인	0.5%	계획사업	4	180,000
							제안사업	6	240
	나성						계획사업	4	75,000
							제안사업	8	280,000
대평동		96	79	0.6% (79/11,301)	온라인, 투표소	0.5%	계획사업	2	37,000
							제안사업	14	181,700
소담동		292	195	1.2% (195/16,248)	온라인, 투표소	1%	계획사업	5	54,890
							제안사업	15	300,060
다정동		520	432	1.53% (432/28,170)	온라인, 투표소	1%	계획사업	6	81,000
							제안사업	10	209,500
해밀동		164	139	1.60% (139/8,647)	온라인, 투표소	1%	계획사업	5	18,000
							제안사업	7	48,000
반곡동		392	289	1.6% (289/17,994)	온라인, 투표소	0.5%	계획사업	3	63,000
							제안사업	13	324,000

- [그림 3-4]는 주민총회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총 투표참여 신청인원은 6,342명이며 유효표는 5,550명임. 유효표 기준으로 분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투표 참여 신청인원 기준으로 분석함



[그림 3-4] '22년 주민총회 현황

-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기준 인구수 대비 투표율은 읍·동지역에 비해 면지역이 높게 나타남. 이중 소정면이 7%로 최고 투표율을 보임. 그리고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참여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표 3-19] '22년 주민총회 참여 성별분석

구분	남	여	합	구분	남	여	합
조치원읍	231	255	486	도담동	240	500	740
연기면	48	77	125	아름동	124	170	294
연동면	72	61	133	종촌동	122	244	366
부강면	104	102	206	고운동	151	246	397
금남면	116	120	236	보람동	36	42	78
장군면	77	93	170	새롬동	156	161	317
연서면	125	89	214	대평동	51	48	79
전의면	51	49	100	소담동	63	132	195
전동면	82	43	125	다정동	179	253	432
소정면	92	69	161	해밀동	63	76	139
한솔동	128	222	350	반곡동	98	191	289
				계	2,409	3,243	5,632

-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의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특기할 만한 것은 투표에 참여한 전체 연령 중 10대의 참여가 313명으로 전년 대비 1.58배 가량 증가함

[표 3-20] '22년 주민총회 참여 연령별 분석

읍면동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5,632	313	194	635	1,157	1,021	2,312
조치원읍	486	2	11	37	119	113	204
연기면	125	2	4	2	4	20	93
연동면	133	-	3	5	3	23	99
부강면	206	1	4	6	12	43	140
금남면	236	4	4	16	15	25	172
장군면	170	0	7	6	18	36	103
연서면	214	2	6	20	16	30	140
전의면	100	0	2	4	10	34	50
전동면	125	0	0	1	3	25	96
소정면	161	0	3	8	7	30	113
한솔동	350	3	15	31	87	76	138
도담동	740	18	50	87	141	143	301
아름동	294	13	17	31	94	62	77
중촌동	366	14	14	66	78	44	150
고운동	397	5	16	73	117	52	134
보람동	78	0	3	12	18	21	24
새롬동	317	1	3	74	146	63	30
대평동	79	0	5	10	15	17	32
소담동	195	1	6	55	52	34	47
다정동	432	244	7	36	43	34	68
해밀동	139	1	6	21	61	18	32
반곡동	289	2	8	34	98	78	69

○ [표 3-21]은 주민총회 결과 마을계획 및 주민제안 사업중 1순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보여줌

[표 3-21] '22년 주민총회 결과 마을계획 및 주민제안 1순위 사업

읍면동	마을계획 1순위 사업	주민제안 1순위 사업
조치원읍	▪ 조치원읍 BI 선정 및 랜드마크(상징물) 설치	▪ 변암1리 농로 개설 공사
연기면	▪ 제비마을 만들기	▪ 놀왕1리 위협도로 정비
연동면	▪ 안전하고 편안한 백천 제방 산책길 조성	▪ 내판2리 농로 포장
부강면	▪ 깨끗한 거주환경 조성사업	▪ 갈산2리 영농여건 개선공사
금남면	▪ 금남10경 선정 및 홍보표지판 제작	▪ 감성리 마을안길 안전웬스 설치
장군면	▪ 가로수길 조성사업	▪ 22개 마을사업 추진여부 승인
연서면	▪ 계절 꽃 연서 꿈길 만들기	▪ 고북1리 농로포장 등 29개 사업
전의면	▪ 분리수거장 설치사업	-
전동면	▪ 마을 분리수거대 설치	▪ 노장1리 농로 정비사업 등 25개
소정면	▪ 소정면 입구 진입도로 경관개선	▪ 대곡2리 마을안길 정비
한솔동	▪ 한솔동 백제문화축제 개최 및 예술제 개최	▪ 횡단보도 LED 바닥 신호등 설치
도담동	▪ (도담) 제2회 도담동 나눔장터 개최 ▪ (어진) 어진동 랜드마크 특화사업	▪ (도담) 도담동 단풍길 유지보수 ▪ (어진) 주민산책로 분수설치
아름동	▪ 아름 에코 플리마켓(친환경 나눔장터)	▪ 아름동 휴식과 힐링 문화 공간 조성사업
종촌동	▪ 제천뜰 가재마을 축제	▪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고운동	▪ 주민 친화적인 실개천 산책로 조성	▪ 실개천 휴게공간 조성
보람동	▪ 보람 사랑 마켓	▪ 횡단보도 무더위 그늘막 설치
새롬동	▪ (새롬) 새롬동 외부순환둘레길 조성 ▪ (나성) 나릿재 장터	▪ (새롬) 장군산 둘레길 등 휴먼지 털이기 설치 ▪ (나성) 스마트 그늘막 설치
대평동	▪ 대평 힐링라운지 조성	▪ 스마트 그늘막 설치
소담동	▪ 주민 및 청소년 놀이 공간 조성	▪ 소담동 문화 공간 조성
다정동	▪ 다정한 축제	▪ 다정동 둘레길 조성사업
해밀동	▪ 체육공원 대운동장 그늘막 설치	▪ 안심귀갓길 조성 및 LED 벽화조성
반곡동	▪ 반곡동 농산물 직거리 장터	▪ 반곡동 수변공원 꽃길 및 그늘막 쉼터 환경조성

○ [표 3-22]는 2023년까지 마을계획사업 제안내용임

[표 3-22] '23년 세종시 마을계획사업

연번	소속	사업내용	연번	소속	사업내용
1	조치원읍	조치원읍 BI선정 및 랜드마크 설치, 디지털 종합안내지도 설치, 안전한 버스정류장, 방치된 공간활용, 동네 환경지킴이, 공용자전거 및 키보드 이용문화 개선 등 9건	12	도담동 (어진동)	도담동 나눔장터 개최, 근린공원 특화사업, 단풍길 조성 지킴이 양성, 담배꽂초 무단투기 방지 LED 설치, 청소년 실외놀이 공간 구축, 도담동 주민자녀 진로계획과 입시 안내사업, 구석구석 마을 TV 제작 등 8건 어진동 랜드마크 특화사업, 도심지 축제 등 3건
2	연기면	제비마을 만들기, 연기천변정비 등 2건	13	아름동	아름 에코플리마켓, 아름뜰 공원 치유의 숲길 조성, 아름 청소년 행복 공간 고성, 순환자원 회수기 설치 등 5건
3	연동면	안전하고 편안한 백천 제방산책길 조성, 연동면 명소 사진 이벤트 및 콘테스트 개최 등 2건	14	종촌동	제천뜰 가재마을 축제, 종촌동 예술제 및 제천들 공연문화 체험콘텐츠 제공, 지역작가 상생 기반 공실 미술관 운영, 주민과 함께하는 가재마을 종촌동 뿌리 찾기, 가재마을 행복담기 마을신문제작, 살림 톺아보기 참고서 제작 등 7건
4	부강면	깨끗한 거주환경 조성사업, 마을과 사람, 역사를 잇다, 함께 걷고 싶은 꽃길 사업 등 3건	15	고운동	주민친화적 실개천 산책로 조성, 횡단보도 LED 설치, 고운동 지킴이 주민양성, 고운 프리티데이 시즌 2, 폐의약품 먹지말기 운동, 고운동 BI, 고운동 홍보를 위한 SNS홍보단 구성, 고운말 스티커를 고운동에 등 10건

연번	소속	사업내용	연번	소속	사업내용
5	금남면	금남10경 선정 및 홍보 표지판 제작, 용수천 꽃길 및 건강표지판 제작, 구절초길 제작, 할머니 인생레시피, 다문화아이들을 위한 사업 등 8건	16	보람동	보람동 힐링걷기 축제, 보람에 ON콘서트, 보람 사랑 마켓 개최, 주민공유 오피스 사업 등 5건
6	장군면	가로수길 조성,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사업, 마을안내판 설치사업, 주말장터 운영 및 문화행사 개최사업 등 4건	17	새롬동 (나성동)	새롬동 외부순환 둘레길 조성, 장군산 한바퀴, 안락의자 트리허그 따숨이, 마을독서 및 문화체험 부스 설치 등 5건 나릿재 장터, 빛가람 수변공원 주민 버스킹 한마당, 나성지역 역사유적 탐방지도 만들기, 나성동 포토존 등 4건
7	연서면	연서 마을줍깅, 연서 청춘 스쿨프로젝트, 계절꽃 연서 꿈길 만들기, 도화랑이화랑 고복마켓 운영 등 4건	18	대평동	대평 힐링라운지 조성, 대평한마당 운영 등 2건
8	전의면	분리수거장 설치사업, 깨끗한 도로가꾸기, 전의 스토리 표지판, 전의 면꽃길 조성사업, 그린 전의 프리마켓 등 5건	19	소담동	주민 및 청소년 놀이 공간 조성, 소담한 낭만 소품 프리마켓, 가로수 트리허그, 소담동 2030 중장기 마을계획 포럼, 소담소담 행복소식지, 활동영상 발간 등 5건
9	전동면	마을분리수거대 설치, 건강증진 벚꽃로드 안내판 제작, 면소재지 소공원 정비, 마을회관 도색 정비 등 4건	20	다정동	다정한 축제, 가온APP, 가온마을문화유산 교양강좌 및 콘텐츠 제작, 청소년가ON, 돌봄마을콘서트 공모전, 너도가치 주민자치 캠페인 등 6건
10	소정면	소정면 입구 진입도로 경관개선, 코스모스 꽃길 조성	21	해밀동	체육공원 대운동장 그늘막 설치, 복잡한 길 안내 표지판 제작, 해밀마을 은빛 교사단 & 돌봄서비스, 김치없이 못살아, 돌아와줘 컵온(cup one) 등 5건

연번	소속	사업내용	연번	소속	사업내용
11	한솔동	한솔동 백제문화축제 개최 및 예술제 개최, 재활용 벤딩머신 설치, 시니어 마트 디지털 사용능력 향상 교육, 작은 미술관 및 마을합창단운영 등 5건	22	반곡동	반곡동 수변공원 꽃길 및 그늘막 쉼터환경 조성, 안전한 거리 만들기, LED 로고젝터 설치 바닥 조명등, 자전거 거치대, 북컴화단 계절꽃 식재, 그늘막 설치, 유모차 소독기 및 스트레스 측정기, 북컴 건강계단 및 대회의실 빔프로젝트 설치, 화단조성 등 13건

○ [표 3-23]은 2023년에 제안된 세종시 읍면동별 주민제안사업 현황을 보여주고 있음

[표 3-23] '23년 세종시 주민제안사업

연번	소속	사업내용	연번	소속	사업내용
1	조치원읍	변암1리 농로개설 공사, 제초작업, 차선도색, 모두의 놀이터 관리,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표지판 설치,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용 CCTV 설치, 소교량 확장공사 및 배수로 정비공사, 쉼터 및 잔디포설공사, 아스콘 등 공사 31건	12	도담동 (어진동)	단풍길 유지보수 및 파사드 설치, 먹자골목 주변 조경정비, 도담동 방송국 시설 개선, 수변공원 포토존 설치, 무궁화동산 유지관리, 북컴주변 조경유지관리, 브랜드 및 캐릭터 제작, 식재 및 유지관리 등 12건 산책로 분수 설치, 통학로 정비, 점자 안내판 설치 등 5건
2	연기면	안전취약지역 보안등 신설, 위험도로정비, 가드레일 설치, 농로 및 도로 포장, 배수로 정비, CCTV 설치, 상수도 설치, 수도관 정비, 구거정비, 마을안길 확장, 아스콘 포장 등 32건	13	아름동	휴식과 힐링 문화공간 조성, 보행로 주변환경개선, 도서관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공기청정기, 살균시스템 등), 길거리 음악회 활용을 위한 음향장비 구입, 달빛 포토존 설치사업, 미디어 교육 시설 설치 사업, 홍보게시판 등 9건

연번	소속	사업내용	연번	소속	사업내용
3	연동면	농로포장 및 정비, 배수로 정비, 마을안길 정비, 보식, 제방도로 포장, 농로정비, 쉼터설치 CCTV 설치 등 18건	14	종촌동	친환경 꽃길 조성, 그늘막 설치, 힐링라운지 조성 및 조경, 그린쉼터, 향균 안심 환경조성, 무궁화동산 정비 등 10건
4	부강면	세천 정비공사, 영농여건 개선공사, 배수시설, 구거 준설, 도랑 정비, 통행환경 개선공사, 주거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공사, 마을안길 포장, 농로포장 공사 등 26건	15	고운동	실개천 휴게공간 조성, 장애인을 위한 자동문 설치, 복지사각 소통창구 확대 및 정비, 복검 CCTV증설, 전자안내판 설치, 전기배전함 시트지 부착 등 6건
5	금남면	안전웬스 설치, 배수로 정비 공사 등 32건	16	보람동	취약지역 집중방역관리, 화분 설치 및 계절꽃 식재, 도서관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열람실 리모델링 공사 및 컴퓨터 교체, 유아자료실 무인반납기 설치, 횡단보도 바닥 보행신호등 설치 및 그늘막 설치,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비품지원, 복검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등 12건
6	장군면	배수로 정비, 법면정비, 마을안길 포장 및 정비, 수로간 교체, 주민편의 시설 설치, 농로포장 등 22건	17	새롬동 (나성동)	장군산 둘레길 등 휴먼지 털이기 설치, 새롬동 꽃길 조성, 그늘막 디자인 덮개 설치, 어린이 도서관 리모델링, 안전 로고젝트, 자원봉사자 운영, 주민자치 프로그램 장비구입, 리플렛 등 8건 스마트 그늘막 설치, 복검 꽃길 조성, 복검 체육관 등 전광판, 바닥조명 설치, 주민자치 운영집기 구입 등 8건

연번	소속	사업내용	연번	소속	사업내용
7	연서면	배수로 정비 및 도로확포장, 마을안길확포장, 가드레일설치, 농로포장, 구거정비, 주민쉼터조성 및 농로개선, 구거정비, 아스콘덧씌우기, 교량확장 등 29건	18	대평동	스마트 그늘막 설치,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설치, 바닥신호등 설치, 도서관도서확충, 주차요금 무인정산기 설치, 놀이터 및 민원대기실 환경개선, 주민자치 프로그램 물품구입, 횡단보도 대기를 위한 노란발자국 설치, 대기환경정보 안내전광판, 복컴안내도로 이정표 설치, 점자식 안내판 설치 등 13건
8	전의면	-	19	소담동	소담동 문화 공간조성, 개방형 주민휴게공간 설치, 테마공원 조성, 스마트 그늘막 설치, 경관정비, 조형물설치, 안내조형물, 외벽 및 보도 발광조형물 설치, 목재시설물 유지관리, 계절꽃 식재 및 화분관수, 지역문화행사 지원등 15건
9	전동면	농로 정비사업 등 25건	20	다정동	둘레길 조성사업, 건강하고 안전한 클라이밍장 만들기, 근린공원 산책길 정비, 포토존 설치, 공유주방, 문화전시 공간 조성, 복컴 바닥조명등 설치, 안심하고 걷는 횡단보도 등 10건
10	소정면	배수로 정비공사,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마을안길 정비공사, 마을쉼터 조성공사, 하천정비공사 등 12건	21	해밀동	안심귀갓길 조성 및 LED 벽화조성, 가을향기 달빛음악회, 보행교 로고젝터 설치, 주민을 위한 토크콘서트 개최, 공동생활 불편함 개선 대회 개최, 주민들 한 책 읽기, 목줄없는 애견운동장 등 7건

연번	소속	사업내용	연번	소속	사업내용
11	한솔동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 등 설치, 스마트 그늘막 설치, 화단 조경 정비 및 가로수 꽃길 조성, 정류장 표지설치, 한솔동 상가루미나리에 거리 조성, 생태터널과 노을길 조성, 놀이터 안전관리, 한솔동 문화행사, 임시주차장 정비사업, 마을방송캐스터 운영 등 14건	22	반곡동	그늘막 씬터 환경 및 꽃길 조성, 안전한 거리 만들기, LED로고젝터 설치 및 바닥조명 등, 자전거 거치대, 계절꽃 식재, 그늘막설치, 유모차 소독기, 스트레스 측정기, 주민쉼터, 복권 건강계단 조성, 화단조성, 클라이밍장 기능보강, 대회의실 빔프로젝트 설치 등 13건

(3) 시사점 및 한계

- 마을계획사업의 경우 면지역의 경우 대부분 자연환경을 활용한 마을경관 개선 관련 사업이 중심이 되었으며 읍동지역은 문화·여가 향유 및 생활환경 조성 관련 사업이 선호도가 높았음. 아울러 주민제안사업의 경우 면지역은 농로 포장, 도로정비 등 노후시설 보수 등에 관한 사업을 선호한데 반해, 읍·동지역의 경우 주로 그늘막 및 휴식공간 조성 등 주민편의 사업에 대해 선호도가 높았음
- 성과: 무엇보다 '21년 대비 대부분 주민총회가 대면행사로 진행됨에 따라 주민화합과 소통의 장이 조성되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그리고 학생이 발굴한 마을계획사업을 총회에서 직접 발표하고 공연하는 등 10대의 참여도가 높아졌다는 데 의미가 있음²²⁾
- 한계점:
 - 첫째, 마을계획수립과정에서 숙의과정이 미흡함. 대신, 지선으로 인해 주민자치회 모임이 제한되는 등 주민숙의 과정(주민자치위원 및 일반 주민이 함께 하는 등)이 부족하였으며 그에 따라 주민선호를 반영하는

22) 주요성과로 학생들의 마을계획사업 참여가 높아졌으며 대동초등학교 마을계획단에서 침산공원을 '영웅공원'으로, 장영실고등학교 마을계획단에서 용포천 등불축제, 할머니 인생레시피, 두루중학교 마을계획단에서 폐의약품, 더 이상 먹지마!, 해밀초등학교 마을계획단에서 복잡한 길 안내 표지 등과 같은 사업들을 발굴함

데 미흡했음.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마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주체성이 부족했고, 행정의 사업검토 과정 역시 충분하지 못해 계획수립 완료 후 행정과 자치회가 마을계획 사업을 제고하여 수정보완하거나 추가사업으로 대체하기도 하였음²³⁾

- 이를 위해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둘째, 총회 운영과정의 주민숙의 및 공론화 과정이 부족함. 총회 당일 마을계획 및 주민제안사업 설명이후에 사업에 대한 발언권을 부여한 지역은 4개 지역이며, 마을주민 의견개진 게시판을 설치한 지역은 2개 주민자치회로 현장에서의 숙의 공론화 과정 진행은 미비한 것으로 조사됨
- 마을계획 수립과정에서 마을주민 의견수렴을 폭넓게 진행한 곳은 해밀동과 종촌동으로 파악되었으며 2022년 상반기 지방선거와 대선으로 시간적인 한계는 있었으나 주민자치회가 주도적으로 마을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셋째, 유사한 행사 방식으로 차별성이 부족함. 프로그램 발표회, 주민 투표, 식전공연 등 주민총회행사 내용이 유사하게 운영되고있어,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구성 필요하여 향후 읍면동별 특색있는 내용과 방식으로 총회 구성 차별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23) 추가로 마을계획 수립시 사업의 완성도가 지역별로 상이하고, 마을계획단의 욕구 및 역량 역시 지역별 편차가 존재했음(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지원센터 자료)

세종시 주민자치회 인식 및 FGI 분석

- 1절 주민자치회 위원 및 공무원 인식 분석
- 2절 주민자치회 위원 및 이해관계자 FGI
분석결과
- 3절 분석결과 종합

4장 세종시 주민자치회 인식 및 FGI 분석

1절 주민자치회 위원 및 공무원 인식 분석

1. 조사대상 및 주요내용

- 본 설문조사는 세종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모형을 발굴하기 위하여 세종시의 주민자치회 및 읍면동 행정담당 공직자 640명(300명 회수)을 대상으로 실시함
-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회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주민자치회 기능, 위원회 구성방식, 운영위원회, 주요사업, 분과위원회 구성, 읍면동 기능, 운영세칙 등을 중심으로 2022년 7월 15일에서 2022년 8월 20일까지 조사를 실시함

[표 4-1] 설문조사 개요(안)

구분	주요질문	척도
주민자치회 진단 및 운영위원회	1) 주민자치회 내실화를 위한 당면 문제	명목척도
	2) 세종시 주민자치회 기능의 우선순위	
	3) 주민자치회 수행가능한 민간위탁사무 행정서비스	
	4) 운영위원회 선정방식	
주민자치위원	5) 주민자치위원 선정방식	
	6) 주민자치위원 적정임기	
분과위원회	7) 주민자치회에 필요한 분과위원회	
주민자치회 기능	8-1) 업무 수립계획 관한 사항	likert 5점 척도
	8-2) 활동결과 및 성과에 관한 사항	
	8-3) 주민제안사업에 관한 사항	
	8-4) 마을계획에 관한 사항	
	8-5) 공동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	
	8-6) 의견합치 관한 사항	

구분	주요질문	척도				
주민총회 기능 및 우선순위	9-1) 읍면동 자치계획·시행계획 승인 사항	likert 5점 척도				
	9-2) 읍면동 주민세율 청구권					
	9-3) 읍면동 자치규약 제개정 승인권					
	9-4) 법정기부금 운영계획 결산승인권					
	9-5) 행정사무 위탁사항 승인권					
	9-6) 주민투표, 조례개폐청구, 감사청구 결정권					
	9-7) 읍면동 예산편성, 행정사무 평가 심의권					
	9-8)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및 결산 승인권					
	9-9) 읍면동 국·공유재산 활용계획 심의					
	9-10) 주민총회 필요기능 우선순위		명목척도			
주민자치회 필요기능 및 우선순위	10-1) 읍면동 주요 정책사업 사전 심의	likert 5점 척도				
	10-2) 읍면동 지역발전계획권					
	10-3) 읍면동 주민세율 조정제안권					
	10-4) 읍면동 예산편성 제안권					
	10-5) 읍면동 조례규칙 제안권					
	10-6) 법정기부금 운영 및 관리					
	10-7) 주민총회 운영					
	10-8) 수익사업기관 운영					
	10-9) 행정사무위탁권					
	10-10)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 운영권					
	10-11) 개인정보 활용권					
	10-12) 주민자치회 필요기능 우선순위		명목척도			
운영세칙	11) 운영세칙 숙지 정도	likert 5점 척도				
	12) 운영세칙 활용 정도					
읍면동 기능 및 주민자치회 발전방안	13) 읍면동 행정의 확대 및 강화 희망 기능	명목척도				
	14) 세종형 주민자치회 발전에 필요한 사항					
인구 사회학적 특성	15)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명목척도		
	16) 연령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⑦ 70대 이상	
	17) 신분	① 주민자치회			② 실무공무원	
18) 소속	주민자치회 및 읍면동 행정담당 공직자(지역)			단답형		

조사기간 및 대상: 2022.07.15.~ 2022.8.20.
주민자치회 및 읍면동 행정담당 공직자 640명 대상(회수 300명)

- [표 4-2]는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여주며 이를 성별, 거주지역(읍면동), 연령, 신분을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봄
- 첫째, 응답자 성별은 여성 151명(50.3%), 남성 141명(47.0%), 무응답 8명(2.7%)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 둘째, 응답자 거주지역은 읍면동 중 읍 22명(7.3%), 면 89명(29.7%), 동 152명(50.7%), 무응답 37명(12.3%)의 분포를 보이며, 동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과반수를 차지함
- 셋째, 응답자 연령은 10대 1명(0.3%), 20대 15명(5.0%), 30대 60명(20.0%), 40대 74명(24.7%), 50대 82명(27.3%), 60대 54명(18.0%), 70대 이상 8명(2.7%), 무응답 6명(2.0%)으로 나타났으며, 30~50대의 연령 분포가 70% 이상을 차지함
- 넷째, 응답자의 신분은 주민자치회 211명(70.3%), 공무원 83명(27.7%), 무응답 6명(2.0%)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표 4-2] 인구·사회학적 특성(전체)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성별	남	141 (47.0)	연령	10대	1 (0.3)	
	여	151 (50.3)		20대	15 (5.0)	
	무응답	8 (2.7)		30대	60 (20.0)	
	합계	300 (100)		40대	74 (24.7)	
읍면동	읍	22 (7.3)		50대	82 (27.3)	
	면	89 (29.7)		60대	54 (18.0)	
	동	152 (50.7)		70대 이상	8 (2.7)	
	무응답	37 (12.3)		무응답	6 (2.0)	
	합계	300 (100)		합계	300 (100)	
				신분	주민자치회	211 (70.3)
					공무원	83 (27.7)
					무응답	6 (2.0)
			합계		300 (100)	

- [표 4-3]은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주민자치회와 공무원 신분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음
- 먼저 주민자치회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성별, 거주지역(읍면동), 연령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주민자치회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 110명(52.1%), 남성 100명(47.4%), 무응답 1명(0.5%)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 둘째, 주민자치회 응답자의 거주지역은 읍면동 중 읍 16명(7.6%), 면 56명(26.5%), 동 123명(58.3%), 무응답 16명(7.6%)의 분포를 보이며, 동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과반수를 차지함
 - 셋째, 주민자치회 응답자의 연령은 10대 1명(0.5%), 20대 4명(1.9%), 30대 21명(10.0%), 40대 51명(24.2%), 50대 73명(34.6%), 60대 53명(25.1%), 70대 이상 8명(3.8%)으로 나타남

[표 4-3] 인구·사회학적 특성(주민자치회 vs 공무원)

주민자치회		빈도(%)	공무원		빈도(%)
성별	남	100 (47.4)	성별	남	41 (49.4)
	여	110 (52.1)		여	41 (49.4)
	무응답	1 (0.5)		무응답	1 (1.2)
	합계	211 (100)		합계	83 (100)
읍면동	읍	16 (7.6)	읍면동	읍	6 (7.2)
	면	56 (26.5)		면	33 (39.8)
	동	123 (58.3)		동	29 (34.9)
	무응답	16 (7.6)		무응답	15 (18.1)
	합계	211 (100)		합계	83 (100)
연령	10대	1 (0.5)	연령	10대	-
	20대	4 (1.9)		20대	11 (13.3)
	30대	21 (10.0)		30대	39 (47.0)
	40대	51 (24.2)		40대	23 (27.7)
	50대	73 (34.6)		50대	9 (10.8)
	60대	53 (25.1)		60대	1 (1.2)
	70대 이상	8 (3.8)		70대 이상	-
	무응답	-		무응답	-
	합계	211 (100)		합계	83 (100)

- 다음으로 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성별, 거주지역(읍면동), 연령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공무원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 41명(49.4%), 남성 41명(49.4%)으로 각각 동일한 분포를 보였으며, 무응답은 1명(1.2%)으로 집계됨
 - 둘째, 공무원 응답자의 거주지역은 읍면동 중 읍 6명(7.2%), 면 33명(39.8%), 동 29명(34.9%), 무응답 15명(18.1%)으로 나타났으며, 면과동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비슷한 분포를 보임
 - 셋째, 공무원 응답자의 연령대별 분포는 20대 11명(13.3%), 30대 39명(47.0%), 40대 23명(27.7%), 50대 9명(10.8%), 60대 1명(1.2%)으로 나타남

2. 기초통계분석

- [표 4-4]는 주민자치회 기능, 주민총회 기능, 주민자치회 필요기능, 운영세칙에 대한 기초통계분석 결과임
- 전체 응답자가 주민자치회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항목은 ‘공동문제해결사항’, ‘수립한계획사항’, ‘의견합치사항’이고, 주민총회 기능은 ‘주민자치회운영결산승인’, ‘자치계획승인’, ‘자치규약승인’ 순으로 나타남
- 향후 주민자치회에 필요한 기능으로는 ‘주민총회운영’, ‘사무국설치운영’, ‘지역발전계획권’, ‘주요정책사전심의’ 순으로 필요하다는 결과를 보이며, 운영세칙은 ‘운영세칙존재’가 ‘운영세칙활용’ 보다 높게 나타남
- 주민자치회 기능에 대한 평균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한편, 본 설문 응답 중 ‘운영세칙활용’의 평균이 가장 낮게 집계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세칙을 통한 주민자치회 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

[표 4-4] 기초통계분석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주민 자치회 기능	수립한계획사항	296	1	5	4.10	.956
	활동결과성과사항	296	1	5	3.99	1.015
	주민제안사업	294	1	5	4.05	1.016
	마을계획사업	293	1	5	4.05	1.039
	공동문제해결사항	293	1	5	4.15	.968
	의견합치사항	296	1	5	4.10	.944
주민 총회 기능	자치계획승인	295	1	5	3.82	1.147
	주민세율청구	295	1	5	3.66	1.199
	자치규약승인	294	1	5	3.74	1.201
	법정기부금승인	294	1	5	3.59	1.179
	위탁사항승인	293	1	5	3.63	1.165
	주민투표등결정권	295	1	5	3.73	1.162
	예산편성사무평가심의	292	1	5	3.64	1.292
	주민자치회운영결산승인	294	1	5	3.86	1.121
	공유재산활용계획심의	294	1	5	3.55	1.235
주민 자치회 필요 기능	주요정책사전심의	291	1	5	3.82	1.169
	지역발전계획권	292	1	5	3.82	1.104
	주민세율조정제안권	291	1	5	3.56	1.214
	예산편성제안권	290	1	5	3.68	1.207
	조례규칙제안권	289	1	5	3.70	1.164
	법정기부금관리운영	291	1	5	3.54	1.213
	주민총회운영	292	1	5	4.00	1.034
	수익사업기관운영	291	1	5	3.63	1.148
	행정사무위탁	290	1	5	3.71	1.118
	사무국설치운영	292	1	5	3.88	1.112
	개인정보활용권	292	1	5	3.66	1.189
운영 세칙	운영세칙존재	291	1	5	3.68	1.006
	운영세칙활용	291	1	5	3.44	1.107

3. 집단별 인식차이 분석(T-Test, ANOVA)

1) 주민자치회 및 공무원 대상 분석

(1) 신분에 따른 인식차이 분석

- 집단별 인식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와 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으며, 전체 응답자 중 신분에 따른 인식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표 4-5]는 ‘주민자치회 기능’에 대한 주민자치회와 공무원 신분에 따른 인식차이를 나타내며, 주민자치회 기능에 대한 집단별 인식차이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임
- 즉 주민자치회와 공무원은 주민자치회 기능에 대해 다른 인식을 보이며, 주민자치회가 공무원보다 모든 항목에 대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항목으로 주민자치회는 ‘공동문제 해결사항’, 공무원은 ‘의견합치사항’이 나타남

[표 4-5] 신분에 따른 인식 차이분석/주민자치회기능(T-Test)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수립한계획사항	주민자치회	211	4.39	.731	.000***
	공무원	83	3.39	1.091	
활동결과성과사항	주민자치회	211	4.28	.819	.000***
	공무원	83	3.25	1.103	
주민제안사업	주민자치회	210	4.34	.833	.001***
	공무원	82	3.32	1.087	
마을계획사업	주민자치회	209	4.38	.806	.000***
	공무원	82	3.23	1.125	
공동문제해결사항	주민자치회	210	4.43	.731	.000***
	공무원	81	3.42	1.128	
의견합치사항	주민자치회	211	4.34	.778	.000***
	공무원	83	3.51	1.075	

***p<0.01, **p<0.05, *p<0.1

- 다음의 [표 4-6]은 ‘주민총회 기능’에 대한 주민자치회와 공무원 신분에 따른 인식차이를 보여줌. 주민총회 기능에 대한 집단별 인식차이 또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자치계획승인’, ‘주민세율청구’, ‘자치규약승인’, ‘주민투표등결정권’, ‘주민자치회운영결산승인’, ‘공유재산활용계획심의’ 항목에서 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주민총회 기능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회가 공무원보다 그 필요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승인’, 공무원은 ‘주민자치회운영결산승인’ 기능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6] 신분에 따른 인식 차이분석/주민총회기능(T-Test)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자치계획승인	주민자치회	210	4.24	.871	.001***
	공무원	83	2.77	1.097	
주민세율청구	주민자치회	210	4.05	.982	.001***
	공무원	83	2.67	1.149	
자치규약승인	주민자치회	209	4.19	.903	.000***
	공무원	83	2.61	1.135	
법정기부금승인	주민자치회	209	3.97	1.004	.050*
	공무원	83	2.64	1.054	
위탁사항승인	주민자치회	210	3.98	.990	.026**
	공무원	81	2.73	1.118	
주민투표등결정권	주민자치회	210	4.14	.917	.002***
	공무원	83	2.67	1.060	
예산편성사무평가심의	주민자치회	208	4.16	.952	.011**
	공무원	82	2.32	1.099	
주민자치회운영결산승인	주민자치회	209	4.22	.878	.002***
	공무원	83	2.94	1.151	
공유재산활용계획심의	주민자치회	209	4.02	.953	.005***
	공무원	83	2.36	1.066	

***p<0.01, **p<0.05, *p<0.1

- [표 4-7]은 ‘주민자치회 필요기능’에 대한 주민자치회와 공무원 신분에 따른 인식차이 분석결과이며, ‘주요정책사전심의’, ‘지역발전계획권’, ‘주민세율조정제안권’, ‘예산편성제안권’, ‘조례규칙제안권’, ‘개인정보활용권’ 항목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임
 - ‘법정기부금관리운영’, ‘주민총회운영’, ‘수익사업기관운영’, ‘행정사무위탁’, ‘사무국설치운영’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나, 주민자치회와 공무원 모두 ‘주민총회운영’이 필요한 기능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수익사업기관운영’의 필요성은 낮게 보고 있음
- 유의미한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주민자치회는 ‘주요정책사전심의’, 공무원은 ‘지역발전계획권’ 기능이 더욱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표 4-7] 신분에 따른 인식 차이분석/주민자치회 필요 기능(T-Test)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주요정책사전심의	주민자치회	207	4.28	.798	.000***
	공무원	82	2.70	1.204	
지역발전계획권	주민자치회	209	4.23	.783	.000***
	공무원	82	2.78	1.122	
주민세율조정제안권	주민자치회	209	4.00	.981	.041**
	공무원	81	2.44	1.037	
예산편성제안권	주민자치회	208	4.15	.897	.001***
	공무원	81	2.48	1.074	
조례규칙제안권	주민자치회	207	4.15	.868	.000***
	공무원	81	2.56	1.037	
법정기부금관리운영	주민자치회	208	3.94	1.017	.065
	공무원	82	2.52	1.080	
주민총회운영	주민자치회	210	4.29	.873	.087
	공무원	81	3.25	1.043	
수익사업기관운영	주민자치회	209	3.98	.990	.262
	공무원	81	2.72	1.028	
행정사무위탁	주민자치회	208	4.03	.970	.153
	공무원	81	2.90	1.068	
사무국설치운영	주민자치회	209	4.18	.973	.237
	공무원	82	3.11	1.077	
개인정보활용권	주민자치회	209	4.04	.980	.001***
	공무원	82	2.71	1.149	

***p<0.01, **p<0.05, *p<0.1

- [표 4-8]은 ‘운영세칙’에 대한 주민자치회와 공무원 신분에 따른 인식 차이이며, 분석결과 ‘운영세칙존재’ 항목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임
 - ‘운영세칙활용’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민자치회와 공무원 모두 운영세칙을 통한 주민자치회의 의사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함

[표 4-8] 신분에 따른 인식 차이분석/운영세칙(T-Test)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운영세칙존재	주민자치회	208	3.82	.930	.045**
	공무원	82	3.32	1.110	
운영세칙활용	주민자치회	208	3.61	1.053	.845
	공무원	82	3.00	1.133	

***p<0.01, **p<0.05, *p<0.1

(2) 읍면동 지역별 인식차이 분석

- 다음으로 [표 4-9]에서 전체 응답자 중 거주지역(읍면동)에 따라 세종시 ‘주민자치회 기능’에 대한 인식차이를 살펴보았음
-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읍과 면 지역보다 동 지역에서 주민자치회 기능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인식함을 알 수 있음

[표 4-9] 읍면동 지역에 따른 인식 차이분석/주민자치회기능(ANOVA)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수립한계획사항	읍	22	4.05	.844	.161	.851
	면	89	4.12	.864		
	동	152	4.16	.943		
	합계	263	4.14	.906		
활동결과성과사항	읍	22	4.00	1.113	.699	.498
	면	89	3.93	.963		
	동	152	4.09	.963		
	합계	263	4.03	.975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주민제안사업	읍	21	4.05	1.161	.043	.958
	면	88	4.08	.900		
	동	152	4.11	.984		
	합계	261	4.09	.968		
마을계획사업	읍	22	4.05	1.046	.974	.379
	면	89	3.99	1.017		
	동	150	4.17	.995		
	합계	261	4.10	1.007		
공동문제해결사항	읍	22	4.05	1.046	.971	.380
	면	87	4.11	.882		
	동	151	4.26	.927		
	합계	260	4.19	.922		
의견합치사항	읍	22	4.05	1.046	.203	.817
	면	89	4.18	.806		
	동	152	4.14	.916		
	합계	263	4.15	.889		

***p<0.01, **p<0.05, *p<0.1

- [표 4-10]에서 전체 응답자 중 거주지역(읍면동)에 따른 세종시 ‘주민총회 기능’에 대한 인식차이를 살펴보았음
- 마찬가지로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주민총회 기능에 대해 면과 동 지역보다 읍 지역에서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10] 읍면동 지역에 따른 인식 차이분석/주민총회기능(ANOVA)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자치계획승인	읍	22	4.09	1.065	.653	.521
	면	89	3.80	1.036		
	동	151	3.89	1.140		
	합계	262	3.87	1.098		
주민세율청구	읍	22	3.73	1.316	.031	.969
	면	89	3.69	1.072		
	동	151	3.72	1.161		
	합계	262	3.71	1.141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자치규약승인	읍	22	4.14	.941	1.112	.330
	면	89	3.73	1.146		
	동	150	3.80	1.170		
	합계	261	3.80	1.145		
법정기부금승인	읍	22	3.82	1.097	.604	.548
	면	89	3.55	1.077		
	동	150	3.67	1.184		
	합계	261	3.64	1.140		
위탁사항승인	읍	22	3.91	1.151	1.418	.244
	면	89	3.52	1.109		
	동	151	3.72	1.145		
	합계	262	3.66	1.135		
주민투표등결정권	읍	22	3.86	1.207	.269	.765
	면	89	3.71	1.130		
	동	151	3.80	1.108		
	합계	262	3.77	1.121		
예산편성사무평가심의	읍	22	4.14	1.082	2.020	.135
	면	87	3.54	1.246		
	동	151	3.70	1.280		
	합계	260	3.68	1.258		
주민자치회운영결산승인	읍	22	3.95	1.133	.200	.819
	면	89	3.84	1.065		
	동	150	3.93	1.075		
	합계	261	3.90	1.073		
공유재산활용계획심의	읍	22	3.82	1.097	.698	.498
	면	89	3.49	1.253		
	동	150	3.61	1.197		
	합계	261	3.59	1.208		

***p<0.01, **p<0.05, *p<0.1

- [표 4-11]은 전체 응답자 중 거주지역(읍면동)에 따라 세종시 ‘주민자치회 필요기능’에 대한 인식차이를 살펴본 것으로, ‘주요정책사전심의’와 ‘조례규칙제안권’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이는 응답자들의 거주지역에 따라 향후 주민자치회에 ‘주요정책사전심의’와 ‘조례규칙제안권’이 필요한 기능이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함
- ‘주요정책사전심의’와 ‘조례규칙제안권’ 두 항목의 필요성에 대해 읍>동>면 순의 결과를 보임. 즉, 읍에 거주하는 주민자치회 및 공무원이 향후 주민자치회에 해당 기능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한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항목에서도 읍 지역에서 주민자치회 필요기능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음

[표 4-11] 읍면동 지역에 따른 인식 차이분석/주민자치회 필요기능(ANOVA)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주요정책사전심의	읍	21	4.48	.680	3.383	.035**
	면	88	3.80	1.095		
	동	149	3.87	1.137		
	합계	258	3.89	1.104		
지역발전계획권	읍	21	4.19	.750	.978	.377
	면	89	3.88	1.043		
	동	150	3.85	1.071		
	합계	260	3.89	1.039		
주민세율조정제안권	읍	21	3.95	1.117	1.361	.258
	면	89	3.49	1.198		
	동	149	3.64	1.170		
	합계	259	3.61	1.177		
예산편성제안권	읍	21	4.00	1.095	.634	.532
	면	89	3.69	1.202		
	동	148	3.72	1.161		
	합계	258	3.73	1.169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조례규칙제안권	읍	21	4.24	.889	2.441	.089*
	면	88	3.64	1.157		
	동	148	3.76	1.129		
	합계	257	3.75	1.128		
법정기부금관리운영	읍	20	4.05	1.276	1.737	.178
	면	89	3.52	1.099		
	동	150	3.58	1.189		
	합계	259	3.59	1.169		
주민총회운영	읍	21	4.14	1.153	.268	.765
	면	89	3.98	1.000		
	동	151	4.04	.958		
	합계	261	4.03	.986		
수익사업기관운영	읍	21	3.95	1.071	.667	.514
	면	87	3.66	1.076		
	동	151	3.67	1.118		
	합계	259	3.69	1.099		
행정사무위탁	읍	20	4.05	1.099	2.232	.109
	면	89	3.57	1.117		
	동	150	3.81	1.052		
	합계	259	3.75	1.083		
사무국설치운영	읍	21	3.95	1.203	1.625	.199
	면	88	3.74	1.140		
	동	151	4.00	1.039		
	합계	260	3.91	1.090		
개인정보활용권	읍	21	4.05	1.161	1.155	.317
	면	89	3.62	1.173		
	동	150	3.69	1.165		
	합계	260	3.69	1.168		

***p<0.01, **p<0.05, *p<0.1

- [표 4-12]는 전체 응답자 중 거주지역(읍면동)에 따라 세종시 ‘운영세칙’에 대한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임
- 운영세칙의 존재 및 활용 항목 모두 읍면동 지역별 인식차이가 뚜렷하지 않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4-12] 읍면동 지역에 따른 인식 차이분석/운영세칙(ANOVA)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운영세칙존재	읍	22	3.73	1.077	.015	.985
	면	86	3.69	.985		
	동	151	3.69	1.028		
	합계	259	3.69	1.014		
운영세칙활용	읍	22	3.50	1.058	.251	.778
	면	88	3.56	1.102		
	동	150	3.45	1.084		
	합계	260	3.49	1.085		

***p<0.01, **p<0.05, *p<0.1

- 지금까지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신분, 거주지역(읍면동) 기준에 따른 집단별 인식차이를 분석하였음. 주민자치회와 공무원 각각의 세종시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2) 주민자치회 대상 분석: 읍면동에 따른 인식차이 분석

- 주민자치회 응답자의 거주지역(읍면동)에 따라 세종시 ‘주민자치회 기능’에 대한 인식차이를 분석해보았음
- [표 4-13]과 같이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읍면동 지역별 인식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으나, 대체로 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자치회 응답자가 주민자치회 기능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함

[표 4-13] 읍면동 지역에 따른 인식 차이분석/주민자치회기능(ANOVA)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수립한계획사항	읍	16	4.19	.911	.841	.433
	면	56	4.45	.601		
	동	123	4.40	.721		
	합계	195	4.39	.706		
활동결과성과사항	읍	16	4.25	1.000	.156	.856
	면	56	4.25	.858		
	동	123	4.32	.761		
	합계	195	4.29	.807		
주민제안사업	읍	16	4.31	1.014	.145	.865
	면	55	4.40	.830		
	동	123	4.33	.786		
	합계	194	4.35	.815		
마을계획사업	읍	16	4.31	.793	.106	.900
	면	56	4.41	.804		
	동	121	4.40	.781		
	합계	193	4.40	.785		
공동문제해결사항	읍	16	4.38	.806	.860	.425
	면	55	4.36	.802		
	동	123	4.50	.645		
	합계	194	4.45	.706		
의견합치사항	읍	16	4.38	.806	.128	.880
	면	56	4.39	.755		
	동	123	4.33	.743		
	합계	195	4.35	.748		

***p<0.01, **p<0.05, *p<0.1

- [표 4-14]를 보면 주민자치회 응답자의 거주지역(읍면동)에 따른 세종시 ‘주민총회 기능’에 대한 인식차이 역시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그러나 응답 결과의 평균 경향성을 살펴보면, 읍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자치회 응답자가 주민총회 기능에 대해 면 지역과 동 지역의 응답자보다 더 필요하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음

[표 4-14] 읍면동 지역에 따른 인식 차이분석/주민총회기능(ANOVA)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자치계획승인	읍	16	4.44	.814	.587	.557
	면	56	4.29	.803		
	동	122	4.20	.899		
	합계	194	4.25	.864		
주민세율청구	읍	16	3.94	1.389	.840	.433
	면	56	4.18	.789		
	동	122	3.98	1.004		
	합계	194	4.04	.984		
자치규약승인	읍	16	4.44	.814	1.169	.313
	면	56	4.27	.798		
	동	121	4.12	.936		
	합계	193	4.19	.889		
법정기부금승인	읍	16	4.06	1.063	.087	.917
	면	56	3.95	.942		
	동	121	3.96	1.028		
	합계	193	3.96	1.002		
위탁사항승인	읍	16	4.06	1.237	.085	.918
	면	56	3.95	.961		
	동	122	3.98	.975		
	합계	194	3.97	.989		
주민투표등결정권	읍	16	4.13	1.204	.154	.857
	면	56	4.20	.840		
	동	122	4.11	.911		
	합계	194	4.14	.914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예산편성사무평가심의	읍	16	4.56	.512	1.895	.153
	면	54	4.19	.848		
	동	122	4.08	1.017		
	합계	192	4.15	.945		
주민자치회운영결산승인	읍	16	4.25	1.000	.028	.972
	면	56	4.23	.853		
	동	121	4.21	.865		
	합계	193	4.22	.869		
공유재산활용계획심의	읍	16	4.13	.885	.658	.519
	면	56	4.11	.888		
	동	121	3.95	.973		
	합계	193	4.01	.941		

***p<0.01, **p<0.05, *p<0.1

- 주민자치회 응답자의 거주지역(읍면동)에 따라 세종시 ‘주민자치회 필요 기능’에 대한 인식차이는 다음의 [표 4-15]와 같음
- 읍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자치회 응답자는 면 지역과 동 지역에 비해 향후 주민자치회 기능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임을 알 수 있으나, 인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음

[표 4-15] 읍면동 지역에 따른 인식 차이분석/주민자치회 필요기능(ANOVA)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주요정책사전심의	읍	16	4.63	.619	1.813	.166
	면	55	4.29	.832		
	동	120	4.23	.764		
	합계	191	4.28	.777		
지역발전계획권	읍	16	4.38	.719	.532	.588
	면	56	4.29	.825		
	동	121	4.20	.737		
	합계	193	4.24	.760		
주민세율조정제안권	읍	16	4.25	.931	.785	.457
	면	56	4.02	.944		
	동	121	3.93	.998		
	합계	193	3.98	.976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예산편성제안권	읍	16	4.31	.873	1.576	.210
	면	56	4.29	.780		
	동	120	4.06	.929		
	합계	192	4.15	.886		
조례규칙제안권	읍	16	4.56	.629	2.146	.120
	면	56	4.18	.811		
	동	119	4.09	.902		
	합계	191	4.16	.862		
법정기부금관리운영	읍	15	4.33	1.113	1.343	.264
	면	56	3.93	.931		
	동	121	3.88	1.018		
	합계	192	3.93	1.003		
주민총회운영	읍	16	4.31	1.014	.023	.978
	면	56	4.30	.933		
	동	122	4.28	.806		
	합계	194	4.29	.857		
수익사업기관운영	읍	16	4.13	1.088	.571	.566
	면	55	4.05	.931		
	동	122	3.92	.992		
	합계	193	3.97	.981		
행정사무위탁	읍	15	4.20	1.207	.470	.626
	면	56	3.95	.980		
	동	121	4.05	.921		
	합계	192	4.03	.959		
사무국설치운영	읍	16	4.13	1.147	.470	.626
	면	55	4.09	1.059		
	동	122	4.24	.900		
	합계	193	4.19	.966		
개인정보활용권	읍	16	4.31	1.014	1.053	.351
	면	56	4.11	.908		
	동	121	3.98	.979		
	합계	193	4.04	.962		

***p<0.01, **p<0.05, *p<0.1

- [표 4-16]의 주민자치회 응답자 거주지역(읍면동)에 따른 세종시 ‘운영세칙’에 대한 항목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4-16] 읍면동 지역에 따른 인식 차이분석/운영세칙(ANOVA)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운영세칙존재	읍	16	3.94	1.063	.640	.528
	면	54	3.91	.784		
	동	122	3.75	.998		
	합계	192	3.81	.947		
운영세칙활용	읍	16	3.63	1.147	.569	.567
	면	55	3.76	1.018		
	동	122	3.58	1.051		
	합계	193	3.64	1.047		

***p<0.01, **p<0.05, *p<0.1

3) 공무원 대상 분석: 읍면·동에 따른 인식차이 분석

- 공무원 응답자의 거주지역을 읍면과 동으로 구분하여 세종시 ‘주민자치회 기능’에 대한 인식차이를 분석해보면 [표 4-17]과 같으며, ‘주민제안사업’, ‘공동문제해결사항’, ‘의견합치사항’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동 지역보다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주민제안사업’, ‘공동문제해결사항’, ‘의견합치사항’의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됨
- ‘수립한 계획사항’, ‘활동결과성과사항’, ‘마을계획사업’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읍면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주민자치회 기능에 대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음

[표 4-17] 읍면·동에 따른 인식 차이분석/주민자치회기능(T-Test)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수립한계획사항	읍면	39	3.59	.910	.441
	동	29	3.14	1.093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활동결과성과사항	읍면	39	3.38	.935	.428
	동	29	3.10	1.113	
주민제안사업	읍면	38	3.50	.830	.023**
	동	29	3.14	1.156	
마을계획사업	읍면	39	3.28	.999	.124
	동	29	3.21	1.207	
공동문제해결사항	읍면	38	3.61	.916	.080*
	동	28	3.18	1.188	
의견합치사항	읍면	39	3.72	.857	.042**
	동	29	3.34	1.143	

***p<0.01, **p<0.05, *p<0.1

- [표 4-18]은 응답자의 거주지역(읍면·동)에 따른 세종시 ‘주민총회 기능’에 대한 인식차이를 분석한 것으로 ‘자치계획승인’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동 지역보다 읍면 지역에서 거주하는 공무원은 ‘자치계획승인’이 타 기능들보다 주민총회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이외에 타 기능에 대한 통계 분석결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주민자치회 기능과 마찬가지로 주민총회 기능도 읍면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8] 읍면·동에 따른 인식 차이분석/주민총회기능(T-Test)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자치계획승인	읍면	39	3.00	.889	.047**
	동	29	2.55	1.088	
주민세율청구	읍면	39	2.90	.968	.137
	동	29	2.62	1.147	
자치규약승인	읍면	39	2.90	1.046	.621
	동	29	2.45	1.088	
법정기부금승인	읍면	39	2.92	.957	.170
	동	29	2.48	1.056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위탁사항승인	읍면	39	2.90	.968	.100
	동	29	2.62	1.178	
주민투표등결정권	읍면	39	2.92	1.061	.161
	동	29	2.48	.871	
예산편성사무평가심의	읍면	39	2.56	1.119	.402
	동	29	2.10	1.012	
주민자치회운영결산승인	읍면	39	3.18	1.073	.994
	동	29	2.76	1.091	
공유재산활용계획심의	읍면	39	2.54	1.120	.428
	동	29	2.21	1.013	

***p<0.01, **p<0.05, *p<0.1

- 공무원 응답자의 거주지역(읍면·동)에 따라 세종시 ‘주민자치회 필요기능’에 대한 인식차이를 살펴보면 [표 4-19]와 같음
- 향후 주민자치회에 필요한 기능에 대해 공무원 응답자의 거주지역별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동 지역보다 읍면 지역에서 모든 기능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표 4-19] 읍면·동에 따른 인식 차이분석/주민자치회필요기능(T-Test)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주요정책사전심의	읍면	38	3.11	1.008	.173
	동	29	2.34	1.173	
지역발전계획권	읍면	38	3.24	.971	.314
	동	29	2.41	1.053	
주민세율조정제안권	읍면	38	2.66	1.072	.816
	동	28	2.36	.989	
예산편성제안권	읍면	38	2.71	1.113	.135
	동	28	2.25	.887	
조례규칙제안권	읍면	37	2.76	1.038	.552
	동	29	2.38	.903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법정기부금관리운영	읍면	38	2.87	1.070	.616
	동	29	2.31	1.004	
주민총회운영	읍면	38	3.45	.950	.371
	동	29	3.03	.906	
수익사업기관운영	읍면	37	3.03	.957	.473
	동	29	2.62	1.015	
행정사무위탁	읍면	38	3.03	1.026	.937
	동	29	2.83	1.002	
사무국설치운영	읍면	38	3.18	1.062	.384
	동	29	3.00	1.000	
개인정보활용권	읍면	38	2.84	1.128	.745
	동	29	2.48	1.122	

***p<0.01, **p<0.05, *p<0.1

- 마찬가지로 공무원 응답자 거주지역(읍면·동)에 따른 세종시 ‘운영세칙’에 대한 인식차이를 [표 4-20]과 같이 살펴보았음
- 분석결과 두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운영세칙존재’에 대한 인식이 동 지역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는 특징이 있음

[표 4-20] 읍면·동에 따른 인식 차이분석/운영세칙(T-Test)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운영세칙존재	읍면	38	3.29	1.137	.869
	동	29	3.41	1.119	
운영세칙활용	읍면	39	3.21	1.105	.621
	동	28	2.89	1.066	

***p<0.01, **p<0.05, *p<0.1

4.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

- 다음은 세종시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차이를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한 결과이며, 설문 응답자에 따라 전체, 주민자치회, 공무원으로 나눈 후 거주지역(읍면동)에 따른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음

1) 주민자치회 및 공무원 전체 대상 분석

(1) 빈도분석

- 전체 응답자의 빈도분석 결과를 [표 4-21]부터 살펴보면, 세종시 주민자치회 내실화를 위한 당면 문제를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 및 효능감 부족’으로 인식하는 설문 응답이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거주지역(읍면동) 모두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 및 효능감 부족’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동, 읍, 면 순으로 나타남

[표 4-21] 주민자치회 내실화를 위한 당면한 문제(%)

구분	전체	읍	면	동
주민자치회 대표성 미흡	15.7	23.5	15.3	16.4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미흡	10.0	17.6	5.3	9.1
자생력 확보 기반 미흡	13.2	5.9	17.6	11.8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 및 효능감 부족	28.4	26.5	23.5	31.0
여타 주민공동체 조직(이통장, 아파트입대위, 상인회 등)과 갈등	5.2	8.8	10.6	2.8
행·재정적지원 미흡으로 인한 주민자치회 업무부담	12.5	8.8	10.6	13.9
(읍면동)행정의 무관심 혹은 갈등	4.8	5.9	3.5	4.9
시범실시로 인한 한계(법률적 근거 부족)	6.6	0.0	10.6	5.9
기타	3.4	2.9	2.9	4.2
합계	100.0	100.0	100.0	100.0

- [표 4-22] 세종시 주민자치회의 기능의 우선순위는 38.8%로 ‘주민총회의 개최, 마을계획의 수립, 마을축제개최, 마을소식지 발간 등 주민화합 및 발전업무’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가 25.2%의 응답률을 보임
 - 읍면동 지역 모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주민자치사무를 선택하였으나, 동 지역이 42.5%로 보다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임

[표 4-22] 주민자치회 기능 중 우선순위(%)

구분	전체	읍	면	동
주민총회의 개최, 마을계획의 수립, 마을축제개최, 마을소식지 발간 등 주민화합 및 발전업무 (주민자치사무)	38.8	39.4	39.4	42.5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위탁하는 사무처리(위탁사무)	10.5	12.1	14.4	8.3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협의사무)	25.2	33.3	27.3	26.0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한 건의(일반적 협의사무 보다는 소극적인 기능)	16.3	12.1	16.7	18.1
읍면동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자문	8.1	3.0	2.3	4.3
기타	1.0	0.0	0.0	0.8
합계	100.0	100.0	100.0	100.0

- [표 4-23]을 살펴보면, 세종시 주민자치회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응답으로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회 운영 및 관리’가 24.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주민자치센터운영관리(17.4%)’, ‘마을축제기획실행(14.1%)’, ‘센터 및 공동체 활성화 공간 운영(12.2%)’ 순으로 응답함
 -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주민자치회 운영 및 관리에 대해 동>면>읍 순으로 적정하다는 결과를 보임

[표 4-23] 적정한 민간위탁 사무(%)

구분	전체	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17.4	16.0	19.1	16.2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회 운영 및 관리	24.6	20.0	24.9	25.1
마을체험학습운영	9.0	6.0	6.7	10.0
마을축제기획실행	14.1	10.0	12.9	16.4
공동육아시설운영	4.2	8.0	3.6	4.0
작은도서관운영	5.3	4.0	5.3	4.9
공원관리운영	2.8	4.0	3.1	2.7
센터 및 공동체 활성화 공간 운영(복합 등)	12.2	16.0	10.2	13.7
마을휴양지 및 유적지 관리운영	3.1	2.0	3.1	2.4
도시재생사업 및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공간 운영	6.0	14.0	9.8	3.0
기타	1.3	0.0	1.3	1.6
합계	100.0	100.0	100.0	100.0

- [표 4-24]의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선정방식에 대한 응답은 현재의 방식 ‘유지’가 54%의 비율을 보이나, ‘개편’에 대한 응답도 44.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음

[표 4-24] 운영위원회 개편 여부

구분	빈도	퍼센트
유지	162	54.0
개편	133	44.3
무응답	5	1.7
합계	300	100.0

- 앞의 [표 4-24] 문항에서 운영위원회 ‘유지’에 응답한 경우가 포함된 [표 4-25]는 무응답이 57.0%, ‘개편’의 필요성에 동의한 입장에서는 운영위원회의 ‘필요성 없음’에 대한 응답이 14.7%로 나타남

[표 4-25] 운영위원회 개편 찬성 시 대안

구분	빈도	퍼센트
읍면동장 추천 3인+기관단체장 추천 3인 등	17	5.7
읍면동장 1인+기관 및 단체장 추천 6인	30	10.0
읍면동장 1인+공동체조직 추천 6인	35	11.7
필요성 없음	44	14.7
기타	3	1.0
무응답	171	57.0
합계	300	100.0

-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의 가장 적합한 방식에 대한 인식으로는 [표 4-26]과 같이 ‘공개모집 공개추첨’이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일반공모 추첨+주민조직 추천+명망 있는 분 선정’이 31.0%로 조사됨

[표 4-26]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

구분	빈도	퍼센트
공개모집 공개추첨	103	34.3
일반공모 추첨+주민조직 추천+명망있는 분 선정	93	31.0
일반공모 추첨+추천된자 중 추첨	47	15.7
일반공모 추첨+추천된자 중 선정(운영위원회서 추천된자 선정)	43	14.3
기타	7	2.3
무응답	7	2.3
합계	300	100.0

- 주민자치회의 적정임기에 대한 문항에서는 [표 4-27]과 같이 ‘현행유지’가 41.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며, 면 지역(52.9%)과 동 지역(40.3%)에서 ‘현행유지’에 대한 의견이 뚜렷함
 - 반면 읍 지역에서는 ‘임기는 현행과 동일, 읍과 동의 연임규정만 2회로 변경’이 2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 4-27] 주민자치회 적정임기(%)

구분	전체	읍	면	동
현행유지(임기 2년, 읍과 동은 1회에 한해 연임가능, 면은 제한없음)	41.8	19.4	52.9	40.3
임기는 현행과 동일, 읍과 동의 연임규정만 2회로 변경(임기 2년은 현행 유지, 읍과 동의 경우 2회에 한해 연임가능, 면은 제한없음으로 연임규정 변경)	16.1	25.8	11.8	15.1
임기는 현행과 동일, 읍면동 전체의 연임규정만 1회로 변경(임기 2년은 현행 유지, 읍면동 모두 임기 1회에 한해 연임가능으로 연임규정 변경)	8.2	9.7	6.9	6.9
임기는 현행과 동일, 읍면동 전체의 연임규정만 2회로 변경(임기 2년은 현행유지, 읍면동 모두 임기 2회에 한해 연임가능으로 연임규정변경)	13.3	19.4	10.8	15.1
임기만 조정(예, 1년 혹은 3년 등) 및 연임 규정은 현행방식과 동일	5.2	9.7	5.9	3.8
임기조정 및 연임규정 모두 변경(임기조정 예, 1년 혹은 3년 등, 연임규정 2회 등으로 변경)	5.5	6.5	4.9	6.3
임기 2년만 확정하고 연임규정은 삭제(읍면동별 연임규정 자체가 필요없음)	10.0	9.7	6.9	12.6
기타	0.0	0.0	0.0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 세종시 주민자치회에 필요한 분과위원회에 대한 응답인 [표 4-28]을 보면, ‘마을계획분과’가 2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다음으로 ‘프로그램 운영분과(16.2%)’, ‘지역자원 및 문화분과(10.2%)’ 순임
-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마을계획분과의 필요성에 대해 읍>면>동 순의 응답 비율을 보임

[표 4-28] 필요한 분과위원회(%)

구분	전체	읍	면	동
아파트연합회(공동체주거등) 분과	8.0	3.7	0.4	13.3
농촌 및 도시재생분과	5.3	9.3	11.8	1.3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등 사회적경제분과(경제분과포함)	9.4	9.3	9.2	9.2
청(소)년분과	4.3	7.4	2.6	4.8

구분	전체	읍	면	동
공동체복지분과	5.9	5.6	7.9	5.4
도농상생/어울림 분과	4.3	3.7	5.7	3.3
마을계획분과(마을안전, 환경 등)	21.4	24.1	21.8	20.9
평생교육분과	5.5	7.4	4.4	5.6
지역자원 및 문화분과(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브랜드 가치 창출)	10.2	13.0	9.2	9.7
프로그램 운영분과	16.2	11.1	12.2	18.9
교육지원및봉사분과	7.2	5.6	8.3	6.9
마을이장단분과	2.0	0.0	6.1	0.3
기타	0.4	0.0	0.4	0.5
합계	100.0	100.0	100.0	100.0

○ [표 4-29]는 주민자치회와 읍면동 행정이 서로 협의해서 만들어가야 할 기능 중 읍면동에 확대 및 강화되었으면 하는 기능에 대한 응답으로, ‘주민자치 및 공동체 맞춤형 관리지원기능’이 17.2%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임

- 다음으로 ‘사회문제 발굴기능(12.0%)’, ‘주민편익시설 관리 기능(11.2%)’ 순의 의견이 제시됨
- 특히, 동 지역과 읍 지역보다 면 지역에서 ‘주민자치 및 공동체 맞춤형 관리지원기능’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타남

[표 4-29] 읍면동 기능(강화)(%)

구분	전체	읍	면	동
주민자치 및 공동체 맞춤형 관리지원기능	17.2	14.8	21.4	17.5
사회문제 발굴기능(사회문제 발굴 후 주민공동체조직과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12.0	13.1	10.2	14.6
공동주택 연계 및 관리기능	5.6	6.6	3.4	8.0
농촌 및 도시재생지역 관리기능	5.2	6.6	10.2	1.9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능(일자리 및 경제활성화기능포함)	9.6	9.8	9.2	10.9
청년자립 및 참여기능	3.1	4.9	2.4	2.9
공동체복지 및 보건의관리기능	5.3	4.9	7.8	5.0

구분	전체	읍	면	동
도농상생 및 네트워크(어울림 분과) 기능	3.0	3.3	6.8	1.1
평생교육기능	6.2	1.6	6.3	7.7
지역자원 및 문화기능	9.9	11.5	9.7	11.1
마을(생활)안전망 강화기획 및 집행권	6.3	8.2	7.8	13.0
주민편익시설 관리 기능	11.2	9.8	4.4	5.6
여성, 아동, 청소년 보호 및 보육기능	4.8	4.9	0.5	0.8
기타	0.6	0.0	0.0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 [표 4-30] 향후 세종형 주민자치회 발전방안으로는 ‘주민자치회 대표성 강화’가 20.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그러나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민인식 및 체감을 위한 홍보(17.7%)’,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강화(16.1%)’, ‘자생력 확보기반 강화(15.4%)’와 같은 발전방안들의 응답 비율도 일정 부분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 예를 들어 면 지역의 경우 ‘주민자치회 대표성 강화(23.4%)’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읍 지역의 경우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민인식 및 체감을 위한 홍보(23.7%)’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4-30] 발전방안(%)

구분	전체	읍	면	동
주민자치회 대표성 강화	20.0	21.1	23.4	18.7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강화(가치정립 및 역할 등)	16.1	10.5	13.8	16.7
자생력 확보기반 강화(자립성강화)	15.4	13.2	16.2	14.6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민인식 및 체감을 위한 홍보	17.7	23.7	15.6	18.4
여타 주민공동체 조직(이통장, 아파트입대위, 상인회 등)과 화합 및 네트워크 강화	8.4	10.5	10.2	7.8
(읍면동)행정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 그리고 행정의 혁신	10.5	13.2	9.0	10.9
주민자치회 법제화	6.1	5.3	7.8	6.5
민관협치제도 확대 및 종합계획실현	3.6	2.6	1.8	4.4
보다 자유로운 참여보장	2.0	0.0	1.2	2.0
기타	0.4	0.0	1.2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2) 교차분석

- [표 4-31]은 운영위원회 선정방식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주민자치회와 공무원 신분 차이에 따른 인식차이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며,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전체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54.9%로 운영위원회 ‘유지’가 더 높은 결과를 보이거나, 이는 공무원 신분이 69.9%의 높은 비율로 ‘유지’를 응답한 결과가 반영된 것임
 - 주민자치회 신분의 경우 51.0%로 ‘개편’에 대한 응답이 근소한 차이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4-31] 운영위선정방식 교차분석(명, %)

구분	신분		전체
	주민자치회	공무원	
유지	103(49.0)	58(69.9)	161(54.9)
개편	107(51.0)	25(30.1)	132(45.1)
전체	210(100.0)	83(100.0)	293(100.0)

$p=0.01$ ***

*** $p < 0.01$, ** $p < 0.05$, * $p < 0.1$

- [표 4-32]는 운영위원회 개편의 필요성에 동의한 경우 운영위원회 선정방식에 대한 주민자치회와 공무원 인식차이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전체 응답자의 인식은 운영위원회의 ‘필요성이 없다’가 34.4%를 차지하며, 주민자치회와 공무원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 가장 높은 비율임
 - 그러나 주민자치회의 경우 운영위원회 개편 시 ‘읍면동장 1인+공동체 조직 추천6인’에 대한 응답도 29.1%로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4-32] 운영위원회 개편 찬성 시 대안에 대한 교차분석(명, %)

구분	신분		전체
	주민자치회	공무원	
읍면동장 추천 3인+기관단체장 추천 3인 등	13(12.6)	4(16.0)	17(13.3)
읍면동장 1인+기관 및 단체장 추천 6인	25(24.3)	4(16.0)	29(22.7)
읍면동장 1인+공동체조직 추천 6인	30(29.1)	5(20.0)	35(27.3)
필요성 없음	32(31.1)	12(48.0)	44(34.4)
기타	3(2.9)	0(0.0)	3(2.3)
전체	103(100.0)	25(100.0)	128(100.0)

p=0.434

***p<0.01, **p<0.05, *p<0.1

- [표 4-33]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에 대한 주민자치회 및 공무원 인식차이 교차분석 결과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공개모집 공개추첨’에 대한 인식이 35.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반공모 추첨+주민조직 추천+명망있는 분 선정’이 32.0%로 나타남
 - 공무원의 경우 ‘공개모집 공개추첨(37.3%)’이 가장 높은 반면, 주민자치회는 ‘일반공모 추첨+주민조직 추천+명망있는 분 선정(34.6%)’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표 4-33]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 교차분석(명, %)

구분	신분		전체
	주민자치회	공무원	
공개모집 공개추첨	71(34.1)	31(37.3)	102(35.1)
일반공모 추첨+주민조직 추천 +명망있는 분 선정	72(34.6)	21(25.3)	93(32.0)
일반공모 추첨+추천된 자 중 추첨	32(15.4)	15(18.1)	47(16.2)
일반공모 추첨+추천된 자 중 선정 (운영위원회서 추천된 자 선정)	29(13.9)	13(15.7)	42(14.4)
기타	4(1.9)	3(3.6)	7(2.4)
전체	208(100.0)	83(100.0)	291(100.0)

p=0.578

***p<0.01, **p<0.05, *p<0.1

- [표 4-34]는 운영위원회 선정방식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거주지역(읍면동)에 따른 인식차이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운영위원회 '유지'에 대한 응답이 5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의 구분 없이 모두 높은 비율을 보임
 - 다만 읍 지역의 경우 '유지(50.0%)'와 '개편(50.0%)'이 같은 비율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34] 운영위선정방식 교차분석(명, %)

구분	읍면동			전체
	읍	면	동	
유지	11(50.0)	57(64.0)	78(51.3)	146(55.5)
개편	11(50.0)	32(36.0)	74(48.7)	117(44.5)
전체	22(100.0)	89(100.0)	152(100.0)	263(100.0)

p=0.137

***p<0.01, **p<0.05, *p<0.1

- [표 4-35]는 운영위원회 개편 찬성 시 운영위원회 선정방식에 대한 거주지역(읍면동) 인식차이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전체 응답자는 운영위원회 '필요성이 없다'라는 인식이 31.9%의 비율로 가장 높았으며, 거주지역별 인식차이가 존재함
 - 동 지역의 경우 전체 응답과 동일하게 '필요성이 없다(34.7%)'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면 지역은 '읍면동장 1인+공동체조직 추천6인(33.3%)', 읍 지역은 '읍면동장 추천 3인+기관단체장추천 3인 등(45.5%)'으로 모두 상이하게 인식함을 알 수 있음

[표 4-35] 운영위원회 개편 찬성 시 대안에 대한 교차분석(명, %)

구분	읍면동			전체
	읍	면	동	
읍면동장 추천 3인 +기관단체장추천 3인 등	5(45.5)	4(13.3)	7(9.7)	16(14.2)
읍면동장 1인 +기관 및 단체장 추천 6인	1(9.1)	8(26.7)	16(22.2)	25(22.1)
읍면동장 1인 +공동체조직 추천 6인	2(18.2)	10(33.3)	21(29.2)	33(29.2)
필요성 없음	3(27.3)	8(26.7)	25(34.7)	36(31.9)
기타	0(0.0)	0(0.0)	3(4.2)	3(2.6)
전체	11(100.0)	30(100.0)	72(100.0)	113(100.0)

p=0.126

***p<0.01, **p<0.05, *p<0.1

- [표 4-36]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에 대한 거주지역별 인식차이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 37.7%의 비율로 ‘공개모집 공개추첨’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선정방식에 대한 거주지역별 인식차이는 존재하지 않음

[표 4-36]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 교차분석(명, %)

구분	읍면동			전체
	읍	면	동	
공개모집 공개추첨	6(27.3)	34(38.6)	58(38.7)	98(37.7)
일반공모 추첨+주민조직 추천+명망있는 분 선정	6(27.3)	29(33.0)	45(30.0)	80(30.8)
일반공모 추첨+추천된 자 중 추첨	4(18.2)	10(11.4)	23(15.3)	37(14.2)
일반공모 추첨+추천된 자 중 선정(운영위원회서 추천된 자 선정)	6(27.3)	13(14.8)	19(12.7)	38(14.6)
기타	0(0.0)	2(2.3)	5(3.3)	7(2.7)
전체	22(100.0)	88(100.0)	150(100.0)	260(100.0)

p=0.703

***p<0.01, **p<0.05, *p<0.1

2) 주민자치회 대상 분석

- 다음은 세종시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차이를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한 결과이며, ‘주민자치회’ 신분의 설문 응답자 거주지역(읍면동)에 따른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임

(1) 빈도분석

- [표 4-37]을 살펴보면, 주민자치회 응답자는 세종시 주민자치회 내실화를 위한 당면 문제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 및 효능감 부족’을 31.1%로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주민자치회 응답자의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 및 효능감 부족’이 가장 높으며, 동>읍>면 순의 비율을 보임

[표 4-37] 주민자치회 내실화를 위한 당면한 문제(%)

구분	전체	읍	면	동
주민자치회 대표성 미흡	12.7	24.0	11.6	13.1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미흡	8.8	16.0	5.4	8.9
자생력 확보 기반 미흡	11.0	4.0	14.3	10.6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 및 효능감 부족	31.1	32.0	26.8	32.6
여타 주민공동체 조직(이통장, 아파트입대위, 상인회 등)과 갈등	4.4	8.0	8.0	3.0
행·재정적지원 미흡으로 인한 주민자치회 업무부담	15.2	12.0	13.4	15.7
(읍면동)행정의 무관심 혹은 갈등	5.6	4.0	5.4	5.1
시범실시로 인한 한계(법률적 근거 부족)	8.1	0.0	13.4	6.8
기타	2.9	0.0	1.8	4.2
합계	100.0	100.0	100.0	100.0

- 세종시 주민자치회의 기능의 우선순위는 [표 4-38]과 같이 41.5%로 ‘주민총회의 개최, 마을계획의 수립, 마을축제개최, 마을소식지 발간 등 주민화합 및 발전업무’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며, 거주지역별 차이 없이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남
 - 그러나 읍 지역과 면 지역보다 특히 동 지역이 44.3%로 주민자치사무에 대한 필요성을 보다 크게 인식함을 알 수 있음

- 한편 읍 지역에서는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도 37.5%로 주민자치사무와 같은 결과를 보임

[표 4-38] 주민자치회 기능 중 우선순위(%)

구분	전체	읍	면	동
주민총회의 개최, 마을계획의 수립, 마을축제개최, 마을소식지 발간 등 주민화합 및 발전업무(주민자치사무)	41.5	37.5	36.1	44.3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위탁하는 사무처리(위탁사무)	8.4	12.5	11.3	6.6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협의사무)	28.3	37.5	24.7	28.8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한 건의(일반적 협의사무 보다는 소극적인 기능)	15.1	8.3	15.5	16.0
읍면동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자문	6.2	4.2	12.4	3.3
기타	0.6	0.0	0.0	0.9
합계	100.0	100.0	100.0	100.0

- [표 4-39]는 세종시 주민자치회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분석결과로, 주민자치회는 23.6%의 비율로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회 운영 및 관리’가 가장 적정하다고 응답함
- 다음으로 ‘주민자치센터운영관리(16.1%)’, ‘마을축제기획실행(15.0%)’, ‘센터 및 공동체 활성화 공간 운영(14.6%)’ 순의 결과를 보임
- 각 거주지역의 가장 높은 응답률은 차이가 없으나, 읍 지역의 경우 ‘센터 및 공동체 활성화공간운영(20.0%)’이 ‘주민자치회 운영 및 관리’와 같은 비율로 나타남

[표 4-39] 적정한 민간위탁사무(%)

구분	전체	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16.1	17.5	16.3	15.9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회 운영 및 관리	23.6	20.0	24.5	23.8
마을체험학습운영	8.8	5.0	5.4	9.8
마을축제기획실행	15.0	10.0	12.9	17.5
공동육아시설운영	3.7	5.0	3.4	3.8

구분	전체	읍	면	동
작은도서관운영	5.2	2.5	5.4	5.1
공원관리운영	2.4	0.0	2.7	2.5
센터 및 공동체 활성화공간운영(복합 등)	14.6	20.0	12.9	15.2
마을휴양지 및 유적지 관리운영	2.2	2.5	1.4	2.2
도시재생사업 및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공간운영	7.7	17.5	15.0	3.2
기타	0.6	0.0	0.0	1.0
합계	100.0	100.0	100.0	100.0

- [표 4-40]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출을 위한 운영위원회 선정방식에 대한 것으로, 주민자치회의 응답은 ‘개편’ 50.7%, ‘유지’ 48.8%로 개편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0] 운영위원회 개편 여부

구분	빈도	퍼센트
유지	103	48.8
개편	107	50.7
무응답	1	.5
합계	211	100.0

- [표 4-41]은 앞의 [표 4-40]에서 운영위원회 ‘유지’에 응답한 경우가 포함된 무응답은 51.2%, ‘개편’의 필요성에 동의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필요성 없음’에 대한 응답은 15.2%로 나타남

[표 4-41] 운영위원회 개편 찬성 시 대안

구분	빈도	%
읍면동장 추천 3인+기관단체장추천 3인 등	13	6.2
읍면동장 1인+기관 및 단체장 추천 6인	25	11.8
읍면동장 1인+공동체조직 추천 6인	30	14.2
필요성 없음	32	15.2
기타	3	1.4
무응답	108	51.2
합계	211	100.0

- [표 4-42]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을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 분석 결과이며, 주민자치회는 ‘공개모집 공개추첨’이 34.1%로 가장 적합하다고 인식함. 그 뒤를 이어 근소한 차이로 ‘읍면동장 추천 3인+기관단체장 추천 3인 등’이 33.6%로 적합하다고 나타남

[표 4-4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

구분	빈도	%
읍면동장 추천 3인+기관단체장 추천 3인 등	71	33.6
읍면동장 1인+기관 및 단체장 추천 6인	72	34.1
읍면동장 1인+공동체조직 추천 6인	32	15.2
필요성 없음	29	13.7
기타	4	1.9
무응답	3	1.4
합계	211	100.0

- 주민자치회 적정임기에 대한 주민자치회의 인식은 [표 4-43]과 같이 ‘현행유지’가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특히 면 지역에서 ‘현행유지’가 56.1%로 과반수의 결과를 보였으며, 동 지역에서도 39.2%의 높은 비율을 보임
 - 그러나 읍 지역에서만 ‘임기는 현행과 동일, 읍과 동의 연임규정만 2회로 변경’이 2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특징이 있음

[표 4-43] 주민자치회 적정임기(%)

구분	전체	읍	면	동
현행유지(임기 2년, 읍과 동은 1회에 한해 연임가능, 면은 제한없음)	41.7	18.2	56.1	39.2
임기는 현행과 동일, 읍과 동의 연임규정만 2회로 변경(임기 2년은 현행 유지, 읍과 동의 경우 2회에 한해 연임가능, 면은 제한없음으로 연임규정 변경)	18.7	27.3	13.6	17.7
임기는 현행과 동일, 읍면동 전체의 연임규정만 1회로 변경(임기 2년은 현행 유지, 읍면동 모두 임기 1회에 한해 연임가능으로 연임규정 변경)	6.0	13.6	1.5	5.4

구분	전체	읍	면	동
임기는 현행과 동일, 읍면동 전체의 연임규정만 2회로 변경(임기 2년은 현행유지, 읍면동 모두 임기 2회에 한해 연임가능으로 연임규정 변경)	14.0	13.6	10.6	16.9
임기만 조정(예, 1년 혹은 3년 등) 및 연임 규정은 현행방식과 동일	4.7	9.1	6.1	3.1
임기조정 및 연임규정 모두 변경(임기조정 예, 1년 혹은 3년 등, 연임규정 2회 등으로 변경)	4.7	4.5	4.5	5.4
임기 2년만 확정하고 연임규정은 삭제(읍면동별 연임규정 자체가 필요없음)	10.2	13.6	7.6	12.3
기타	0.0	0.0	0.0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 [표 4-44]는 세종시 주민자치회에 필요한 분과위원회에 대한 응답 분석 결과이며, 주민자치회는 22.6%로 ‘마을계획분과’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함
- 그 뒤를 이어 ‘프로그램 운영분과(13.9%)’, ‘지역자원 및 문화분과(10.5%)’,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분과(10.1%)’ 순임
 - 거주지역별 특징을 살펴보면 ‘마을계획분과’의 필요성에 대해 읍, 면, 동 순의 의견을 보임

[표 4-44] 필요한 분과위원회(%)

구분	전체	읍	면	동
아파트연합회(공동체주거등) 분과	7.7	5.0	0.0	12.0
농촌 및 도시재생분과	5.2	10.0	11.1	1.5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분과 (경제분과포함)	10.1	7.5	9.8	10.2
청(소)년분과	4.8	7.5	3.3	5.2
공동체복지분과	6.2	2.5	9.8	5.2
도농상생/어울림 분과	4.3	2.5	5.2	4.0
마을계획분과(마을안전, 환경 등)	22.6	25.0	23.5	22.2
평생교육분과	6.4	5.0	5.9	6.2
지역자원 및 문화분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브랜드 가치 창출)	10.5	15.0	7.8	10.8

구분	전체	읍	면	동
프로그램 운영분과	13.9	12.5	10.5	16.6
교육지원및봉사분과	6.4	7.5	7.2	6.2
마을이장단분과	1.6	0.0	5.9	0.0
기타	0.4	0.0	0.0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 [표 4-45]는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에 확대 및 강화되었으면 하는 기능에 대한 응답으로, ‘주민자치 및 공동체 맞춤형 관리지원기능’이 18.5%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임
- 다음으로 ‘주민편의시설 관리기능(11.3%)’, ‘사회문제 발굴기능(11.1%)’ 순의 의견이 제시됨
 - 거주지역별 특징을 살펴보면 ‘주민자치 및 공동체 맞춤형 관리지원기능’ 강화에 대해 면>읍>동 순의 응답 결과를 보임

[표 4-45] 읍면동 기능강화 사무(%)

구분	전체	읍	면	동
주민자치 및 공동체 맞춤형 관리지원기능	18.5	17.4	22.8	16.4
사회문제 발굴기능(사회문제 발굴 후 주민공동체조직과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11.1	10.9	7.6	12.9
공동주택연계 및 관리기능	5.3	6.5	2.5	6.9
농촌 및 도시재생지역 관리기능	5.0	6.5	10.1	1.7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능(일자리 및 경제활성화기능포함)	10.1	10.9	8.9	10.3
청년자립 및 참여기능	3.0	6.5	1.9	2.9
공동체복지 및 보건관리기능	5.5	4.3	7.0	4.9
도농상생 및 네트워크(어울림 분과) 기능	3.0	0.0	7.0	1.1
평생교육기능	5.7	0.0	4.4	6.9
지역자원 및 문화기능	9.5	8.7	7.6	10.9
마을(생활)안전망 강화기획 및 집행권	6.8	8.7	7.6	6.9
주민편의시설 관리 기능	11.3	13.0	9.5	12.6
여성, 아동, 청소년 보호 및 보육기능	5.0	6.5	3.2	5.2
기타	0.2	0.0	0.0	0.3
합계	100.0	100.0	100.0	100.0

- 주민자치회가 향후 세종형 주민자치회 발전방안으로 인식하는 결과는 다음의 [표 4-46]과 같으며, ‘주민자치회 대표성 강화’가 21.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외에도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민인식 및 체감을 위한 홍보(19.3%)’,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강화(13.4%)’, ‘(읍면동)행정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 그리고 행정의 혁신(12.6%)’ 순의 응답 비율을 보임
 - 한편 동 지역의 경우 ‘주민자치회 대표성 강화’보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민인식 및 체감을 위한 홍보(19.9%)’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46] 발전방안(%)

구분	전체	읍	면	동
주민자치회 대표성 강화	21.5	28.6	25.2	18.7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강화 (가치정립 및 역할 등)	13.4	7.1	11.7	14.6
자생력 확보 기반 강화(자립성강화)	11.7	7.1	13.5	12.2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민인식 및 체감을 위한 홍보	19.3	21.4	17.1	19.9
여타 주민공동체 조직(이통장, 아파트입대위, 상인회 등)과 화합 및 네트워크 강화	7.6	10.7	8.1	7.7
(읍면동)행정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 그리고 행정의 혁신	12.6	14.3	11.7	12.2
주민자치회 법제화	7.4	7.1	9.0	7.7
민관협치제도 확대 및 종합계획실현	4.3	3.6	2.7	4.9
보다 자유로운 참여보장	2.1	0.0	0.9	2.0
기타	0.0	0.0	0.0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2) 교차분석

- [표 4-47]은 운영위원회 선정방식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거주지역(읍면동)에 따른 인식차이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주민자치회는 50.8%의 비율로 운영위원회 ‘개편’이 더 높은 결과가 나타났으나, ‘유지’의 비율도 49.2%를 차지하고 있음

-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유지’에 대한 응답 비율은 면, 읍, 동 순이며, ‘개편’에 대한 응답 비율은 동, 읍, 면 순으로 나타남. 즉, 면 지역에서 55.4%로 ‘유지’에 대한 인식이 높으며, 동 지역은 ‘개편’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4-47] 운영위선정방식 교차분석(명, %)

구분	읍면동			전체
	읍	면	동	
유지	8(50.0)	31(55.4)	57(46.3)	96(49.2)
개편	8(50.0)	25(44.6)	66(53.7)	99(50.8)
전체	16(100.0)	56(100.0)	123(100.0)	195(100.0)

p=0.534

***p<0.01, **p<0.05, *p<0.1

- [표 4-48]은 운영위원회 개편의 필요성에 동의한 주민자치회 응답자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운영위원회 선정방식 인식차이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읍면동장 1인+공동체조직 추천 6인’과 ‘필요성 없음’이 30.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나, 주민자치회 응답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운영위원회 선정방식에 대한 인식이 모두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읍 지역은 ‘읍면동장 추천 3인+기관단체장 추천 3인 등(50.0%)’, 면 지역은 ‘읍면동장 1인+공동체조직 추천 6인(39.1%)’, 동 지역은 ‘필요성 없음(32.8%)’으로 나타남

[표 4-48] 운영위원회 개편 찬성 시 대안에 대한 교차분석(명, %)

구분	읍면동			전체
	읍	면	동	
읍면동장 추천 3인+기관단체장 추천 3인 등	4(50.0)	3(13.1)	6(9.4)	13(13.7)
읍면동장 1인+기관 및 단체장 추천 6인	0(0.0)	5(21.7)	16(25.0)	21(22.1)

구분	읍면동			전체
	읍	면	동	
읍면동장 1인+공동체조직 추천 6인	2(25.0)	9(39.1)	18(28.1)	29(30.5)
필요성 없음	2(25.0)	6(26.1)	21(32.8)	29(30.5)
기타	0(0.0)	0(0.0)	3(4.7)	3(3.2)
전체	8(100.0)	23(100.0)	64(100.0)	95(100.0)

p=0.101

***p<0.01, **p<0.05, *p<0.1

- [표 4-49]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에 대한 주민자치회 응답자 거주지역별 인식차이 교차분석 결과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공개추첨’이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거주지역에 따라 모두 다른 응답을 보임
 - 동 지역은 ‘공개모집 공개추첨(38.8%)’, 면 지역은 ‘일반공모 추첨+주민조직 추천+명망있는 분 선정(38.2%)’, 읍 지역은 ‘일반공모 추첨+추천된 자 중 선정(31.2%)’의 결과가 나타남

[표 4-49]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 교차분석(명, %)

구분	읍면동			전체
	읍	면	동	
공개모집 공개추첨	3(18.8)	19(34.5)	47(38.8)	69(35.9)
일반공모 추첨+주민조직 추천+명망있는 분 선정	4(25.0)	21(38.2)	39(32.2)	64(33.3)
일반공모 추첨+추천된 자 중 추첨	4(25.0)	7(12.8)	17(14.0)	28(14.6)
일반공모 추첨+추천된 자 중 선정(운영위원회서 추천된 자 선정)	5(31.2)	7(12.8)	15(12.4)	27(14.1)
기타	0(0.0)	1(1.8)	3(2.5)	4(2.1)
전체	16(100.0)	55(100.0)	121(100.0)	192(100.0)

p=0.448

***p<0.01, **p<0.05, *p<0.1

3) 공무원 대상 분석

- 마지막으로 세종시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차이를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한 결과이며, ‘공무원’ 신분의 설문 응답자 거주지역(읍면·동)에 따른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임

(1) 빈도분석

- [표 4-50]은 세종시 주민자치회 내실화를 위한 당면 문제에 대한 분석 결과로, 공무원은 24.3%로 ‘주민자치회 대표성 미흡’을 응답함
 - 공무원 응답자의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동 지역에서 40.0%의 높은 비율을 보이며, 이는 읍면 지역보다 동 지역에서 주민자치회 대표성에 대한 문제를 크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함

[표 4-50] 주민자치회 내실화를 위한 당면한 문제(%)

구분	전체	읍면	동
주민자치회 대표성 미흡	24.3	22.4	40.0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미흡	13.5	7.5	14.3
자생력 확보 기반 미흡	19.6	22.4	28.6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 및 효능감 부족	20.9	16.4	0.0
여타 주민공동체 조직(이통장, 아파트입대위, 상인회 등)과 갈등	7.4	14.9	5.7
행·재정적지원 미흡으로 인한 주민자치회 업무부담	4.7	4.5	5.7
(읍면동)행정의 무관심 혹은 갈등	2.0	1.5	0.0
시범실시로 인한 한계(법률적 근거 부족)	2.7	4.5	5.7
기타	4.7	6.0	0.0
합계	100.0	100.0	100.0

- [표 4-51]은 세종시 주민자치회의 기능의 우선순위로 ‘주민총회의 개최, 마을계획의 수립, 마을축제개최, 마을소식지 발간 등 주민화합 및 발전 업무’가 31.7%의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읍면 지역과 동 지역 응답자 모두 주민자치사무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기능이라고 생각함을 알 수 있음

[표 4-51] 주민자치회 기능 중 우선순위(%)

구분	전체	읍면	동
주민총회의 개최, 마을계획의 수립, 마을축제개최, 마을소식지 발간 등 주민화합 및 발전업무(주민자치사무)	31.7	32.3	33.3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위탁하는 사무처리(위탁사무)	16.7	14.5	16.7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협의사무)	16.7	21.0	11.9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한 건의 (일반적 협의사무 보다는 소극적인 기능)	19.8	14.5	28.6
읍면동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자문	12.7	12.9	9.5
기타	2.4	4.8	0.0
합계	100.0	100.0	100.0

- [표 4-52]는 세종시 주민자치회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분석결과로, 공무원은 28.2%의 비율로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회 운영 및 관리'가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함
- 다음으로 '주민자치센터운영관리(21.5%)', '마을축제기획실행(11.9%)' 순의 결과를 보이며, 읍면 지역과 동 지역 모두 동일한 경향을 보임

[표 4-52] 적절한 민간위탁 사무(%)

구분	전체	읍면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21.5	22.7	19.3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회 운영 및 관리	28.2	25.0	31.6
마을체험학습운영	9.6	9.1	10.5
마을축제기획실행	11.9	12.5	10.5
공동육아시설운영	5.1	5.7	5.3
작은도서관운영	5.6	5.7	3.5
공원관리운영	4.0	5.7	3.5
센터 및 공동체 활성화 공간운영(복합 등)	4.5	4.5	5.3
마을휴양지 및 유적지 관리운영	5.1	5.7	3.5
도시재생사업 및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간 운영	1.1	0.0	1.8
기타	3.4	3.4	5.3
합계	100.0	100.0	100.0

- [표 4-53]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출을 위한 운영위원회 선정방식에 대한 문항이며, 공무원 응답자는 ‘유지’에 대한 응답이 69.9%로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표 4-53] 운영위원회 개편 여부

구분	빈도	%
유지	58	69.9
개편	25	30.1
합계	83	100.0

- [표 4-54]는 앞의 [표 4-53]과 이어지는 것으로 운영위원회 ‘유지’에 응답한 경우가 포함된 무응답과 기타가 각각 69.9%와 30.1%를 차지하는 결과가 나타남

[표 4-54] 운영위원회 개편 찬성 시 대안

구분	빈도	%
읍면동장 추천 3인+기관단체장 추천 3인 등	4	4.8
읍면동장 1인+기관 및 단체장 추천 6인	4	4.8
읍면동장 1인+공동체조직 추천 6인	5	6.0
필요성 없음	12	14.5
기타	25	30.1
무응답	58	69.9
합계	83	100.0

- [표 4-55]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에 대한 응답 분석결과이며, 공무원은 ‘공개모집 공개추첨’이 37.3%로 가장 적합하다고 인식함

[표 4-55]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

구분	빈도	%
공개모집 공개추첨	31	37.3
일반공모 추첨+주민조직 추천+명망있는 분 선정	21	25.3
일반공모 추첨+추천된 자 중 추첨	15	18.1
일반공모 추첨+추천된 자 중 선정 (운영위원회서 추천된 자 선정)	13	15.7
기타	3	3.6
합계	83	100.0

- 주민자치회 적정임기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은 [표 4-56]에서 볼 수 있듯이 ‘현행유지’가 70.4%로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읍면 지역과 동 지역 역시 40% 이상의 비율로 ‘현행유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더 높게 나타남

[표 4-56] 주민자치회 적정임기(%)

구분	전체	읍면	동
현행유지(임기 2년, 읍과 동은 1회에 한해 연임가능, 면은 제한없음)	70.4	43.2	46.7
임기는 현행과 동일, 읍과 동의 연임규정만 2회로 변경(임기 2년은 현행 유지, 읍과 동의 경우 2회에 한해 연임가능, 면은 제한없음으로 연임규정 변경)	14.8	11.4	3.3
임기는 현행과 동일, 읍면동 전체의 연임규정만 1회로 변경(임기 2년은 현행 유지, 읍면동 모두 임기 1회에 한해 연임가능으로 연임규정 변경)	24.1	13.6	13.3
임기는 현행과 동일, 읍면동 전체의 연임규정만 2회로 변경(임기 2년은 현행 유지, 읍면동 모두 임기 2회에 한해 연임가능으로 연임규정 변경)	20.4	15.9	6.7
임기만 조정(예, 1년 혹은 3년 등) 및 연임 규정은 현행방식과 동일	11.1	6.8	6.7
임기조정 및 연임규정 모두 변경(임기조정 예, 1년 혹은 3년 등, 연임규정 2회 등으로 변경)	13.0	6.8	10.0
임기 2년만 확정하고 연임규정은 삭제(읍면동별 연임규정 자체가 필요없음)	16.7	2.3	13.3
기타	0.0	0.0	0.0
합계	100.0	100.0	100.0

- [표 4-57]은 세종시 주민자치회에 필요한 분과위원회에 대한 응답 분석 결과이며, 공무원은 22.6%로 ‘프로그램 운영분과’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음
 - 응답자 거주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동 지역에서는 전체 응답과 동일하게 ‘프로그램 운영분과(16.0%)’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읍면 지역에서는 ‘마을계획분과(18.9%)’ 다음 순으로 나타남

[표 4-57] 필요한 분과위원회(%)

구분	전체	읍면	동
아파트연합회(공동체주거등) 분과	10.2	1.1	10.4
농촌 및 도시재생분과	5.9	12.2	0.0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분과 (경제분과포함)	7.0	8.9	2.4
청(소)년분과	2.7	2.2	1.6
공동체복지분과	4.8	5.6	3.2
도농상생/어울림 분과	4.3	6.7	0.0
마을계획분과(마을안전, 환경 등)	17.7	18.9	8.0
평생교육분과	2.7	3.3	1.6
지역자원 및 문화분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브랜드 가치 창출)	8.6	11.1	2.4
프로그램 운영분과	22.6	14.4	16.0
교육지원 및 봉사분과	9.7	8.9	5.6
마을이장단분과	3.2	5.6	0.8
기타	0.5	1.1	0.0
합계	100.0	100.0	100.0

○ [표 4-58]은 공무원대상 분석결과 읍면동에 확대 및 강화되었으면 하는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으로, ‘사회문제 발굴기능’이 15.1%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임

- 그 뒤를 이어 ‘주민자치 및 공동체 맞춤형 관리지원기능(12.8%)’, ‘지역자원 및 문화기능(11.6%)’, ‘주민편의시설 관리 기능(11.0%)’ 순으로 나타남
- 읍면 지역보다 동 지역에서 ‘사회문제 발굴기능’과 ‘주민자치 및 공동체 맞춤형 관리지원기능’을 더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읍면 지역에서는 ‘지역자원 및 문화기능’과 ‘주민편의시설 관리 기능’이 더 높게 나타남

[표 4-58] 읍면동 기능강화 사무(%)

구분	전체	읍면	동
주민자치 및 공동체 맞춤형 관리지원기능	12.8	10.3	16.4
사회문제 발굴기능(사회문제 발굴 후 주민공동체조직과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15.1	13.8	18.2
공동주택연계 및 관리기능	6.4	4.6	10.9

구분	전체	읍면	동
농촌 및 도시재생지역 관리기능	5.8	6.9	1.8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능 (일자리 및 경제활성화기능 포함)	7.6	6.9	9.1
청년자립 및 참여기능	2.9	2.3	1.8
공동체복지 및 보건관리기능	4.7	6.9	3.6
도농상생 및 네트워크(어울림 분과) 기능	2.9	5.7	0.0
평생교육기능	8.1	8.0	9.1
지역자원 및 문화기능	11.6	12.6	7.3
마을(생활)안전망 강화기획 및 집행권	4.7	5.7	3.6
주민편의시설 관리 기능	11.0	11.5	9.1
여성, 아동, 청소년 보호 및 보육기능	4.1	4.6	5.5
기타	2.3	0.0	3.6
합계	100.0	100.0	100.0

○ [표 4-59]는 공무원이 인식하는 향후 세종형 주민자치회 발전방안이며, '자생력 확보 기반 강화'가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강화(23.6%)', '주민자치회 대표 성장화(15.7%)' 순의 응답 비율을 보이며, 본 항목들에 대해 읍면 지역보다 동 지역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59] 발전방안(%)

구분	전체	읍면	동
주민자치회 대표성장화	15.7	16.7	18.8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강화(가치정립 및 역할 등)	23.6	18.2	27.1
자생력 확보 기반 강화(자립성 강화)	26.4	22.7	27.1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민인식 및 체감을 위한 홍보	12.9	15.2	10.4
여타 주민공동체 조직(이통장, 아파트입대위, 상인회 등)과 화합 및 네트워크 강화	10.7	13.6	8.3
(읍면동)행정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 그리고 행정의 혁신	4.3	4.5	4.2
주민자치회 법제화	2.1	4.5	0.0
민관협치제도 확대 및 종합계획실현	1.4	0.0	2.1
보다 자유로운 참여보장	1.4	1.5	2.1
기타	1.4	3.0	0.0
합계	100.0	100.0	100.0

(2) 교차분석

- [표 4-60]은 운영위원회 선정방식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무원 거주 지역을 읍면 지역과 동 지역으로 구분하여 교차분석한 결과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공무원은 운영위원회 '유지'에 대한 응답이 73.5%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현행 유지에 대한 인식이 높았음

[표 4-60] 운영위선정방식 교차분석(명, %)

구분	읍면·동		전체
	읍면	동	
유지	29(74.4)	21(72.4)	50(73.5)
개편	10(25.6)	8(27.6)	18(26.5)
전체	39(100.0)	29(100.0)	68(100.0)

p=0.536

**p<0.01, **p<0.05, *p<0.1

- [표 4-61]은 운영위원회 개편의 필요성에 동의한 공무원 응답자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운영위원회 선정방식의 인식차이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운영위원회의 '필요성 없음'이라고 응답한 공무원의 비율이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 지역도 같은 결과를 보임. 읍면 지역의 경우 '읍면동장 1인+기관 및 단체장 추천 6인(40.0%)'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표 4-61] 운영위원회 개편 찬성 시 대안에 대한 교차분석(명, %)

구분	읍면·동		전체
	읍면	동	
읍면동장 추천 3인+기관단체장 추천 3인 등	2(20.0)	1(12.5)	3(16.7)
읍면동장 1인+기관 및 단체장 추천 6인	4(40.0)	0(0.0)	4(22.2)
읍면동장 1인+공동체조직 추천 6인	1(10.0)	3(37.5)	4(22.2)
필요성 없음	3(30.0)	4(50.0)	7(38.9)
전체	10(100.0)	8(100.0)	18(100.0)

p=0.150

***p<0.01, **p<0.05, *p<0.1

- [표 4-62]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에 대한 공무원 응답자 거주지역별 인식차이 교차분석 결과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공개추첨’이라고 응답한 공무원의 비율이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읍면 지역과 동 지역 모두 동일하게 ‘공개모집 공개추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읍면 지역에서 더 적합하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음

[표 4-6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 교차분석(명, %)

구분	읍면·동		전체
	읍면	동	
공개모집 공개추첨	18(46.2)	11(38.0)	29(42.6)
일반공모 추첨+주민조직 추천 +명망있는 분 선정	10(25.6)	6(20.7)	16(23.5)
일반공모 추첨+추천된 자 중 추첨	3(7.7)	6(20.7)	9(13.2)
일반공모 추첨+추천된 자 중 선정 (운영위원회서 추천된 자 선정)	7(18.0)	4(13.8)	11(16.2)
기타	1(2.6)	2(6.9)	3(4.4)
전체	39(100.0)	29(100.0)	68(100.0)

p=0.486

***p<0.01, **p<0.05, *p<0.1

2절 주민자치회 위원 및 이해관계자 FGI 분석결과

1. 주민자치회 위원 및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대상 FGI

1) FGI 조사 개요

- 먼저, 사전적으로 세종시 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중간지원조직 관계자(팀장) 등 주요 관계자에 대한 집단 및 개별심층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함
- 둘째,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을 통해 FGI를 대체함
- [표 4-63]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중간지원조직 관계자(팀장) 등을 대상으로 그룹별 FGI개요를 보여줌

[표 4-63] 그룹별 FGI 개요

그룹	FGI 대상자	일시 및 장소	주요면접질문
1그룹 (읍)	K 회장	'22.8.29/오후 온라인 (Zo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되는 행정서비스 수탁사무는? - 필요한 분과위원회는? - 주민자치회 협의기능(읍면동 기능)은? - 주민자치회 운영상의 쟁점은? - 주민자치회 및 주민총회 발전방향은?
	K 분과장		
	J 팀장 (중간지원조직)		
2그룹 (면)	S 간사	'22.8.30/오후 온라인 (Zoom)	
	M 간사		
	J1 간사		
	J2 간사		
	P 간사		
	P 분과장		
J 팀장 (중간지원조직)			
3그룹 (동)	P1 회장	'22.8.24/오후 온라인 (Zoom)	
	P2 회장		
	K1 회장		
	K2 회장		
	S 부회장		
	L 분과장		
	N 분과장		
	S 분과장		
J 팀장 (중간지원조직)			

2) 주민자치회 및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대상 FGI 분석결과

(1) 고려할 만한 행정서비스 수탁사무

■ 읍: 복지사업, 주민센터, 도시재생사업, 마을공원, 상근자 배치 등 행·재정적 지원 필요성 제시

“...상략... 무엇보다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할 만한 사업들은 마을계획사업, 주민제안사업, 상생돌봄이나 시에서,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소외계층을 돌봐주는 사회복지사업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회로 넘어오는 위탁사무가 됐으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세종시가 시범운영 중이잖아요? ...중략... 그리고 행정하고 주민자치가 아직은 좀 갈등, 묘한 그런 부분들이 봉합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이 좀 해소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의 기능, 역량 그다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인력. 이게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없이 일단 위탁사무가 온다고 하면 주민자치회도 준비되지 않은 주민자치회가 되다 보니까 과연 위탁사무를 관장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도 조금은 더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읍 주민자치회 회장 K)

“제가 2년 동안 주민자치회에서 제가 맡고 있는 분과에 대해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을공동체분과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해본 결과로는 주민자치회 역량 자체라든지 위탁, 수탁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좀 있어요. 저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참여와 관심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뭐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항목을 뒷받침하는 행정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는 참여와 체감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요. 소통도 부족하고... ...중략... 저는 우선적으로 마을계획사업, 주민제안사업과 같은 사업들에서 먼저 주민주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략...(읍 주민자치회 분과장 K)

“현재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상근자가 없기에, 일목요연하게 주민들하고 함께 자치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자립도 필요한 거구요. 재정이 있어야 상근자를 쓸 수 있고, 상근자가 있어야 또 체계적인 업무를, 주민자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게 연관성이 있어서 끊을 수가 없는 건데..중략... 현재 위탁방식으로 인건비 조달의 한계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조치원에 도도리파크처럼 마을공원을 관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상근지원자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치원읍은 이게 가능하다고 보여요. 그러나 현재 위탁사무에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지만 4대보험 가입도 안되고, 양질의 일자리도 아니어서 그 한계가 큰 거죠.”(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팀장 J)

“...상략... 주민자치 위원들의 임기가 2년이어서 사실 금방 지나갑니다. 2년이 짧기도 하지만 지속가능하게 중장기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회장을 포함해 위원은 바뀌어

도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장기적 사업이 지속되려면 상근자가 있어야 사업내용이 바뀌거나 흐트러지는 일은 없어야 하거든요. 조치원은 특히 읍면동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 가장 많은 주민세가 사업으로 환원이 됩니다. 그런 사업 중에서도 도시재생 사업들을 통해 만들어놓은 모든 시설들을 주민자치회가 관리한다고 하면, 지금 주민자치회 인적 구성으로는 그걸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이론과 현실이 다른 상황이 되버리거든요. 그것만 된다고 하면 조치원은 도도리파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앙공원이나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통해서 수익사업도 하려면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법인화라든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 필요도 있어요. ...하략...”(읍 주민자치회 회장 K)

■ 면: 도시재생, 공동육아, 공구대여, 주민센터, 도서관, 수익성 있는 협동조합 구상, 행·재정적 지원 필요성 제시

“2년 차까지는 행정수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기 때 말까지는요. 그런데 문제는 행정수탁을 받았을 때 그만큼 역량이 있느냐가 문제예요. ...중략... 뭐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도서관 운영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인력구조나 다들 자원봉사 구조잖아요? 현재 자원봉사 구조에서 이것들을 위탁받았을 때 저희가 과연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인거죠. 왜냐면 지금 간사님들도 수시로 바뀌고 계시는데 업무 연속성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고 싶은 건 많거든요. 도시재생, 공동체지원, 공동육아 면 단위 육아나 작은 도서관 같은 걸 통해서요. ...하략...”(면 주민자치회 간사 J1)

“추가로 이야기하면 현재 대략 90%? 거의 80% 이상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가 다시 받아오면 그걸 또다시 행정에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저희가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거겠지만, 행정에서 진행할거고요. ...중략...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기는 해요. 공구 대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마을계획 사업에도 들어있었고 진행했었는데, 선거법 등을 이유로 행정 쪽을 통해서 문의하면 컷을 당했습니다. 지금 2년간 열심히 했던 이유가 저희가 뭔가 하기 위해서 주민들 대상으로 뭔가를 렌탈하고 빌려주려고 여러 조건을 알아봤는데 결정적으로 다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이었구요. 그러다 보니 면 단위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마을의 꽃길 가꾸기 등 그런 사업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법인화에 대한 검토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동 단위 지역의 경우 젊은 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추진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면과 같은 지역은 생각이 있으신데 이걸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시작부터 어려움이 있어요.”(면 주민자치회 간사 J1)

“...상략...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위탁받을 수 있는 역량이 지금까지는 미비하다고 보고요. 말씀해주신 거에 좀 더 보태면 지금 참여공동체과에서 주민자치지원가 형태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효과를 보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부정적이에요. ...중략...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거기에 행정업무 담당관들도 계속 바뀌죠 ...중략... 그런 부분이 먼저 개선되지 않으면 계속 행정과 주민 간의 트러블이 발

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략...”(면 주민자치회 간사 J2)

“...상략... 주민자치회가 단기적인 건 가능한데 지속적인 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지속적인 사업 같은 경우 누가 책임지고 이끌어가냐에 대해서는 답 없이 그냥 아이디어 제공 식으로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주민자치지원가들의 역할이 대체 뭘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분들도 상당한 연륜과 경륜을 가지신 분들인데 안타깝더라고요 ...중략... 사업은 단기적인 사업은 좋은데 장기적인 사업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연속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주민자치회로 처음 들어오면 사실 주민자치회가 뭘지 모르고 오는 분들도 있고, 처음에 주민자치회로 바뀌니까 아!! 이거 마을 예산 우리가 막 쓸 수 있는 건가봐 이런 오해로 들어왔는데 와보니 그게 아니니까 대거 이탈해 나가시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가 과연 뭘지 어떤 역할인지 이런 교육이 좀 디테일하게 처음에 이루어질 바래요. 즉, 가장 필요한 교육은 회의하는 방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회의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들이 있거든요 ...하략...”(면 주민자치회 간사 P)

“단기사업으로 말하면 일단 면 단위에서 위탁서비스가 어렵긴 하지만 시도는 해볼 수는 있겠죠. 밖에서 마을공동체나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제안하긴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과연 누가 주축으로 책임지고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들어요. 위원분들이 마을에서 어떤 협동조합을 운영한다거나, 수익성 있는 협동조합 중심의 사업들을 하고 싶다고 하세요. 근데 그 협동조합을 꾸준히 이끌어가야 하는데 사람이 계속 바뀌잖아요. ...중략... 마을계획 사업은 단계적인데, 그런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수익사업을 위해 뭘가를 만들자고 하면 그게 어떻게 지속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면서 아이디어만 내는 거죠.”(면 주민자치회 간사 P)

“우리 면은 거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인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젊은 세대가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컴에서 또 젊은 세대가 없다 보니 나가서 일해야 하다 보니 아동 문제에 심각성이 있어서 노인과 아동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마을대학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연속성이라든지 누가 책임지고 운영하고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지금 저희는 복컴을 짓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11월 정도 되면 완공될 거 같아요. 그러면 그 복컴의 한 공간을 우리가 젊은 세대를 유입하려고 하는데, 젊은 세대가 우리 전동면에 왔을 때 살기 편한 마을을 만들어주려고 하면 그런 마을대학 같은 이런 걸 운영하고 싶어요. 그러나 연속성이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누군가가 맡고 책임지고 운영할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간사를 맡고 있지만 임기가 끝나면 바뀌잖아요. 누가 책임지고 연속성으로 이어 나갈 만한 그런 게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면 주민자치회 간사 S)

“...상략... 단기적인 것은 가능한데 장기사업이 사실 어렵고요. 그다음에 행정서비스 위탁을 받을래도 담당 공무원들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저희가 뭐 도서관이든 복지사업이든 마을사업이든 받으려 해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

도 거의 없고, 수익사업을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다른 지역 면 단위하고 똑같이 인적 자원이 안되고, 과연 이걸 누가 책임을 맡을 거며, 누가 이걸 지속적으로 협동조합을 끌고 갈 사람이 있는지 고민이에요. 그리고 과연 회계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중략...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지역에 있을까? 그게 문제인 거 같아요. 왜냐면 간사님들 서류나 이런 작업 하는 거 다 무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활동에 대한 댓가를 일부 정도는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나와서 맨날 봉사만 하래요. 그러니까 되려 더 점점 힘들어져 가는 상황 같아요. ..하략...(면 주민자치회 간사 M)

“마을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마을의 자산으로 먼저,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복컴이 있는 지역은 복컴의 운영과 관련된 것, 그리고 경로당, 마을공원관리 등이 있을 것으로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운영할 상근자 배치가 선행되어야 해요. 농촌지역의 특성상 복컴, 경로당과 마을공원관리를 통해 마을주민대상으로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자치회의 재정적 자립성을 높일 필요성도 있어요.”(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팀장 J)

■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프로그램, 복컴, 도서관, 마을축제, 주민총회, 상근자 등 행·재정적 지원 필요성 제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많으며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경험이 축적되어야 하기에 우선적으로 고려할만한 수탁사 무라고 생각합니다.”(동 주민자치회 회장 P1)

“현재 위탁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만, 그래도 지향점은 지역내에 현존하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아요. 이를 통해서 결국 주민활동의 자생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현재 특정의 어떤 사무를 발굴하기보다는 수익화를 위한 구체적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동 주민자치회 회장 P2)

“행정서비스 위수탁... ...상략... 우선 행정에 속해있는 커뮤니티 시설들이 꽤 있거든요. 복컴을 보게되면 유치원, 도서관 등의 시설관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분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략... 주민자치회라고 있지만 대체 무엇을 하느냐? 라고 한다면 아쉬운게 많아요. 다만 현재 마을계획수립, 프로그램운영 등 두 개의 틀로 움직이지 않느냐 생각이 들구요. 마을계획사업 하나를 보더라도 주민세 환원을 통해 들어온 돈 말고 사용할 재원이 없다는 게 한계예요. 그리고 문서, 서류작업 외에도 사람들 밥도 사줘야하는 등 행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비용도 참 많이 들구요. 따라서 사회적 경제로 연계해 수익을 올리고 그 수익금을 활용하는 방식이 이어졌으면 해요. 결국 위수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충원 등이 필수인거죠. ...하략...”(동 주민자치회 회장 K1)

“현재 수탁받아 수행할만한 사업을 나열해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중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회 운영 및 관리, 마을계획수립 등 업무가 가능해보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살펴보면 마을체험학습 운영, 마을축제기획실행, 센터 및 공동체활성화 공간 운영(복검 등) 등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동 주민자치회 회장 K2)

“생각할 수 있는 공원관리, 휴양지, 유적지, 도시재생 이쪽은 특수상황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업무들 같고요. 주민총회 및 운영이라던가 아니면 복검과 같은 기본 시설에 대한 운영 등 이런 것도 가능할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누가 할 거냐? 의 문제를 고민을 항상 하는 거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 운영 하나만 하더라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운영자를 뽑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운영자가 그분이 공교롭게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오셨었어요. 주민자치위원 하시면서 운영을 하고 나름 소정의 금액으로 더 많은 시간을 봉사하고 계셨는데, 일반 위원들이 봤을 때는 어 저 사람은 돈을 받고 일하는데 우리는 무급이네? 라는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하략...”(동 주민자치회 분과장 S)

“...상략... 위탁사무 이런 거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과연 이 위탁사무를 했을 때 시행을 했을 때, 과연 이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있어요. 아무리 저희가 교육을 받고 이런 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식을 습득해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어디까지나 아마추어적인 느낌이 날 수밖에 없고 활동이 버거울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일례로 지금 자치 프로그램이나 주민총회, 마을계획사업들 이런 거 하나하나 진행 하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전혀 새로운 일들이었기 때문에... ...하략...”(동 주민자치회 분과장 N)

“저는 위탁도 위탁이지만,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주민자치회에서 크게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중략... 한 사람의 희생 혹은 소수집행부의 과로로는 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가볍게 주민들이 더 많은 주민들이 가볍게 참여해야 하는데 실상 저는 위탁사무 자체가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위탁사무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잡다한 사무를 위탁이 아닌 이름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까지 하면 겁이 나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같아요. ...하략...”(동 주민자치회 부회장 S)

“민간위탁을 하게되면 인력이 필요한데요. 시 차원에서지 인건비 지원을 해서 전문적인 사람이 와서 도와줘야 주민자치위원들이 나와서 뭐 부담없겠죠. 따라서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현 시점으로는 저희가 뭐 유료 봉사자를 구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저희를 도울 수 있겠어요. 프로그램 사업을 했을 때, 그 예산을 인건비로 충분히 쓰도록 해준다든지,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줘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마을계획사업도 마찬가지고 누가 진짜 진정하게 도와줘야 잘 되듯이 봉사할 사람 말고 급여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동 주민자치회 분과장 I)

(2) 필요한 분과위원회

■ 읍: 직능단체, 이장단 분과, 주민자치회 중심 네트워크 필요

“조치원을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기획운영분과, 마을공동체분과, 교육문화분과가 있는데, 주민자치회마다 약간씩 차이점이 있겠지만, 지역사회, 직능단체들, 주민자치회가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심점이 되어서 그 안에서 흩어져 있는 봉사단체들도 꽤 있고, 체육회나, 지역사회보장회의체나, 의용소방대, 방범대 등 우리 마을을 기반으로 한 사회단체들이 하나로 네트워크가 제대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봐요. ...중략... 정말 지역사회라 하면 우리가 기초적인 한 마을을 이루는 공동체잖아요? 마을을 이루는 공동체 속에는 다양한 직능별 단체들이 존재하는데, 아직 보면 그걸 하나로 묶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는, 지역사회를 묶어갈 수 있는 고민을 최근에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단체의 중심이 되어 마을의 중요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거죠.”(읍 주민자치회 회장 K)

“분과위원회 구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은 참여도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참여의지가 중요한거죠. ...중략... 그런데 일상을 살면서 지내고, 각기 직장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 여러 사람이 모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저는 무엇보다 분과위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게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읍 주민자치회 분과장 K)

“각종 직능단체들이 주민자치회 안으로 다 들어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동체분과라고 해서 이장님들 간의 분과, 직능단체 분과, 이런 식으로 공동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면 좋겠고 마을계획단이 열린 분과로 들어오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분과를 운영할 때 위원들 말고 마을계획단이 그 분과로 모집이 되는 거죠. ...중략... 읍 지역에도 아파트 단지들이 있잖아요. 입주자 대표자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마을단지 안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대변하실 수 있고, 의견들을 저희가 취합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지원센터 팀장 J)

“...상략... 좀 전에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또는 다양한 사회계층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하나로 모아가는 역할이 필요해요. 그 속에 주민자치 위원들이 30명이면 그 밑에 분과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거죠. ...하략...”(읍 주민자치회 회장 K)

■ 면: 마을교육, 청(소)년, 이장단, 마을기업 등 사회적 기업, 직능단체 분과, 분과를 늘리기보다는 사무국의 상시적 지원 필요

“...상략... 면 단위의 가장 문제가 젊은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있는 분과를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구심점이 없으니 모이질 않아서 아이들을 파고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을교육분과 같은 개념, 그러니까 아이들을 학교에서 끌어낼 수 있는 분과를 구성해놔야 지역 어르신들이 동네 아이들을 생각하고 참여할 거 같고요. 다음으로 마을이장

을 중심으로 한 분과도 논의할 만한데 지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장님들은 행정을 겪어서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장님들이 들어오셔서 분과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예산쪽 분과를 선택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양날의 검이 되는 게 뭐냐면 주민참여예산제 진행하잖아요. 요즘은 숙원사업이라고 말하는데 마을 이장님이 올리신 안건을 다시 이장님이 심의하는 구조가 나오다 보니까 지역 분들 얘기가 있으시거든요. 면은 동과 달리 마을 회를 통해 안건이 올라오고 그 마을회는 이장님들이 구성되는 상황인지라, 제안사업에서 젊은 층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막혀있는거죠 ...중략... 그래서 차라리 이장분과를 따로 뽑아서 협조를 요청하는 루트를 공식적으로 만들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중략...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분과요. 그런 식으로 아예 특성화 분과를 우선 활용하는게 좋다고 봐요.”(면 주민자치회 간사 J1)

“교육에서 꿈꾸는 분야 하나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하고, 거기서 뭐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걸 부모랑 같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주민자치회 교육분과에서 가지고 있는 꿈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 단계를 넘나드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학교는 소문은 내주는데, 말씀하신 행정조직의 구조적인 한계가 있죠.”(면 주민자치회 간사 J1)

“저희 면은 프로그램, 복지, 운영기획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중략... 마을에 아이들이 살면서 마을에 대해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청소년분과 같은 것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면 지역은 하기 어려운 게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시는 어른들 위주이다 보니 한계가 있죠. 그리고 마을 회의를 대부분 오전에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동 지역은 직장인이 많아서 저녁에 회의를 하기도 하는데 면은 농업에 종사하시니까 저녁에 일하기가 어려우니까 오전에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 주민자치회에 학생들, 청년들을 구성하고자 하잖아요. 근데 거의 활동을 안 해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좀 마을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 하면 좋겠는데, 시스템이 없으니까요. 저희가 한다고 해도 그게 시스템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참여도 어렵고 해서 이게 저희 마을의 문제인 것 같아요.”(면 주민자치회 간사 P)

“저희는 기획예산분과, 마을계획단분과, 프로그램분과, 문화환경분과 등 4개가 있어요. 23명이 계시고 분과는 네 개로 운영되고 있고요. 특별히 뭘 더 추가할 건 없고, 4개로 진행될 듯 합니다. 전에 낮에 했더니 직장인들이 많아서 저녁 7시에 회의를 합니다. 직원 상관안하고 합니다. 저희도 소규모 사업을 선정하고 할 때, 주민자치회에서 기획예산분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장님들하고 마찰이 좀 많아요. 왜냐면 전혀 마을회에 대해서 이장님들이 교육이 되어있지 않고, 마을회가 주민자치회 등에 대해 이해를 못하기도 하기에... ...중략... 분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소규모 숙원사업 등을 기획예산분과에서 하는 사업을 왜 해야 하고 왜 이장님들이 마을회의를 거쳐서 필요한 사항이 올라와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이장님 교육이 필요해요.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를 주민과 상의해서 올라와야 하는데... 올해도 총회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주민들이 몰라요. 자기 동네에 올라온 사업을 말이죠. 몇 사람이 주물러서 그냥 올라오고 하는 이런 병폐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좀 많아서... ...하략...”(면 주민자치회 간사 M)

“예산은 많은데 사업이 올라오는 걸 보면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듯이 면 쪽은 마을회의 이장님들하고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에서는 올릴 수가 없어요. 그 마을에 제안하래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겨요. 왜. 그게 마을에서 할 사업이 있고 주민자치가 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은 저희가 소규모 숙원사업에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략...” (면 주민자치회 간사 M)

“...상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장님들에 대해서 왜 주민자치회가 예산협의를 하게 되는지, 그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이장단 회의 때 교육시켜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장님들도 그걸 받아들이지 왜 우리가 하던 거 주민자치회가 하게 했어? 내 밥그릇 뺏네? 이렇게 느끼지 않게 교육이 필요한 데 사실은 시에서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이장님들도 각자 면 지역의 나름의 파워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예산협의회가 주민자치회로 넘어왔다면 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거든요. ...중략... 그런 측면에서 이장단분과, 직능단체 분과 등을 만들어 마을의 다양한 활동들을 묶어내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중략... 면 지역은 대부분 주민자치회가 행정사무를 다 주무관에게 의존하고 있어서 주민자치 담당 주무관에 핸들링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주민자치회가 실무를 하면서 요구를 하면 어느정도 반영이 될 수도 있는데 면 지역은 주무관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서 그 부분이 어렵고요. ...중략... 그리고 행정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무관이 와있어야 의제발굴 단계부터 가르마를 탈 수 있는데, 전혀 그게 안되면 마을계획단이란 주민자치회가 열심히 사업을 만들었는데 안 되는 사태가 나오고, 그럼 다음에 마을계획단에 참여 안하죠 ...하략...”(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팀장 J)

“...상략... 분과 같은 경우는 저희도 4개가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회의할 때 2개 분과를 같이 연계를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때그때 참석률이 100% 참석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2개 분과를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분과를 늘리기보다는 차라리 사무국을 좀 더 튼튼하게 갖춰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일단 사무국 같은 경우 회계정리, 회의록, 그런 부분까지 행정의 부분에서 도움받기도 하고 있고, 민간인 입장에서 전문적 지식이 없다 보니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사업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기도 하지만 공모사업이나 자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능력도 함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면 주민자치회 간사 J2)

“저희가 분과를 우리도 4개 운영하고 있고, 경제분과를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을계획에 할 때 마을 자체 내에 복컴에 마을대학을 만들고 싶었어요. 마을대학 안에 경제적으로 마을기업을 만들고 나름대로 막 크게 만들었는데 복컴을 사용할 수 없다, 이것도 할 수 없다, 못한다, 이래서 다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마을계획단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그런 상황이 이번에 생겼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주민자치회에 이장님들 다 들어와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뭐 말을 하면 이장님들이 고정관념 있어서 그거 누가 하나, 어떻게 하나하시는 거죠. ...하략...”(면 주민자치회 간사 S)

“복권이 들어서고 여유를 주면 마을대학을 운영하면서 마을프로그램 만들고요. 그리고 전 동면 전체에 청년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얘기를 좀 하고 우리 농산물과 풍부한 자원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랑 연계를 시켜서 판매하고 공유하면 그 돈을 가지고 마을대학 운영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기존 이장님들의 고정관념에 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민자치회가 발전하려면 이장님협의회와 우리 주민자치회가 분리되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고 결론을 냅니다.”(면 주민자치회 간사 S)

“면 지역은 고정된 주민자치위원들이 이장님이나 혹은 고정된 분들이 계속하시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바꾸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주민자치회에 상근자가 있어야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근자가 있으면 이장님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해서 설득할 여력이 되고요.”(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팀장 J)

“청소년분과를 개설하여 내가 살고있는 마을의 현황에 관심을 갖고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아니면 아이들이 느낀 우리마을의 장단점을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후 어른들과 논의를 거쳐 진행하면 우리마을에 관심이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면 주민자치회 분과장 P)

■ 동: 평생교육, 지역자원문화, 경제, 마을안전 및 환경, 도농상생, 아파트 연합회, 청소년 분과 등 제시

“저는 평생교육분과, 문화여가프로그램 위주의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주도적인 평생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동 주민자치회 회장 P1)

“우리 지역의 동 같은 경우 지역자원문화분과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신생도시 세종시만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역문화를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분과로서 그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고 상품화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상권과 경제에 기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봤어요.”(동 주민자치회장 P2)

“...상략... 마을하고 연계한다고 하면 일단 마을의 정체성이 먼저 필요할 거 같아요. 마을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있는지, 도농인지, 아니면 아파트로만 되어 있는지, 시골인지, 주민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업에 관심이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해서 해야 하죠. 먼저 저희는 법인 성격의 어떤 것을 만들어서 마을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사나 아니면 용역사업들을 수주하고 진행한다라는 그런 지향점이 있어서 경제 활성화나 그쪽이기 때문에 결국은 먹고사는 문제고 돈이 돌아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제활성화... 경제분과 그쪽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과 연계를 하고 자생력 갖출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동 주민자치회 회장 K1)

“주민자치회 활동 중에 분과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동에서 현재 구성하는 분과위는 기획예산분과, 마을계획분과, 프로그램운영분과, 교육지원봉사분과 등 4개로 이루어 지는데 그 중에서 고민할 만한 것들은 마을안전과 환경과 관련된 분과, 그리고 청소년 분과와 프로그램운영분과의 연계 같은 것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신도심이기 때문에 지역자원 및 문화분과를 신설해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고 브랜딩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도농상생분과 같은 것을 통해 농촌지역과 교류할 수 있는게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 일부 분과위를 통합하고 조정하여 나갔으면 합니다.”(동 주민자치회 회장 K2)

“일단은 저번에 다정동 총회보고 느낀 게 많은데, 고등학교 학생 및 청소년들과 하는 게 좋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저희가 학생들이랑 같이 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따로 분과를 만들어줘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진행하고 저희랑 따로 미팅을 해서 협력하는 식으로... 그런 거는 저희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좀 다른 애긴데동에 있는 여러 직능단체라던가 특히 아파트...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아파트 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제가 주민자치 일을 아파트에 많이 전달하는 편인데 다른 동들은 그게 안되거든요. 오히려 배척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민자치회가 뭘데?라는 식이죠. ...중략... 주민자치회가 우리끼리만 주민자치회지 동에서 봤을 때는 니들이 뭘데? 이런 것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연합회와 연계하기 위한 어떤 분과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동 주민자치회 분과장 S)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었다는 사례 중 아파트연합회, 직능단체 등과 주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동에 필요한 사업들을 머리를 맞대면서 고민하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모습을 보았어요. 이러한 방송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성을 느껴요. 그리고 우리 마을계획사업을 보더라도 마을계획단에 들어와서 사업을 발굴하는데 이 사업들이 우리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성성 여부만 판단하고 총회투표에 선정이 되면 진행되는 형식이더라고요. 진행과정에서 저는 건의하고 있지만, 마을의 대표성을 띄는 단체들 예를 들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같은 단체들, 직능단체들과 주기적으로 만나 협의하면서 우리 동에 필요한 사업을 진행해 나갔으면 해요. ...중략...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참여도 높였으면 하구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에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들은 유관단체, 직능단체들을 포함한 회의체를 운영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동 주민자치회 분과장 N)

“...상략... 타지역을 오가면서 현수막 붙어있는거 보면 어디 동네에서 주민총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만 8세도 있고 만 10세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집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린이들, 청소년들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어요. 학생자치를 활성화시켜 주민자치회로 이어지게 하는 과정은 중요하다고 봐요. 사업권 등을 가지고 분쟁 등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아이들의 눈이 더 순수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연서면 등에서 ‘고라니를 지켜줘’라는 사업을 아이들이 낸 것으로 알고 있

어요. 아이들,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꽤 필요해요. ...중략... 프로그램 분과는 우리가 위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크게 필요한 분과로는 보이지 않아요. 다만 직능단체, 아파트입대위 등 주변의 주요단체들과 협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동 주민자치회 부회장 S)

(3) 주민자치회 협의사무

■ 읍: 복지, 보건, 도시재생 기능, 마을관리시스템 확립

“실상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주민자치회 회장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의제와 안건이 있어도 찾아올 일이 없잖아요. 그냥 행정으로 가지... 그래도 우리 읍의 경우 나름 마을제안사업 등을 위해 주민자치회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무엇보다 주민들의 대표성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할 것이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추천방식이다 보니 우리가 어떤 조직인지도 모르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고, 참석율도 저조한 경우가 다반사이죠. ...중략... 마을계획사업이나 위수탁사업 등을 주민자치회가 만들어가려면 무엇보다 주민자치회 위상이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과 소통하고, 같이 고민하고 함께 성장해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각 직능단체별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나갈 필요성도 있어요. 이러한 인식들이 자리잡아야 주민자치사업이 잘 된다고 보구요, 행정은 제반여건 등을 위한 뒷받침이 되도록 지원해야하는 부분이구요.”(읍 주민자치회 회장 K)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회로서 권한과 위치를 확보하려면, 주민들과 좋은 사회적 관계망을 깊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주민자치회가 가장 큰 권한과 힘을 가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행정이 못하니까 주민들 사이의 의견을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수렴하자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더 많이 주민들 속으로 연계되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바탕으로 행정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공동체 복지나 보건관리라고 봐요. 속속들이 주민이어야만 알 수 있는 문제들을 주민자치회가 알고 있어야 그게 주민자치회의 파워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과 연계해서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복지나 보건관리라 협력해서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팀장 J)

“추가적으로 조치원은 사실 동과 면 지역의 색깔을 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조치원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그냥 초대로서 오는 주민들이 아니라, 주민들이 의견을 모으는 그런 기능으로서의 주민자치회가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하고요. 이 과정에서 주민자치회와 읍면동 행정이 협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팀장 J)

“주민자치회가 본청 말고 읍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주민자치회가 사실상 행정 쪽하고 대화가 되는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 내용을 취합해서 행정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한다는 기본 틀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게 사실인데 일단은 저희와 행정 쪽에 사실상 미팅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고민이나 이런 거 나왔을 때 본청업무가 될지 읍면동이 될지 잘 모르기도

하구요. 오히려 이장님들이 이러한 사정을 더욱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장님들하고 상호작용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한계가 있구요. ...중략... 행정관계 주무관님들과 협의해서 풀어가고 싶은 의제들이 있는데 잘 안되고.... ...하략...”(읍 주민자치회 분과장 K)

“조치원에서 필요한 기능적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읍면 지역에 복지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소외계층 돌보는 사업이라든지 상생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조치원읍에는 평리에 마을관리소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행안부 공모를 해서 평리가 선정이 됐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 관리가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관리가 되도록 한다면 좋겠어요. 지금은 하나의 마을공동체 마을관리소지만 아파트 천 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도 주민자치회가 방향을 잡아줄 수 있고 마을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접근하게끔 한다고 하면, 그 기능 속에서 주민자치회는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또 그 안에서 서비스도 제공하고 수익도 좀 기본적인 수익구조도 만들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읍 주민자치회 회장 K)

■ 면: 평생교육, 복지, 농촌 및 도시재생, 지역사회단체협의회 조직 필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필요

“주민자치회와 이장단이 초기에 서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거 같은데 풀어가는 방법이 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장님들이 이전에는 외부에 계셨기 때문에 뭘 하는지를 몰랐고, 지원을 안 하셨어요. ...중략... 주민자치회가 뭘 하는지 이장님은 모르세요. 반대로 이장단 협의회가 뭘 하는지 주민자치회원님들도 이해를 잘 못하세요. ...중략... 면에서 있는 단체끼리의 교류를 보면 이장단을 못 들어오게 할 거면 이장단에 있는 사무국장이나 회장님 정도는 모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평생교육 사업도 저희 면 단위에서는 필수적이거든요. 근데 면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나왔을 때 타 기관이라면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쪽에서 사업제안을 하더라도 저희가 반영하거나 뭘 할 수가 없어요. ...중략...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사회 복지 쪽은 솔직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 업무영역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저희가 침범을 한다? 할 순 있는데 역량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현재 저희 지역 내 조직된 단체들을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면 주민자치회 간사 J1)

“...상략... 주민자치위원회일 때는 예전에 면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공간이 있었던 거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복컴과 같은 거대한 건물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회의 장소는 있어도 주민자치회 공간은 없어요. 공간 활용만 하는 거지, 주둔할 곳이 없는 게 이해가 안가고요. 동 지역과 읍면 지역 주민자치회가 지역 특성에 맞게 달리 성격을 가져야 하는 것 같아요. ...중략... 우리 면은 네트워크 형성하는 게 제일 시급한 거 같아요. 각기 단체는 있는데 뭘 하는지 몰라요. ...중략... 몰라서 단결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해요. 문제는 행정을 의존하다 보니 주민자치회 자체적으로 하는 거보다 관 주도로

가는 게 많이 있거든요. 지원가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그냥 앉아있다 가지 않게 주민자치회에서 제대로 인력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중략... 주민자치지원가를 일자리 사업으로 만들어주면 그분들 역량은 차치하고라도 역할이 뭔지는 알려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면 주민자치회 간사 P)

“...상략... 면에서 할 수 있는 협의기능을 말씀드린다면, 공동체 복지 및 보건관리기능 같은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행정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리 단위의 복지 및 보건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행정과 협력하여 개선하거나 관리할 수 있죠. 그리고 농촌 및 도시재생 관리기능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에요.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서의 관리가 아니라 마을주민이 함께 만들고 싶은 마을로서의 관리가 필요하죠. 이런 점에서 행정과의 협의를 통해 효율성보다는 공공가치를 생각하는 관리가 이루어지면 좋겠어요.”(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팀장J)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소통이지 않나 싶어요. 각 회장님 이하 저희는 이장님들도 들어와 있고 한데, 각자 역할들에서 하려고는 하는데 고유 일이 있고 상주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트워크를 위한 중간 전달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중략... 특히 저희 면 단위는 다 사회단체협의회라는 조직이 있어서 각 단체들이 그런 부분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 등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면장님의 역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략...”(면 주민자치회 간사 J2)

“각 면 단위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도나 이장님들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주민자치가 지역에서 뭘 하는지를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각 단체장님도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행정과 협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이나 단체에 주민자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중심에 있는지 스스로 많이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주민자치회가 지속적으로 가려면, 사무국이 따로 있어서 이걸 구심점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해야지, 어차피 담당 공무원이 때 되면 가버리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연속성이 안돼서 주민이 연속성을 갖게끔 중간 매개체 역할을 주민자치회가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면 주민자치회 간사 M)

“면지역의 경우 각 기관의 단체장들과의 보이지 않는 갈등과 기싸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 이장단들과의 이견이 발생하는 것이 다소 많구요. 가장 불편한 부분이죠. 따라서 각 단체장들과의 협력으로 지역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가는 자리로 발전되었으면 하구요. 이러한 부분에서 중요한 기능이 필요합니다.”(면 주민자치회 분과장 P)

■ 동: 지역자원 및 문화, 도농상생, 주민자치 및 공동체 맞춤형 관리지원, 주민편익시설관리, 네트워크 기능,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필요

“우리 동 지역은 행정과 협력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역자원 및 문화기능 등이 내려 줬으면 합니다. 동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밀착형 사무로 보이기 때

문이고 그에 대한 수요도 있습니다.”(동 주민자치회 회장 P1)

“신도심 지역에 특성을 이해하고 어떠한 기능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하여 제시하면 우선적으로 도농상생 및 네트워크 기능을 읍면동 단위에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봐요. 이를 통해서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농간의 교류를 확장해 나가는 등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동 주민자치회 회장 P2)

“협의사무를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보다 행정보조자가 필요해요. 어떤 행사나 어떤 기관에 공문발송을 위해서도 문서행위나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 우리 동의 경우 젊은 사람들이 있어 상대적으로 가능한데, 다른 읍면 같은 경우는 거의 공무원들이 다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의록이나 아니면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그런 것들 자체도 다 주무관이 맡아서 한다고 들었어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시간이 많아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자료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 쪼개서 하긴 하지만, 전문성 측면에서는 처음 해보면 이게 이렇게 하는 건가? 저렇게 하는 건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읍면쪽은 거의 주무관들이 도맡아서 하더라고요. 동은 상대적으로 덜 하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보조자가 필요한건 사실이에요. ...하략...”(동 주민자치회 K1)

“행정과 협의해서 확대 및 강화되었으면 하는 기능으로는 주민자치 및 공동체 맞춤형 관리 지원 기능이 필요해요. 현재 행정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회문제를 발굴하여 지역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마을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기획력이 읍면동에 그 기능을 이관해 주민자치회 등 공동체조직과 협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민편의시설 같은 것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커졌으면 해요.”(동 주민자치회 회장 K2)

“저두 지원문제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봐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1기 때하고 2기 때 해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주무관이 매번 바뀌는거예요. 힘드니까 행정차원에서도 NO라고 얘기 하는 거거든요. 거의 다수의 행정쪽 담당자들이 늘 관두고 싶어하세요. 위탁사무를 했을 때 행정차원에서는 안해도 되는 사무로 바뀌는 거죠. ...중략... 마을계획사업 등을 할 때 정말 필요한 중요한 사업을 실행하고자 하면 행정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담당 주무관 혼자 감당하기엔 역부족인거죠. 그리고 대부분 하고싶은 사업을 접는거죠. ...하략...”(동 주민자치회 분과장 S)

“...상략... 주민자치에 대해 공무원이 전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 게, 계획사업만 해도 저희가 상설분과로 만들 만큼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뭐 하다 가고 하다 가고 하면 맥이 끊기는거라서... ...중략... 가로등 설치와 같은 하드웨어를 설치할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평생교육과 같은 게 마을계획으로 들어와야 하지 않는가? 생각해요. ...”(동 주민자치회 부회장 S)

(4) 주민자치회 운영상 쟁점

■ 읍: 주민총회, 마을계획 등 참여율 저조, 낙선자의 참여 미흡

“주민자치위원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참여율이 읍면지역에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게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중략... 어려운 부분은 구성원들을 어떻게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한 방향성으로 일관되게 우리 마을을 위해서 나아갈 것이냐?에요 그 분들이 조금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선거에 의해 주민자치회장 등을 선출하다 보니까 위원들끼리 선거를 했는데 불구하고 낙선하신 분들이 참석을 안하시는 부분 등이 있어요. 공적인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못하시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략...”(읍 주민자치회 회장 K)

“일단 제가 생각하는 조치원을 주민자치회는 2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사람 모이지도 못하는데 불구하고 마을계획단이라 같이 계획사업도 성실히 했고, 굉장히 고생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요. ...중략... 계속 같은 이야기인데, 처음에 참석율이 좋다가 코로나 19와 함께 사람들의 생업에 지장과 함께 주민자치회 운영에 어려움을 조금 겪은 것 같아요. ...중략... 앞으로는 이게 조금 참여도가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가 될 것 같고 그래야만 하고요. ...하략...”(읍 주민자치회 분과장 K)

“읍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분과장님 말씀처럼 결국은 참여도인데요. 주민자치위원이 마을계획이나 총회에 얼마만큼 참여할 건가? 왜 참여율이 저조해지는가? 해를 거듭할수록 위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해지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도 했었고요. ...중략...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자치회를 먼저 읍의 주민들한테 알리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거 하나랑 리 단위의 마을회, 지금 조례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마을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지원센터 J)

■ 면: 사무실 등 자제 부족, 공간활용 어려움, 전반적 이해도 부족, 주민자치체감 부족, 평가 시 면지역의 한계,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업무공백, 봉사자의 낮은 인건비 문제 등 제기

“우선 주민자치회라는 행정조직을 가지고 있고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행정을 대행시키겠다고 하는데, 원론적으로 들어가 보면 주민자치회 사무실 제대로 가지고 있는 분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쓰게 노트북이나 PC를 제공하는 데도 없어요. ...중략... 그걸 가지고 전문성을 강화하라는 것은 솔직히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거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공간, 장소, 거기서 필요한 사무용품이 있어야죠. ...중

략... 두 번째는 궁금한 게 주민자치회 회장단 협의회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공식적인 단체가 아니거든요. 임의의 단체잖아요. 근데 세종시에서는 사업이나 홍보를 할 때 회장단 회의에 공문 보내고 끝내세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 어필하면 회장님과 주민자치회 사이에 소통이 안되십니다라는 말로 끝내버려요. 주민자치는 저희가 회사를 운영할 때 공문은 담당자나 대표 메일로 보내게 되어있는데, 주민자치회에 내려오는 모든 공문이나 문건은 회장단 회의할 때 문서 한 장으로 주거나 주무관님을 통해서 전달돼요. 저희가 주민자치회 메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만든다고는 했지만, 개통이 안 된 상황인데요. ...중략... 대표성과 연속성을 위해 주민자치회 이름으로 주민자치회 사무국이 가장 좋긴 한데, 사무국이 안 된다면, 대표 메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팀 프로그램이든 뭔가 하나가 있어야 하고, 그걸 통해서 공식문건이 왔다 갔다 하고 ...중략... 그런 식의 발상을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략..."(면 주민자치회 간사 J1)

“창의적인 마을계획을 만들어두면 예산이 크지만 그런 부분은 좀 어렵고요. 지금 저희지역에 복컴이 만들어지는데 마을계획 수립할 때 주민자치회가 마을계획단을 그 복컴에 주민들의 프로그램을 넣기를 희망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공간 하나를 쓸 수 없다고 허락 안 하니까 복컴이 만들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가 거기 어떤 프로그램을 얻거나 어떤 공간을 쓰는 게 허용이 안돼요. ...하략..."(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팀장 J)

“주민자치 하면서 주민자치 역할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과 가이드라인이 상당히 필요해요. 마을계획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런 갈등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초기에 시작할 때 그런 교육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형식적인 거나 그런 거 말고, 구체성을 가지고 역할이 뭔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만 필요한 거예요. 길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대부분 교육을 보면 형식에만 치우쳐서 귀담아 들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건데 매뉴얼에 다 있다고 하지만 그거 누가 다 읽겠습니까? 중요한 건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받으면 아 이런거구나 라고 알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교육은 그 정도의 교육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면 주민자치회 간사 P)

“저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5기부터 간사를 보고 있거든요. 사무실 얻는데 한 1년 넘게 언쟁을 했던 것 같아요. 면장님이랑요. 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욕구가 해결되다 보니 또 하나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이게 내부적인 부분에서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됐고요. 현재 주민자치회에서는 저희가 조례에서부터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져야하지 않나 싶거든요. ...중략...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는 위원회였을 때와 비교해 주민숙원사업이나 그런 거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도 프로그램 같은 부분만 운영하는 걸로 비춰지고 있다는 점이지요. 아직 큰 변화를 못느껴요.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하략..."(면 주민자치회 간사 J2)

“동과 면의 선정방식에 대한 차별화된 개편이 필요하구요. 지금 시에서 주민자치 평점 매기는 게 있어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취약계층하고 이런 것을 면을 평가하는 점수표에 있어

요. %로 남녀비율, 연령비율 이런 게 있어서 이게 고쳐지지 않는 이상은 고친다고 해도 안 된다는거죠. 시에서 그런 부분을 다 고쳐줘야 저희도 수월하고 하니깐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주민자치 담당자를 두는데 너무 많이 바꾸고 어느 때는 담당자 인원이 없어서 공석을 만들고 이런 거를 좀 시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략... 시청에서 담당자를 줬으면 최소 2년은 그 업무를 하게 됐으면 좋겠고, 주민자치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최소 7급은 되어야 그 업무나 회계처리나 주민과 유대관계나 이런 게 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그래서 면과 동은 좀 조례상 면 단위를 좀 주민자치회를 편리하게 운영하게끔 약간의 필요한 조항을 바꿔주셨으면 하는 게 바라는 점입니다.”(면 주민자치회 간사 M)

“우리 지역의 주민자치회는 세종에서도 많이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도 더 많고 그러한 관계로 사무국장외에 사무장을 두어 프로그램 관리 및 복지화관 관리 등 여러 사무적인 일을 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없어서 자원봉사로 활동하는데 한계가 크다는 점이 있어요. 따라서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이라도 주고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면 주민자치회 분과장 P)

■ 동: 행·재정적 지원의 부족, 대표성 한계, 주민자치 운영상 전반의 한계, 봉사자의 낮은 인건비, 위탁사업 수행시 지역상권과 마찰 가능성, 다양한 직능·자생단체와 협력의 어려움, 행정의 높은 개입, 위원간 갈등과 관심부족, 주민총회 부분에 있어서 홍보에 매몰되는 점 등이 제시됨

“주민자치회 운영의 핵심은 주민자치회 위원이죠.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은 위원활동을 원하는 주민이고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주민자치에 대한 사전교육을 미리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여한 인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지원이 부족하다는데 한계가 커요.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동 주민자치회 회장 P1)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에 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 내에 각 직능단체들의 역할 분담을 넣어 함께 만들어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직능단체의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각 단체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고 분단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자치회가 대표성을 가지기도 어려워요.”(동 주민자치회 회장 P2)

“쟁점 사항 되게 많죠. 너무 많아서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프로그램 운영이에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우리가 현재 한 30개 가까이 오픈한 것 같은데 이게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선정부터 시작해서, 사람 뭐 강사 모집하고 그리고 수강생 모집하고 돈 받고 떨어진 사람 또 대응해야 되고 또 뭐하고... 지금 프로그램 이번 주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일이 민원이 너무 다양해요. 별게 다 있어요. 내가 신청했지만 내 와이프가 다니면 안되냐? 부터 시작해서 별 건들이 상상도 못한 건들이 너무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중략... 요구사항과 불만은 많은데, 봉사자가 와보니 일을 몇 시간만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고 해서 왔는데 진짜 부딪혀 보니 그 시간이 아니라 주말에도 나와서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80만 원의 임금이거든요. 최저임금 줘도 할까 말까요. ...중략...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나만 해도 행정과 생각하는 차이가 너무 커요. ...중략... 마을장터 이런것도 해보고 싶는데 제약도 많이 따라요. 우선 동에서 하게 되면 민원도 발생하고, 어떤 농산물판매장을 상시로 연다면 주변상인과의 마찰 가능성도 높고요. 해봐야 이벤트성만 협의를 통해 가능하겠죠. 그리고 행정조직은 민원을 너무 무서워하는게 사실이고, 우리도 물론 그렇구요. ...중략... 한두가지가 아닌 거죠.”(동 주민자치회 회장 K1)

“주민자치회의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운영의 민주성, 동등한 권한 및 참여, 개방성, 투명성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동 지역은 아파트입주자 대표, 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체육회, 바르게살기운동, 적십자,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새마을회, 의용소방대, 상인회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마을계획을 수립해 주민총회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민자치회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는 각각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아파트입주자대표는 아파트별 동대표가 모여 아파트의 현안과 아파트 공동체 활동의 제반사항을 논의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조하여 현안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저는 아파트입주자대표(동대표)가 주민자치회 위원에 지원하여 함께 활동하며 지역현안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논의하여 조치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지역에서도 역시 주민자치회 활동과 통장협의회의 협조와 동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동 주민자치회 회장 K2)

“주민자치회 운영에서 너무 성과에 치중하여 활동하기보다는 위원 간, 직능단체 간 협력과 관계유지를 잘하면 갈등의 요소가 감소하고 수행업무도 합리적으로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동 주민자치회 회장 P2)

“마을계획사업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때, 행정 측에서 개입이 크다고 봐요. 특히 예산안을 올릴 것을 다른 사업과 붙이는 거예요. 천만원 짜리 사업인데 갑자기 이천만원짜리 사업으로 변하기도 하고, 늘어서 좋을 수도 있으나 이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진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천만원일때는 그에 따른 계획이 서 있는 것인데, 결국 필요하지 않아서 불용처리하고 싶은데... 각기 사업별로 행정측에서 편의에 따라, 물론 그 편의가 주민쪽의 편의라고 한다면 어쩔수 없으나 저희 입장에서는 아닌거죠. 추가적으로 말하면 어떤 행사를 할 때 마을계획사업이 행사면 주민들이 참여가 중요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팸플릿 등 홍보물도 만들고, 각 아파트에 게시하는 등의 과정이 있어요. ...중략... 그런데 이 비용이 이백만원 정도, 사업이 크면 일천만원도 되요. 홍보비로 들어가는데 상당한데 이 홍보비가 결국 대행업체 배분해주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하략...”(동 주민자치회 회장 K1)

“무엇보다 주민자치를 실행하기 위한 지원인력과 인건비 문제 인거죠. 따라서 인건비 문제가 해결되고 해야 사무국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요. 최소 한명은 상시직이어야 한다는 점이지요. 두 번째는 주민자치 위원들이 뽑힐 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뭘 하는지 모르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나오다가 안 나오세요. 혹은 회의만 참석하길 원하시고, 저희 지금 갈등 부분 있는 게 뭐냐면 운영자한테 모든 업무를 다 던지고 교육분과도 우리는 회의만 하겠다. 이렇게 계신 거예요. 자기들은 회의 수당 받고, 강사선정위원회 이런거만 하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강사선정 할 때 자기들은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 중략... 그리고 위원들간의 갈등, 혹은 관심부족도 나타나구요. 결국 주민자치위원들이 안나와요., 통장들은 나오시는데... 따라서 일단은 주민자치위원을 뽑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분들이 선임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요. ...하략..."(동 주민자치회 분과장 S)

“주민총회하면서 홍보할 때 느낀건데 거리에 현수막 걸고, 전단지 뭐 각 아파트 단지마다 게시물에 붙여놓고, 그다음에 각 단지 커뮤니티 거기에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뿌리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이 홍보물들이 과연 그만큼 가치를 하는가? 생각해요. 저는 거기에 되게 회의적이거든요. 저도 유인물 홍수 속에서, 아파트 내에서도 유인물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안보거든요. 저부터도 아파트단지 게시판에 홍보물 있으면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슬쩍 보고 말지, 거기에 대해서 크나큰 관심이나 이런 게 가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 고운동 같은 경우는 제가 마을계획사업에 대한 동영상 직접 찍었거든요? 저희가 직접 찍고, 동영상을 만들고 자막까지 만들고, 이것을 QR코드로 해서 온라인으로... ...중략... 저는 동이나 시본청에서 주민자치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민자치회라는 활동에 대해 어떤일을 하는지 등 의미와 내용을 잘 설명해주면서 자부심도 생길 수 있구요. ...하략..."(동 주민자치회 분과장 N)

“계속 담당 주무관님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의 의존도도 높고 담당 공무원은 피로도가 높기도 하죠. 그래서 새로운 담당주무관이 오게 되면 업무를 익히기까지 역으로 저희가 도와드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제 개인적 바램이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개인 시간을 할애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일이나 이런 것들을 사업 아이템이나 진행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한 기록물, 뭐 회의록 작성 이런 것들이야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예산까지 집행을 해서 회계처리까지 하는 것까지 해야한다면 너무 피로감이 높은거예요. 저는 이부분에서는 담당 공무원분들이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봐요. ...중략... 그리고 우리가 마을계획사업 예산으로 집행은 하지만 이 관리주체는 시에서 본인이 설치도 해주고 관리까지 해주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마을계획사업에서 이걸 추진했기 때문에 관리도 매년 동에서 마을계획사업에서 유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거죠. 저희는 마을계획사업이라는 거는 저희 동에 순수하게 주민들이 같이 즐기고 이런 쪽으로 가면 좋겠는데 가로등 설치하는거 까지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서 관리까지 하라는 거는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략... 저희가 금년에도 가로등 설치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도 설치가 될 거예요. 근데 관리주체는 아직도 저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또 협상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장님께도 강력하게 어필했는데, 이런 부분은 협의 사항이 아닌 거 같다. 이런 것들은 시에서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 마

을계획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솔직히 달갑지 않은데 관리주체까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거는 더욱더 이상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동 주민자치회 분과장 N)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그래서 저희는 계속 위촉되는 게 이런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마을 계획사업으로 올라왔을 때, 마을계획단에 참여했지만, 이런 관리주체 때문에 부담을 갖고 이것 역시 내년엔 반영이 안되면 저희가 계속 안고 가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강력하게 해서 좀 관리주체에 대한 것들은 시에서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동 주민자치회 분과장 N)

(5) 주민자치회 및 주민총회 개선점

■ 읍: 주민축제로서 총회, 경험을 통한 성숙의 시간 필요, 주민 자주성 확보와 공론장 운영 등 제시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도 겪었지만... ...중략... 프로그램이나 의제, 주민참여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행정이나 센터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조직원은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중략... 조직원은 주민총회 자체는 정말 하나의 주민들의 축제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어요. 주민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마을계획사업, 주민제안사업,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말이죠. 이제 2회차 주민총회를 했는데, 주민총회가 좀 딱딱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 타이틀부터 바뀌가면서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가고려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일하다보면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이나 위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위상과 기능을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만들어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읍 주민자치회 회장 K)

“주민자치회든 총회든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은 자주성 있게 더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은 각기 생업이 있지만 모두가 가지는 관심과 생각의 차이가 있기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마을의 이야기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렇다보면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역량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잘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주민총회가 축제처럼 이어질 것 같습니다. 조직원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 축제나 축제와 관련된 것이 많이 있다 보니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될 듯하다고 생각합니다.”(읍 주민자치회 분과장 K)

“주민자치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역량, 위원들의 역량,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역량을 갖추신 분들이 활동하셔야 한다는 생각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엘리트주의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한 논의는 이러한 모든 주민의 참여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위원들의 역량이 강화되어 간다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이 차별성으로 보입니다.

주민자치가 주민의 역량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부족하고 어수룩해도 그것이 주민자치회가 단단해져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인정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행정적인 역량 등이 부족한 위원들이 참여하더라도 그분들과 이 과정을 겪어내면서 주민들의 역량이 높아져 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위원들의 마음이 열려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세종사회적경제지원센터 팀장 J)

■ 면: 농번기 (참여 및 예산집행 등) 고려, 행정에서 이장단과의 갈등 문제해결, 주민총회 및 주민자치회 인식교육 및 홍보, 주민공동체조직과 네트워크 강화, 상시적 인력배치, 마을회의 민주적 운영체계 확립 제시

“...상략... 주민총회는 주민을 위한 행사가 돼야 하는데 저희는 코로나를 위해서 최소한으로 줄여서 했지만 다른 지역들이 크게 하다 보니까 임원진들이 대외적인 홍보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중략... 어느 순간 축제가 되는 거예요. 축제로 가는 게 맞긴 해요. 축제로 가는 게 맞긴한데, 문제는 본질이 흐려지는 상황인거죠.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서 내년에 무슨 사업을 하는지, 주민자치회가 뭐 하는지 알리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역량강화를 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해서는 사무국설치는 필수일 것 같고 사무국이 안되면 지원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1월에 시작되고 12월에 예산이 마감되는데, 면의 마을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는 3월, 4월에 끝내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으셔야 해서 5월부터는 마을계획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이 없으시고, 농사 끝나면 겨울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진행해드려야 하는데, 규정상 11월까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평가에 들어가니 행정에서는 그 뒤로 관심이 낮아져요. ...중략... 스케줄이 주민들의 생활 리듬에 맞춰진 게 아니라 행정의 예산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장단과의 관계예요. 저희는 생긴 지가 4년밖에 안 됐고 반면에 이장단은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계세요. 그런 분들하고 저희가 계속 트러블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행정조직에서 조율을 해줘야 하는데, 서로 소통 안 되다 보니 서로의 영역이나 역량을 모르고 있어서 그런 오해를 풀어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역량강화 뿐 아니라 자연스러운 교류 장소를 일부러라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면 주민자치회 간사 J1)

“총회의 문제는 홍보가 어렵다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장님들이 주민자치회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들어온 이유는 굉장히 의도가 좋아요. 주민자치회에서 뭘 하는지를 알아서 그걸 마을에 적용하고자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장님들이 들어오니까 좋은 점은 이장님들을 연계하지 않으면 주민자치회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이번에 총회도 저희가 이장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인원 동원이라던가 홍보 이렇게 하니깐 그분들이 그거를 주민자치에 참여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까 그거를 가서 전달을 잘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었어요. ...중략... 이장님들과 잘 소통 관계를 하면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좋았기 때문에 주민조직과의 네트워크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총회까지 연계되었을 때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면 주민자치회 간사 p)

“주민자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무국, 상주할 수 있는 인력 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왕이면 여러 단체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상주하는 인원으로 지역민이어야 한다는 것이 베이스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총회 같은 경우 항상 주민자치 발표회랑 같이 엮어서 했거든요. 단지 이제 총회 같은 경우 일단 기본 저회 면에서는 축제 형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일단 예산이겠죠. 예산도 이제 특히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 예산이 없으면 그게 어느 정도 축제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형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총회를 거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과정에 예산 증액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면 주민자치회 간사 J2)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주민자치회 홍보를 위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리단위 주민들은 주민자치회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를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회에 대한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거죠. 따라서 형식적인 과정으로써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의 역할분배를 통해 찾아가는 마을계획 설명회와 주민투표소 운영 등도 제안해 볼 수 있어요. 고령화된 면지역 마을주민에게 주민자치회가 수립한 계획과 리단위 제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찾아가는 투표소를 통해 마을주민의 투표와 총회 관심도를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이미 리단위의 마을회가 있으나 이장 단독의 의견이 개진되고 실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리단위의 마을회가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활성화가 되도록 면단위의 주민자치회의 운영체계 보완이 필요합니다.”(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팀장 J)

“면지역은 현재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 만 아니라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이 적어 항상 했던분들이 계속하는 상황이죠. 이러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로 발전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 및 교육, 그리고 홍보 등이 필요해요. 아울러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면의 현안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도가 매우 저조해 항상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위주로 현안을 발굴하고 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주민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주민총회를 따로 해야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제 생각은 각 단체에서 1개의 사업을 이끌어 낸 뒤 회의를 거친 후 계획을 수립하면 오히려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면 주민자치회 분과장 P)

■ 동: 주민공동체조직과 네트워크, 행정의 지원강화, 주민자치회(혹은 주민총회)에 대한 주민의 인식 및 체감강화, 주민총회의 명확한 인식 및 역할 정립 (주민주도성 확보), 마을계획사업 등 교육 및 선진사례 학습, 마을계획사업 및 제안사업의 실제 실행가능성 확보 등 제시

“주민자치회의 개선을 위해서는 여타 주민공동체 조직과 화합 및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해요. 주민자치회에 대한 여타 주민공동체 조직의 왜곡된 인식,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읍면동 행정의 대한 소극적 자세와 미묘한 갈등 인식 해결,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에 대한 인

식 등의 개선을 통해 마을 주민공동체 조직과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마을계획사업과 주민제안사업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에서 주민과 행정의 고민이 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계획단이나 주민제안사업의 홍보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를 위해서는 주민참여에 대한 홍보 기회를 더욱 늘리고 주민참여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구할 뿐 아니라 사업제안과 선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고민이 필요합니다.”(동 주민자치회 회장 P1)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민의식 및 체감을 강화하고 주민자치회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주민 주도성을 가진 기획과 홍보도 필요하구요. 아울러 주민총회 같은 경우 지역의 축제로서 인식과 문화 정립과정도 중요합니다. 주민 스스로가 지역을 위해 참여하고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진정한 역할을 필요로 하는 움직임 같은거 말이지요.”(동 주민자치회 회장 P2)

“...상략... 주민총회 준비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었고, 이러한 상황 때문에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두 달 정도 부랴부랴 준비해서 주민총회를 했었는데 주민총회도 마찬가지로 예산은 거의 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자꾸 돈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과연 이게 천만 원 이상의 발표까지 했으니까 거의 2천 가까이 들어갔겠네요. 이게 이 정도 돈을 들여서 이걸 해야 될 건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중략... 주민총회라는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알려주는 자리인데, 뭔가 방향이 맞질 않는듯한 거죠. 무엇보다 주민총회를 하면 각각 읍면동의 회장님, 행정관청, 정치인들이 돌아보면서 여기는 못했네, 어찌네, 저찌네 뒷말도 무성해요. ...중략... 바로 부담감이 작용해 홍보에 더 치중하고 하는거예요. 이렇게 거창하게 발표해서 남는게 무엇인지... 이게 너무 변질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주민자치회 측면에서 보면 연속성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총회를 해서 내년 사업을 결정하면 그 사람들은 현재위원 들인데 내년 위원들이 처음 들어와서 이 사업을 보면 이해가 낮아요. ...하략...(동 주민자치회 회장 K1)

주민자치회가 전환되어 활동한 기간이 얼마되지 않고 대부분 2년~3년 정도의 경험이어서 주민의 인식이 부족해요. 다른 직능단체의 봉사활동과 다르게 마을계획 수립 등 고민할 사항도 많구요. 따라서 주민의 주민자치회의 활동과 역할에 대한 홍보 그리고 인식개선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 및 가치정립 등이 요구되고 이 과정에서 여타 주민공동체 조직과 연대와 네트워크를 해서 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를 통해 분과위원회 활동을 강화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민총회에 대해서는 주민 주도성이 중요하다고 봐요. 주민이 중심이 되어 기획하고 홍보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결국 주민이 중심이 되는 축제의 장이 필요한거죠. 오프라인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온라인 투표를 병행하면서 참여를 독려할 필요도 있구요. 무엇보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의제가 최종적으로 보고되는 장이므로 단순 행사가 아닌 주민축제의 장이었으면 하고 지역의 직능단체, 봉사단체, 행정이 서로 협력하고 동참하는 장이 되기될 바랍니다.”(동 주민자치회 회장 K2)

“주민총회를 바라볼 때 투표율이 높은 총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홍보를 위한 총회를 할 거냐 등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 선거 때문에 짧게 간 것도 있지만, 그 전에 1기부터 두 번 세 번 해보면서 본 게 뭐냐면 주민총회를 위해서 마을계획사업도 그냥 단계의 하나로 전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무엇이나면 의제 발굴이라는게 신중해야 하거든요. 어떤 주민들이 뭘 할건지 아카이빙도 많이 해야 하고 해야되요. 사실은 마을계획단 해보면 결국 몇 명 안 남잖아요. 분과별로 3~4명에서 짜는건데, 자기 필요사업 이해 득실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시의 실정도 잘 모르는 주민자치 디자인 전문 강사분이 두세달 의제 발굴해도 실행 단계 가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중략... 세종시의 주민자치회는 여러 가지 논쟁이 많아요. 그럴바에 교육 위주로 마을계획사업이 시작될때부터 수업을 받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동에서 어떤 것을 했는지 들어볼 기회도 좋구요. 어떤 사업의 경우 우리마을에 더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기에 이를 벤치마킹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참여율이 매우 낮다는데 그 한계가 있는데, 아파트 안건 하나보다도 낮은 참여율이에요. ...중략... 의제발굴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 이야기를 나누고 해야하지 않을까 해요.”(동 주민자치회 분과장 S)

“...상략... 주민총회에 대해 허례허식 행사라는게 느껴져요. 주민총회를 할 때 어떻게 구성할지 등등 고민을 해야하는데 동에서 주축이 되어 이끌다보니 저희 의견이 거의 커트되요. 이번에는 정말 간단히 하고싶었는데.... 중략... 왜냐하면 주민총제로 구성하기에는 주민관심도 많이 떨어져 있고, 홍보도 부족하고, 꾸미고 가꾸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 현재 단계에서 아닌 것 같은데 동 행정은 다르게 생각하더라구요. ...중략... 이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소요됐어요. 주민총회라는게 주민들이 조금 부족하고 어리숙해도 주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프로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죠. ...중략... 과연 이런 행사를 위해서 허례허식처럼 하는 것은 저는 지금 시기에는 좀 맞지 않다고 봐요. 좀 더 주민자치가 좀 알려지고 주민들의 참여도 늘어나면 그렇게 축제형식으로 될 거 같은데,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동 주민자치회 분과장 N)

“저 개인적으로 하나 생각한 것은 마을계획사업을 할 때 마을계획단 모집을 하고 마을계획단이 꾸러지고 몇 번의 강의를 통해서 사업이 발굴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분과장님처럼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안건보다도 못 할 때가 많아요. 시에서 운영하는 시민참여 예산도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그 접수받은 걸 심사를 통해서 투표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동도 작은 규모지만 저희 마을계획사업을 꾸릴 때 동에서 어떤 공간을 열어줘서 수시로 접수를 받아서 동에서 이게 적정 사업인가 좀 미리 판단도 해보고, 미리 판단이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을계획단에 야심차게 참여해주신 분들의 안전이 마을계획사업으로 적절치 않다고 이 사업이 다 끝났는데 판정이 나다 보니까 실망하신 분도 되게 많이 계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참여한 사업이고 동 주민들이 다들 좋다고 한 사업에 대해 행정차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추진이 안 되는 부분에서 아쉬운게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더 길게 가지고 동에서도 자치회 공간이 있으면 아이들부터 학생 등 다양한 주민들이 제안한 마을사업에 대해 미리 행정적으로 검토해줄 필요가 있어요.”(동 주민자치회 분과장 N)

“주민총회 2년이니까, 2년을 해봤잖아요. 하다 보면 1%, 그 쪽 맞추는 건 아니지만 규정 상 1% 이상이기 때문에 1%는 해야 할 거 같아서 1% 맞추려고 첫해는 지역의 상가에 오피 라인으로 이거 돌리고 다녔어요. 그 과정이 어려웠어요 주민자치회 이해도 부족하고, 잡상인 정도로 이해하기도 하고, 누구냐? 이런 시선이 많았던거죠. 그런 노력으로 주민총회 인원을 맞춰갔던거죠. 그리 1년을 하니 다음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다가 학교라는 자원을 활용하기 시작한거죠... 중략... 우리 동에는 마을계획, 주민제안사업 등 여러개 사업이 있는데 회의감이 드는게 있어요. 심지어 주민자치회 위원들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에 반해 행정은 수동적 자세로 임하고 있구요. 주민 자치에 참여하는 동안 즐거워야하지 않을까요? ...중략... 소수의 인원만 희생해서 이끌어가는 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행정에서는 고과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니 소극적이라고 보고요. ...중략... 시민의 체감도 부족하고, 홍보도 부족하고, 행정도 문제고 그렇다고 봅니다. 아직은 압담한거죠.”(동 주민자치회 부회장 S)

“마을계획을 하면서 느낀 것은 환경분야에 친환경적인 부분에서 필요 이상으로 홍보를 참 많이해요. 정말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후 폐현수막이 너무 생기는 거예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환경에 관심이 있는 편이라 신경 쓰이기 시작했고, 아이디어가 나오면 계획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다양한 정보에 대한 문의를 하고 어디서 모이고, 이를 위해 누가 모아주고, 연락을 돌리고 하는 등 하나의 사업에 정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실 봉사자만으로 쉽지 않아요.”(동 주민자치회 부회장 S)

2. 공무원 대상 개방형 설문

- 세종시의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가로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기 위해 설문지를 배포했으며 설문기간은 '22.8.15.~8.31.기간 동안 이루어짐

[표 4-64] 개방형 설문 개요

FGI 대상자	설문기간	주요면접질문
읍면동별 주민자치 담당공무원	'22.8.15~8.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행정기능강화 분야는? - 필요한 분과위원회는? - 주민자치회에 필요한 협의기능은? - 주민자치회 운영상의 쟁점은? - 주민자치회 및 주민총회 발전방향은?

- 다음 FGI분석 결과는 각 그룹별 논의를 종합적으로 묶어 정리하여 제시함

[표 4-65] 공무원 대상 개방형 설문 분석결과

구분	읍면 동	설문 대상자	주요의견
읍면동 행정 기능강화	읍	A,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제 발굴 기능(사회문제 발굴 후 주민공동체 조직과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면	A, L, 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제 발굴 기능(사회문제 발굴 후 주민공동체 조직과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 지역주민이 문제를 발굴하여 해결까지 이어지는 발굴 기능이 필요함
		B,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및 도시재생지역 관리기능 -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 필요사업 조사 결과 해당 분야 관련 수요가 많았음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기능
		D, G, 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 및 공동체 맞춤형 관리 지원 기능 -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원하기 위해 해당 기능 강화가 필요함 - 읍면동은 생활여건 등 많은 부분이 달라 그 지역 주민자치회 및 지역공동체에 맞는 지원 기능 강화가 필요함

구분	읍면 동	설문 대상자	주요의견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광고물, 마을환경정비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원형 -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더불어 타 지역 주민들의 유입과 흥미를 일으킬 수 있도록 지역명소,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자긍심과 활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함
		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방범대 운영 등, 마을(생활)안전망(자연재난 포함) 강화 기획 및 집행권 - 다른 업무는 위탁 운영이 가능하나, 사실상 해당 업무는 관에서 지휘해야 할 것으로 보임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개인이 떠안는 법적 책임 완화 ▪ 주민과의 소통 기능 강화
		J, 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능 (일자리 및 경제활성화 기능 포함) ▪ 도농상생 및 네트워크(어울림 분과) 기능 - 도농간 문화·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해결책으로 도농이 상호 교류 가능한 경제·문화적 자원에 대한 개발 및 도농간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기능 강화가 필요함 - 도시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방문 및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문화·경제적 자원의 개발 및 홍보도 필요할 것임
		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기능 - 문화 관련 교육이 필요함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복지 및 보건관리기능 - 날이 갈수록 복지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주민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주체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임. 또한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주민들이 행정서비스 수혜를 몸소 느낄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함
		Q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문제 해결기능 - 환경문제가 점점 커져가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인 지원이 부족함(인력, 재원 부족) - 각 면에 환경직 공무원 자리를 만들어주고, 전문적으로 전담할 사람이 필요하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도 필요함
		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행정, 통합민원

구분	읍면 동	설문 대상자	주요의견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창조형 - 본인 마을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진행할 수 있음
	동	A, O, 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제 발굴 기능(사회문제 발굴 후 주민공동체 조직과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B, G, P, N, Q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기능 -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평생교육 지원이 필요함 -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폭넓은 연령을 수용할 수 있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함 ▪ 주민센터 점검, 공중화장실 관리, 어린이 공원, 작은도서관 운영 등 주민편익시설 관리 기능 - 다양한 시설을 통한 주민편익 제고가 필요함 - 이러한 기능 향상에 대한 요구가 많음 - 다른 기능보다 많은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음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능(일자리 및 경제활성화 기능 포함) - 일자리나 경제활성화 기능 강화가 필요함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원 및 문화기능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자립 및 참여기능 - 지금까지 청년들에 관한 정책적 배려가 많이 부족해 왔었고 이에 따라 최근 청년들에 관한 정책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도 그에 따라 관련 행정기능을 강화해야 함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연계 및 관리기능 - 세종시 같은 경우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거주지가 조성되어 있어 기존의 형태로는 공동체 의식 함양 등 커뮤니티 형성에 어려움이 있음
		H, 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행정 및 통합민원 강화 - 행정력의 부족(인력의 문제)으로 직원의 피로도 증가 및 업무 부담이 상당히 큼 - 주민자치회에 일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업무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는 것보다 참여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음 - 마을계획에 이리이러한 일을 맡아서 해야한다고 알려드려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신 분들이 많기에 제대로 된 주민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게 업무를 도와줘야 함

구분	읍면 동	설문 대상자	주요의견
필요한 분과위원회	읍	I, 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복지(I) -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합한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함 ▪ 사회복지(T) - 독거노인, 소외계층 증가로 인한 맞춤형 복지의 중요성이 증대됨
		J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원 및 문화기능 -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부분이 문화, 여가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함
		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광고물, 마을환경정비 - 주민들이 가장 체감하는 부분이며,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음
		R, 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아동, 청소년 보호 및 보육기능 - 세종시는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임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 및 공동체 맞춤형 관리 지원 기능
	면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운영분과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원 및 문화분과(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 브랜드 가치 창출)
		A, D,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계획분과(마을안전, 환경 등)(A) -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춘 마을계획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함 ▪ 마을회와 마을계획분과의 연계강화(D) - 지역주민 전체에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 ▪ 마을계획분과(마을안전, 환경 등)(O) - 자신이 살고있는 마을환경을 관리하고, 필요한 시설물들을 직접 계획하고 조성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주민자치 실현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함
		B, H, 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및 도시재생분과 -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 필요사업 조사 결과 해당 분야 관련 수요가 많았음 - ***면은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담당 분과가 없어 위원들이 자치회와 도시재생사업 병행 운영에 어려움을 느낌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 및 봉사분과
E, P,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이장단분과 - 이장님들과 협의가 필요함 - 주민자치회가 점점 역할이 커지면서 마을이장단과 주민자치회 간에 화합이 중요해짐 		

구분	읍면 동	설문 대상자	주요의견
		F, 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의 경제력 활성화와 지역, 그리고 주민이 상생하여 마을기업을 발전시키고 더 많은 지역 사업체의 성장을 돕는 것이 중요함 ▪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분과 (경제분과 포함)
		G, L, H, N, 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상생/어울림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 여건을 감안하여 도시와 농촌이 서로 돕고 협력할 수 있는 지원 분과가 필요함 - 도심지역 주민들의 농촌지역자원 이용 및 도농간 교류 활성화에 대해 방안 모색 과정에서 농촌 입장에서 보다 유리하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고려하기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함 - 동과 밀접하게 위치해 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분과가 필요함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운영 사업 전반에 대해 자체 교육 진행할 수 있는 분과
		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복지분과
		Q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 얼마나 지원해주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동	A, H, 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 및 봉사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의 부담 및 행정력 동원 등 행정부담이 크지 않은 분야를 확장시키는 것이 좋음 ▪ 평생교육분과
		B, F, K, Q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연합회(공동체 주거 등)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도시에서는 대다수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인 만큼 주거생활에 대한 논의가 중요함 - 주민자치회의 행사 홍보, 모집 등 공동주택단지가 주민자치회의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침 - 각 아파트별 입주자대표회의라는 주체와 관리사무소 관리비 재정을 통한 주민자치가 가능함 -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할 수 있는 것 같음
		B, C, D,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인구가 활성화되어야 장기적으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봄 - 지금까지 청년들에 관한 정책적 배려가 많이 부족했고 이에 따라 최근 청년들에 관한 정책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도 그에 따라 관련 행정기능을 강화해야 함

구분	읍면 동	설문 대상자	주요의견
		C, G, I, P, S, T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운영분과 - 효율적인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함 - 주민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분야이며 주민 자치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함
		J, R, U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계획분과(마을안전, 환경 등) - 마을의 안전과 환경 부분을 주민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마을안전에 관심이 많기 때문임
		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회 운영분과 - 운영을 도맡아서 할 사람이 명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자원 및 문화분과(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 브랜드 가치 창출) -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브랜드 가치를 살린 지역 홍보를 통해 인구 유입과 경제 이윤 창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분과(경제분과 포함)
읍면동 협의기능	읍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 및 공동체 맞춤형 관리 지원 기능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문제 발굴 기능(사회문제 발굴 후 주민공동체 조직과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면	A, H, 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문제 발굴 기능(사회문제 발굴 후 주민공동체 조직과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 2년마다 이동하는 행정에서 문제를 발굴하기에는 근무시간이 지나치게 짧고 피상적인 문제만 발견하기 쉬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문제 발굴기능이 반드시 필요함 -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주민과 행정간 차이가 존재할 것이므로 고질적이고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문제 발굴을 위해서는 주민차원의 논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임 - 반면 사회문제가 발굴되어도 주민차원에서는 해결에 한계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행정적인 지원을 통한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B, L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 및 도시재생지역 관리기능
		C, 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아동, 청소년 보호 및 보육기능

구분	읍면 동	설문 대상자	주요의견
		D, F, K, 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 및 공동체 맞춤형 관리 지원 기능 - 마을을 발전시키고 마을의 문제점과 현황에 관심을 가지는 주민자치의 활동을 지원하고 여러 기능을 만들어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함
		E, 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원 및 문화기능
		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상생 및 네트워크(어울림 분과) 기능 - 세종시 여건을 감안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할 수 있는 기능의 확대 강화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별 현안 문제점 파악 및 그에 따른 필요사업 파악 - 주민자치회가 주도하여 사업을 구상 및 진행해 실질적인 주민자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J, O, Q,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편의시설 관리기능 - 행정기관에서 모든 주민편의시설을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을 고려하면 주민자치회에 관리의 일정 부분을 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 시설을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할 예산을 내려주지 않았는데, 관리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음. 관련 주무관 혼자 민원을 해결하기에 많이 벽참 - 마을 내 시설은 수혜 대상자인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P, 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자치기능 강화 - 현재 행정에 너무 의존적임
	동	A, I, J, L, N, Q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제 발굴 기능(사회문제 발굴 후 주민공동체 조직과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 사회문제는 주민들이 제대로 알기 때문임 -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함 - 사회문제 발굴 후 주민공동체 조직과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통해 지역 전체의 공익을 위한 활동을 넓혀가야 함
		B, F, 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 및 공동체 맞춤형 관리 지원 기능 - 주민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함 - 행정에서 모든 것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중요함 ▪ 도농상생 및 네트워크(어울림 분과) 기능 - 읍면지역과 신도심 격차 해소를 위함

구분	읍면 동	설문 대상자	주요의견	
		C,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자원 및 문화기능 	
		E, G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아동, 청소년 보호 및 보육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세대를 위해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한 시기임 - 북컴마다 실수요자인 여성, 아동, 청소년 등이 가장 잘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능 강화가 필요함 	
		H,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교육기능 	
		K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회 규모 축소와 위원 역량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주민자치회는 규모만 커질 뿐 관의 도움 없이는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간단한 회의부터 재정관리까지 주민자치회 스스로 할 수 있는 소규모 정예 위원 육성이 필요함 	
		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자립 및 참여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문제 지원이 필요함 	
		Q, 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연계 및 관리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특성상 사각지대 없이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상당하므로 연계기능이 필요함 주민 중에 공동주택 입주민이 대부분이므로 연계가 필요 	
		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아동, 청소년 보호 및 보육기능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등 사회적 경제 기능 	
	운영방식 의 쟁점	읍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견 없음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회 위원 대상 실무교육 강화
		면	A, B, C,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견 없음
			D, Q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은 크고 인구수와 밀도는 낮은 읍면은 주민자치회 정원을 줄일 필요가 있음(D) 사는 주민이 적은 데 정원은 그대로면, 그 정원을 채우기도 힘들. 위원 정원이나, 회의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 H, I, J, K,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번기를 피하는 게 효과적일 것으로 파악됨(E, J, K, P) 주민총회 및 마을계획사업이 농번기에 운영되어 더 많은 주민 참여를 이끄는 데 한계가 있음. 추수기 이후인 11월 이후 개최하면 좋을 것 같음(H) 농촌지역은 농번기를 피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어야 함(I)

구분	읍면 동	설문 대상자	주요의견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 위원들의 연령 구성을 조화롭게 하여 신규 세대의 시선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함. 아무래도 먼 지역은 젊은 세대의 추진력과 활발한 활동이 필요함
		G, I, 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장단과 주민자치회 관계에서 서로 이견되는 부분이 읍면 활동에서 나타나는데, 두 단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체 이익과 권한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한 활동의 주체가 된다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됨(G) 이장협의회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를 통해 마을에 실질적인 이득이 될 수 있는 주민자치회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임(I) 이장협의회와 주민자치회 사이의 대립을 완화시키고, 이해 및 협력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 필요(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회 구성 시에 이장 일정 비율 참여, 이장 선출 시 주민자치회 관련 교육 수료자에게 가산점 부여 또는 의무교육 실시 등을 제안함
		L, 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적 운영하기 위한 기반사항이 필요함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기관과 분리된 독립적 운영을 위한 운영 기반이 필요함
		N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은 인구특성(연령, 성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모든 지역에 일률적인 운영기준을 적용하기보단 이를 고려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발한 소통을 통한 읍면동 행정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R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수록 주민자치업무 증가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실질적으로 행정업무(컴퓨터 작업 등)를 할 수 있는 지원가 배치가 꼭 필요함(현 주민자치 지원가는 형식적이며 일을 잘 하지 못함)
		동	A, C, H, P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회 정원을 줄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입주자 대표 등을 주민자치회 회원과 일치시켜도 좋을 것 같음 		

구분	읍면 동	설문 대상자	주요의견
		D, E, 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회 정원을 줄여야 함(D) 현행 주민자치회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정원을 줄이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줄여서, 초심으로 돌아가 소규모부터 차근차근 다시 시행해야 함(E) 면적은 크고 인구수와 밀도는 낮은 읍면은 주민자치회 정원을 줄여야 함(N)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회가 읍면동과 협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예산을 받는 독립적인 행정 기관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음. 주민자치회의 위상이 당연히 높아져야 하는 것은 맞으나, 현재 기준으로 명확한 위치를 위원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함
		G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과 동의 획일적인 운영방식보다는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면과 동을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을 골고루 분배하기는 하되,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를 모집하는 것이 중요함
		J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전문교육인력이 필요함. 실현 불가능한 의견만 내는 것보다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었으면 함
		K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지역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읍면 지역은 마을 회를 통하여 주민자치가 실현되고 있으므로 굳이 주민자치회를 별도로 둘 필요가 없음. 주민자치회를 없애고 활성화된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좋음
		L, O, R, Q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관계설정 필요 주민자치회와의 관계 설정을 위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간담회나 회의 개최가 필요함
		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인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참여가 어려운 분들이 많아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회사에서 휴가 지원 등 제도적 장비 마련이 필요해 보임
		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과 인구수에 따라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함
		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회 임기를 연초로 통일

구분	읍면 동	설문 대상자	주요의견
향후 발전방향	읍	A,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역량 및 실무역량 강화(교육 등 가치정립 및 역할 등) ▪ 자생력 확보기반 강화(자립성 강화)
	면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민인식 및 체감을 위한 홍보 - 마을계획사업 등 주민자치회가 주축이 되어 만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함
		B,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타 주민공동체 조직과 화합 및 네트워크 강화 - 마을이장단 등 기존 조직들과 화합 및 갈등 관리가 필요함
		C, 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대표성 강화
		D, E, J, K, M, P, 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생력 확보기반 강화(자립성 강화) - 면 지역은 주민자치회 자생력이 약하기 때문임 - 주민자치회 수익사업 강화 필요(재정 확보방안)
	F, G, L, N, 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역량 및 실무역량 강화(교육 등 가치정립 및 역할 등) -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지역 주민들이 주민자치가 무엇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등을 학습하고 자력으로 주민자치회를 이끌 수 있는 실무적인 교육이 절실함 - 관에 의존도를 낮추고 자치회가 스스로 업무역량 등을 넓혀갈 수 있어야 함 - 주민자치의 개념 및 실천모델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경제·기술·행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모범사례(타 사회적경제공동체 등)에 대한 현장 실습 등도 적절히 활용한다면 보다 적극적이고 완성도 높은 주민자치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영역의 확장 - 주민자치회 위원들 거주지에 비해 활동은 복지회관 및 청소년문화관이 위치한 부강리에 주로 한정되어 있으며, 부강면 전역으로 활동이 확장될 필요가 있음 	

구분	읍면 동	설문 대상자	주요의견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 피부에 와닿도록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기능 교육 - 현재 주민자치는 농촌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대부분임. 따라서 농촌형 주민자치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임 예) 스마트 전자 기기 사용 어려움, 컴퓨터 사용 어려움, 사업에 대한 이해도 낮음, 사업 주도 어려움 등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가도록 도와주거나, 이러한 문제점을 곁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민자치 지원가의 권한 대폭 강화하는 등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민인식 및 체감을 위한 홍보 - 실제로는 주민자치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는 것 같으므로 널리 홍보하여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제고를 하였으면 함
		Q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과 예산이 문제임
	동	A, C, H, F I, F, J, L, M, 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역량 및 실무역량 강화(교육 등 가치정립 및 역할 등) - 현재 주민자치회는 행정업무역량이 떨어지거나 시각이 달라 행정 절차 등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에 주민자치 담당자가 단순 지원업무뿐 아니라 주민자치회의 사무국 직원에 가까운 일을 도맡아 하는 경우가 빈번함. 매뉴얼 전달뿐 아니라 실무적인 차원에서 강의나 지도 등이 필요함 - 현 상태에서는 주민자치보다 행정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다 하고 있음 - 현재 주민자치회는 행정업무역량이 떨어지거나 시각이 달라 행정 절차 등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에 주민자치 담당자가 단순 지원업무뿐 아니라 주민자치회의 사무국 직원에 가까운 일을 도맡아 하는 경우가 빈번함. 매뉴얼 전달뿐 아니라 실무적인 차원에서 강의나 지도 등이 필요함 -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주민자치 이름에 걸맞게 주민이 직접 할 수 있어야 함

구분	읍면 동	설문 대상자	주요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스스로의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해야함 - 주민자치가 실제 도움이 되기 위해선 중구난방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역량 강화를 통해 실질적 향상이 필요함
		B, Q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생력 확보기반 강화(자립성 강화) - 관에서 지원해주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활동할만한 능력을 길러야 할 필요가 있음 - 자생력을 강화하여 동 예산 없이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적 운영강화 ▪ 책임감 강화
		E,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민인식 및 체감을 위한 홍보 - 일반적인 주민들은 주민자치회가 무엇을 하는 집단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여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B, G,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타 주민공동체 조직과 화합 및 네트워크 강화 - 주민자치회 위원들 자체 네트워크 및 협력이 크게 요구되며, 이것이 수반된다는 전제하에 다른 조직과의 화합 및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함 - 일부 시민의 이익이 아닌 지역 공동체를 위한 일임을 명확히 해야 함 - 워낙 조직이 많다 보니 제각각 역할과 의견도 다른데 화합해서 추진하면 더욱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임
		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인원 10여 명으로 감축하고, 면접을 통하여 실제 마을발전을 위해 힘써줄 사람을 선별하여 운영해야 함
		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행정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 그리고 행정의 혁신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공동체 조직 구성원들이 당연직으로 포함이 되면 유기적 관계가 지속될 것 같음
		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자치위원들의 봉사 인식 강화

3절 분석결과 종합

1. 주민자치회 위원 및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종합

1) 기초통계분석 결과(전체 응답자 대상)

- 가장 중요한 주민자치회 기능
 - ‘공동문제해결사항’, ‘수립한계획사항’, ‘의견합치사항’ 순임
- 가장 중요한 주민총회 기능
 - ‘주민자치회운영결산승인’, ‘자치계획승인’, ‘자치규약승인’ 순임
- 향후 주민자치회에 필요한 기능
 - ‘주민총회운영’, ‘사무국설치운영’, ‘지역발전계획권’, ‘주요정책사전심의’ 순임
- 시사점: 주민자치회 기능에 대한 평균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운영세칙활용’의 평균이 가장 낮게 집계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세칙을 통한 주민자치회 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

2) 집단별 인식(T-test, ANOVA)차이(전체 응답자 대상)

- 주민자치회 및 주민총회 기능(주민자치회 위원 vs 공무원)
 - 현재 조례상에 규정된 주민자치회 기능 및 주민자치회와 구분되어 검토할 수 있는 주민총회 기능 등 모든 부분에서 공무원에 비해서 ‘주민자치회 위원’의 인식정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임
- 향후 주민자치회에 필요한 기능
 - ‘주요정책사전심의’, ‘지역발전계획권’, ‘주민세율조정제안권’, ‘예산편성제안권’, ‘조례규칙제안권’, ‘개인정보활용권’ 항목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그 밖의 기능은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음. 그리

고 역시 '주민자치회 위원'의 인식이 보다 긍정적으로 높게 나타남. 운영세칙의 존재와 활용에 있어서도 '주민자치회 위원'의 인식과 활용 정도가 높음

○ 주민자치회 및 주민총회 기능(읍면동별)

- 주민자치회의 기능에 대한 모든 부분에서 읍과 면보다 '동'지역에서 중요성의 인식이 높게 나타남
- 주민총회 기능에 대한 면과 동 지역보다 '읍'에서 더 필요하다는 인식 정도가 높게 나타남

○ 주민자치회의 필요기능(읍면동별)

- '주요정책사전심의'와 '조례규칙제안권'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응답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다수의 항목에서 '읍'에서 필요기능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타남. 운영세칙의 존재 및 활용에 있어서는 읍면동 지역별 인식차이가 뚜렷하지 않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그러나 운영세칙의 존재 인식에 대해서는 '읍'이, 운영세칙 활용에서는 '면'이 높게 나타남

3) 집단별 인식(T-test, ANOVA)차이(주민자치회 대상)

○ 주민자치회 및 주민총회 기능(읍면동별)

- 주민자치회 기능 모든 부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음. 다만, 대체로 '면'에서 그 기능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함
- 주민총회 기능 모든 부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음. 다만, 대체로 '읍'에서 그 기능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함

○ 향후 주민자치회에 필요한 기능(읍면동별)

-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대체로 '읍'지역의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남. 그러나 운영세칙의 존재와 활용에 있어서 역시 통계적 유의미성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평균 차이도 크지 않음

4) 집단별 인식(T-test, ANOVA)차이(공무원)

○ 주민자치회 및 주민총회 기능(읍면 vs 동)

- 주민자치회에 대한 기능 중 ‘주민제안사업’, ‘공동문제해결사항’, ‘의견합치사항’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날 뿐 아니라 ‘읍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동에 비해 높게 나타남. 그리고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다른 항목 역시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기능에 대한 중요성을 더 높게 인식함
- 주민총회에 대한 읍면과 동의 인식차이 분석결과 ‘자치계획승인’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며 ‘읍면’의 중요성 인식이 높게 나타남. 그리고 그 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주민총회 기능 역시 ‘읍면’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필요성 인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주민자치회에 필요한 기능(읍면 vs 동)

- 향후 주민자치회에 대한 필요한 기능에 대한 의견에 대한 분석결과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대체로 동 지역보다 ‘읍면’ 지역에서 모든 기능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운영세칙의 존재와 활용에 있어서 역시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역시 ‘읍면’ 지역에서 인식정도가 높게 나타남

5) 교차분석(신분, 읍면동)

○ 주민자치회 내실화를 위한 당면한 문제(전체 대상)

- 읍: ‘주민자치회 대표성 미흡’,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미흡’,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 및 효능감 부족’
- 면: ‘주민자치회 대표성 미흡’, ‘자생력확보 기반미흡’,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 및 효능감 부족’
- 동: ‘주민자치회 대표성 미흡’,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 및 효능감 부족’, ‘행·재정적지원 미흡으로 인한 주민자치회 업무부담’

- 주민자치회 내실화를 위한 당면한 문제(주민자치회)
 - 읍: ‘주민자치회 대표성 미흡’,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미흡’,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 및 효능감 부족’
 - 면: ‘주민자치회 대표성 미흡’, ‘자생력확보 기반미흡’,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 및 효능감 부족’
 - 동: ‘주민자치회 대표성 미흡’,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 및 효능감 부족’, ‘행·재정적지원 미흡으로 인한 주민자치회 업무부담’
- 주민자치회 내실화를 위한 당면한 문제(공무원)
 - 읍면: ‘주민자치회 대표성 미흡’, ‘자생력확보 기반미흡’,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 및 효능감 부족’
 - 동: ‘주민자치회 대표성 미흡’,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미흡’, ‘자생력확보 기반미흡’

[표 4-66] 주민자치회 내실화를 위한 당면한 문제(종합)

구분	전체			주민자치회			공무원	
	읍	면	동	읍	면	동	읍면	동
주민자치회 대표성 미흡	●	●	●	●		●	●	●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미흡	●			●				●
자생력 확보 기반 미흡		●			●		●	●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 및 효능감 부족	●	●	●	●	●	●	●	
여타 주민공동체 조직(이통장, 아파트입대위, 상인회 등)과 갈등								
행·재정적지원 미흡으로 인한 주민자치회 업무부담			●		●	●		
(읍면동)행정의 무관심 혹은 갈등								
시범실시로 인한 한계 (법률적 근거 부족)								
기타								

- 주민자치회 기능 우선순위(전체 대상)
 - 읍: ‘주민자치사무’, ‘협의사무’
 - 면: ‘주민자치사무’, ‘협의사무’
 - 동: ‘주민자치사무’, ‘협의사무’
- 주민자치회 기능 우선순위(주민자치회)
 - 읍: ‘주민자치사무’, ‘협의사무’
 - 면: ‘주민자치사무’, ‘협의사무’
 - 동: ‘주민자치사무’, ‘협의사무’
- 주민자치회 기능 우선순위(공무원)
 - 읍면: ‘주민자치사무’, ‘협의사무’
 - 동: ‘주민자치사무’,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

[표 4-67] 주민자치회 기능 우선순위(종합)

구분	전체			주민자치회			공무원	
	읍	면	동	읍	면	동	읍면	동
주민총회의 개최, 마을계획의 수립, 마을축제개최, 마을소식지 발간 등 주민회합 및 발전업무 (주민자치사무)	●	●	●	●	●	●	●	●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위탁하는 사무처리(위탁사무)	●			●			●	●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협의사무)	●	●	●	●	●	●	●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한 건의(일반적 협의사무 보다는 소극적인 기능)	●	●	●		●	●	●	●
읍면동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자문								
기타								

○ 적정한 민간위탁 사무(전체 대상)

- 읍: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회 운영 및 관리', '센터 및 공동체 활성화 공간 운영'
- 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회 운영 및 관리', '마을축제기획실행'
-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회 운영 및 관리', '마을축제기획실행'

○ 적정한 민간위탁 사무(주민자치회)

- 읍: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회 운영 및 관리', '센터 및 공동체 활성화 공간 운영', '도시재생사업 및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공간 운영'
- 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회 운영 및 관리', '도시재생사업 및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공간 운영'
-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회 운영 및 관리', '마을축제기획실행'

○ 적정한 민간위탁 사무(공무원)

- 읍: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회 운영 및 관리', '마을축제기획실행'
- 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회 운영 및 관리', '마을축제기획실행'
-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회 운영 및 관리', '마을체험학습운영'

[표 4-68] 적정한 민간위탁 사무(종합)

구분	전체			주민자치회			공무원	
	읍	면	동	읍	면	동	읍면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	●	●	●	●	●	●	●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회 운영 및 관리	●	●	●	●	●	●	●	●
마을체험학습운영								●
마을축제기획실행		●	●			●	●	●
공동육아시설운영								
작은도서관운영								
공원관리운영								
센터 및 공동체 활성화 공간 운영(복합 등)	●			●				
마을휴양지 및 유적지 관리운영								
도시재생사업 및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공간 운영				●	●			
기타								

○ 주민자치회 적정임기(전체 대상)

- 읍: ‘현행유지’, ‘임기는 현행과 동일, 읍과 동의 연임규정만 2회로 변경’, ‘임기는 현행과 동일, 읍면동 전체의 연임규정만 2회로 변경’
- 면: ‘현행유지’, ‘임기는 현행과 동일, 읍과 동의 연임규정만 2회로 변경’, ‘임기는 현행과 동일, 읍면동 전체의 연임규정만 2회로 변경’
- 동: ‘현행유지’, ‘임기는 현행과 동일, 읍과 동의 연임규정만 2회로 변경’, ‘임기는 현행과 동일, 읍면동 전체의 연임규정만 2회로 변경’

○ 주민자치회 적정임기(주민자치회)

- 읍: ‘현행유지’, ‘임기는 현행과 동일, 읍면동 전체의 연임규정만 1회로 변경’, ‘임기는 현행과 동일, 읍과 동의 연임규정만 2회로 변경’, ‘임기는 현행과 동일, 읍면동 전체의 연임규정만 2회로 변경’
- 면: ‘현행유지’, ‘임기는 현행과 동일, 읍과 동의 연임규정만 2회로 변경’, ‘임기는 현행과 동일, 읍면동 전체의 연임규정만 2회로 변경’

- 동: '현행유지', '임기는 현행과 동일, 읍과 동의 연임규정만 2회로 변경', '임기는 현행과 동일, 읍면동 전체의 연임규정만 2회로 변경'

○ 주민자치회 적정임기(공무원)

- 읍면: '현행유지', '임기는 현행과 동일, 읍면동 전체의 연임규정만 1회로 변경', '임기는 현행과 동일, 읍면동 전체의 연임규정만 2회로 변경'
- 동: '현행유지', '임기는 현행과 동일, 읍면동 전체의 연임규정만 1회로 변경', '임기 2년만 확정하고 연임규정은 삭제'

[표 4-69] 주민자치회 적정임기(종합)

구분	전체			주민자치회			공무원	
	읍	면	동	읍	면	동	읍면	동
현행유지(임기 2년, 읍과 동은 1회에 한해 연임가능, 면은 제한없음)	●	●	●	●	●	●	●	●
임기는 현행과 동일, 읍과 동의 연임규정만 2회로 변경(임기 2년은 현행 유지, 읍과 동의 경우 2회에 한해 연임가능, 면은 제한없음으로 연임규정 변경)	●	●	●	●	●	●		
임기는 현행과 동일, 읍면동 전체의 연임규정만 1회로 변경(임기 2년은 현행 유지, 읍면동 모두 임기 1회에 한해 연임가능으로 연임규정 변경)				●			●	●
임기는 현행과 동일, 읍면동 전체의 연임규정만 2회로 변경(임기 2년은 현행유지, 읍면동 모두 임기 2회에 한해 연임가능으로 연임규정변경)	●	●	●	●	●	●	●	
임기만 조정(예, 1년 혹은 3년 등) 및 연임 규정은 현행방식과 동일								
임기조정 및 연임규정 모두 변경(임기조정 예, 1년 혹은 3년 등, 연임규정 2회 등으로 변경)								
임기 2년만 확정하고 연임규정은 삭제(읍면동별 연임규정 자체가 필요없음)								●
기타								

○ 필요한 분과위원회(전체 대상)

- 읍: '마을계획분과', '지역자원 및 문화분과', '프로그램 운영분과'
- 면: '마을계획분과', '지역자원 및 문화분과', '프로그램 운영분과'
- 동: '마을계획분과', '지역자원 및 문화분과', '프로그램 운영분과'

○ 필요한 분과위원회(주민자치회)

- 읍: '마을계획분과', '지역자원 및 문화분과', '프로그램 운영분과', '농촌 및 도시재생분과'
- 면: '마을계획분과', '프로그램 운영분과', '농촌 및 도시재생분과'
- 동: '마을계획분과', '지역자원 및 문화분과', '프로그램 운영분과'

○ 필요한 분과위원회(공무원)

- 읍면: '마을계획분과', '프로그램 운영분과', '농촌 및 도시재생분과'
- 동: '아파트연합회분과', '마을계획분과', '프로그램 운영분과'

[표 4-70] 필요한 분과위원회(종합)

구분	전체			주민자치회			공무원	
	읍	면	동	읍	면	동	읍면	동
아파트연합회(공동체주거등) 분과								●
농촌 및 도시재생분과				▲	●		●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등 사회적경제분과(경제분과포함)								
청(소)년분과								
공동체복지분과								
도농상생/어울림 분과								
마을계획분과(마을안전, 환경 등)	●	●	●	●	●	●	●	●
평생교육분과								
지역자원 및 문화분과(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브랜드 가치 창출)	●	●	●	●		●		
프로그램 운영분과	●	●	●	●	●	●	●	●
교육지원및봉사분과								
마을이장단분과								
기타								

○ 읍면동 기능강화(전체 대상)

- 읍: '주민자치 및 공동체 맞춤형 관리지원기능', '사회문제 발굴기능', '지역자원 및 문화기능'
- 면: '주민자치 및 공동체 맞춤형 관리지원기능', '사회문제 발굴기능', '농촌 및 도시재생지역 관리기능'
- 동: '주민자치 및 공동체 맞춤형 관리지원기능', '사회문제 발굴기능', '마을(생활)안전망 강화기획 및 집행권'

○ 읍면동 기능강화(주민자치회)

- 읍: '주민자치 및 공동체 맞춤형 관리지원기능',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능', '사회문제 발굴기능', '주민편익시설 관리기능'
- 면: '주민자치 및 공동체 맞춤형 관리지원기능', '농촌 및 도시재생지역 관리기능', '주민편익시설 관리기능'
- 동: '주민자치 및 공동체 맞춤형 관리지원기능', '사회문제 발굴기능', '지역자원 및 문화기능'

○ 읍면동 기능강화(공무원)

- 읍면: '사회문제 발굴기능', '지역자원 및 문화기능', '주민편익시설 관리기능'
- 동: '주민자치 및 공동체 맞춤형 관리지원기능', '사회문제 발굴기능', '공동주택 연계 및 관리기능'

[표 4-71] 읍면동 기능강화(종합)

구분	전체			주민자치회			공무원	
	읍	면	동	읍	면	동	읍면	동
주민자치 및 공동체 맞춤형 관리지원기능	●	●	●	●	●	●		●
사회문제 발굴기능(사회문제 발굴 후 주민공동체조직과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	●	●	●		●	●	●
공동주택 연계 및 관리기능								●
농촌 및 도시재생지역 관리기능		●			●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능(일자리 및 경제활성화기능포함)				●				
청년자립 및 참여기능								
공동체복지 및 보건관리기능								
도농상생 및 네트워크(어울림 분과) 기능								
평생교육기능								
지역자원 및 문화기능	●					●	●	
마을(생활)안전망 강화기획 및 집행권			●					
주민편의시설 관리 기능				●	●		●	
여성, 아동, 청소년 보호 및 보육기능								
기타								

○ 발전방안(전체 대상)

- 읍: ‘주민자치회 대표성 강화’, ‘자생력 확보기반 강화(자립성강화)’,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민인식 및 체감을 위한 홍보’, ‘(읍면동)행정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 그리고 행정의 혁신’
- 면: ‘주민자치회 대표성 강화’, ‘자생력 확보기반 강화(자립성강화)’,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민인식 및 체감을 위한 홍보’
- 동: ‘주민자치회 대표성 강화’,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강화(가치 정립 및 역할 등)’,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민인식 및 체감을 위한 홍보’

○ 발전방안(주민자치회)

- 읍: ‘주민자치회 대표성 강화’,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민인식 및 체감을 위한 홍보’, ‘(읍면동)행정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 그리고 행정의 혁신’
- 면: ‘주민자치회 대표성 강화’, ‘자생력 확보기반 강화(자립성강화)’,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민인식 및 체감을 위한 홍보’
- 동: ‘주민자치회 대표성 강화’,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강화(가치정립 및 역할 등)’,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민인식 및 체감을 위한 홍보’

○ 발전방안(공무원)

- 읍: ‘주민자치회 대표성 강화’,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강화(가치정립 및 역할 등)’,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민인식 및 체감을 위한 홍보’
- 면: ‘주민자치회 대표성 강화’,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강화(가치정립 및 역할 등)’, ‘자생력 확보기반 강화(자립성강화)’
- 동: ‘주민자치회 대표성 강화’,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강화(가치정립 및 역할 등)’, ‘자생력 확보기반 강화(자립성강화)’

[표 4-72] 발전방안(종합)

구분	전체			주민자치회			공무원	
	읍	면	동	읍	면	동	읍면	동
주민자치회 대표성 강화	●	●	●	●	●	●	●	●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강화(가치정립 및 역할 등)			●			●	●	●
자생력 확보기반 강화(자립성강화)	●	●			●		●	●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민인식 및 체감을 위한 홍보	●	●	●	●	●	●		
여타 주민공동체 조직(이통장, 아파트입대위, 상인회 등)과 화합 및 네트워크 강화								
(읍면동)행정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 그리고 행정의 혁신	●			●				
주민자치회 법제화								
민관협치제도 확대 및 종합계획실현								
보다 자유로운 참여보장								
기타								

○ 운영위원회 개편

- 신분: 주민자치회는 ‘개편’, 공무원은 ‘유지’가 우위
- 주민자치회: 읍은 ‘개편’, ‘면’은 유지, 동은 ‘개편’이 우위
- 공무원: 읍면동 모두 유지가 우위

[표 4-73] 운영위원회 개편(종합)

구분	신분		주민자치회			공무원	
	주민자치회	공무원	읍	면	동	읍면	동
유지		●		●		●	●
개편	●		●		●		

○ 운영위원회 개편 찬성시 대안

- 신분: 주민자치회의 경우 ‘읍면동장 1인+공동체조직 추천 6인’, 공무원역시 ‘읍면동장 1인+공동체조직 추천 6인이 우세하게 나타남
- 주민자치회: 읍의 경우 ‘읍면동장 추천 3인+기관단체장 추천 3인 등’, 면의 경우 ‘읍면동장 1인+공동체조직 추천 6인’, 동의 경우 역시 ‘읍면동장 1인+공동체조직 추천 6인’
- 공무원: 읍면은 ‘읍면동장 1인+기관 및 단체장 추천 6인’, 동은 ‘읍면동장 1인+공동체조직 추천 6인’

[표 4-74] 운영위원회 개편 찬성시 대안 교차분석(종합)

구분	신분		주민자치회			공무원	
	주민자치회	공무원	읍	면	동	읍면	동
읍면동장 추천 3인 +기관단체장 추천 3인 등			●				
읍면동장 1인 +기관 및 단체장 추천 6인						●	
읍면동장 1인 +공동체조직 추천 6인	●	●		●	●		●
기타							

○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

- 신분: 주민자치회의 경우 ‘공개모집에 의한 공개추첨’, ‘일반공모 추첨+주민조직 추천+명망 있는 분 선정’, 공무원의 경우 ‘공개모집에 의한 공개추첨’, ‘일반공모 추첨+추천된 자 중 추첨’
- 주민자치회: 읍의 경우 ‘일반공모 추첨+주민조직 추천+명망 있는 분 선정’, ‘일반공모 추첨+추천된 자 중 추첨’, ‘일반공모 추첨+추천된 자 중 선정(운영위원회서 추천된 자 선정)’, 면의 경우 ‘공개모집에 의한 공개추첨’, ‘일반공모 추첨+주민조직 추천+명망 있는 분 선정’, 동의 경우 역시 ‘공개모집에 의한 공개추첨’, ‘일반공모 추첨+주민조직 추천+명망 있는 분 선정’
- 공무원: 읍면의 경우 ‘공개모집에 의한 공개추첨’, ‘일반공모 추첨+주민조직 추천+명망 있는 분 선정’, 동의 경우 ‘공개모집에 의한 공개추첨’, ‘일반공모 추첨+주민조직 추천+명망 있는 분 선정’

[표 4-75]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 교차분석

구분	신분		주민자치회			공무원	
	주민자치회	공무원	읍	면	동	읍면	동
공개모집 공개추첨	●	●		●	●	●	●
일반공모 추첨+주민조직 추천+명망있는 분 선정	●		●	●	●	●	●
일반공모 추첨+추천된 자 중 추첨		●	●				
일반공모 추첨+추천된 자 중 선정 (운영위원회서 추천된 자 선정)			●				
기타							

2. 주민자치회 위원 및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대상 FGI 결과 종합

○ 고려할만한 행정서비스 수탁사무

- 읍: 사회복지사업, 도시재생사업, 주민자치센터 운영, 마을공원 관리 등이 제시됨. 수익사업을 위한 연계법인, 그리고 주민주도성을 높이되 상근자에 대한 지원 등을 제기함
- 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도서관 운영, 도시재생 시설, 공동육아, 공구대여, 수익성 있는 협동조합 구상, 인력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부재 문제(회계처리 등)가 제기됨
-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주민자치 프로그램,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하는 수익사업, 지역 내 커뮤니티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 마을 체험학습 운영, 축제기획, 센터 등 공동체 활성화 공간 운영, 주민총회 운영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작업 등 서류작업에 많은 시간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인력 등 지원 문제)

○ 필요한 분과위원회

- 읍: 직능단체 분과, 이장단 분과, 각기 지역사회 공동체 조직이 중심점이 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분과가 필요함, 분과위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참여의지를 높여야함
- 면: 마을교육분과, 농촌지역에서 필요한 것은 오히려 청년분과(청소년 분과), 마을회의에서 이장님을 거쳐야하는 문제(마을회 구조한계), 마을기업 등 사회적기업을 위한 경제분과, 직능단체 분과 등을 만들어 다양한 활동을 묶는 역할, 면단위는 분과를 늘리기 보다는 사무국을 튼튼하게, 회계정리, 회의록 부분의 도움이 필요
- 동: 평생교육분과(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벗어난 주민주도적인 평생교육), 지역자원문화분과(지역브랜드 창출과 상품화, 지역상권과 경제에 기여), 경제분과(지역경제 활성화), 마을안전과 환경과 관련된 분과, 지역자원과 문화분과, 도농상생분과, 아파트연합회(입주자대표회의), 청소년 분과

○ 주민자치회 협의사무

- 읍: 복지와 보건관리, 도시재생사업, 소외계층을 돌보면서 상생할 수 있는 역할, 마을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행정과 실질적 협의할 논의사항이 많지 않은 문제
- 면: 평생교육 사업, 지역의 복지영역(방과후 수업 등 포함), 농촌 및 도시재생관리 기능, 그럼에도 이장단과의 협의문제 여전, 사회단체협의회 조직 필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사무국을 두어 안정적 지원 필요
- 동: 지역자원 문화기능 등 주민밀착형 사무, 도농상생 및 네트워크 기능 확립, 주민자치 및 공동체 맞춤형 관리지원기능, 주민편익시설 관리, 협의기능 이전에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수

○ 주민자치회 운영상 쟁점

- 읍: 선거에 참여하신 분들 중 낙선자의 참여 미흡, 마을계획, 주민총회에 있어 참여율 저조
- 면: PC 등 사무실 자재 부족, 공간활용의 어려움, 마을계획단과 주민자치회 운영상의 혼란, 공간활용의 문제, 주민숙원사업 정도 늘어난 느낌, 아직까지는 프로그램만 운영에 국한되어 큰 변화 체감 부족, 면 지역의 한계점, 담당자의 잦은교체로 업무공백 우려, 봉사자의 인건비 최저임금 문제
- 동: 행·재정적 지원의 부족, 대표성의 한계, 프로그램 선정부터 시작해 운영상 한계점, 봉사자 수당 지급 최저, 지원인력의 인건비 문제, 위탁사업 수행시 지역상권과 마찰가능성, 이벤트성만 협의(민원의 어려움), 다양한 직능 자생단체의 참여와 이를 통한 마을계획 실현의 어려움, 마을계획수립시 행정의 개입이 큼, 위원간의 갈등과 관심부족, 주민총회시 현수막, 전단지 등 홍보에 매몰

○ 주민자치회 및 주민총회 개선점

- 읍: 주민축제로서의 주민총회 설계할 필요.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역할, 주민자치회의 경험을 통해 주민들이 성숙해갈 시간을 줄 필요성 제시, 자주성 있게, 더욱 활동적으로 참여할 필요성 제시, 생업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론장에서 소통했으면 함

- 면: 마을계획시 농번기 고려 필요. 예산집행과정상 조정이 필요, 이장단 등 기존 주민조직과 갈등 문제 해결, 행정에서 조정 역할, 주민총회의 인지 부족, 이장님과의 연계 필요, 주민조직과 네트워크 필요, 상시적 인력배치의 중요성, 예산증액의 필요성, 리 단위 마을회의 보다 민주적 운영체계 확립, 주민자치의 인식교육과 홍보 필요
- 동: 여타 주민공동체 조직과 화합 및 네트워크 강화 필요, 읍면동 행정의 소극적 자세, 미묘한 갈등, 따라서 행정의 고민과 지원 필요, 주민의 인식 및 체감 강화, 주민총회를 지역 축제로서 인식, 문화로서 정립, 주민총회 시 들어가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주민의 필요성에 의해 쓰여질 필요, 주민의 주민자치에 대한 활동과 역할 홍보, 인식개선(가치정립 등), 주민총회에서의 주민주도성 필요, 축제의 장이라 하더라도 주민이 주도적으로 운영, 단순행사가 아닌 각종 직능단체, 봉사단체의 참여와 협력, 마을계획사업 전에 실행 전 교육 등 필요, 그리고 다른 지역의 마을계획사업에 대한 학습과 벤치마킹, 주민총회의 허례허식(과도한 홍보 등 폐현수막 문제 병존), 주민축제로 가기엔 주민관심이 부족, 홍보부족, 그런데 이과정에서 홍보비용 등이 너무 크게 나오는 점/축제로서 시기상조, 아직 아파트단지보다 적은 마을계획 및 제안사업 발굴, 그리고 사업계획을 했지만 적절치 않다는 행정차원의 검토로 인한 실망감. 따라서 이러한 사업에 대한 필터링이 미리 이루어질 필요, 행정의 수동적 자세와 주민자치위원의 인식부족

[표 4-76] 주민자치회 위원 및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분석결과(종합)

구분	읍면동	주요내용
고려할 만한 행정 서비스 수탁사무	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업 등 고려, 다만 역량문제 제기(현 마을계획사업, 주민제안사업 등에 있어 주민주도성 필요 논의) ▪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한 재정확보 ▪ 도도리파크와 같은 마을공원에 대한 관리, 위탁의 한계(4대 보험 가입 부분) ▪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든 시설물의 관리, 수익사업을 위한 연계법인 검토 ▪ 행정에서 상근자 배치 등 행·재정적 지원 등이 필요함을 제기함

구분	읍면동	주요내용
	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도서관 운영 ▪ 도시재생, 공동육아, 공구대여 ▪ 수익성 있는 협동조합 구상 ▪ 인력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부재 문제(회계처리 등)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주민자치 프로그램 ▪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하는 수익사업(구체화와 어려움) ▪ 지역 내 커뮤니티 시설(복합 내 유치원, 도서관 등 시설관리) ▪ 프로그램 운영정도 가능. 장기적으로 마을체험학습운영, 축제기획, 센터 및 공동체 활성화 공간 운영 등 ▪ 주민총회 운영 ▪ 그러나 문서작업 등 서류작업에 많은 시간, 제도적 뒷받침 필요 (인력 등 지원 문제)
필요한 분과 위원회	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능단체 분과, 이장단 분과, 각기 지역사회 공동체 조직이 중심점이 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분과가 필요함 ▪ 분과위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참여의지를 높여야함
	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교육분과 ▪ 농촌지역에서 필요한 것은 오히려 청년분과(청소년 분과) ▪ 마을회의에서 이장님을 거쳐야하는 문제(마을회 구조한계) ▪ 마을기업 등 사회적기업을 위한 경제분과 ▪ 직능단체 분과 등을 만들어 다양한 활동을 묶는 역할 ▪ 면단위는 분과를 늘리기 보다는 사무국을 튼튼하게, 회계정리, 회의록 부분의 도움이 필요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분과(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벗어난 주민주도적인 평생교육) ▪ 지역자원문화분과(지역브랜드 창출과 상품화, 지역상권과 경제에 기여) ▪ 경제분과(지역경제 활성화) ▪ 마을안전과 환경과 관련된 분과 ▪ 지역자원과 문화분과 ▪ 도농상생분과 ▪ 아파트연합회(입주자대표회의) ▪ 청소년 분과
	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와 보건관리 부분 ▪ 도시재생사업 관련 ▪ 행정과 실질적 협의할 논의사항이 많지 않은 문제 ▪ 소외계층을 돌보면서 상생할 수 있는 역할, 마을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주민 자치회 협의사무	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와 보건관리 부분 ▪ 도시재생사업 관련 ▪ 행정과 실질적 협의할 논의사항이 많지 않은 문제 ▪ 소외계층을 돌보면서 상생할 수 있는 역할, 마을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분	읍면동	주요내용
	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사업 ▪ 지역의 복지영역(방과후 수업 등 포함) ▪ 농촌 및 도시재생관리 기능 ▪ 이장단과의 협의문제 여전, 사회단체협의회 조직 필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사무국을 두어 안정적 지원을 높여야함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원 문화기능 등 주민밀착형 사무 ▪ 도농상생 및 네트워크 기능 확립 ▪ 주민자치 및 공동체 맞춤형 관리지원기능(지원의 부재로) ▪ 주민편익시설 관리 ▪ 협의기능 이전에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지원
주민 자치회 운영상 쟁점	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에 참여하신 분들 중 낙선자의 참여 미흡 ▪ 마을계획, 주민총회에 있어 참여율 저조
	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등 사무실 자재 부족, 공간활용의 어려움 ▪ 마을계획단과 주민자치회 운영상의 혼란(주민자치회 주도_마을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 공간활용의 문제(복검건립이 되었어도) ▪ 주민숙원사업 정도 늘어난 느낌, 아직까지는 프로그램만 운영에 국한되어 큰 변화 체감 부족 ▪ 면지역의 한계점(주민자치 평가시 손해) ▪ 담당자의 잦은교체로 업무공백 우려(회계처리 주민과 유대관계 부분에서) ▪ 봉사자의 인건비 최저임금 문제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재정적 지원의 부족 ▪ 대표성의 한계(각 직능단체가 역할 분담을 해서 참여하면서 만들어가야 할 것임) ▪ 프로그램 선정부터 시작해 운영상 한계점 ▪ 봉사자 수당 지급 최저, 지원인력의 인건비 문제 ▪ 위탁사업 수행시 지역상권과 마찰가능성, 이벤트성만 협의(민원의 어려움) ▪ 다양한 직능 자생단체의 참여와 이를 통한 마을계획 실현의 어려움(아파트 입대위, 통장협의회와의 협조적 관계 유지 필요) ▪ 마을계획수립시 행정의 개입이 큼(예산안을 짤 때 편의적, 천만원짜리를 이천만원짜리 사업으로 변화기도 하고 하는 등) ▪ 위원간의 갈등과 관심부족 ▪ 주민총회시 현수막, 전단지 등 홍보에 매몰(유인물의 홍수, 객전도 되는 상황의 아쉬움)

구분	읍면동	주요내용
주민 자치회 및 주민총회 개선점	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축제로서의 주민총회 설계할 필요.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역할 ▪ 주민자치회의 경험을 통해 주민들이 성숙해질 시간을 줄 필요성 제시 ▪ 자주성 있게, 더욱 활동적으로 참여할 필요. 생업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론장에서 소통했으면 함
	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계획시 농번기 고려 필요, 예산집행과정상 조정이 필요 ▪ 이장단 등 기존 주민조직과 갈등 문제 해결, 행정에서 조정 역할 ▪ 주민총회의 인지 부족, 이장님과의 연계 필요, 주민조직과 네트워크 필요 ▪ 상시적 인력배치의 중요성, 예산증액의 필요성 ▪ 리 단위 마을회의 보다 민주적 운영체계 확립 ▪ 주민자치의 인식교육과 홍보 필요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타 주민공동체 조직과 화합 및 네트워크 강화 필요 ▪ 읍면동 행정의 소극적 자세, 미묘한 갈등, 따라서 행정의 고민과 지원 필요(주민참여에 대한 홍보 기회, 동기부여 강화) ▪ 주민의 인식 및 체감 강화, 주민총회를 지역 축제로서 인식, 문화로서 정립 ▪ 주민총회 시 들어가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주민의 필요성에 의해 쓰여질 필요 ▪ 주민의 주민자치에 대한 활동과 역할 홍보, 인식개선(가치정립 등) ▪ 주민총회에서의 주민주도성 필요, 축제의 장이라하더라도 주민이 주도적으로 운영, 단순행사가 아닌 각종 직능단체, 봉사단체의 참여와 협력 ▪ 마을계획사업 전에 실행전 교육 등 필요, 그리고 다른 지역의 마을계획사업에 대한 학습과 벤치마킹 ▪ 주민총회의 허례허식(과도한 홍보 등 폐현수막 문제 병존), 주민축제로 가기엔 주민관심이 부족, 홍보부족, 그런데 이과정에서 홍보비용 등이 너무 크게 나온다는 점/축제로서 시기상조 ▪ 아직 아파트단지보다 적은 마을계획 및 제안사업 발굴, 그리고 사업계획을 했지만 적절치 않다는 행정차원의 검토로 인한 실망감. 따라서 이러한 사업에 대한 필터링 필요 ▪ 행정의 수동적 자세와 주민자치위원의 인식부족

3. 공무원 대상 개방형 설문 분석결과 종합

○ 읍면동 행정기능강화

- 읍면: 사회문제 발굴 기능(사회문제 발굴 후 주민공동체 조직과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농촌 및 도시재생지역 관리기능,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능(일자리 및 경제활성화 기능 포함), 도농상생 및 네트워크(어울림 분과) 기능, 공동체복지 및 보건관리기능, 주민자치 및 공동체 맞춤형 관리 지원 기능, 불법광고물 및 마을환경정비, 지역자원 발굴 및 도심창조기능, 자율방범대 운영 등, 마을(생활)안전망(자연재난 포함) 강화 기획 및 집행권, 평생교육기능(문화관련 교육)
- 동: 사회문제 발굴 기능(사회문제 발굴 후 주민공동체 조직과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평생교육기능, 주민쉼터 점검, 공중화장실 관리, 어린이 공원, 작은도서관 운영 등 주민편익시설 관리 기능,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능(일자리 및 경제활성화 기능 포함), 지역자원 및 문화기능, 청년자립 및 참여기능, 공동주택연계 및 관리기능, 일반행정 및 통합민원 강화(행정력 부족), 맞춤형 복지(사회복지 등), 지역자원 및 문화기능, 불법광고물 및 마을환경정비, 여성, 아동, 청소년 보호 및 보육기능

○ 필요한 분과위원회

- 읍면: 지역자원 및 문화분과(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브랜드 가치 창출),마을계획분과(마을안전, 환경, 마을회와 연계강화 등), 농촌 및 도시재생분과, 교육지원 및 봉사분과, 마을이장단분과,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분과(경제분과 포함), 도농상생/어울림 분과, 주민자치회 운영 사업 전반에 대해 자체 교육 진행할 수 있는 분과, 공동체복지분과,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 얼마나 지원해주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 동: 교육지원 및 봉사분과, 평생교육분과, 아파트연합회(공동체 주거 등) 분과, 청(소)년분과, 프로그램 운영분과, 마을계획분과(마을안전,

환경 등), 주민자치회 운영분과, 지역자원 및 문화분과(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브랜드 가치 창출),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분과(경제분과 포함)

○ 읍면동 협의 기능

- 읍면: 사회문제 발굴 기능(사회문제 발굴 후 주민공동체 조직과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농촌 및 도시재생지역 관리기능, 여성, 아동, 청소년 보호 및 보육기능, 주민자치 및 공동체 맞춤형 관리 지원 기능, 지역자원 및 문화기능, 도농상생 및 네트워크(어울림 분과) 기능, 마을별 현안 문제점 파악 및 그에 따른 필요사업 파악, 주민편의시설 관리기능
- 동: 사회문제 발굴 기능(사회문제 발굴 후 주민공동체 조직과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주민자치 및 공동체 맞춤형 관리 지원 기능, 도농상생 및 네트워크(어울림 분과) 기능, 지역자원 및 문화기능, 여성, 아동, 청소년 보호 및 보육기능, 평생교육기능, 청년자립 및 참여기능, 공동주택연계 및 관리기능,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기능

○ 운영상 쟁점

-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 대상 역량 부족(실무교육 강화), 주민총회 및 마을계획사업의 경우 농번기와 겹치는 한계, 젊은 세대의 부족, 보다 많은 연령대 구성, 신규세대가 서로 협력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 재정적 자립성 부족,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문제의 고민(행정과 독립된 운영기반), 농촌지역의 인구특성을 고려 미흡(운영방식 및 기준), 활발한 소통의 미흡(읍면동 행정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 주민자치회 위원 정원을 채우기 어려운점(정원 조정 필요), 이장협의회와 대립과 갈등(이해 및 협력관계 증진), 상시지원 인력 부재로 업무증가 및 효율적 업무추진의 어려움(지원가 역시 형식적인 점)
- 동: 과도한 예산 지원, 행정과 협력적인 파트너로서 인식부족(독자적 기관으로만 인식하며 명확한 인식 부재), 면과 동의 획일적인 운영방식보다는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면과 동을 분리하여 운영, 연령을 골

고루 분배하기는 하되,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를 모집하는 것이 중요함(정원 미달),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에는 전문인력 부재(직접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필요),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문제(존립 이유 등), 아파트입대위 마을회를 통해 충분히 실현된다고 판단, 참여하지 않은 정원 인력에 대한 제재방안 미흡, 아파트입대위 등 주요 주민조직과 소통 및 협력 미흡(간담회 및 회의 개최 필요), 생업으로 인한 참여 동기부족(공가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주민자치회 임기 등이 달라 연속성 부재

○ 발전방안

- 읍면: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민인식 및 체감을 위한 홍보, 여타 주민공동체 조직과 화합 및 네트워크 강화, 주민자치회 대표성 강화, 자생력 확보기반 강화(자립성 강화), 자치역량 및 실무역량 강화(교육 등 가치정립 및 역할 등)/주민의 피부에 와닿도록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기능교육, 활동 영역의 확장, 주민자치회 수익사업 강화 필요(재정 확보방안), 사람과 예산이 문제로 지원 강화
- 동: 자생력 확보기반 강화(자립성 강화), 여타 주민공동체 조직(이통장, 아파트입대위, 상인회 등)과 화합 및 네트워크 강화, 자치역량 및 실무역량 강화(교육 등 가치정립 및 역할 등), 민주적 운영 및 책임감 강화,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민인식 및 체감을 위한 홍보, 실질적으로 마을발전을 위해 일할 사람 선별(인원감축 및 면접필요), (읍면동)행정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 그리고 행정의 혁신, 유기적 관계의 지속을 위해 다른 공동체 조직 구성원들이 당연직 포함 검토

[표 4-77] 공무원 대상 개방형 설문 분석결과(종합)

구분	읍면동	주요의견
읍면동 행정 기능강화	읍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제 발굴 기능(사회문제 발굴 후 주민공동체 조직과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 농촌 및 도시재생지역 관리기능 ▪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능(일자리 및 경제활성화 기능 포함) ▪ 도농상생 및 네트워크(어울림 분과) 기능

구분	읍면동	주요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복지 및 보건관리기능 ▪ 주민자치 및 공동체 맞춤형 관리 지원 기능 ▪ 불법광고물 및 마을환경정비 ▪ 지역자원 발굴 및 도심창조기능 ▪ 자율방범대 운영 등, 마을(생활)안전망(자연재난 포함) 강화 기획 및 집행권 ▪ 평생교육기능(문화관련 교육)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제 발굴 기능(사회문제 발굴 후 주민공동체 조직과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 평생교육기능 ▪ 주민쉼터 점검, 공중화장실 관리, 어린이 공원, 작은도서관 운영 등 주민편익시설 관리 기능 ▪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능(일자리 및 경제활성화 기능 포함) ▪ 지역자원 및 문화기능 ▪ 청년자립 및 참여기능 ▪ 공동주택연계 및 관리기능 ▪ 일반행정 및 통합민원 강화(행정력 부족) ▪ 맞춤형 복지(사회복지 등) ▪ 지역자원 및 문화기능 ▪ 불법광고물 및 마을환경정비 ▪ 여성, 아동, 청소년 보호 및 보육기능
필요한 분과위원회	읍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운영분과 ▪ 지역자원 및 문화분과(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브랜드 가치 창출) ▪ 마을계획분과(마을안전, 환경, 마을회와 연계강화 등) ▪ 농촌 및 도시재생분과 ▪ 교육지원 및 봉사분과 ▪ 마을이장단분과 ▪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분과(경제분과 포함) ▪ 도농상생/어울림 분과 ▪ 주민자치회 운영 사업 전반에 대해 자체 교육 진행할 수 있는 분과 ▪ 공동체복지분과 ▪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 얼마나 지원해주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구분	읍면동	주요의견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 및 봉사분과 ▪ 평생교육분과 ▪ 아파트연합회(공동체 주거 등) 분과 ▪ 청(소)년분과 ▪ 프로그램 운영분과 ▪ 마을계획분과(마을안전, 환경 등) ▪ 주민자치회 운영분과 ▪ 지역자원 및 문화분과(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브랜드 가치 창출) ▪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분과(경제분과 포함)
읍면동 협의기능	읍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제 발굴 기능(사회문제 발굴 후 주민공동체 조직과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 농촌 및 도시재생지역 관리기능 ▪ 여성, 아동, 청소년 보호 및 보육기능 ▪ 주민자치 및 공동체 맞춤형 관리 지원 기능 ▪ 지역자원 및 문화기능 ▪ 도농상생 및 네트워크(어울림 분과) 기능 ▪ 사회문제 발굴 기능(사회문제 발굴 후 주민공동체 조직과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 마을별 현안 문제점 파악 및 그에 따른 필요사업 파악 ▪ 주민편의시설 관리기능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제 발굴 기능(사회문제 발굴 후 주민공동체 조직과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 주민자치 및 공동체 맞춤형 관리 지원 기능 ▪ 도농상생 및 네트워크(어울림 분과) 기능 ▪ 지역자원 및 문화기능 ▪ 여성, 아동, 청소년 보호 및 보육기능 ▪ 평생교육기능 ▪ 청년자립 및 참여기능 ▪ 공동주택연계 및 관리기능 ▪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등 사회적 경제 기능
운영방식의 쟁점	읍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위원 대상 역량 등에 기인 실무교육 강화 ▪ 주민총회 및 마을계획사업의 경우 농번기와 겹치는 한계 ▪ 젊은 세대의 부족, 보다 많은 연령대 구성, 신규세대가 서로 협력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 ▪ 재정적 자립성 부족,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문제의 고민(행정과 독립된 운영기반) ▪ 농촌지역의 인구특성을 고려한 기준적요 필요(운영방식 및 기준) ▪ 활발한 소통의 미흡(읍면동 행정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

구분	읍면동	주요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위원 정원을 채우기 어려운점(정원 조정 필요) ▪ 이장협의회와 대립과 갈등(이해 및 협력관계 증진) ▪ 상시지원 인력 부재로 업무증가 및 효율적 업무추진의 어려움(지원가 역시 형식적인 점)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예산 지원 ▪ 행정과 협력적인 파트너로서 인식부족(독자적 기관으로만 인식하며 명확한 인식 부재) ▪ 면과 동의 획일적인 운영방식보다는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면과 동을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연령을 골고루 분배하기는 하되,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를 모집하는 것이 중요함(정원 미달) ▪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에는 전문인력 부재(직접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필요) ▪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문제(존립 이유 등), 아파트입대위 마을 회를 통해 충분히 실현된다고 판단 ▪ 참여하지 않은 정원 인력에 대한 제재방안 미흡 ▪ 아파트입대위 등 주요 주민조직과 소통 및 협력 미흡(간담회 및 회의 개최 필요) ▪ 생업으로 인한 참여 동기부족(공가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주민자치회 임기 등이 달라 연속성 부재
향후 발전방향	읍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민인식 및 체감을 위한 홍보 ▪ 여타 주민공동체 조직과 화합 및 네트워크 강화 ▪ 주민자치회 대표성 강화 ▪ 자생력 확보기반 강화(자립성 강화) ▪ 자치역량 및 실무역량 강화(교육 등 가치정립 및 역할 등)/주민의 피부에 와닿도록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기능 교육 ▪ 활동 영역의 확장 ▪ 주민자치회 수익사업 강화 필요(재정 확보방안), 사람과 예산이 문제로 지원 강화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생력 확보기반 강화(자립성 강화) ▪ 여타 주민공동체 조직(이통장, 아파트입대위, 상인회 등)과 화합 및 네트워크 강화 ▪ 자치역량 및 실무역량 강화(교육 등 가치정립 및 역할 등) ▪ 민주적 운영 및 책임감 강화 ▪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민인식 및 체감을 위한 홍보 ▪ 실질적으로 마을발전을 위해 일할 사람 선별(인원감축 및 면접필요) ▪ (읍면동)행정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 그리고 행정의 혁신 ▪ 유기적 관계의 지속을 위해 다른 공동체 조직 구성원들이 당연직 포함 검토

결론 및 정책제언

1절 연구결과의 요약

2절 정책제언

5장

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절 연구결과의 요약

- 세종시는 단층제적 성격(읍면동의 중요성이 큼)을 가진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가진 도시로서 주민이 마을에서 주도성을 가지고 지역정책을 직접 만들고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차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주민자치회의 확대 운영과 향후 읍면동 환경변화에 대비해 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 조치원읍을 중심으로 하는 구도심, 그리고 농촌 지역인 면지역 특성에 맞는 적합한 주민자치회 운영모형을 개발하고 그에 상응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시됨
 - 즉, 세종시에 적합한 지역적 특성(읍면동)을 반영한 주민자치회 모형을 구체화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시됨. 이는 읍면동별 특성에 따라 이를 둘러싼 환경과 제도,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가지는 기능과 역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에 기인함
- 이에 본 연구는 첫째, 주민자치회의 전면 확대에 의해 신도시, 구도심, 농촌지역의 특성에 따른 주민자치회 운영모형을 개발(주요사업, 기능, 재정지원 등) 하고,
 - 읍면동 행정의 사무, 이관되어야 할 사무분석,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마을공동체와 연계, 각 공동체 관련 분과위 구성
 - 협의사무 검토, 기존 주민제안사업, 마을계획사업 구체화, 위탁가능업무 검토, 연계법인 설립시 수행가능한 사업영역 검토
- 둘째, 이를 통해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풀뿌리 주민자치의 효능감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다음 [표 5-1]과 같이 분석결과를 도출함

[표 5-1] 분석결과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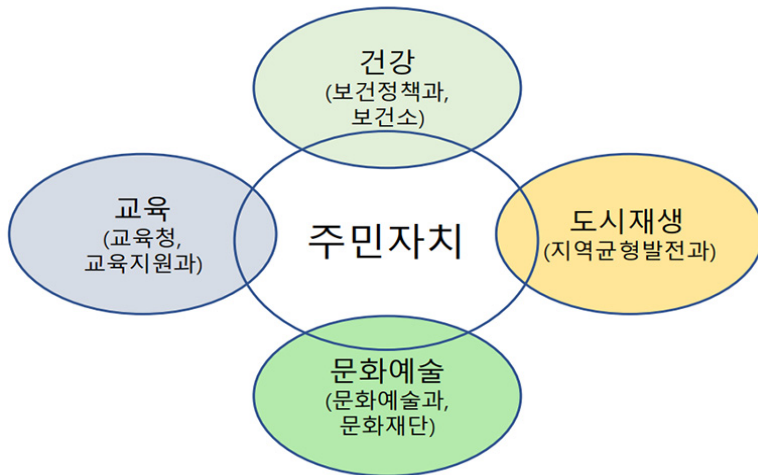
구분	분석결과
주민 자치회 및 총회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한 주민자치회 기능): ‘공동문제해결사항’, ‘수립한계획사항’, ‘의견합치사항’ ▪ (중요한 주민총회 기능): ‘주민자치회운영결산승인’, ‘자치계획승인’, ‘자치규약승인’ ▪ (필요한 주민자치회 기능): ‘주민총회운영’, ‘사무국설치운영’, ‘지역발전계획권’, ‘주요정책사전심의’
기능 위임 및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 지역자원 및 문화, 농촌 및 도시재생, 마을환경, 주민편의시설관리, 평생교육,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전담조직 구성, 사회복지 및 맞춤형 복지(강화) ▪ (면): 주민편의시설관리, 평생교육, 농촌(부강면, 전의면, 연동면, 연서면, 전동면 등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도시재생(부강면, 전의면 등 도시재생 지역에 국한됨), 주민자치 전담조직 구성, 사회복지 및 맞춤형 복지 기능(강화) ▪ (동): 불법광고물정리(환경), 주민편의시설관리, 평생교육, 공동주택관리, 생활안전기능(자율방범대 등), 주민자치전담조직 구성, 일반행정 및 통합민원(강화), 사회복지 및 맞춤형 복지(강화)
분과위 (자치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 기획운영 및 예산, 프로그램, 마을계획 분과는 기본적으로 구성되는 부분으로 판단되며, 특성화 있는 분과위는 지역자원 및 문화기능, 교육기능(평생교육 포함), 그리고 도시재생, 그리고 지역의 자생·직능단체와 네트워크, 농촌 및 도시재생으로 구성 ▪ (면): 기획운영 및 예산, 프로그램, 마을계획 분과는 기본적으로 구성되는 부분으로 판단되며, 특성화 있는 분과위는 지역자원 및 문화기능, 마을기업, 복지 및 환경, 청(소)년, 평생교육, 그리고 마을이장단과의 네트워크로 구성 ▪ (동): 기획운영 및 예산, 프로그램, 마을계획 분과는 기본적으로 구성되는 부분으로 판단되며, 특성화 있는 분과위는 지역자원 및 문화기능, 도농상생, 협동조합, 청소년, 그리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 공동주택의 주민조직과 네트워크로 구성
협의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 도시재생, 지역복지, 마을관리(주민편의시설), 지역사회문제발굴, 도농상생과 관련된 사안 ▪ (면): 평생교육, 지역사회문제발굴, 주민편의시설관리, 지역복지, 농촌 및 도시재생, 마을네트워크와 관련된 사안 ▪ (동): 평생교육, 지역사회문제발굴, 주민편의시설관리, 지역사회문제발굴, 사회적경제, 보육 및 청소년 보호, 공동주택 연계 및 관리, 도농상생 및 마을네트워크와 관련된 사안
위탁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포함), 주민총회 운영, 소회계층돌봄(복지), 도시재생활성화 공간운영, 공동체 공간 및 마을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을 중심으로 한 운영관리 ▪ (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포함), 주민총회 운영, 도서관 운영 등 주민편의시설, 마을축제의 기획·운영을 중심으로 한 운영관리 ▪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포함), 주민총회 운영, 복권 및 공동체 공간운영, 마을축제기획 운영 등 가능

구분	분석결과
주민자치회 구성 및 주민총회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 주민자치회 구성: 적정임기는 ‘현행과 동일, 읍과 동의 연임규정만 2회로 변경 방식’ ▪ (읍): 주민총회: 축제방식+주민주도+다양한 단체참여 ▪ (면): 주민자치회 구성 및 주민총회 방식: 적정임기는 ‘현행방식 유지’, 주민자치회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에 의한 공개추첨방식+주민공동체조직 추천+명망이 있는 분을 추천’하는 혼합적 방식을 제안함 ▪ (면): 주민총회: 축제방식+주민주도+다양한 단체참여 ▪ (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주민총회 방식: 적정임기는 ‘현행방식 유지’ 쪽 제안 비중이 높으며, ‘공개모집에 의한 공개추첨방식+주민공동체조직 추천+명망이 있는 분을 추천’하는 혼합적 방식도 제안함 ▪ (동): 주민총회는 축제방식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축제형식보다는 다양한 의제가 모여서 주민주도성을 가진 내실 있는 공론장 운영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운영위원회 운영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 운영위원회 운영방식: ‘개편’의 필요성이 제시되며, 그 대안으로 읍장1인+읍장 추천 3인+기관단체장 추천 3인, 혹은 읍장1인+공동체조직 추천 6인으로 제안됨 ▪ (면): ‘현행’ 유지로 면장1인+면장추천 3인+면소재 주요기관 및 단체장 추천 3인으로 제안함 ▪ (동): ‘개편’의 필요성이 제시되며, 그 대안으로 동장1인+공동체조직 추천 6인으로 제안됨
발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 주민자치회 대표성강화, 자생력확보를 위한 기반강화, 주민자치회 시민인식 및 체감을 위한 홍보, 행정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 그리고 행정의 혁신, 주민의 자치역량 및 실무강화 등을 중심으로 제안함 ▪ (면): 주민자치회 대표성강화(기존 주민조직과 갈등해결 및 네트워크 강화), 자생력확보를 위한 기반강화(수익사업 포함), 주민자치회 시민인식 및 체감을 위한 홍보, 행정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 그리고 행정의 혁신, 주민의 자치 및 실무역량강화, 리단위 마을회의 민주적 운영체계 확립, 마을계획시 농번기 고려 및 예산집행과정상의 조정 필요 등을 중심으로 제안함 ▪ (동): 주민자치회 대표성강화(주민공동체 조직과 화합 및 네트워크), 자생력확보를 위한 기반강화, 주민자치회 시민인식 및 체감을 위한 홍보, 주민주도성 강화(민주적 운영과 책임성 포함, 행정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 그리고 행정의 혁신, 주민의 자치 및 실무역량강화(마을계획사업 등), 주민자치회 구성 문제해결 등을 중심으로 제안함

2절 정책제언

□ 마을공동체 플랫폼 조직으로서 주민자치회: 공동생산을 위한 준지방자치단체화

- 세종시가 지향해야 할 풀뿌리 주민자치 2.0은 읍면동의 중심성 강화와 그에 따른 준지방자치단체로서의 기능확립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읍면동의 행정기능을 강화함에 따라 마을공동체의 플랫폼 조직으로서 주민자치회 모형을 정립할 수 있을 것임
- 건강, 교육, 도시재생, 문화예술 등 주민과 밀접한 행정기능을 읍면동에서 일부 기능하도록 구상해 주민자치회와 협의 및 위탁사무를 추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임.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주민조직을 네트워크화해 주민주도성을 가지고 지역주민 스스로 사업을 구상 실행하는 주민자치 사무도 가능함
- 아울러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자치회 중심의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²⁴⁾



[그림 5-1] 마을공동체 플랫폼 조직으로서 주민자치회 모형

24)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중심의 주민협의체를 구상할 수 있을 것임. 즉, 주민자치회 분과 아래 직업별, 권역별, 연령별 주민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주민참여 기반을 토대로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민관협력을 통한 자치활동 추진할 수 있음

〈사례 : 광주 광산구 첨단 2동 12개 주민협의체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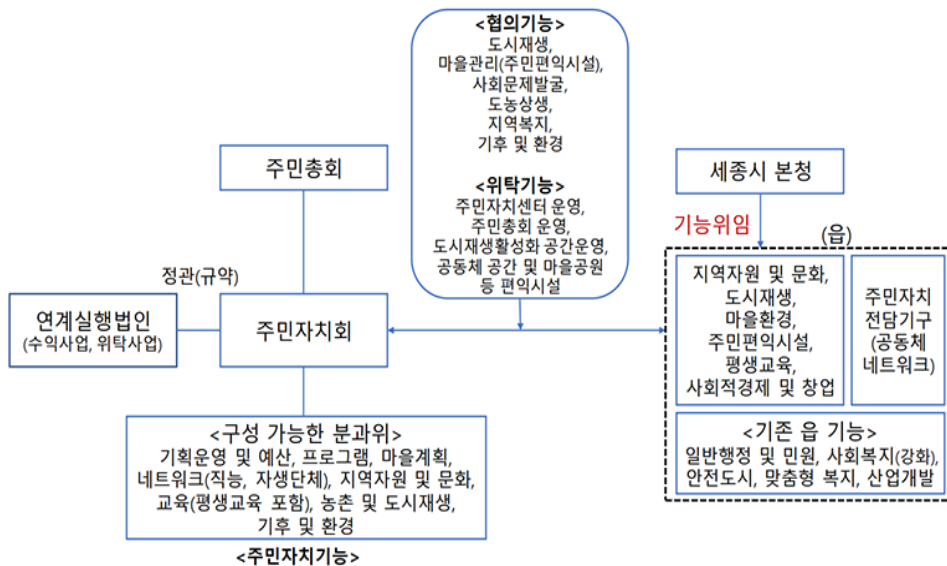
- 추진 배경
 - 주민 조직화를 통한 주민참여 유도 및 주민 자치활동 강화책 마련
 - 주민 욕구 파악 및 마을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과 자치공동체 기반 마련
- 주요 내용
 - 2018년부터 주민자치회 사무국 중심의 직업·연령별 협의체 구성과 발굴
 - 2020년부터 각 협의체와 분과 조직화를 통한 주민참여 확장 → 협의체 확대
 - 주민참여 확대와 활동의 협치 → 민·관·정 협력 활동 및 마을문제 해결력 강화
 - 관계망 구축에 따른 주민참여도 확장의 결과 →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총회
 - 협의체 주도적 사업 확장과 주민자치회의 예산 및 운영지원 시스템 구축

□ 읍면동별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모형 확립

■ 조치원읍: 구도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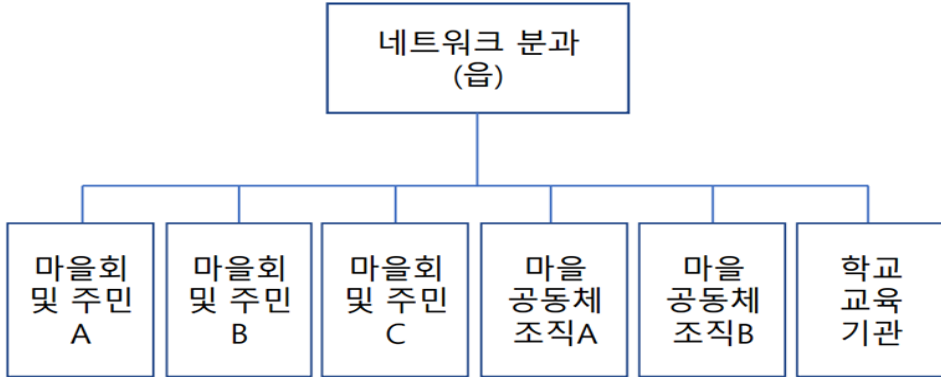
- 조치원읍과 같은 구도심에 위임될 필요성이 있는 사무,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 구성방식, 그리고 협의 및 위탁가능 사무에 대해 조치원읍 공무원, 주민자치회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모형을 제안함
 - 본청에서 읍으로 위임할 수 있는 기능: 지역자원 및 문화, 농촌 및 도시재생, 마을환경, 주민편익시설관리, 평생교육, 사회적경제 및 청년창업 기능을 중심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임. 도시재생에 따라 조성된 지역인프라의 주민운영, 특히 도시지역에서의 청년층 등이 중심이 된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등과 연계한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고려할 필요성도 제기됨. 특히, 주민자치전담조직을 구체화해 상시적으로 조치원읍의 안정적 지원을 병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기존 직능·자생단체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도시재생 등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가 가능할 것임
 - 읍에서 구상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 기획운영 및 예산, 프로그램, 마을계획 분과는 기본적으로 구성되는 부분으로 판단되며, 특성화 있는 분과위는 지역자원 및 문화기능, 교육기능, 그리고 도시재생, 기후 및

- 환경, 그리고 지역의 자생직능단체와 네트워크를 고민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임
- 협의기능: 조치원읍의 사무위임과 연계해 주민자치회와 조치원읍이 협의할 수 있는 사무는 도시재생, 지역복지, 마을관리(주민편익시설), 지역사회문제발굴, 도농상생, 기후 및 환경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위탁사무: 조치원읍에서 검토할 수 있는 위탁사무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포함), 주민총회 운영, 소외계층 돌봄(복지), 도시재생활성화 공간운영, 공동체 공간 및 마을공원 등 주민편익시설을 중심으로 한 운영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연계실행법인: 읍의 행정기능강화와 협의사무 확대, 그에 따른 위탁사무를 발굴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연계수행법인을 통해 공공서비스전달, 수익사업을 병행할 수 있음
 - [그림 5-2]는 조치원읍의 주민자치 모형을 구상한 것이며 다음과 같이 제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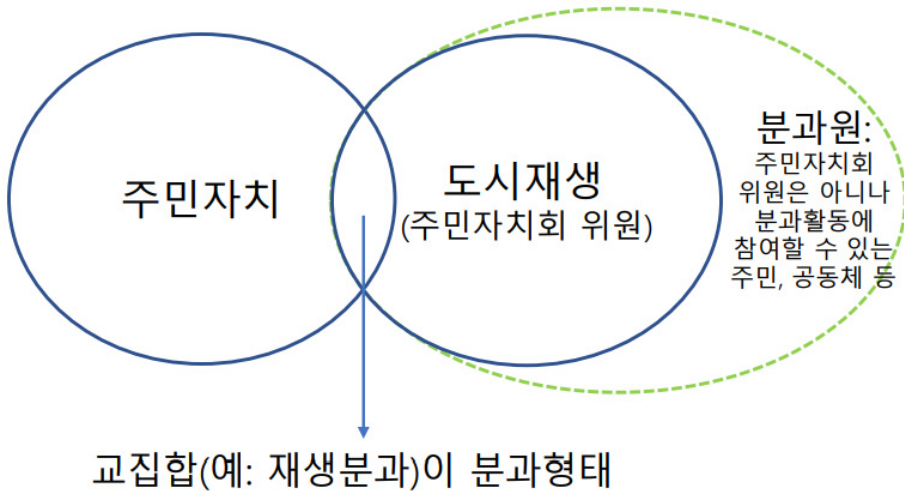
[그림 5-2] 지역특성에 따른 주민자치 모형(읍)

- [그림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치원읍의 네트워크 분과는 각 마을 회(주민)와 직능·자생단체, 학교교육기관 등을 중심으로 연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림 5-3] 읍의 네트워크 분과 구성 모형

○ [그림 5-4]는 주민자치회, 도시재생 연계 모형을 보여줌



자료: 행정안전부(2021:40) 재구성

[그림 5-4] 주민자치회, 도시재생 연계형

〈사례 : 인천 서구 도시재생 연계 주민자치회 구조〉

- 추진 배경
 - 마을 활동에 중복 참여하는 주민, 원활하지 못한 정보 전달 및 공유, 부서 간 업무 혼재 및 중복
 - 가시적인 성과주의 행정문화의 문제점 인식
 - 실질적 주민주도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진행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 확인
 - 주민자치회와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의 연계 및 협력 제안
- 주요 내용
 - 주민자치회와 도시재생 연계모형 수립
 - 시범동 주민자치회 재생 관련 분과 별도 구성
 - 도시재생사업 준공에 따른 커뮤니티센터의 운영주체 교육 및 주민자치회 연계를 위한 워크숍(2020.11.)
 -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도시재생 교육 진행(2020.12.)

- 조치원읍의 당면한 문제, 주민자치회 구성 및 주민총회 방식, 운영위원회, 대안 및 발전방안
 - 당면한 문제(쟁점): 주민자치회 대표성 미흡,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미흡,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 및 효능감 부재, 참여율 저조 (마을계획, 주민총회) 등이 제시될 수 있음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주민총회 방식: 적정임기는 '현행과 동일, 읍과 동의 연임규정만 2회로 변경 방식'을 주로 제안할 수 있으며, 주민총회는 축제방식으로 다양한 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주도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운영위원회 운영방식: '개편'의 필요성이 제시되며, 그 대안으로 읍장 1인+읍장 추천 3인+기관단체장 추천 3인, 혹은 읍장1인+공동체조직 추천 6인으로 제안됨
 - 발전방안: 주민자치회 대표성강화, 자생력확보를 위한 기반강화, 주민자치회 시민인식 및 체감을 위한 홍보, 주민주도성 및 공론장 운영, 행정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 그리고 행정의 혁신, 주민의 자치역량 및 실무 역량강화 등을 중심으로 제안함

■ 면지역(농촌지역)

- 농촌지역인 면에 기능이 위임될 필요성이 있는 사무, 주민자치회 분과 위원회 구성방식, 그리고 협의 및 위탁가능 사무에 대해 조치원을 공무원, 주민자치회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모형을 제안함
 - 본청에서 면으로 위임할 수 있는 기능: 주민편익시설관리, 평생교육, 농촌(부강면, 전의면, 연동면, 연서면, 전동면 등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및 도시재생(부강면, 전의면 등 도시재생 지역에 국한됨), 마을환경을 중심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임. 이와 더불어 면 역시 주민자치전담조직을 구체화해 상시적으로 면의 안정적 지원을 병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기존 이장단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임
 - 면에서 구상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 기획운영 및 예산, 프로그램, 마을계획 분과는 기본적으로 구성되는 부분으로 판단되며, 특성화 있는 분과위는 지역자원 및 문화기능, 마을기업, 복지 및 환경, 청년, 평생교육, 기후 및 환경, 그리고 마을이장단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임. 특히, 면지역에 있어서는 고령화와 함께 인구감소가 큰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서 지역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주민자치회 복지분과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겸함)와 연계협력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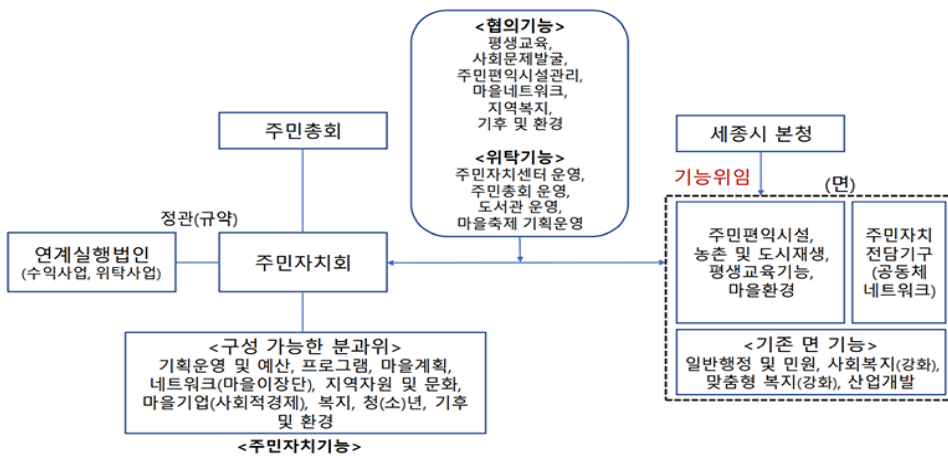
〈사례 : 곡성군 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자치회 구조〉

• 주요 내용

- 마을자치분과, 나눔분과, 문화분과를 구성하고 나눔분과는 죽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겸함
- 각 기관사회단체협의회의와 이장단을 주민자치회 협력단으로 하여 단체들 간의 협력 체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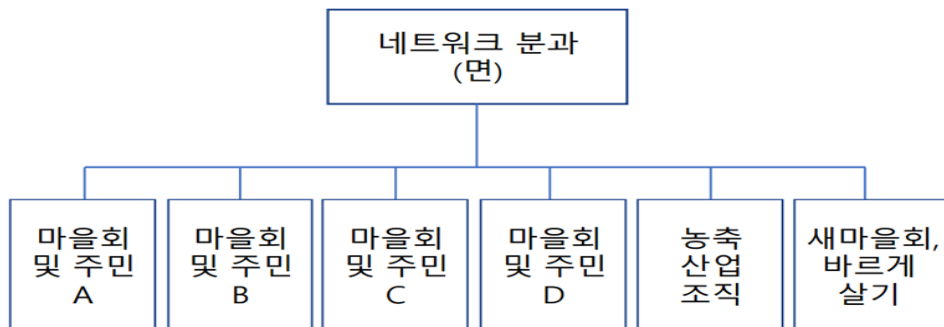
- 협의기능: 면(농촌지역)의 사무위임과 연계해 주민자치회와 면이 협의할 수 있는 사무는 평생교육, 지역사회문제발굴, 주민편익시설관리, 지역복지, 농촌 및 도시재생, 마을네트워크, 기후 및 환경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위탁사무: 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위탁사무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포함), 주민총회 운영, 도서관 운영 등 주민편익시설, 마을축제의 기획·운영을 중심으로 한 운영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연계실행법인: 면의 행정기능강화와 협의사무 확대, 그에 따른 위탁사무를 발굴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연계수행법인을 통해 공공서비스전달, 수익사업을 병행할 수 있음
- [그림 5-5]는 면의 주민자치 모형을 구상한 것이며 다음과 같이 제시됨



[그림 5-5] 지역특성에 따른 주민자치 모형(면)

- [그림 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의 네트워크 분과는 각 마을회(마을이장과 지역주민), 농축산업조직,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관련단체 등을 포함한 연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림 5-6] 면의 네트워크 분과 구성 모형

- 면(농촌지역)의 당면한 문제, 주민자치회 구성 및 주민총회 방식, 운영위원회, 대안 및 발전방안 등을 중심으로 추가 제안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됨
 - 당면한 문제(쟁점): 주민자치회 대표성 미흡, 자생력 확보기반 미흡, 공간활용의 어려움 및 자재부족,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업무공백, 봉사자의 최저인건비 등으로 지원부족, 이장단 등 주민조직과 갈등,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 및 효능감 부재, 행정과 협조 및 협력관계 미흡, 농번기의 한계, 적은 인구 등이 제시될 수 있음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주민총회 방식: 적정임기는 '현행방식 유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주민자치회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에 의한 공개추첨방식+주민공동체조직 추천+명망이 있는 분을 추천'하는 혼합적 방식을 제안함. 그리고 주민총회는 축제방식으로 조직원읍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주도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운영위원회 운영방식: '현행'유지로 면장1인+면장추천 6인으로 제안함
 - 발전방안: 주민자치회 대표성강화(기존 주민조직과 갈등해결 및 네트워크 강화), 자생력확보를 위한 기반강화(수익사업 포함), 주민자치회 시민인식 및 체감을 위한 홍보, 행정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 그리고 행정의 혁신, 주민의 자치 및 실무 역량강화, 리단위 마을회의 민주적 운영체계 확립, 마을계획시 농번기 고려 및 예산집행과정상 조정필요 등을 중심으로 제안함

■ 동지역(심도심 지역)

- 동지역과 같은 심도심 지역에 기능이 위임될 필요성이 있는 사무,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 구성방식, 그리고 협의 및 위탁가능 사무에 대해 조차원을 공무원, 주민자치회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모형을 제안함
 - 본청에서 동으로 위임할 수 있는 기능: 마을환경 및 경관(불법광고물 정리 등), 주민편의시설관리, 평생교육, 사회적경제, 공동주택관리,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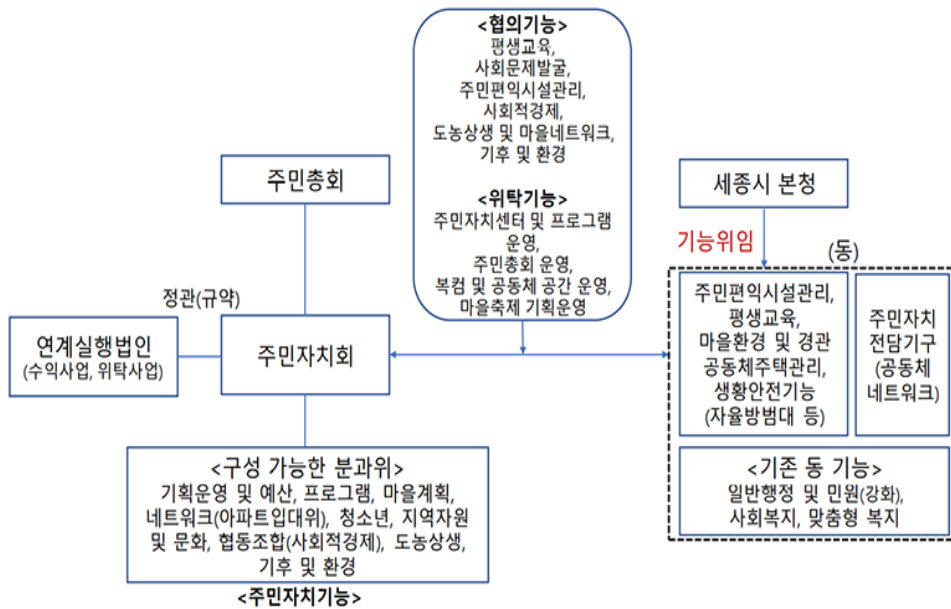
안전기능(자율방범대 등), 그리고 주민자치전담조직을 구체화해 상시적으로 동의 안정적 지원을 병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 공동주택주민조직과 네트워크를 고민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음

- 구상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 기획운영 및 예산, 프로그램, 마을계획
분과는 기본적으로 구성되는 부분으로 판단되며, 특성화 있는 분과위는 지역자원 및 문화기능, 도농상생, 협동조합, 청소년, 기후 및 환경, 그리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 공동주택의 주민조직과 네트워크를 고민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임. 특히, 도심지역에 있어서 평생교육 등 역량강화의 요구와 수요가 높기에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공동체와 연계협력하는 등 거버넌스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시됨

〈사례: 경기 시흥시 마을교육공동체와 주민자치회 연계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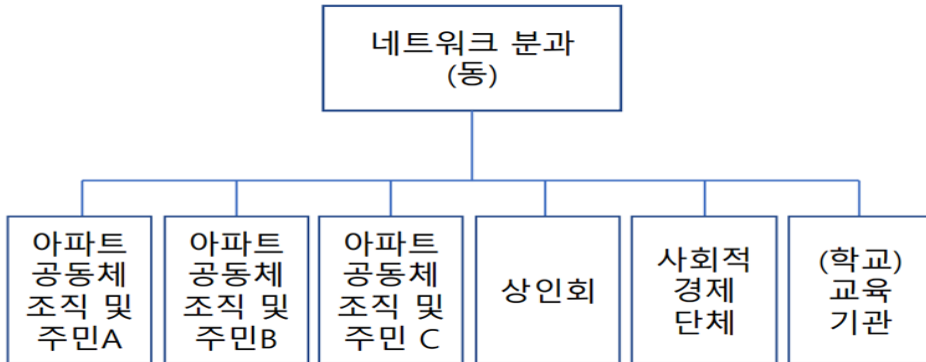
- 주요 내용
 - (참여기구) 주민자치회 내 마을교육자치회 연계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참여기구 확대
 - 체계적인 준비와 교육을 통한 시흥형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 (필요성)
 -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이 인정되고 존중되는 지역 중심 교육으로 전환
 - 지역과 마을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마을 중심 교육 실시
 - 마을, 학교,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마을교육생태계 조성
 - (운영방안)
 - 동 단위 거버넌스 구성(12개동) 후 권역별 네트워크 운영(효성권역(2), 계산권역(4), 작전권역(3), 계양권역(3))
 - 권역별 네트워크 정기적 모임 운영(월 1회)(주민자치회, 학교, 학부모, 마을교육활동가 등 교육 주체의 정기적인 모임으로 지역교육 거버넌스 기반 마련)
 - 동 단위 교육력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한 교육과정 지원(주민자치 특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시 학교교육 평생교육 마을강사 연계)
 - 지역과 학교 협력체계 기반 마련(1동 1교 하모니 사업 추진, 권역별 지역으로 찾아가는 공감 토크)
 - ※ 학교, 주민, 행정기관이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필요성 확산 계기 마련

- 협의기능: 동의 사무위임과 연계해 주민자치회와동이 협의할 수 있는 사무는 평생교육, 지역사회문제발굴, 주민편의시설관리, 사회적경제, 보육 및 청소년 보호, 공동주택 연계 및 관리, 기후 및 환경, 도농상생 및 마을네트워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위탁사무: 동에서 검토할 수 있는 위탁사무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포함), 주민총회 운영, 복컴 및 공동체 공간운영, 마을축제기획운영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연계실행법인: 동의 행정기능강화와 협의사무 확대, 그에 따른 위탁사무를 발굴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연계수행법인을 통해 공공서비스전달, 수익사업을 병행할 수 있음
- [그림 5-7]은 동의 주민자치 모형을 구상한 것이며 다음과 같이 제시됨



[그림 5-7] 지역특성에 따른 주민자치 모형(동)

- [그림 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의 네트워크 분과는 각 아파트단지 내의 공동체조직 및 주민, 상인회, 사회적경제단체, 학교등 교육기관 들을 중심으로 연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림 5-8] 동의 네트워크 분과 구성 모형

- 동(신도심지역)의 당면한 문제, 주민자치회 구성 및 주민총회 방식, 운영위원회, 대안 및 발전방안 등을 중심으로 추가 제안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됨
 - 당면한 문제(쟁점): 주민자치회 대표성 미흡, 자생력 확보기반 미흡,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 및 효능감 부재, 행·재정적지원 및 관심 부족(봉사자 수당 최저, 지원인력 인건비 문제)으로 인한 업무부담, 주민 주도성 부족, 위원의 역량 미흡, 위원간의 갈등(아파트 입대위 포함 지역주민과 갈등 등)과 관심부족,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문제, 운영상 전반의 한계점 등이 제시됨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주민총회 방식: 적정임기는 ‘현행방식 유지’쪽이 가장 제안 비중이 가장 높으며, ‘공개모집에 의한 공개추첨방식+주민 공동체조직 추천+명망이 있는 분을 추천’하는 혼합적 방식도 제안함. 주민총회는 축제방식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축제형식보다는 다양한 의제가 모여서 주민주도성을 가진 내실 있는 공론장 운영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운영위원회 운영방식: ‘개편’의 필요성이 제시되며, 그 대안으로 동장 1인+공동체조직 추천 6인으로 제안됨

- 발전방안: 주민자치회 대표성강화(주민공동체 조직과 화합 및 네트워크 강화), 자생력확보를 위한 기반강화, 주민자치회 및 총회에 대한 시민인식 및 체감을 위한 홍보, 주민주도성 강화(민주적 운영과 책임성 포함), 행정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 그리고 행정의 혁신, 주민의 자치 및 실무역량강화(마을계획사업 등 교육), 주민자치회 구성문제 해결 등을 중심으로 제안함

■ 종합정리

- [표 5-2]는 각 읍면동의 기능, 전담조직, 주민자치회 협의, 위탁, 주민자치사무를 비교함
- 아울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단체, 교육관련 중간지원조직, 자원봉사센터 등 중간지원조직들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임

[표 5-2] 읍면동 기능, 협의, 위탁, 주민자치사무 비교

구분	읍	면	동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행정 및 민원 ▪ 사회복지(강화) ▪ 안전도시 ▪ 맞춤형 복지 ▪ 산업개발 ▪ 지역자원 및 문화 ▪ 도시재생 ▪ 마을환경 ▪ 주민편의 ▪ 사회적경제 및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행정 및 민원 ▪ 사회복지(강화) ▪ 맞춤형 복지(강화) ▪ 산업개발 ▪ 주민편의시설 ▪ 농촌 및 도시재생 ▪ 평생교육 ▪ 마을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행정 및 민원(강화) ▪ 사회복지 ▪ 맞춤형 복지 ▪ 주민편의시설 ▪ 평생교육 ▪ 마을환경 및 경관 ▪ 공동주택관리 ▪ 생활안전
전담기구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지원(위원모집, 교육, 선정, 후보자명부 관리, 인수인계, 분과원 구성, 운영내규 작성, 임원 및 간사선정 등) ▪ 주민자치 관련 제도개선 지원 ▪ 협의사무 및 위탁사무 발굴 협의 ▪ 주민조직 네트워크 ▪ 주민간 갈등 조정 ▪ 주민자치회 사무국 협력 		
협의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 ▪ 마을관리(편의시설) ▪ 사회문제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 사회문제발굴 ▪ 주민편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 사회문제발굴 ▪ 주민편의시설

구분	읍	면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상생 ▪ 지역복지 ▪ 기후 및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네트워크 ▪ 지역복지 ▪ 기후 및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 도농상생 및 네트워크 ▪ 기후 및 환경
위탁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센터 ▪ 주민총회 ▪ 도시재생활성화공간 ▪ 공동체공간 및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센터 ▪ 주민총회 ▪ 도서관 ▪ 마을축제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센터 ▪ 주민총회 ▪ 복권 및 공동체 공간 ▪ 마을축제기획
주민자치 사무 (분과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운영 및 예산 ▪ 프로그램 ▪ 마을계획 ▪ 네트워크 ▪ 지역자원 및 문화 ▪ 교육(평생교육포함) ▪ 농촌 및 도시재생 ▪ 기후 및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운영 및 예산 ▪ 프로그램 ▪ 마을계획 ▪ 네트워크(이장단) ▪ 지역자원 및 문화 ▪ 마을기업(사회적경제) ▪ 복지 ▪ 청(소)년 ▪ 기후 및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운영 및 예산 ▪ 프로그램 ▪ 마을계획 ▪ 네트워크(아파트) ▪ 지역자원 및 문화 ▪ 청소년 ▪ 협동조합(사회적경제) ▪ 도농상생 ▪ 기후 및 환경
네트워크 분과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회 및 주민 ▪ 마을공동체 조직(상인회 등 포함) ▪ (학교) 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회 및 주민 ▪ 농축산업 조직 ▪ 새마을, 바르게 살기 등 관변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공동체 조직 및 주민 ▪ 상인회 ▪ 사회적 경제단체 ▪ (학교) 교육기관

법적·제도적 보완 및 대안제시

■ 읍면동 중심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편(중·장기)

① 읍면동에 주민밀착형 기능사무 위임

- (필요성) 본청 기능 중 주민밀착형 사업을 읍면동으로 위임해 읍면동에서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기획할 수 있을 것임
 - 위임된 주민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주민과 공동으로 협의할 수 있음. 아울러 주민과 마을의 의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을의 특성과 실태를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읍면동으로 주민밀착형 사무와 기능을 위임할 때, 마을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는 곧 마을 중심의 자생적인 문제해결 체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사료됨(김홍주, 2022)

- 추진방안: 읍면동별 정책사업 기획 TF 조직운영이 선행되어야 함. 정책의제 설정(정보와 자료수집), 정책형성(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성 타진, 계획수립), 정책집행(지역 내 가용자원 활용, 주민과 공동체, 행정간 거버넌스), 정책평가(자체평가와 전문가 피드백) 단계별 추진이 요구됨
 - 즉, 업무위임에 대한 전수조사 → 읍면동에 주민밀착형 사무위임을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 예산산출 및 조직진단을 통한 단계적인 업무 위임 → 추진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거칠 수 있을 것임

〈사례 : 광주 서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혁신 사례: 기능위임〉

- 주요 내용
 - 위임업무: 14개 부서 17개 업무
 - 배정인력: 직원 18명(동별 1명), 기간제 348명
 - 위임업무 실무교육 3회, 마을정부 업무 매뉴얼 발간 등

② 읍면동 자율예산편성제 도입

- (필요성) 주민밀착형 행정사무를 읍면동에서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재정자율성 및 자치재정권이 보장되어야 함. 즉, 자치재정권은 위임된 사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재원을 자율적으로 조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음. 따라서 주민편의, 주민자치사무를 읍면동에서 보다 자유롭게 수행하기 위한 측면에서 재정적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임(김홍주, 2022)
 - 읍면동의 예산편성 자율성 보장과 함께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전협의권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임. 따라서 읍면동은 예산(안)을 편성하고, 주민대표조직과 사전협의를 진행해 예산주관부서에서 예산(안)을 조정해 최종 예산(안)이 확정될 수 있을 것임
- (추진방안): 주민대표조직과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전협의권 보장 및 주민의견 반영의 제도화 검토
 - 읍면동에 예산을 배분해 자율권을 부여할 때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자치계획을 읍면동의 중기재정계획과 연동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임

- 본청사업예산 중에서 일정범위의 예산을 재배정해 통합하는 방식의 통합예산제도도 검토할 수 있음. 그리고 집행성과와 연계해서 차년도 총액배분자율편성제에 포함시킬수 있을 것이며 본청단위의 업무를 이와 병행해 순차적으로 위임하는 방식을 제안함
- (추진절차): 예산편성 기준통보 → 예산(안) 편성(세종시, 읍·면·동) → 사전협의(읍·면·동의 경우/주민대표제) → 예산(안) 조정(예산주관부서) → 예산(안) 시의회 제출(세종시 → 시의회, 읍·면·동 → 시의회) → 예산의결 결과 이송(세종시의회 → 세종시장) → 예산의결내용보고 및 고시(읍·면·동 → 세종시, 세종시 → 행정안전부)

〈사례 : 광주 서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혁신 사례: 자율예산편성제〉

• 주요 내용

- 동 예산편성액: 21년(469백만원) → 22년(4,839백만원) → 23년(5,492백만원)

③ 자체 인사권 및 자율적 조직권 운영

- (필요성) 지역에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안에 자치조직권과 함께 인력운영에 있어 인사권을 일부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됨
- 도농복합지역으로서 지역적 차이에 따라 행정수요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그에 상응해 조직구성과 인력배치의 자율성(일부 인사권 포함)을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됨
- 자체 인사권(일부) 부여: 역량에 따른 적절한 성과창출과 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읍면동장에게 일부 부여할 수 있음(현저히 피해주는 자에 대한 해임권 부여)

※ 읍·면·동 자체 (가칭) 인사위원회: 읍·면·동장, 팀장급 포함 3명 이내

※ 주민자치회 임원회의: 주민자치회장 포함 3명 이내

- (추진방안): 자율적 팀 구성 및 운영권: 읍·면·동 팀별 개인의 업무 실태조사를 통해 업무량 등을 파악 → 읍·면·동 자체 (가칭)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팀 조직의 업무배정 및 팀원 배치 계획 작성 → 주민자치회와 협의 및 의견반영 → 읍·면·동내 행정인력에 대한 읍·면·동장의 업무배정 및 팀원 배치
- 자율적 팀 구성 및 운영권: (가칭) 인사위원회 구성 및 계획 → 주민자치회와 협의 및 의견반영 → 읍·면·동장 최종결정(임명, 해임, 추천) → 본청 인사팀 통보

<사례 : 서산시 자체인사권 및 자율적 조직운영 사례>

• 주요 내용

- 서산시 부읍면장, 총무팀장 자체 임명, 소속직원 본청추천, 관할 민간위원 자체위촉, 관할행사 주관추진 등/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징수권 부여, 농지원부 교부권 동단위 부여,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읍·면·동장 권한 부여 (산불관리요원 선발, 지역방재단 운영 등)

④ 추진계획(방안): 세종시 책임읍동을 중심으로 실험할 수 있을 것임

- 업무위임 실무 TF 구성 및 운영, 세종시 본청에서 읍면동 기능위임 사무 검토(전수조사), 업무위임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업무위임에 따른 읍면동별 소요인력 및 예산산출, 조직진단, 읍면동 기능강화 추진계획 작성(추진로드맵)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조례 개정
- 사무위임과 그에 따른 인력배치, 자율적 예산편성, 조직 및 인사권 부여 검토(장기적 차원)

■ 읍면동 주민자치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단기, 장기)

- (필요성)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주민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자치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특히, 상시적으로 주민자치회 및 마을공동체의 운영을 위한 지원인력이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전담인력의 세부 업무 예시)

- 첫째, 주민자치회 구성 등 주민자치 대표기구 구성·운영 지원(주요업무: 위원 모집, 교육, 선정, 후보자명부 관리, 주민자치위원회 인수인계, 임원 및 간사 선출, 분과원 구성, 운영내규 작성 등)
- 둘째, 주민자치 관련 제도 개선 지원(주민자치 관련 조례 개정, 주민세 환원, 주민참여예산제 등)
- 셋째, 자치계획 수립 및 시행, 주민총회 개최 지원, 읍면동 협의 업무 지원
- 넷째, 주민참여 정책공모 사업 연계
- 다섯째, 시설관리 운영 등 위·수탁 사무 발굴·협의 등

○ (추진방안): 추진방안으로는 주민자치회 간사를 기간제근로자 형식으로 채용하는 등 간사를 위한 지원확대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임(단기). 그리고 세종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및 마을공동체 전담인력이 순수히 마을과 자치의 업무만 소관하도록 설계할 필요성도 제시됨(중장기)

- 이를 통해 전담 공무원과 간사의 체계적인 사무분장을 통해 효율적인 민·관 협력적 협업체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사례 : 광주시 광산구 기간제근로자 간사활용 사례〉

• 주요 내용

- 주민자치회 간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주민자치회 실무를 수행(위원이 아닌 공개모집으로 채용하며 생활임금을 적용, 월 약 200만원 지급)
- '19년은 한시적으로 구에서 직접 채용하여 주민자치회 시범 등에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
- '20년부터는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채용('20년부터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재원을 확보)

- 광주시 광산구를 제외한 타 지자체의 경우 시·도에서 간사 수당을 지원함

【표 5-3】 타 지자체 간사 수당 지급 현황

지자체	간사수당	지자체	간사수당
서울특별시(전체)	월 100만원	대전 유성구	월 100만원
인천시 계양구	월 40만원	대전 대덕구	월 100만원
인천시 연수구	월 18만원	광주 광산구	월 약 200만원
인천시 부평구	월 30만원	경남 창원시	월 약 35~40만원

자료: 행정안전부(2021:181)

- [표 5-4]는 사무인력운영 방식 현황을 보여줌. 여기서 운영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주민자치센터’ 관리 업무를 포함하여 운영되는 경우 다수이며, 주민자치회인 경우 「지방보조금법의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에 따라, 주민자치회 세부사업을 특정사업으로 해석하여 지원하기도 함²⁵⁾
- 이렇듯 세종시 차원에서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민자치와 관련된 인력을 편재할 때, 기준인건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 건의도 필요함

25) 주민자치회 운영인력 연관 법령 및 규정해석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 즉, 「지방보조금법의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개정정책과-4065호(2014.9.16.))」 「지방보조금법」 제6조 제2항의 ‘운영비’는 그 단체 또는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재료 및 장비 구입비 등이 이에 해당됨. 다만 특정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2020.4.22.)」 제12조 제4항에 따라 자치회장은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

[표 5-4] 사무 인력 운영 현황

운영주체	지급형태	인력유형	고용계약 여부	비고
지방 자치단체	인건비	공무직	○	충남 당진시 일부 지역
		단기 기간제	○	광주 광산구 시범지역 (신설 1년차 동 주민자치회)
	실비	자원봉사 등	×	전국 주민자치회 시범지역
주민 자치회	인건비 (지방보조금)+ 주민자치센터 수익금)	특정사업에 따른 계약직	○	금천구 일부 시범지역
	민간위탁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행정사무 민간위탁)	위탁사업에 따른 계약직	○	광주 광산구 시범지역 (2년차 이상 동 주민자치회)
	인건비(지방보조금)	특정사업에 따른 계약직	○	충남 및 광주 주민자치회 시범지역
	실비지급(지방보조금)	자원봉사 등	×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지역

자료: 행정안전부(2021:181)

■ 주민자치회 대표성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 검토(단기, 중기)

- (필요성) 지역별·성별·연령별 균형 있는 선정방식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참여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주민조직 참여에 한계가 있어 지역내 주민조직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다양한 마을의제 발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주민자치회 위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필요함
- 무엇보다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공개모집에 의한 공개추첨 방식에서 현행 100% 공개추첨 방식보다 다양한 주민조직 참여가 가능한 혼합방식인 공모 + 추천 또는 추천으로 위원구성 방식)의 한계점과 운영위원회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읍면동장 1인+읍면동장 추천3인+해당 읍면동 소재 주요기관 및 단체의 장 추천 3인에서 읍동장 1인+마을 공동체조직에서 추천한자 6인으로, 여기서 면은 제외)와 개편 개선 검토의 필요성을 시사함

[표 5-5]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유형별 장단점

유형	장점	단점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성별·연령별 균형 있는 위원 선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에 대한 적극성이 확인 되지 않아 참여도 저조 이통장협의회 등 주요 조직이 추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음
공개모집 공개추첨+주민조직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첨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주민 조직에게 고른 참여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조직이 고르게 선정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직능대표 추천(운영위에서 참여 단체와 비율 결정)+전문가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통장협의회 등 주민대표 조직참여가 가능 읍면동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전문가 참여 시, 주민자치회 역량 및 전문성 제고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시민과 주민조직과의 갈등 발생 우려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추천된자 중 선정(운영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하고 다양한 주민조직 선정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위원회 선정으로 주민자치회의 자율적 운영 취지와의 부합여부 논란

○ (제안: 주민자치회 선정방식): 일반 공개모집 추첨(60~80%) + 주요 주민조직 추천(20~40%) 방식을 제안할 수 있을 것임(단기)

- 읍면동 운영위원회에서 주요 주민조직 대상 및 인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일반 공개모집으로 추첨하였으나 미달 된 경우와 주요 주민조직에서 추천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운영위원회에서 선정 비율(성별·연령별·지역별 선정 비율을 자율적으로 균형있게 결정)등 결정할 수 있음
- 일반공모 추첨과 주요 주민조직의 위원 추천으로 주민자치 위원을 구성한다면 주민 대표조직으로 인식이 확산·공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한 허용범위는 조례로 정하되, 주요 주민조직 및 위원구성 비율은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설계할 수 있을 것임

- (제안: 운영위원회 선정방식): 읍동에 한해 중기적으로 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을 읍면동장 1인+주민공동체조직 추천 6인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임(중기적인 검토)
- (기대효과): 다양한 지역공동체, 주민조직·단체,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결속하여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다양한 마을 의제 발굴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속의성 확보(중기)

- (필요성) 세종시는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설치해 주민자치회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한 바 있음. 그리고 자치분권특별회계는 마을계획사업, 주민제안사업, 자치역량강화사업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으나 주민제안사업의 경우 속의적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주민제안사업의 경우 마을계획사업과는 달리 주민주도적인 계획수립 과정이 미흡함. 따라서 마을계획사업과 마찬가지로 마을의 기초조사, 사업수요 등을 검토하여 속의적으로 주민제안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특히, 농촌지역의 주민제안사업의 경우 마을회를 거쳐 사업이 올라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이장단의 역할이 매우 크며, 이 과정에서 주민자치회의 결정권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표 5-6] 마을계획사업과 주민제안사업 비교

구분	마을계획사업	주민제안사업	
		읍면	동
개념	주민이 마을의 발전을 위해 직접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 가능하도록 구체화한 사업계획	마을회, 지역단체, 지역주민 등이 제안하고 주민 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마을 자치사업	
주체	주민자치회, 마을계획단	마을회, 주민 등	이장, 주민 등
제안방법	주민자치회 → 주민자치회 → 주민총회 (마을계획단) (예산협의회)	마을회·주민 → 주민자치회 → 주민총회 (마을계획단) (예산협의회)	
시의회제출	○	×	

자료: 김홍주(2020:114)

- (추진방안) 기존 마을회(이장, 주민)를 중심으로 의제를 제안하던 방식에서 숙의성을 높여서 이장중심의 의제설정이 아닌 마을전체의 공론화를 통해 사업이 결정되어 주민자치회에서 수렴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주민제안사업 및 마을계획사업에서 이장단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예산협의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공감대 및 이해도 증진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감대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자생력확보를 위한 연계실행법인 검토(중기)

- (필요성)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풀뿌리 주민자치의 제도적 자산으로 주민자치회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노력과 역량강화와 함께 정부차원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를 통한 행정사무의 위·수탁도 가능할 것임. 정부보조금에 의해서만 주민자치회가 운영된다면 그 지속성에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 독립성 차원의 검토가 필요함에도 직접적 위탁방식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지적도 제기됨²⁶⁾
- (한계점) 현 주민자치회는 법인격이 아니기에 위탁사업을 위한 법적 검토 필요성, 공적인 지역사업에 참여하고 실행하는데 구조적인 한계가 지적됨. 다시말해, 공공사업 참여에 있어서, 투·융자 등 제한요건이 많을 뿐 아니라 법적 책임과 함께 세법상 불리한 점도 지적됨
- (추진방안)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옹호자 역할 그리고 공동체를 촉진하는 기능을 공공서비스 전달기능과 분리해 주민자치회의 성숙단계에 따라 서로 다른기능을 고려해 차별화된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지역주민의 옹호자 역할 및 지역공동체를 촉진하는 차원에서는 세종

26)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나친 재정적 독립성에 대한 관심에서 공공서비스 전달방식을 강조할 경우 공공부문 혹은 시장부문의 조직이 가지는 특성을 혼합성(hybridity) 있게 가지게 되어 공동체 주축조직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함 (곽현근, 202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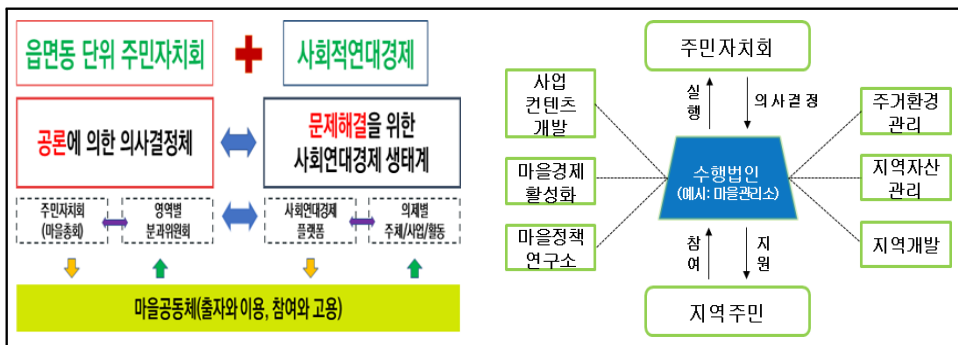
시 차원의 특별회계(혹은 기금 및 보조금 지급방식도 가능)를 통한 운용을 통해 유연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공공서비스 전달의 경우 주민자치회의 성숙정도에 따라 사회적 경제조직 방식의 위탁사업도 가능할 것임. 이를 통해 주민자치회는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정적인 자립기반을 갖추 수 있음

○ 주민자치회의 주요한 기능은 지역사회 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옹호자역할 혹은 공동체를 형성 촉진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수 있을 것임.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느끼는 지역문제에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의사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임(김홍주, 2022)

○ [그림 5-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회는 공론장을 운영하하는 주체, 그리고 읍면동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안정적인 조직운영(인건비 및 운영비),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 산하에 연계실행법인(사회적 경제조직 설립)을 둘 수 있을 것임

- 주민자치회 산하 사회경제적 조직은 일반기업과 비교해 공공성, 공동체성, 지역의 대표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지역사회에 환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임. 주요 사업으로는 마을카페, 특산물판매 등 소규모 마을사업에서, 지역재생, 공공자산활용, 지역금융 등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 차원에서 포괄적인 범위의 지역사업에 중점을 둔 조직으로 설계될 수 있을 것임(김홍주, 2022)



자료: 유창복(2020:428); 광현근·김홍주·이현국(2021:184) 재구성

[그림 5-9] 마을정부의 기초, 의사결정체와 사회연대 경제, 수행법인 개념도

■ 마을단위의 숙의적 공론장 운영(중·장기)

- (필요성) ‘공공성’의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마을은 매우 중요한 자산임은 자명한 사실임. 이러한 공공성 회복은 지역현안에 대한 관심과 의제화,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생성된다고 할 것임.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소통과 토론에 기반한 숙의적 공론장의 운용이라고 판단됨
 - 즉, 읍면동 차원에서 공론화를 경험하면서 주민들의 학습과 역량을 발전시켜 문제해결의 방법을 찾아가는 수단으로 주민들의 합의된 집단적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합의된 결과가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그리고 이를 위한 주민자치전담인력 보완 혹은 기구의 설립이 필요함
- (추진방안)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는 대표성 있는 다수의 주민을 선정하고, 충분한 토의 기회 및 정보를 제공하며, 정보에 근거한 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함(최인수 외, 2022).²⁷⁾ 그리고 주민자치회 지원인력 등으로 제도화하거나 개별 사업으로 두는 방안, 행정인력으로 두는 방안 검토
 - 공론화 의제설정 → 공론화위원회 소집 및 방식결정 → 1차 여론조사 → 시민참여단 전문가 강의, 상호토론 → 2차 여론조사 → 공론조사 결과분석 및 작성공표
- (추진계획)
 - 세종시에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검토, 세종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
 - 공론화 과정 전체를 개관하고 참고할 수 있는 표준매뉴얼 마련
 - 주민자치회 전담인력 개편방안 검토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근거한 시민참여기본계획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임

27) 공론화 의제와 방식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숙고를 통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토론에 대한 학습을 통한 충분한 숙의 기회의 제공과 숙의과정 참여자의 논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임(최인수 외, 2022)

■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재도입 구상(중·장기)

- (필요성)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주권의 관점에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의 제도화와 병행하여 읍면동 관리자(manager)라 할 수 있는 읍면동장을 현장의 주민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민추천제를 도입한 것은 전환의 시대에 현장 중심 행정의 강화 및 민주적인 거버넌스 제도 설계의 관점에서 매우 높은 제도적 가치를 가짐(김홍주·김강현, 2022)
- 무엇보다 자치단체장이 읍면동장 임면권에 대한 권한을 일부 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집권적인 대의민주주의와 관료제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의미가 있고, 지역공동체 기반의 민관협치 강화 또는 지역 밀착형 행정서비스 혁신 측면에서 앞으로도 주민추천제의 필요성과 평가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가 단순히 민주주의 관점을 넘어 읍면동 단위의 서비스 전달, 통치방식, 문제해결 방식에 있어서 상당히 소중한 제도로 인식될 가능성이 큼²⁸⁾
- (한계점) 기존 시행되었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공정성과 투명성(혈연, 지연, 특정단체 중심)의 문제, 읍면동 행정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 등의 실제적 효능감 부족 및 제도시행에 따른 큰 부담감 등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즉, 공무원 차원에서 감당해야 할 업무부담에 비해, 주민영역에서 그 효능감도 크지 않았다는데 한계점이 작용됨
- (추진방안) 세종시 주민으로부터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 읍면동장 및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주민주도성을 높여 행정차원에서 주민으로부터 신뢰회복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그리고 이를 통해 읍면동장 시민추천제가 가지는 제도적 당위성과 그 중요성을 인식해 본 제도의 재도입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임

28) 공공가치(public value)의 공동창출(co-creation)의 관점에서 재량권을 부여받은 읍면동의 행정책임자와 공동체(조직)와의 일상적 상호작용을 통한 탄탄한(robust) 행정과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키워나가는 것이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것임. 즉,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현대행정의 패러다임 전환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가치발견과 행정혁신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접근해야 함(김홍주·김강현, 2022)

■ 근린지방정부의 실험: 읍면동 지방자치단체화

- (필요성) 우리나라는 특·광역시도, 시군구 등 2계층 지방자치단체 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방행정체계는 대의민주제도를 중심으로 지방민주주의가 작동했음.²⁹⁾ 그동안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민주주의 실현에 한계점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마을,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주목함
 - 주민의 대표조직으로 주민자치회의 권한 강화와 이에 상응해 민주적인 구성과 운영의 문화를 확립해야 할 것임.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의지를 강화하고 주민의 지방정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 민주적 협동 활동의 경험과 제도화는 근린정부로의 전환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임(유창복, 2021)
- (추진방안) 본격적으로 근린자치정부의 출범과 함께 읍면동을 중심으로 주민자치를 선도하고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임. 전국적 차원에서 일괄도입은 어려울 수 있으니 근린지방정부에 대한 실험과 확산 방식을 제안함(유창복, 2021)
 - 단기적으로는 읍면(동)의 기능을 최소화하는 형태에서 자치단체를 고민하게 하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현 책임읍동인 조치원읍을 대상으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것임
 - 궁극적으로 무엇보다 다양한 형태의 시범적인 근린지방정부의 구성이 가능할 것이며 그 예로 기관대립형, 기관통합형, 집행위원회형 등이 제안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일반행정, 사회복지, 안전, 산업개발 등 제한적 기능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능의 이양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러한 모형은 지역의 현실에 적합한 방식을 주민이 선택하도록 하며 향후 한계점이 나타날 시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할 것임. 그리고 읍면동의 준지방자치단체를 중·장기 방향으로 가져가되, 지역적 여건의 성숙도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 혹은 현재 입법 발의

29) 일본의 정·촌, 프랑스의 꼬뮌, 독일·스위스의 게마인데 등 선진국의 기초자치단체는 우리나라의 읍면동에 해당됨

된 기관구성 다양화 관련 특별법(2022.10.4., 김영배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된다면, 이에 근거해 읍면동을 지방자치단체화 하는 방향을 제안할 수 있을 것임. 그리고 향후 기후위기 시기를 맞아 근린정부 단위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지역주민과 협동해서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고문헌

- 곽현근(2015), 주민자치 개념화를 통한 모형 설계와 제도화 방향, <한국행정학보> 제49권 3호, 279~302.
- _____(2017), 지방자치 원리로서의 '주민자치' 재해석을 통한 생활자치 개념화와 제도모형 구성, <현대사회와 행정> 제27권 2호, 1~29.
- _____(2018a),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한 주민자치 제도화의 방향과 과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주민자치전문위원회 워크숍 발표자료.
- _____(2018b), 풀뿌리주민자치 생태계 조성의 주민자치회 역할: 파편화된 주민 조직들과 제도들 유기적 연계 절실, <월간 주민자치> 제74권, 10~17.
- _____(2019), 시민주권 시대 읍·면·동 풀뿌리주민자치 방향과 과제, 한국NGO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_____(2020), 자치분권 원리로서 '주민주권'의 이론적 토대 정립을 위한 시론(試論), <한국행정연구> 제29권 2호, 31~60.
- 곽현근 외(2019), <시민주권형 읍·면·동계 모델개발>, 세종특별자치시 연구용역보고서.
- 곽현근·김홍주·이현국(2021), 참여민주주의 및 풀뿌리자치의 활성화,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분권형 정부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보고서.
- 김찬동(2014a), 주민자치의 제도설계: 일본의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를 사례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6권 제1호, pp.117-138.
- _____(2014b), 주민자치회 제도의 향후 방향, <지방행정연구> 제28권 제3호, pp.61-65.
- _____(2017), <주민자치의 이해를 위한 주민자치제도의 재설계>, 대전: 궁미디어.
- _____(2019), 주민주권과 주민자치의 재설계, 한국지방자치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 _____(2021), 행정복지센터 기능분석을 통한 주민자치회 new 모델 설계,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 김필두·류영아(2015), 주민자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방안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2권 제3호, pp.283-306.
- 김홍주(2019),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과제: 부강면 사례를 중심으로>, 대전세종연구원 연구보고서.
- _____(2020), <자치분권특별회계 읍·면·동 지역별 합리적 자원배분 방안:배분산식 및 구조개선을 중심으로>, 대전세종연구원 연구보고서.
- _____(2021), <세종형 풀뿌리 주민자치 고도화 방안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연구보고서.

- _____(2022),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2.0 방향성 모색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흥주·곽현근·임승빈(2018), <세종형 풀뿌리 주민자치 제도화 방안>, 세종특별자치시 연구용역보고서.
- 김흥주·김강현(2022),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운영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김흥주·박상철(2022), 자치분권 2.0시대에 세종형 풀뿌리 주민자치 제도화 방향 모색,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3권 제4호, pp. 67-95.
- 김흥주·이시원(2019), <세종형 자치조직 발전방안>, 대전세종연구원 연구보고서.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 심익섭(2012), 주민자치회의 제도화 방안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제26권 제4호, pp. 57-84.
- 유창복(2020), <시민민주주의>, 서울연구원.
- 이기우·조성호(2021), 풀뿌리자치를 위한 읍·면·자치의 도입 방안, <GRI 연구논총> 제23권 제4호, pp. 291-320.
- 이병렬·이종수(2015),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제도적 한계와 발전과제,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9권 1호, pp.157-180.
- 이용환·이현우·염일열·김진덕·가선영(2019), <경기도형 주민자치회 구축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 전대욱·최인수·최지민·유수동(2022), <주민자치회 모델 재설계 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최근열(2015).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발전방안.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7권 제3호. 55~74.
- 최인수·전대욱·김필두·최지민·박현욱·이정은(2022), <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읍면동 체계개편 및 권한강화 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
- 최지민(2021), 현장 중심의 읍·면·동 기능개편 방향, 화성시 혁신자치포럼.
- 한상우(2014), 주민자치회의 정착을 위한 과제와 방향, <현대사회와 행정>, 제24권 4호, pp.315-336.
- 행정안전부(2021), 2021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주민자치 분야 매뉴얼.
- 홍준현·하혜수·금창호·라휘문·하동현·손희준·문동진·김가람·서정섭(2022),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10년 성과 및 발전모델 연구, 세종특별자치시 연구용역 보고서.
- Chanam, G. (1999). Local Community Involvement: A Handbook for Good Practice.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 Elstub, S., and Escobar, O., 2017, A Typology of Democratic Innovations. Paper for the Political Studies Association's Annual Conference, 10th~12th April 2017.
- Lowndes, V., and Sullivan, H., 2008, How Low Can You Go? Rationales and Challenges for Neighbourhood Governance. *Public Administration*, 86(1): 53-74.
- Putnam, R.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l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kocpol, T. (2003). *Diminished Democracy: From Membership to Management in American Civic Life*. Norman, OK: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34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37(문지동)
TEL. 042-530-3500 FAX. 042-530-3508
www.dsi.re.kr

ISBN 979-11-6075-347-9 93350